

ISSN 1226-1548

史 學 志

제 65 집

단 국 사 학 회

2024년 12월

단국사학회 임원

회장 : 전 덕 재(단국대)
총무이사 : 이 종 수(단국대)
섭외이사 : 백 종 오(한국교통대)
연구이사 : 윤 육(부산대)
연구이사 : 김 우 진(한중연)

연구윤리위원 : 김 경 현(고려대)
연구윤리위원 : 최 희 재(단국대)
감사 : 김 현 수(단국대)
감사 : 김 영 제(단국대)

편집위원회

위원장 : 심 재 훈(단국대)
위원 : 이 정 빙(경희대)
위원 : 임 경 화(중앙대)
위원 : 김 한 신(경남대)
위원 : 손 성 육(창원대)

위원장 : 김 혜 진(한국외대)
위원 : 이 현 주(단국대)
위원 : 김 재 윤(영남대)
위원 : 최 선 아(명지대)

『史學志』 단국사학회의 학회지로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됩니다.
원고 게재를 원하는 분은 학회 홈페이지의 ‘출판 및 심사 규정’, ‘투고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고 마감일은 발간일 기준 6주 전입니다.

발표나 논문 게재를 원하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 이종수(단국대) : skandb@dankook.ac.kr
편집간사 이창현(단국대) : dkhistorysociety@gmail.com

학회 홈페이지 : <http://www.dkhistory.re.kr>

史 學 志

제 65집

일반논문

고대문명 기원과 그 연구의 다른 궤적들:

시론적 비교 고찰 심재훈 1

聖王 堯舜의 연구사 궤적:

역사의 경계에서 문화적 기억까지 이정우 40

고구려본기의 중국 史書 인용 양상과 초기 王系 기사 임기환 79

송대 ‘文治主義’에 대한 재고찰 김한신 123

왕안석(王安石)의 개혁과 북송 중엽의 정계 이근명 153

18세기 초 식민지 보스턴에서 감염병 통제, 인두법, 그리고 정치 이현주 190

개항기 외국인 내지 여행 허가와 “Passport”제도의 수용 김동희 217

단 국 사 학 회

2024년 12월

편집자 노트

총 7편이 게재 확정된 이번 호의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했다. 한국 역사학계의 일반적 구분에 따르면 한국사 2편, 동양사 3편, 서양사 1편 이외에, 동양사로 볼 수 있지만 서양사까지 일부 아우르는 논문 1편이 추가되었다.

고심 끝에 3분과의 구분을 해체하고 각 논문이 다루는 연대순에 따라 뒤섞어보기로 결정했다. 고대에 해당하는 세 편의 논문 중 혼히 4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핵심 고대문명의 연구사와 기원 문제를 비교 검토한 심재훈의 글을 맨 앞에 배치한다. 전근대 동아시아 통치의 모범으로 확고한 지위를 누린 고대의 성왕 요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경향을 분석한 이정우의 글이 그 뒤를 잇는다. 한중의 사서에 다르게 나타나는 고구려의 왕계 관련 기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한 임기환의 글을 세 번째로 배치함으로써, 세계(동양)-동아시아-한국으로 좁혀지는 거시적 미시적 고대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후반부 네 편 중 두 편은 송대사의 주요 이슈 새롭게 바라보기다. “송은 과연 문약한 나라였는가?”라는 화두를 던진 김한신의 글은 송을 대변하는 ‘문치주의’의 이면을 부각한다. 이근명 역시 왕안석의 신법을 “소농민, 소상인 보호”와 “대지주 대상인들의 피해”로 도식화하는 이분법적 이해에서 탈피하여, 그 개혁이 실제 농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마지막 두 편은 최근 뜨고 있는 분야 혹은 이슈를 다룬다. 이현주가 18세기 초 보스턴의 두창 위험에 따른 ‘인두접종 논쟁’을 식민지 의학사 및 정치사 맥락에서 검토하고, 김동희의 글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 19세기 말의 ‘Passport’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2024년 12월 25일

편집위원장

고대문명 기원과 그 연구의 다른 궤적들: 시론적 비교 고찰

심 재 훈*

- I. 들어가며
- II. 지역별 연구 궤적과 내외적 조건

- III. 고대문명 형성의 정신적, 물질적 토대:
근동과 중국 비교
- IV. 나가며

초록

필자는 2022~2024년까지 “문명의 시원, 그 연구의 여정과 실제”라는 공동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1, 2년차 연구를 통해 산출된 총 9편의 논문을 저자 나름의 시각으로 일별하고 연구사와 기원 문제 두 장으로 나누어 문명 비교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첫 번째 연구사는 연구의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각 문명에 대한 연구 경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토대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서양 학자들이 주도해온 정치적 목적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순수학문형,” 인도의 힌두뜨와 역사학은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한 “극단적 민족주의형,” 이스라엘과 중국의 경우는 “현지의 민족주의형과 외부 순수학문형의 길항”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자체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분류는 근대 서양 학문의 도래 시점에서 문명 각각이 처한 내외재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문명 기원 문제는 우선 문헌이 풍부한 고대 근동의 다신교적 종교 연구가 네러티브가 결여된 갑골문을 토대로 한 고대 중국의 종교 연구에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나아가 오랜 연구가 진행된 메소포타미아의 우ruk 도시 국가와 그 팽창 현상을 고대 중국의 열리터우 유적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js527@dankook.ac.kr

과 그 확산에 대비시켜보았다. 지역별 환경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비교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열리터우는 문자를 제외하면 우루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열리터우 시기에 우루과 같은 문화적, 정치적 팽창의 뚜렷한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핵심 고대문명 연구의 다양한 양상을 수렴한 본 공동연구는 많은 허점에도 불구하고 비교 연구의 장점을 예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I. 들어가며

필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문명의 시원, 그 연구의 여정과 실제”의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했다. 이 연구는 이른바 4대문명으로 알려진 핵심 고대 문명의 연구사와 함께 초기 문명이 형성되는 과정의 다양한 양상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총 9편의 논문이 출간되었다. 연구사 분야에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도, 중국의 다섯 지역이 다루어졌고,¹⁾ 문명 기원의 경우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의 물질적 측면과 함께²⁾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정신적 측면(종교)에 초점을 맞추었다.³⁾

고대문명 연구사의 흐름과 문명의 기원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양하다. 한 연구자가 한 편의 글로 이를 관통하여 비교 검토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본 공동연구를 매조지는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치중한 9편의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각 연구의 초점이 일관되지 않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고대문명 연구에서 비교적 관점의 유용성이 미약하게라도 드러날 수 있길 기대한다.

이 글은 본 공동연구가 연구사와 기원 문제에 치중한 만큼 두 장으로

-
- 1) 김구원, 「나일강을 따라 천마일: 이집트학의 발전과 과제」, 김구원 외 『이집트에서 중국까지: 고대문명 연구의 다양한 궤적』 (파천: 진인진, 2024), 14–113쪽; 김아리, 「200년 고대 근동 연구사, 세 번의 거대한 변화」, 『이집트에서 중국까지』, 114–148쪽; 강후구, 「이스라엘/팔레스틴 고고학 역사: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논쟁들」, 『이집트에서 중국까지』, 150–233쪽; 이광수, 「인더스문명과 갠지스 문명의 정체에 관한 논쟁: 힌두뜨와(Hindutva) 역사 서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집트에서 중국까지』, 234–274쪽; 심재훈, 「중국 고대문명 연구 100년: 전통과 현대 학문의 충돌 및 재편」, 『이집트에서 중국까지』, 276–373쪽.
 - 2) 박성진, 「문명의 조건: 제4천년기 서아시아의 우록 팽창 현상」, 『崇實史學』 52 (2024), 5–56쪽; 김용준, 「인더스문명 기원 연구: 인도아대륙 최초 도시복합사회 발전의 배경과 기원을 둘러싼 논쟁」, 『崇實史學』 52 (2024), 116–137쪽; 김정열, 「좌절과 도약의 교차로: 중국 초기문명 설립의 길」, 『崇實史學』 52 (2024), 139–203쪽.
 - 3) 김구원, 「고대 근동 다신교의 문화 전략과 유일신교의 발달: 아텐과 야훼를 중심으로」, 『崇實史學』 52 (2024), 58–114쪽.

나뉜다. 첫 번째 연구사의 경우 연구의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각 문명에 대한 연구 경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근대 서양 학문의 도래 시점에서 문명 각각이 처한 내외재적 조건이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문명 기원의 경우 의제를 일정 부분 공유하는 메소포타미아와 중국의 사례 위주로 비교 검토해보려고 한다. 각 장의 앞 부분에서 우선 필자 나름의 시각으로 모든 연구 결과를 일별한 뒤 말미에 종합적으로 비교 고찰할 것이다.

II. 지역별 연구 궤적과 내외적 조건

1. 구미학계가 주도한 순수학문으로서 이집트학⁴⁾

고대 이집트는 통일 왕국이 들어선 기원전 3000년경부터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한 기원전 322년까지-(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혹은 기원전 32년 로마의 정복 후 마지막 성각문자 문헌이 작성된 기원후 394년까지를 포괄한다. 700년 이상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집트의 정체성을 유지할 정도로 그 이전 3000년의 문명이 일관되고 강렬했다. 동로마 지배 하의 이집트, 즉 비잔틴 이집트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한 642년 이후 고대 이집트 문명은 자취를 감춘다.

그렇지만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느 문명보다 강렬한 유적을 남긴 이집트는 고대 이래 끊임 없이 외부인의 관심을 끌다 16-17세기 유럽에서 ‘이집트 광기’(Egyptomania)라고도 부르는 신비주의적 열풍의 대상이 되었다. 고대 이집트 유물 수집(약탈) 경쟁이 이어졌다. 그 와중에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에 동행한 150명의 학자(savants)들이 10년 이상 이집트의 다양한 양상을 조사 연구한 결과물인 『이집트 서술』(Description de l'Egypte, 1809년~1828년) 21권이 이 근대 이집트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원정대의 로제타 석비 발견이 성각문자 해독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은 주

4) 대체로 김구원, 「나일강을 따라 천마일」을 토대로 한다.

지의 사실이다.

1854년 이집트 고고학청이 설립되어 유물의 약탈은 중지되었지만, 거의 100년 동안 고고학청의 수장과 주요 직책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이 맡았다. 1953년부터 이집트인 고고학 청장이 배출되어 2000년대 이후 이집트인들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세기 전반 유럽 대학들(20세기 이후에는 미국도)에 이집트학 교수직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집트학은 크게 보아 고고학(역사학)과 언어학(문헌학)의 두 영역으로 수렴된다. 이는 고대의 문헌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인도를 제외한 고대문명 연구의 전반적 현상이다. 초창기 유럽 국가들 사이의 경쟁과 그 오리엔탈리즘적 속성을 감안하면서도 김구원의 글은 대체로 순수학문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1880년대 영국 플린더스 페트리의 층위학(stratigraphy)에 기초한 유물 분류에서 시작된 과학적 고고학은 1922년 투탕카문의 무덤 발굴을 비롯한 급진적인 발굴로 빛을 발했다. 1960년대 이후 세계 고고학계의 흐름에 따라 신고고학, (후기)과정고고학, 취락고고학 등을 도입하여 환경, 사회 경제, 인구 등 거시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념, 종교, 예술, 정치 같은 인간 행위의 측면까지 연구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역사 장르로 분류될 만한 문헌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 사제 마네토가 그리스인들을 위해 썼다는 이집트 역사는 유실되었지만, 후대 학자들이 인용한 마네토의 기술을 통해 시대구분을 비롯한 현대 이집트 역사의 근간이 되고 있다.

언어학은 성각문자의 해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여 고대 이집트 문헌의 정확한 해독에 치중했다. 독일의 베를린학파가 20세기 중반까지 문법과 어휘 방면의 연구를 주도했고, 유럽과 미국의 다양한 기관에서 각종 이집트어 사전 출간이 지속되고 있다. 성각문자의 해독 능력이 이집트학자의 자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 지 오래다. 20세기 후반 이래 고고학과 마찬가지로 일반 언어학 이론을 수용하며 특히 문헌학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2. 고대문명 연구의 기준점 메소포타미아학⁵⁾

메소포타미아 연구 역시 이집트학과 마찬가지로 구미 학계에서 주도하여 순수학문적 경향이 강했지만 두 지역의 연구에는 두드러진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집트가 대체로 중국과 비슷하게 일극 체제를 유지하여 문명의 연속성이 두드러진다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 근동(서아시아) 지역은 무수한 도시국가들과 함께 제국에 벼금가는 국가만 하더라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등이 각축한 다극 체제였다. 연구의 범위가 넓고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고대의 언어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대 근동학을 아시리아학 중심으로 살펴본 김아리는 지난 200년 동안 이어진 그 연구사를 세 번의 변혁기로 나누어서 서술한다. 그 첫 번째가 “성서학과 연관된 고대 근동학”이다. 이집트인과 마찬가지로 아랍인들에게 기원전 3500년에서 331년 알렉산더의 바빌로니아 정복까지 이어진 고대 근동에 대한 기억은 거의 사라진 반면, 성서를 통해 고대 근동과 연관된 내용이 유럽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19세기 중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베와 사르곤왕의 도시 두르-사루킨 등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유럽에 유입되어 유럽인들을 매료시켰다. 이때 쐐기 문자도 발견되었는데, 그 본격적인 연구는 로제타석과 마찬가지로 다중 문자로 적힌 다리우스왕 (550-486BC)의 베이스툰 비문을 통한 해독에서 출발했다. 특히 니느베에서 발견된 토판 문헌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를 연상시키는 칼데아인들의 홍수설화(뒤에 길가메시 서사시의 일부로 밝혀짐)나 바구니에 넣어 물에 벼려진 모세 탄생 설화의 원조 격인 사르곤왕의 탄생 설화 등이 성서와의 비교 연구를 자극했다.

1920년대부터 성서에의 종속성 탈피라는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연구 경향이 나타난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그 당사자들의 자료인 쐐기문자 문헌 증거로만 연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며, 두 번째 단계로서 “스스

5) 대체로 김아리, 「200년 고대 근동 연구사, 세 번의 거대한 변화」를 토대로 한다.

로의 문화에 초점을 둔 고대 근동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단계를 거치며 고대 근동 연구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간다. 특히 2차세계대전 발발로 많은 유럽의 인재들이 미국행을 택하여 시카고대학에서 주도한 아카드어사전(Chicago Assyrian Dictionary, CAD) 편찬 등에 크게 기여했다. 거의 50년에 걸쳐 2010년 총 26권으로 완간된 이 사전은 고대 근동학 연구 발전의 핵심 토대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고대 근동 연구는 세 번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다. 무엇보다 연구의 주제가 다변화되었다. 이전까지의 고대 근동 연구에서 왕가 문헌, 신화나 문학 문헌이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때부터 연구의 초점이 법률 문헌과 행정 문헌 등 인간의 실질적 삶과 관련된 실용 문헌 중심으로 이동했다. 이와 함께 신아시리아학이 부흥했다. 인류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자와 행정, 종교, 법률, 국가, 제국 등의 원조 격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루는 200년에 걸친 학문은 자연스럽게 고대문명 연구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3. 주변부에서 성서로 세계를 지배한 논쟁적 문명⁶⁾

앞에서 살펴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관심이 근대 이후에 부활한 것이라면, 두 거대 문명의 주변부에서 성장한 이스라엘은 고대 이래 현재까지도 종교로 세계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심에 성서(구약)라는 경전이 자리한다.

그러나 성서에 기반한 고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세기 말에야 시작되어, 20세기 초에 관련 주요 도시들이 발굴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40년대까지 구미의 유수 대학들이 성서에 언급된 지역을 탐사 발굴하며 성서고고학의 전성시대가 이어졌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과 1968년 6일 전쟁으로 이 지역 고대문명 연구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한다. 이제 이스라엘이 발굴 권한을 지니게 되어 자연스럽게 서구 중심주의 벗어나기와 함께 민족주의가 고고학의 대세가 되었다. 구약 성

6) 대체로 강후구, 「이스라엘/팔레스틴 고고학 역사」를 토대로 한다.

서 본문의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학문의 주종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인을 동일화하고자 했다.⁷⁾

1970년대부터 영국과 네덜란드 등 외부 학자들이 이러한 지나친 민족주의적 학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 논란의 핵심에 구약 성서의 내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자리한다. 이들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한 결과물들이 성서에 나오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니, 기존에 정립된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부정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흔히 수정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성서의 신빙성을 둘러싼 이른바 “최대주의”와 “최소주의” 논쟁이 야기되었다.

이 논쟁은 이스라엘 내부 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중반부터 텔아비브대학 고고학과의 펀켈쉬타인을 중심으로 기존에 정설로 설정된 고고학 연대를 1세기 정도 늦춰야 한다는 이른바 “저연대” 논쟁이 시작되었다. 펀켈쉬타인은 후대에 편찬된 구약 성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이 실제 고고학 성과와 부합하지 않음을 역설했다. 기원전 10세기 경에 번성했다는 다윗과 솔로몬왕의 통일왕국에 대한 구약의 기술도 요시아 같은 후대 유대왕들이 추구한 이데올로기적 서사일 것으로 보았다.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고고학은 2000년대 이후 펀켈쉬타인의 문제 제기를 비롯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 더욱 정치하게 논쟁하는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문명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지역 문명의 연구에 그 후예를 자처하는 현지인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면서 연구 경향이 달라질 수 있

7)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 술로모 산드, 김승환 옮김의 『만들어진 유대인』(고양: 사월의 책, 2022; 영문 원본은 2009년)은 20세기 유대인과 이스라엘 학문의 대세였던 오도된 유대 민족사 만들기를 적절하게 비판하여 세계적 공감을 얻은 바 있다.

8) 2001년에 출간된 Neil Asher Silberman, Israel Finkelstein, *The Bible Unearthed: Archaeology's New Vis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Origin of Its Sacred Texts* (New York: The Free Press)는 국내에도 이스라엘 평欺负타인·닐 애서 실버먼 공저, 오성환 역,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서울: 까치, 2002)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음을 예시한다. 이어서 검토할 현대 인도의 이른바 ‘힌두뜨와’ 인도 고대 문명 연구는 그 극단적 사례이다.

4. 사이비 역사의 끝판왕 ‘힌두뜨와’ 역사학⁹⁾

인도 고고학조사국의 국장이던 존 마샬(John Marshall)이 인더스강 유역의 잃어버린 하람빠 문명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린 지 100년이 경과했다. 그 연구가 한 세기를 경과했음에도, 인더스 문명의 정체를 둘러싼 연구는 아직도 극심한 논쟁에 휩싸여 있다. 그 여파로 이광수가 집중 분석한 ‘힌두뜨와’(Hindutva, 힌두스러움, 힌두性)라는 사이비 역사학이 발호하고 있다.

대략 기원전 2600~1900년 사이에 존재한 인더스 문명이 청동기를 사용한 도시 문명이라는 사실은 하람빠와 모헨조다로를 비롯한 다섯 도시 유적의 발굴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를 유적을 둘러싸고 인더스 문명의 토착 기원설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의 ‘수메르 엘리트 이주설’이 현재까지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후술). 더 큰 문제는 1947년 영국령 인도가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리된 이후, 인더스 문명의 핵심인 하람빠와 모헨조다로 유적이 인도가 아닌 파키스탄 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이다.

기원전 1900년 경 인더스 문명 소멸 이후도 큰 논쟁의 불씨가 남겨져 있다. 아리아인의 침입 혹은 이주와 함께 하는 이 소멸 이후 인더스 문명에 버금가는 도시 문명이 동쪽 갠지스 평원에서 재출현하는 기원전 700~600년경까지 1천년 이상의 공백기가 존재한다. 고고학자들이 각각 청동기 위주의 1차와 철기 위주 2차 도시화로 명명하는 두 문명 사이의 공백기는 대체로 힌두교가 형성된 이른바 아리아인의 베다 시대에 해당한다. 아리아인이 주도한 2차 도시화의 각축 상황은 마우리아 제국(기원전 320~185년)에 의해 마감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장기에 걸친 이러한 상황을 전하는 당대의 문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구

9) 대체로 이광수, 「인더스문명과 갠지스문명의 정체에 관한 논쟁」을 토대로 한다.
‘힌두뜨와’ 사이비 역사학에 초점을 맞춘 이 글만을 바탕으로 인도에서 인더스 문명 연구 전반을 사이비 역사학으로 재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으로 전승된 베다 경전이나 힌두 고유의 신화를 담은 『라미야나』나 『마하바라타』같은 서사시가 성문화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었다.

20세기 전반까지 영국의 식민통치에 대항하는 인도 민족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제는 이슬람이나 기독교 등 외세의 종교가 아닌 토착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는 힌두뜨와 개념이었다. 이미 1930년 대부분 인더스 문명을 힌두 신화와 연결시키는 시도가 있었지만, 1977년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국민단(현재 집권당인 인도국민당의 전신)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힌두 민족주의 역사 서술이 본격화되었다.

그 핵심에는 결국 현재 인도 영토 내에서 존재했던 분절적 문명들을 아루르는 단선적 역사 구축이 자리한다. 저명한 학자들이 이를 주도했다. 1995년 고고학자인 굽따(Swaraj Prakash Gupta)가 인더스 문명이 하람빠와 모헨조다로가 위치한 파키스탄 지역이 아니라 현재 인도의 메말라 사라진 가가르-하그라강(『리그베다』에 말라 사라진 강으로 묘사된 사와스와 띠강?) 유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어받은 일부 학자들은 힌두교를 만들어낸 아리아인 역시 이주민이 아니라 원래 가가르-하그라강 유역에서 인더스 문명을 구축한 토착민으로 둔갑시켰다. 아리아인의 도래설을 반박하기 어려우니 그들이 인더스 문명을 구축한 후에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다 다시 인도로 들어왔다는 설마저 제기되었다. 이른바 아리아인의 인도 기원설이다. 1차와 2차 도시화 사이에 존재한 문명의 공백기 역시 힌두 신화로 채워져서 결국 인더스와 갠지스가 하나의 문명이라는 단선적 역사가 구축되었다. 고고학자들이 토대를 제공했고, 유사과학자들이 그 확산에 기여했다. 가가르-하그라강 유역의 초라한 고고학 발굴을 포함하여 이광수의 글에서 조목조목 비판하듯, 힌두뜨와 역사학에서는 사이비 역사학의 각종 메뉴가 등장한다.

5. 유례 없는 장기지속적 중국 문명사와 근대 서양 학문의 자극¹⁰⁾

중국은 위에서 살펴본 네 문명과 달리 고대 이래 자체 내의 장기적 학

10) 대체로 심재훈, 「중국 고대문명 연구 100년」을 토대로 한다.

문 전통을 지속했다. 특히 강한 호고주의(antiquarianism) 전통과 함께 고문헌학과 고문자학 분야에서 상당한 전통을 쌓아왔다. 따라서 전래된 문헌뿐만 아니라 19세기 말 갑골문의 발견에서 비롯된 다양한 출토문헌 및 1920년대 요한 군나르 안데르손(Johan Gunnar Anderson)의 발굴에서 시작된 방대한 고고학 자료도 여타 문명에 비해 풍부한 편이다.

그렇지만 1899년 발견된 갑골문자의 해독을 자체의 고문자학 연구 전통 속에서 이루어냈다고 해도, 중국 고대문명에 대한 근대적 연구 역시 앞에서 살펴본 다른 문명과 다르지 않게 서양 학문의 충격으로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가 양소문화를 발굴한 안데르손이 제창한 중국 문명의 서방기 원설이다. 자생설을 입증하려는 중국 학계의 노력과 함께 시작된 서양 학계와 중국 학계의 지역주의적 학문 구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주의는 중국 내부에도 존재한다. 중국 역사상 최대로 확장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여러 지역에서 문명적 요소를 구비한 신석기 후기의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 문명의 독자성이 초래하는 지역성 만큼이나, 현재 중국 판도 내의 다양한 초기 문명을 중화라는 하나의 그릇, 즉 단선적 역사에 담아야 하는 정치적 당위성이 국내 지역주의적 논란의 주된 요인이다. 정치성에서 자유로운 서양 학계가 지역 문명의 독자성에 손을 들어줄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근저에는 중국 고문헌의 신빙성을 둘러싼 또다른 핵심 논의가 존재한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단선적 역사상의 근간인 고문헌의 신빙성을 부정한 이른바 의고(疑古) 학풍이라는 근대적 전환점이 1920년대 구제강(顧頽剛)에 의해 중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는 사실이다. 중국보다 일찍 의고 논쟁을 시작한 일본¹¹⁾이나 구제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서양 학계에서 이를 환호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의고 학풍이 거의 반세기를 풍미하던 와중에 누적된 중국의 고고학 성과는 1990년대 이래 고문헌에 대한 지나친 회의를 되돌아 보는 이

11) 심재훈, 「동아시아를 횡단한 의고의 계보와 학술사적 전망」, 『東洋史學研究』 161 (2022), 22-28쪽.

른바 신고(信古) 학풍을 새로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양 학계에서 신고 경향의 단선적 역사관 추구에 여전히 비판적임은 물론이다. 다만 뛰어난 중국계 학자들이 구미(특히 미국) 주요 대학의 교수가 됨으로써 의고 일변도의 학풍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6. 비교 고찰: 근대 학문에 대처하는内外재적 조건과 연구의 주체

앞에서 살펴본 다섯 편의 논고를 토대로 드러난 다섯 지역의 근대식 고대문명 연구는 대체로 고고학 유적의 발굴이 주동한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의 특성도 지니며 발전했다. 여기서는 일단 특정 고대문명 연구사의 주된 흐름을 앞의 본문에서도 암시된 필자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서양 학자들이 주도해온 정치적 목적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순수학문형,¹²⁾ 둘째, 인더스 문명에 대한 인도의 ‘힌두뜨와’ 역사학은 극단적 민족주의형, 셋째, 이스라엘과 중국의 경우 현지의 민족주의형과 외부 순수학문형의 길항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정 국가나 지역의 학술 경향을 한 방향으로 재단하는 이러한 분류는 자의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당연히 중국에도 정치성 경향성을 배제하고 순수학문을 추구하는 학자들이 존재하고,¹³⁾ 뒤에서 언급하듯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스라엘 내부의 학자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주류 학술의 대변자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최소한 상대적으로라도 주류로 분류한 경향들의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 대한 검토가 무의미하지는 않으리라 기대한다. 인도의 경우도 이 글에서 주로 참고한 이광수의 연구에서 부각

12) 과연 순수학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적 호기심에서 발원한 탐구’ 정도로 정의한다. 뒤에 나올 민족주의형의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13) 예컨대 현재 중국 학계의 고대문명 연구에서 민족주의에 경도된 信古 경향이 대세라고 해도, 여전히 顧頡剛의 후예를 자처하며 疑古 학풍을 고수하는 학자들이 있다(陳泳超, 『堯舜傳說研究』, 南京: 南京師範大學出版社, 2000; 吳銳, 『中國上古的帝繫構造』, 北京: 中華書局, 2015).

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민족주의적 정치성을 배제한 연구가 존재할 것이다. ‘힌두뜨와’ 역사학을 인도의 주류 역사학으로 보기에도 어렵다. 그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힌두뜨와’ 역사학을 극단적 경향의 사례로 비교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결국 그 차이의 핵심은 각 문명 연구를 연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¹⁴⁾ 그 주체는 단수일 수도 복수일 수도 있다. 로버트 베글리는 고대 중국 연구에서 나타나는 구미와 중국 혹은 중국계 학자들 사이의 첨예한 차이를 “문화 국외자”(cultural outsider)와 “문화 당국자”(cultural insider)의 관점 차이로 설명한 바 있다.¹⁵⁾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뉘앙스가 내포된 도발적 주장이지만, 여타 고대문명 연구에서도 참조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결국 관건은 연구자들이 특정 고대문명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활용할 지의 차이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를 가능케 했을 문명 각각이 처한 내외재적 조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했을까?

자연과학이든 인문학이든 현대 학자들이 추구하는 학문은 서양 근대의 산물이다. 앞에서 살펴본 다섯 편의 연구는 고대문명에 대한 연구 역시 거기서 예외일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필자가 첫 번째 순수학문으로 파악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모두 자체 내의 극심한 기억 단절을 겪었

14) 필자는 고대 중국 연구에서 중국 학계와 서양 학계 사이의 이러한 긴장 관계의 좋은 사례로 리펑(Li Feng)과 로타 본 팔켄하우젠(Lothar von Falkenhausen)의 연구를 비교검토한 바 있다(심재훈, 「周代를 읽는 다른 방법: 자료와 체계의 양면성」, 『中國古中世史研究』 26, [2006], 219~263쪽). 특히 다음 장에서 살펴볼 김정열의 연구에서 분석한 중국 최초의 고대 국가로 알려진 얼리터우 유적에 대해서도 중국과 서양 학계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심재훈, 「二里頭 중국 고대국가 기원론의 딜레마」, 『歷史學報』 245 [2020], 207~236쪽).

15) Robert Bagley, “Review of Wu Hung’s *Monumentality in Early Chinese Art and Architectur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58.1 (1998), p.231. “문화 국외자”와 “문화 당국자”라는 번역은 베글리의 서평에 대한 우홍의 반론인 巫鴻, 「答貝格利對拙作《中國早期藝術和建築中的紀念性》的評論」, 『中國學術』 2 (2000), p.262에 따른 것이다.

다. 642년 비잔틴 이집트가 이슬람 세력에 멸망당한 이후,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라는 현재 국호에서도 암시되듯, 약 1400년 동안 이집트를 이끈 이슬람 문명이 고대 이집트를 삼켜버렸다. 이집트 고대문명에 자부심을 가질만한 그 역사의 주체가 거의 사라져버린 것이다. 따라서 르네상스 아래 유럽의 신비주의적 이집트 열풍은 대체로 당시 유럽인들의 기호를 반영할 뿐이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공 이후 이탈리아 피사대학(1824년)과 끌레주 드 프랑스(1831년)에 뒤이은 유럽 대학들의 이집트학 교수직 설치도 오리엔탈리즘적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자신들의 문화적 선조인 그리스나 로마보다 앞선 찬란한 문명에 대한 학문적 동기에서 유발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집트에도 자신들의 화려한 고대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럽학계가 주도한 20세기 초반 이집트학의 부상이 당시 이집트 현지인에게도 유럽인들만큼 중요했다고 보는 연구가 있다.¹⁶⁾ 당시 식민지 고고학자들에 도전한 이집트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이 파라오의 직접적 계승자니, 고대 이집트 역사 유적과 기물의 정당한 소유 및 관리자는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이들은 유럽의 이집트 열풍에 대응해 “파라오주의”(Pharaonism)라는 정치적 문화를 고안하여 고대에서 영감을 얻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근대 파라오주의자의 시와 조각, 건축, 영화 등을 창출했다. 엘리엇 콜라는 이들의 고대 이집트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이 단순히 유럽의 식민 관리자에 대한 대항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엘리트들의 지역 주민에 대한 통제와 새로운 정당의 집결에도 유용했다고 본다.

그러나 콜라 자신이 강조하듯 파라오주의가 새로운 민족 정체성 개념의 형성에 중요했던 것 만큼이나 이집트식 국가 비전을 우려한 이슬람주의자들의 반대도 극심했다. 사실상 이집트 현지 엘리트들의 고대 이집트에 대한 환호는 유럽인의 앞선 관심에서 촉발된 것으로, 비자발적인 그 정치성을 고려할 때 그것이 이집트 자체의 학문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요원한 일

16) Elliott Colla, *Conflicted Antiquities: Egyptology, Egyptomania, Egyptian Modern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pp.273-277.

이었다.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지의 이집트학 역시 이미 확고히 자리잡은 구미 이집트학의 자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슬람 국가들이 장악한 메소포타미아 현지의 연구도 이집트에서의 이집트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관광이 국가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이집트와 달리, 여러 지역에 분산된 메소포타미아 유적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까지 겹쳐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측면이 수메르의 초기 도시 유적인 우록을 비롯한 여러 고고학 유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문헌들에 대한 서양 학자들의 순수 학문적 탐구를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지도 모른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 오랜 연구가 누적된 우록 팽창 현상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학은 고대문명 연구의 기준점을 제시하며 선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필자가 순수학문적이라고 파악하는 경향의 대척점에 두 번째의 극단적 민족주의형인 인도의 ‘힌두뜨와’ 역사학이 자리한다. 인더스 문명에 대한 구미 학계의 연구 경향 역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도에서 힌두뜨와 역사학 이전에 성행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도 구미의 연구를 중시하여 민족주의적 성향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었다. 힌두뜨와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역사가 1930년대 이미 제기되었어도 그 주체인 힌두 민족주의 정당(현재 집권 인도국민당)이 1977년 사회주의 계열 정당을 누르고 집권하기까지 인도 내에서조차 공감을 얻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전체 인구의 80%가 힌두교도인 인도의 현실에서, 反이슬람(반파키스탄)과 반마르크스주의 정서에 기댄 힌두 민족주의 정당의 집권으로 힌두뜨와 역사학이 환호받을 만한 토양이 마련되었다. 인도 고대문명의 소재지를 파키스탄이 아닌 현재 인도의 영토 내에서 새롭게 설정하고 사실상 분절적인 갠지스 문명(2차 도시화)까지 망라한 힌두주의 기반 단선적 역사를 구축케 한 것이다. 이광수가 지적한대로 이들이 찾아낸 인도 고대문명의 소재지인 가가르-하그라강 유역에서 하람빠나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1차 도시화의 흔적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고고학 자료와 비교언어학의 남용 및 유사 과학에 기초한 이러한 사이

비 역사 발호의 근저에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달리 고대의 문헌 기록이 부재한 인도 문명의 내재적 조건이 자리한다. 고대의 문헌기록이 비교적 풍부한 중국이나 이스라엘에서 힌두뜨와 역사같은 사이비 역사는 부각되기 어렵다. 고문헌이 고대에 대한 기억을 확장할 수 있는 한도를 어느 정도는 정해주기 때문이다.¹⁷⁾ 이 문제는 뒤에서 부언할 것이다.

다만 고대에 남겨진 상대적으로 풍부한 문헌은 이스라엘과 중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두 사례에는 분명 차이점이 존재한다. 고대 이스라엘은 중국처럼 1차(pristine) 문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문명적 요소가 동일한 지역을 기반으로 지속된 것도 아니다. 중국의 경우 방대한 현재의 영토 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지역 문명적 요소를 인도의 힌두뜨와 역사처럼 단선적 역사로 구축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부담을 안고 있어서 서양 학계와 극심한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¹⁸⁾

그럼에도 두 지역의 학문 전통에는 공통점도 존재한다. 중국 고대문헌이 전근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유 체계의 근간을 제공했듯이, 성서를 토대로 고대 이스라엘이 낳은 종교 역시 전근대 서반구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중국을 비롯한 전근대 동아시아 지성계에서 사서삼경을 포함한 경전 연구 전통이 강하게 지속된 것 이상으로 서양에서도 성경에 기초한 신학 연구가 인문학의 핵심 중 하나였다.¹⁹⁾ 고대 이스라엘과 중국 문명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앞에서 살펴본 세 사례와 달리 근대 학문 도입 이전에도 상당한 토대를 지니고 있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이 서양 근대 학문의 충격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17) 필자는 최근 작성한 중국 고대사 관련 베스트셀러 『상나라 정벌: 은주 혁명과 역경의 비밀』(파주: 글향아리, 2024)에 대한 서평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심재훈, 「좋은 역사가가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을까», 『서울리뷰오브북스』 14 [2024], 68~85쪽).

18) 심재훈, 「중국 고대문명 연구 100년」, 303~305, 327~333쪽.

19) 루돌프 파이퍼 지음, 정기문 옮김, 『인문 정신의 역사: 서양은 어떻게 인문학을 부흥시켰는가』(서울: 도서출판 길, 2011), 68~69, 115~153쪽 등.

홀로코스트를 겪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고대 이스라엘인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1948년 펠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서양 학문의 충격을 흡수한 중국 학자들이 내재적 학문 전통²⁰⁾에도 힘입어 자신들의 고대사를 부정하는 의고 역사학을 창출한지 약 20년 이후에, 유대 민족주의에 부응한 신생 이스라엘의 학자들은 구약 성서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최대주의 역사학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달은 차면 기우는 법이다. 두 지역이 처한 다른 상황-전근대의 구습을 봉건적 잔재로 부정하고픈 중국과 새로운 역사를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유대인)-이 상반된 역사 인식을 추동했어도, 그에 대한 강한 반작용은 또 다른 상반된 역사 인식을 낳는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어마어마한 고고학 성과가 그동안 경시된 고문헌의 신빙성을 입증해주는 경우 만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의 고고학 성과도 구약 성서의 내용을 반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신고와 최소주의로 각각 명명된 이러한 반사적 인식은 고대 이스라엘과 중국의 역사 서술을 둘러싼 논쟁이 경로는 반대였어도 결국 원점으로 회귀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는 중국의 신고가 여전히 내재적 현상이라면, 이스라엘의 최소주의는 영국과 네덜란드 등 외국 학자들이 선도했다는 점이다.²¹⁾ 그렇지만 이 차이 역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구체강의 의고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환호하며 의고 학풍을 고수하던 서양 학계에 뛰어난 중국계 학자들이 진출함으로써 그 일변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²²⁾ 이스라엘의 최대주의에 대한 강한 반론도 텔아비브대학의 슬로모 산드와 이스라엘 핀켈쉬타인²³⁾ 같은 내부 학자가 제기하여 세계적 공감을

20) 중국의 내재적 의고 전통에 대해서는 심재훈, 「동아시아를 횡단한 의고의 계보와 학술사적 전망」, 5-10, 17-22, 28-31쪽 참조.

21) 최대주의와 최소주의 논쟁에 대해서는 유윤종, 「고대 이스라엘 역사 찾기와 고고학: 수정주의자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 (2004), 105-127쪽 참조.

22) 서양 학계의 의고와 신고 논쟁에 대해서는 심재훈, 『케임브리지 중국고대사』의 의고와 신고,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구미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 연구』(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1), 18-39쪽 참조.

얻고 있다.

결국 각각의 조건과 방식은 달랐어도 고대 문명을 계승한 강력한 학문 전통이 이어진 중국과 이스라엘이 근대적 학문에 대처해나가는 양상에는 차이점 이상으로 공통점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집트학과 메소포타미아학처럼 그 학문의 주체가 외부인일 때 대체로 순수학문적 경향이 두드러진다면, 내부인이 주체가 될 때 정치성이 가미된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해졌다. 의고와 최소주의를 전자에, 신고와 최대주의를 후자에 경도된 것으로 본다면 억측일까? 다만 자체 내의 학문 전통이 강했던 중국의 경우 서양 근대 학문의 충격을 수용하며 스스로 중국 문명의 서방전래설을 극복하고 의고의 전거 역시 내재적 전통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이러한 네 고대문명의 사례 모두에서 힌두뜨와 류의 사이비 역사학이 성행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이다. 실상 홀로코스트 이후의 신생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역사 고양의 필요성이 힌두 민족주의의 인도보다 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혹자는 앞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성경에 의존한 ‘최대주의’나 중국의 신고 연구 경향을 힌두뜨와 류와 비슷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둘을 등치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방의 지배 하에서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기억사로서, 복잡한 편집 과정을 거친 구약이라는 문헌²⁴⁾에 시대착오적 서술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상당하다고 해도,²⁵⁾ 구약에 설정된 그 기본 틀을 넘어서는 이야기는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최소한 사마천이 제시한 틀을 넘어 확장하기는 어렵다. 최대주의나 신고 경향 연구—혹은 최소주의나 의고 경향까지도—를 학술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일정한 선을 지킨 그 연구를 비판의 대상조차 될 수

23) 핀켈쉬타인이 제기한 이른바 ‘저연대’에 대한 반론은 강후구, 「이스라엘 핀켈쉬타인(Israel Finkelstein)의 ‘저연대(Low Chronology)’ 주장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구약논단』 65 (2017), 172-209쪽 참조.

24) 김구원, 「고대 근동 다신교의 문화 전략과 유일신교의 발달」, 83쪽.

25) John Van Seters, “Historiography in Ancient Israel,” in *The Oxford History of Historical Writing Volume 1*, ed. by Andrew Feldherr & Grant Hard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76.

없는 사이비 역사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힌두뜨와 이데올로기나 유대인의 시오니즘처럼 고대사의 고양이 절실한 정치적 상황은 사이비 역사학의 필요조건에 불과한 듯하다. 인도나 한국²⁶⁾처럼 사이비 역사가 횡횡하는 나라들 대부분에 고대의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헌 기록의 부재가 사이비 역사 완결의 충분 조건임을 보여준다.

III. 고대문명 형성의 정신적, 물질적 토대: 근동과 중국 비교

1. 다신교의 맥락에서 태동한 고대 근동의 유일신교²⁷⁾

본 공동연구를 기획하며 고심했던 부분은 김구원이 담당한 고대 근동의 종교 문제가 고대 문명의 물질적 측면에 대체로 치중한 전체 연구의 의제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이집트의 아텐과 이스라엘의 야훼라는 유일신교가 고대 근동의 다신교적 상황에서 태동하는 맥락을 요령 있게 분석한 이 연구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였음을 보여주며 여타 고대문명의 종교 연구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구원은 이 연구의 서두에서 “다신교와 유일신교를 이질적인 것으로 보고 유일신교의 계시적 혹은 초월적 기원을 추적하는 입장은 지양하고 고대 근동의 다신 종교들을 관통하는 이념적 교차선들을 추적함으로써 유일신 사상을 형성하는데 사용된 문화적 전략들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9쪽)고 명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신교 사회의 문화 전략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복합 도시 사회에 존재했던 특정 역할을

26) 한국의 사이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문영, 『유사역사학비판: 환단고기와 일그러진 고대사』(고양: 역사비평사, 2018) 참조.

27) 대체로 김구원, 「고대 근동 다신교의 문화 전략과 유일신교의 발달」을 토대로 한다.

지닌 위계화된 신들이 모셔진 만신전의 존재; 둘째, 영토 국가들 사이의 조약 시 항상 임재한 신성들의 번역 가능성(translatability); 셋째, 제국의 출현과 함께 신성들 사이의 번역 가능성이 확대되며 등장하는 포괄적 유일신교로서 최고신교(Henotheism); 넷째, 유목민들이 섬기는 배타성 없는 단일신교인 “조상들의 신” 개념.

이러한 다신교적 문화전략—특히 위의 세 번째까지—을 바탕으로 이집트 신왕국 제18왕조의 왕 아켄아텐(Akhenaten, B.C. 1352–1336)이 태양신 아텐이라는 추상적 존재를 배타적 유일신으로 추존한 종교가 출현했다. 왕이 경험한 영적 체험 같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영감이나 당시 최고신인 아문을 섬긴 사제들과의 대립 같은 정치사회적 요인들도 이 혁명적 변화에 기여했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일반 백성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아켄아텐의 종교 개혁을 특정 정치적 환경에 자극받은 신학적 돌연변이 정도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아텐보다 더욱 분명한 유일신교는 출애굽 아래 수백년에 걸쳐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다. 야훼 역시 아텐 유일신교와 비슷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네 번째까지 포함한 다신교 문화 전략 속에서 발전해나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망국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유일신 사상을 담은 신명기 등의 문서화(경전화), 다양한 지식인 집단의 협업 등이 야훼 신앙이 근동의 다신교 세계에서 특이하게 유일신교로 살아남아 오늘날까지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2. 고대문명 형성 연구의 기준 우룩 팽창 현상²⁸⁾

“문명의 조건”이라는 제목에서 암시되듯 박성진의 연구는 메소포타미아의 이른바 “우루 팽창” 현상을 분석하여 고대 문명 혹은 국가 연구의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한 한 인류 최초의 거대 도시 유적 중 하나인 우루만큼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는 드물다.

28) 대체로 박성진, 「문명의 조건: 제4천년기 서아시아의 우루 팽창 현상」을 토대로 한다.

대체로 기원전 제 4천년기에 우루 도시 국가가 번성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던 습지로 식량 자원이 풍부했다. 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루 등 초기 문명의 형성에 관개 농업을 중시한 견해는 재고되고 있다. 오히려 기원전 3500년 경 후기 우루 시대부터 시작된 건조화로 대규모 노동집약적 관개 농업이 실시되며 이때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문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목재나 석재, 금속 같은 자원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여건이 장거리 교역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루 팽창을 가능케 했다.

기예르모 알가쎄(Guillermo Algaze)는 우루 팽창의 토대인 기술 발전을 “수메르 도약”으로 명명했는데, 박성진은 그 핵심적 요소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2차 생산물 혁명”이라고 부르는 농업과 목축의 혁신으로 가축을 도살하지 않으면서도 유익한 생산물을 확보하는 우유와 양모, 당나귀나 소의 견인을 들고 있다. 여기에 점토낫 등 농기구의 혁신 까지 더해져 국가 주도의 대규모 농목 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 둘째, 공예와 건축의 발전이다. 수출용 모직물 생산과 함께 물레의 등장으로 대량 생산에 기초한 토기 제작 혁명이 일어났다. 장거리 교역을 통해 구리와 비소 합금 청동기가 생산되었고, 백색 신전(White Temple) 등 규격화된 벽돌을 사용한 거대한 기념비적 건축이 조성되었다. 셋째, 운송 수단으로 기원전 3400년 이후 바퀴가 출현하여 후기 우루 시대에 수레가 등장했다. 이후 낙타가 당나귀를 대체했고 남부의 항구를 통해 해상 운송도 발달했다. 넷째, 도시 공간의 위계화와 구조화로, 농촌과 도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었고, 도시 역시 주거지와 사원을 비롯한 공공 건축구로 나뉘었다. 그 규모 역시 점차 거대해졌음은 물론이다. 다섯째, 문자, 행정, 회계 시스템의 발전이다. 중기 우루 시대에 출현한 선쐐기문자의 85%가 행정 문서였고, 전문 필경사가 문서 보관까지 관리했으며, 상품의 보증용으로 원통형 인장도 대량 사용되었다. 여섯째, 예술과 종교 관습의 발전으로 후기 우루 시대에는 제도화된 사제가 출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우루 팽창은 서쪽으로는 레반트, 북쪽으로 튀르키예,

동남쪽으로 이란 서부에 이르기까지 멀게는 1천km 이상 떨어진 지역들에서 우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건축과 유물이 존재하는 도시들이 발굴되는 현상이다. 알가쎄는 이러한 팽창을 경제적 측면의 자원 공급을 위한 거점 확보, 즉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결과물로 보고 “우룩 세계체제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많은 반론 중 하나로 제시된 파스칼 뷔테르랭(Pascal Butterlin)의 “우룩 세계문화론”은 이러한 도시들을 우룩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식민도시, 교역 군사 거점, 우룩과 지역 문화 공존지, 약간의 교류만 나타나는 도시 등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대안 가설들은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접변과 혼종화, 사회적 모방 경쟁 등과 같은 개념을 강조하면서 우룩 문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명하고자 한다. 기원 전 3100~3000년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룩 시대가 종말되는 것과 함께 식민지나 거점들도 사라졌다.

3. 자생론과 이주론의 연장 인더스 문명 연구²⁹⁾

인더스 문명 연구의 몇 가지 논점에 대해서 앞장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김용준이 파악하는 그 핵심에는 자생론과 이주론을 둘러싼 논쟁이 자리한다. 초창기 인도 고고학을 이끌었던 존 마샬은 1931년 모헨조다로 발굴보고서 서문에서 유라시아 여러 대하(大河)문명의 독자적 기원론과 아울러 인더스대평원 도시문명의 독자성과 자생론을 설파했다. 마샬의 뒤를 이어 하립빠 고고학을 이끌어 간 모티머 휠러(Motimer Wheeler)는 1953년 소위 ‘수메르엘리트이주론’을 제기했다. 수메르의 엘리트가 세운 인더스의 청동기 도시 문명이 아리아인의 침략으로 붕괴되었고, 이들이 갠지스평원에 2차 도시화 시대를 열었다고 보았다.

결국 인도아대륙의 지역민은 조연에 머물렀음을 의미하는 휠러의 이주론으로 인해, 파키스탄과 인도 현지나 해외 고고학자들도 先하립빠와 초기하립빠, 즉 도시복합도시사회기 이전 유적 찾기에 치중했다. 인더스평원

29) 대체로 김용준, 「인더스문명 기원 연구: 인도아대륙 최초 도시복합사회 발전의 배경과 기원을 둘러싼 논쟁」을 토대로 한다.

에서 약 2000개 마을 유적을 발견하여 초기 하람빠 지역 문화권을 설정했다. 모헨조다로를 제외한 인더스 문명의 네 개 도시권, 즉 하람빠, 간웨리왈라(Ganeriwala), 라키가리(Rakhigarhi), 돌라비라(Dholavira)에서 先하람빠 이후 초기, 성숙기의 토착적 연속성을 발견했다. 모헨조다로만 한 세대 이내에 빠르게 건립되었을 가능성도 파악할 수 있었다.

토착설이 대체로 입증되는 듯하지만, 또 다른 일군의 학자들은 성숙기 하람빠로의 진입은 단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메르 도시복합사회의 교류, 즉 도시 엔지니어의 도움 없이 도달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는 일부 연구자는 이란 지역을 통해 중개된 메소포타미아-이란-인더스대평원의 국제교역망이 일찍부터 발달했을 것으로 본다. 메소포타미아와 초기하람빠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상관 관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자도 있다.

김용준은 이렇게 첨예한 가설이 지속적으로 대비되는 이유를 인더스 고고학 자료의 모순적 특징에서 찾고 있다. 한편으로 대형의 공공사업 없이 구축되기 어려운 이원적 구조를 가진 잘 정비된 도시 및 도량형의 통일 등은 국가 단계의 징표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혹은 종교적 지도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대형 건물이나 사원, 왕묘 등은 100년간의 고고학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 인더스 문명 형성 문제는 여전히 마샬과 훨러의 주장 속에서 논쟁 중인 듯하다.

4. 문명 연구의 새로운 허브 고대 중국³⁰⁾

근래 세계 고고학계에서 중국의 신석기 후기 즉 기원전 제 3천년기의 룽산(龍山)문화 시기에 출현한 복합사회 유적들만큼 관심을 끄는 사례는 드물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기원전 제 2천년기에 출현한 중원 지역의 얼리터우(二里頭) 유적에서 중국 최초의 국가나 문명을 상정하지만, 적

30) 대체로 김정열, 「좌절과 도약의 교차로: 중국 초기문명 설립의 길」을 토대로 한다.

지 않은 학자들은 그보다 500년 정도는 앞선 오르도스 일대의 스마오(石埠) 유적, 황하 중류의 타오쓰(陶寺) 유적, 양쯔강 중류의 스자허(石家河) 유적, 하류의 랑주(良渚) 등에서 이미 국가와 문명이 출현했다고 보기도 한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신석기 후기의 유적들은 그 규모 면에서 얼리터우에 필적하지만 얼리터우보다 200년 이상 일찍 붕괴되었다는 점이다. 얼리터우는 그 위치나 발전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앞선 대형 성곽 취락들로부터 “단절”되어 “신생”(新生)한 것이다.

김정열의 연구는 고대 중국의 문명화 과정에서 룽산문화기와 얼리터우 사이에 발생한 단절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룽산문화기 대형 성곽취락 유적과 얼리터우 유적이 문명화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자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까지 검토했다.

이를 위해 우선 최신 고고학 보고를 토대로 룽산 시기 네 유적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한다. 네 지역 모두 대형 성곽과 토대, 수리 시설 등을 갖춘 지역 행정 혹은 문명의 중심으로 위계적 취락 체계를 형성했다. 이들은 대체로 상당히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얼리터우 단계에는 보잘 것 없는 지역으로 전락한다. 그 붕괴의 원인으로 홍수 등 기후적 요인에 주목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내부 분열 등 인위적 측면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문명이 새롭게 태동한 얼리터우 지역은 앞서 대형 복합사회가 소멸된 지역과 달리 자연 환경이 유리했다. 김정열은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는 행위자로서 얼리터우 통치자들의 역할에도 주목한다. 이들은 혈연을 기반으로 구성된 복합 가족을 혈연적 원리에 따른 계층적 질서로 통합하는 일련의 제도를 구축하고, 일정한 규정성을 가지는 의례 질서에 통합했다. 나아가 위신재의 생산과 분배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등 보다 집약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확보망을 확립하기 위해 산시(陝西), 산시(山西), 후베이(湖北) 등 지역에 식민 거점을 건설했다. 강압적 수단으로 물자와 정보 교류 거점을 통제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얼리터우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녹송석이나 옥기, 청동기, 해폐(海貝) 등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었듯이, 얼리터우는 당시 유일한 중심으로서 룽산시대의 전통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욱 발전된 사회 구성

모델을 창안했을 것이다. 혈연집단의 집적에 기반을 둔 대형 취락, 통치계층의 직접적인 수공업 통제, 취락 중심부에 위치한 대규모 의례공간, 위세품의 생산과 분배를 통한 광역적 취락체계 구축과 유지 등에서 통산 시대의 전통이 드러난다고 본다. 여기에 얼리터우 통치계층의 전략과 실행이 더해져서 문명화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5. 비교 고찰: 우룩 팽창 현상으로 본 중국 고대문명

메소포타미아와 중국의 문명 형성 문제를 비교 검토하기 전에 김구원이 제시한 고대 근동의 다신교 전략을 중국 특히 상나라 후기(기원전 13-11세기) 종교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갑골문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희구 목적으로 점복이나 제사 대상이 된 다양한 신들이 나타난다. 다만 근동의 문헌 자료와 달리 짤막한 점복 기록인 갑골문에는 여러 신들의 존재만 드러날 뿐, 그 초점이 모호하고 일관성도 떨어진다.³¹⁾ 신들의 행위 맥락을 추정할 수 있는 네러티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나아가 상 왕국을 구성하는 사회가 다양한 족속을 포괄했을 텐데, 왕실의 점복 기록인 갑골문의 성격상 왕의 관심을 벗어난 신의 존재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그 논의가 아직 정교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느낌이다.

창위즈(常玉之)의 근래 연구에 따르면³²⁾ 제(帝) 혹은 상제(上帝)를 정점으로 사방신(四方神)과 그 예하의 우신(雨神), 풍신(風神), 운신(雲神), 일신(日神)의 삼단계 위계 질서를 갖춘 자연신 혹은 천신(天神) 계통이 주로 농업과 관련된 제사와 종교의 한 축을 이룬다. 제는 농사뿐만 아니라 성읍 건축, 전쟁의 승부, 상왕(商王)의 화복(禍福)등 “지고무상(至高無上)”의

31) Robert Eno, "Shang State Religion and the Pantheon of the Oracle Texts," John Lagerway and Marc Kalinowski ed, *Early Chinese Religion Part One: Shang through Han (1250 BC-220 AD)* Volume 1 (Leiden: Brill, 2009), p.102.

32) 이하 특기하지 않는 한 常玉之, 『商代宗教祭祀』(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535-562쪽 참조.

권능을 지니고 있었다.³³⁾ 또 다른 한 축이 더 빈번하고 융숭한 제사가 이루어진 상 왕실의 조상신 계통으로, 상 후기의 전반부에 천신 계통과 비슷하게 농업 등에 희구 대상이었지만, 후반부에는 1년의 주기에 짜맞춰진 이른바 주제(週祭)라는 보다 정교한 체계 속에 편입된다. 후기로 갈수록 신들의 체계 내에서 중국 학계에서 종법적 질서로 표현하는 신들 사이의 위계 질서가 강화된 것으로 본다. 또 다른 한 축으로 상족과 혈연 관계는 없지만, 이윤(伊尹)이나 이석(伊奭), 황윤(黃尹), 함무(咸戊) 등의 이른바 이성신(異姓神)에 대한 제사도 빈번하고 융성하게 진행되었다.

창위즈가 대체로 농업과 관련된 상 종교의 원시적 성격과 함께 말기에 야 종법성이 가미된 체계적 종교의 출현을 강조하듯, 김구원이 제시한 고대 근동의 다양한 다신교 문화 전략은 실제로 상 종교의 원초적 성격을 강화해줄 수 있다. 그럼에도 창위즈가 제를 정점으로 한 자연신(천신)의 삼단계 위계 질서나 조상신의 경중에 따른 서열을 상정하듯, 상의 종교 연구에서도 근동의 다신교 맥락에서 나타나는 역할에 따라 위계화된 만신전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³⁴⁾ 특히 상과 혈연적으로 무관한 이성 신들의 존재에서 상의 세력 확대에 따라 지역 신들이 상의 만신전에 추가되는 양상을, 원래 상족(商族)의 최고신이었던 제 역시 그 세력 확장 과정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강력한 최고신으로 변모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³⁵⁾ 주원(周原)에서 발견된 선주(先周)시대 갑골문에 나타나는 주족의 성당(成唐, 즉 湯)이나 대갑(大甲), 문무정(文武丁), 조을(祖乙) 등 상의 선왕(先王)에 대한 제사³⁶⁾도 김구원이 다신교 문화전략 중

33) 위 책, 26-61쪽.

34) Eno, "Shang State Religion and the Pantheon of the Oracle Texts," pp.54-81. 이노는 자신이 제시한 만신전(pantheon) 개념은 갑골 텍스트에 반영된 주요 신들의 명세를 의미할 뿐, 신화나 예술, 의식을 통해 그 역할이 어느 정도 고정된 이집트나 그리스의 신들을 포괄하는 만신전과는 다르다고 한다 (p.54의 각주 32).

35) 마크 루이스가 이미 그 가능성을 암시했다(Mark Edward Lewis, "Continuity and Change: The Archair States," Edward L. Shaughnessy ed, *China: Empire and Civi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2000], p.24).

36) 徐錫臺 編著, 『周原甲骨文綜述』(西安: 三秦出版社, 1987), 130-131쪽.

하나로 제시한 신들의 번역 가능성 확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상 멸망 이후 서주(西周) 시대에 제의 지위가 주족(周族)의 주신(主神)인 천(天)에 의해 대체되었을 가능성³⁷⁾은 김구원이 제시한 유일신까지는 아니라도 최고신의 교체 차원에서 어떻게 맥락화할 수 있을까? 억측에 가까운 필자의 의문일 수 있지만, 다양한 신에 대한 자료가 풍부한 고대 근동의 종교 연구가 고대 중국의 종교 이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인더스 문명의 다섯 도시가 붕괴되는 시점(기원전 1900년경)이 대체로 중국 룽산문화기의 도시 유적들이 붕괴되는 것과 비슷한 것도 흥미롭다. 붕괴 이유에 대해서 여러 설이 제기되어 있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연 재해설 역시 유력한 가설 중의 하나이다. 이 역시 좀더 깊이 비교 고찰해 볼 필요성이 충분해 보이지만, 인더스 문명이 사라지고 1천년 이상이 지나고야 2차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 인도와 달리, 중국의 열리터우 문명은 그 공백기가 200-300년 정도에 불과하다.

김정열은 룽산시대 후기의 네 도시 유적과 열리터우의 단절 및 연속성을 다룬 연구에서 그 글이 “중국이 언제 ‘문명’에 진입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³⁸⁾ 문명이나 국가의 정의 자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니, 특정 고고학 유적에 나타나는 현상을 일정한 기준으로 재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그가 검토한 중국 룽산시대의 스마오, 타오쓰, 스자허, 량주 유적에 대해 도시나 문명 혹은 국가 수준의 사회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콜린 렌프류는 량주에 주목하며 열리터우보다 1천년 이상 빠른 기원전 제 3천년 기의 그 유적이 규모 면에서 제 4천년기의 메소포타미아의 우루에 필적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량주에서 비록 문자가 사용되지 않았어도, 묘장에 나타난 세련된 옥기에 반영된 사회 서열이나 성의 토대 및 수리 시설과 같은 토목 공사 투입되었을 공공 노동력의 규모 등으로 판단컨대, 이미 수

37) 빈동철, 「고대 중국의 ‘天’은 ‘上帝’와 동일한 개념인가?」, 『공자학』 30 (2016), 5-45쪽.

38) 김정열, 「좌절과 도약의 교차로」, 140쪽.

장(chiefdom)사회를 넘어선 동아시아 최초의 국가였을 것으로 파악한다.³⁹⁾ 얼리터우에 관한 한 최소한 중국 학계 내에서는 거의 이견 없이 국가 단계로 수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얼리터우에 대해서조차도 서양 학계에서 기드온 셀라흐와 로더릭 캠프벨을 중심으로 더욱 신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⁰⁾ 이들은 얼리터우의 다음 단계이자 정저우상성(鄭州商城)으로 대표되는 얼리강(二里崗) 시기애야 스마오나 량주 등 룽산 시대의 유적보다 질적인 도약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결국 필자가 파악하는 중국 학계와 서양 학계를 나누는 논란의 핵심은 정치적 팽창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유적들의 상대적 규모와 함께 많은 학자들이 도약의 핵심 증거로 인정하는 청동 제작 기술 발전 양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는 듯하다.⁴¹⁾

필자 역시 김정열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의 경향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국가나 문명 단계의 진입 혹은 확정 여부가 연구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글이 초보적이나마 문명 간 비교에 주안점을 두는 만큼 박성진이 검토한 우록 팽창 현상과 김정열이 제시한 얼리터우의 확산에 대한 비교가 일정한 의미를 지니리라고 본다. 우록 유적이 메소포타미아의 최초 국가나 문명 단계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자는 없다.

따라서 박성진의 연구에서 제시된 우록의 고고학적 상황을 토대로 한 이른바 “수메르 도약”的 여섯 가지 핵심 요인을 얼리터우 유적의 양상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첫째, 농목축업의 혁신으로서 우록에서 두드러진 “2차 생산물 혁명”은 얼리터우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얼리터우

39) Colin Renfrew, Bin Liu, “The Emergence of Complex Society in China: the Case of Liangzhu,” *Antiquity* 92 364 (2018), p.977, 987-988.

40) Gideon Shelach-Lavi, *The Archaeology of Early China: From Prehistory to the Han Dynas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184-199; Roderick B. Campbell, *Archaeology of the Chinese Bronze Age: from Erlitou to Anyang* (Kindle Edition, 2014), 61-62; 심재훈, 「이리두 중국 고대국가 기원론의 딜레마」, 222-229쪽.

41) 심재훈, 「이리두 중국 고대국가 기원론의 딜레마」, 230쪽.

가 위치한 뤄양(洛陽) 평원이 목축과 무관한 지역임을 감안해야 한다. 얼리터우에서 농기구 증가에 따른 농업의 확장은 확인되지만, 우록에서처럼 기술적 도약이나 국가 주도의 대규모 농업 관리 체계 흔적을 찾기도 어렵다. 국가 주도의 관리 체계 문제는 얼리터우보다 앞선 타오쓰와 랑주 유적에서 이미 대형 곡물 저장갱이 발견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⁴²⁾ 둘째, 공예나 건축의 발전은 얼리터우에서도 대체로 토기의 확산이나 장거리 교역을 통해 재료를 확보했을 합금 청동기 제작, 대형 건축의 존재를 통해 확인된다. 셀라호가 얼리터우 건축물의 단순한 구조를 지적하며 얼리터우에서 우록의 백색 신전에 버금가는 복합적 기념비성 건축의 존재 여부를 부인하는 것과 달리, 얼리터우의 발굴책임자 쉬홍(許宏)은 1호와 2호 건축 모두 본당과 곁채, 정원, 문 등을 갖춘 중국 궁전 건축의 효시로 보았다.⁴³⁾ 셋째, 운송 수단으로서 바퀴와 수레가 얼리터우에서 발견된 적은 없다. 다만 얼리터우의 중앙 도로에서 바퀴 흔적은 나타난다. 얼리터우 보다 300-400년 앞선 인근의 평량타이(平糧臺) 유적에서도 선명한 쌍륜 바퀴 자국이 발견되었다.⁴⁴⁾ 넷째, 도시 공간의 위계화된 구조나 도시 사이의 위계는 얼리터우와 그 인근에서도 대체적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우록과 달리 얼리터우에서 행정이나 회계 시스템을 입증하는 문자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제도화된 사제의 출현 여부는 얼리터우의 자료로 입증하기 어렵다. 다만 얼리터우 중심 구역의 대형 건축물들 중 일부를 종묘, 즉 신전 류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 건축물을 주관한 신관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양 지역의 환경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단순 비교 검토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얼리터우의 고고학 상황은 우록의 발전 양상을 온전히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다섯 번째 문자 증거를 제외하면 우

42) 김정열, 「좌절과 도약의 교차로」, 149, 161쪽.

43) 許宏 저, 김용성 옮김, 『중국 고대 성시의 발생과 전개』 (과천: 진인진 2013), 112-113쪽.

44) 桂娟, 李文哲, 「河南淮陽發現中國最早的車轍」, 中國社會科學網 『中國考古』 2020년 1월 14일.

록과 확연한 차이가 나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김정열은 다른 한편으로 얼리터우에서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계층 질서가 일정한 의례에 통합됨을 기반으로, 국가가 위신재의 생산과 분배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등 보다 집약적 행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본다. 나아가 대체로 리우리(Li Liu)와 천성찬(陳星燦) 등의 견해를 수용하여⁴⁵⁾ 얼리터우 국가가 청동 원료 등 자원 확보망을 확립하기 위해 산시, 산시, 후베이 등 지역에 식민 거점을 건설했으리라 추정한다.

그렇지만, 우록 팽창을 입증하는 증거를 얼리터우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해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930년대 후반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우록-와르카 유적의 빌굴로 우록 문화가 알려진 이후, 1960년대 후반까지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니느베(Nineveh)와 텔브락(Tell Brak) 유적, 남동쪽으로 이란의 수시아나 지역의 수사(Susa) 유적, 유프라테스강 중류 시리아의 하부바카비라(Habuba Kabira)나 제벨아루다(Djebel Aruda) 유적, 유프라테스강 동안의 텔세이크 핫산(Tell Sheikh Hassan), 이란 서부 자그로스산맥 고원지대의 고딘테페(Godin Tepe) 유적 등에서 우록 양식의 사원과 거주 지역뿐만 아니라 토기를 비롯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들 지역은 토기나 건축뿐만 아니라 신화, 사회 질서, 회계(문자) 등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무려 1천 km에 달하는 지역들에서 우록과 똑 같은 구조의 건축 및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이들 지역을 모두 우록의 식민지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알가쎄가 1989년 “우록 세계체제론”을 제시했지만, 튀르키예 동남부의 아슬란테페(Arslantepe)처럼 우록의 요소와 함께 그 지역 토착 문화가 공존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2003년 뷔테르랭은 “우록 세계문화론”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⁴⁶⁾

얼리터우의 경우 국가가 위신재의 생산뿐만 아니라 분배 네트워크까지 독점했을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사실상 그 위신재의 핵심인 청동 그릇

45) 류리·천성찬 지음, 김정열 옮김, 『중국고고학: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323-324쪽.

46) 박성진, 「문명의 조건: 제4천년기 서아시아의 우록 팽창 현상」, 32-39쪽.

은 얼리터우 유적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셀라호는 중국학계에서 얼리터우의 식민지로 추정하는 지역들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물자와 정보 교류 거점을 장악하여 식민지화한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도 어려워, 그 교류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 얼리터우에서 괴범법(塊範法)을 활용한 청동 그릇의 제작이 시작되었어도, 그 수량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우록과 얼리터우의 정치적 문화적 확산에 대한 이러한 단순 비교의 이면에도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위험성이 내포된 이러한 비교 고찰로 중국 고대문명 형성에서 얼리터우의 핵심적 위치를 부각한 김정열의 논지가 약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우록 팽창에 관한 한, 얼리터우 소멸 이후 기원전 제2천년기 중후반, 즉 상 전기에 나타난 얼리강 팽창과 상통하는 면이 더 커 보인다.⁴⁷⁾ 리우리와 천싱찬 역시 사실상 얼리강 시기에 이르러서야 팽창(expans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⁴⁸⁾

IV. 나가며

고대문명 비교 연구는 지난한 작업이다. 필자는 공동연구로 작성된 논문 9편에 주로 의존하여 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역부족을 절감한다. 무수하게 널려 있는 관련 2차 연구들을 섭렵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설익은 이 시도가 문명 간 비교 연구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작은 계기라도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다섯 핵심 고대문명 연구사 정리를 바탕으로 각 문명

47) 이정우, 「二里崗 商 제국론의 허와 실」, 『中國古中世史研究』 65 (2022), 15-23 쪽.

48) Liu Li & Chen Xingcan, *The Archaeology of China: From the Late Paleographic to the Early Bronze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284-290.

이 처한 내외적 조건으로 인한 연구 경향의 차이가 발생했음을 강조했다. 필자의 아둔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내놓은 “순수학문”과 “민족주의의 극단,” “민족주의와 순수학문의 길항”이라는 세 유형은 그 자체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양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적 학문에서 대체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부각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를 순수학문으로 재단하기에는 작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 연구자들의 오리엔탈리즘적 정치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실증에 치중한 그 순수학문적 토대 없이 한국의 근대 인문학이 태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학이 거의 200년 동안 지속된 것과 달리 인도와 중국의 근대적 고대문명 연구의 역사는 100년에 불과하다. 두 근동 문명에서는 기원전 3000년 경부터 문헌들이 출현하여 1000년 정도까지 신화와 서사시, 법률 문서, 조약 문서, 역사 관련 문서, 찬양시, 교훈과 지혜 문학, 신탁과 예언, 연애시, 편지 등 다양한 문헌이 존재했다.⁴⁹⁾ 중국에서 『상서(尙書)』 같은 일정한 네러티브를 지닌 문헌이 빨라야 기원전 1000년 정도에 출현했으리라 추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글에서 김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았듯이, 네러티브가 결여된 갑골문에 의존하는 중국의 종교 연구에 풍부한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한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 연구가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필자가 우룩과 얼리터우의 사례를 통해 비교 검토한 고고학적 연구 역시 고대 근동의 자료를 토대로 한 앞선 연구가 인도나 중국 고대문명 연구에 유익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공동연구가 지닌 많은 허점을 십분 수용하면서도 이 연구가 비교 연구의 장점과 수월성을 예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이유다.

49) 제임스 B. 프리처드 편, 김구원 번역 책임감수, 『고대 근동 문학 선집』 (서울: CLC, 2016).

주제어

고대문명(ancient civilization), 연구사(historiography on ancient civilizations), 기원(origins), 비교(comparison)

<튜고: 2024년 11월 22일, 심사종료: 2024년 12월 09일, 계재확정: 2024년 12월 15일>

/Abstract/

Diverging Trajectories in the Origins of Ancient Civilizations and Their Historiography: A Preliminary Comparative Review

Shim, Jae-hoon

From 2022 to 2024, the author led 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titled “The Origins of Civilization: Its Research Journey and Reality.”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nine papers produced during the project, offering the author’s perspective while exploring the potential for comparative studies. The discussion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the historiography of civilization studies and the issue of origins.

The first section, on historiography, examines how research trends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who conducts the studi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author categorizes the trends as follows: research on Egypt and Mesopotamia is classified as “pure academic types,” relatively free from the political motivations of Western scholars who have traditionally led these studies. In contrast, the so-called “Hindutva” pseudo-history within the study of Indian civilization represents an “extreme nationalist” perspective, largely influenced by Hindu nationalists. For Israel and China, the research reveals a “tension between domestic nationalism and external pure academic approaches.” While these categories may be controversial, they reflect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that shaped each civilization’s engagement with modern Western academic methodologies.

The second section addresses the origins of civilizations. It suggests that the studies of polytheistic religions in the ancient Near East,

which benefit from relatively abundant textual records, could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ancient Chinese religions of the Shang period, which rely primarily on narrative-deficient oracle bone inscriptions. Furthermore, the study compares the urban-state formation and expansion of Mesopotamia's Uruk civilization with the Erlitou site in ancient China and its diffusion. Despite the risks of such comparisons—particularly those arising from disregarding regional environmental differences—the analysis reveals that, aside from the absence of a writing system, Erlitou meets several criteria for a state level society established through the study of Uruk archaeological materials. However, unlike Uruk, Erlitou lacks clear archaeological evidence for cultural and political expansion.

참고 문헌

1. 단행본

- 루돌프 파이퍼, 정기문 옮김, 『인문 정신의 역사: 서양은 어떻게 인문학을 부흥시켰는가』 (서울: 도서출판 길, 2011).
- 류리·천성찬, 김정열 옮김, 『중국고고학: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술로모 산드, 김승환 옮김, 『만들어진 유대인』 (고양: 사월의 책, 2022).
- 이문영, 『유사역사학비판: 환단고기와 일그러진 고대사』 (고양: 역사비평사, 2018).
- 이스라엘 평컬스타인·닐 애셔 실버먼, 오성환 역,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서울: 까치, 2002).
- 제임스 B. 프리처드, 김구원 번역 책임감수, 『고대 근동 문학 선집』 (서울: CLC, 2016).
- 許宏 저, 김용성 옮김, 『중국 고대 성시의 발생과 전개』 (파천: 진인진 2013).
- 常玉之, 『商代宗教祭祀』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 徐錫臺 編著, 『周原甲骨文綜述』 (西安: 三秦出版社, 1987).
- 吳銳, 『中國上古的帝繫構造』, (北京: 中華書局, 2015).
- 陳泳超, 『堯舜傳說研究』, (南京: 南京師範大學出版社, 2000).
- Liu Li & Chen Xingcan, *The Archaeology of China: From the Late Paleographic to the Early Bronze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Colla, Elliott, *Conflicted Antiquities: Egyptology, Egyptomania, Egyptian Modern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 Campbell, Roderick B., *Archaeology of the Chinese Bronze Age: from Erlitou to Anyang* (Kindle Edition, 2014).

2. 논문

- 강후구, 「이스라엘 핀켈슈타인(Israel Finkelstein)의 ‘저연대(Low Chronology)’ 주장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구약논단』 65 (2017), 172–209쪽.
- _____, 「이스라엘/팔레스틴 고고학 역사: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논쟁들」, 김구원 외, 『이집트에서 중국까지: 고대문명 연구의 다양한 층적』 (과천: 진인진, 2024), 150–223쪽.
- 김구원, 「나일강을 따라 천마일: 이집트학의 발전과 과제」, 김구원 외, 『이집트에서 중국까지』 (과천: 진인진, 2024), 14–113쪽.
- _____, 「고대 근동 다신교의 문화 전략과 유일신교의 발달: 아텐과 야훼를 중심으로」, 『崇實史學』 52 (2024), 58–114쪽.
- 김아리, 「200년 고대 근동 연구사, 세 변의 거대한 변화」, 김구원 외, 『이집트에서 중국까지』 (과천: 진인진, 2024), 114–148쪽.
- 김용준, 「인더스문명 기원 연구: 인도아대륙 최초 도시복합사회 발전의 배경과 기원을 둘러싼 논쟁」, 『崇實史學』 52 (2024), 116–137쪽.
- 김정열, 「좌절과 도약의 교차로: 중국 초기문명 설립의 길」, 『崇實史學』 52 (2024), 139–203쪽.
- 박성진, 「문명의 조건: 제4천년기 서아시아의 우루 팽창 현상」, 『崇實史學』 52 (2024), 5–56쪽.
- 빈동철, 「고대 중국의 ‘天’은 ‘上帝’와 동일한 개념인가?」, 『공자학』 30 (2016), 5–45쪽.
- 심재훈, 「周代를 읽는 다른 방법: 자료와 체계의 양면성」, 『中國古中世史研究』 26, (2006), 219–263쪽.
- _____, 「二里頭 중국 고대국가 기원론의 딜레마」, 『歷史學報』 245 (2020), 207–236쪽..
- _____, 「『케임브리지 중국고대사』의 의고와 신고」,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구미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1), 18–39쪽.
- _____, 「동아시아를 횡단한 의고의 계보와 학술사적 전망」, 『東洋史學研

- 究』 161 (2022), 1-45쪽.
- _____, 「중국 고대문명 연구 100년: 전통과 현대 학문의 충돌 및 재편」, 김구원 외, 『이집트에서 중국까지』 (과천: 진인진, 2024), 276-373쪽.
- _____, 「좋은 역사가가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을까」, 『서울리뷰오브북스』 14 (2024), 68-85쪽.
- 유윤종, 「고대 이스라엘 역사 찾기와 고고학: 수정주의자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 (2004), 105-127쪽.
- 이광수, 「인더스문명과 갠지스문명의 정체에 관한 논쟁: 힌두뜨와 (Hindutva) 역사 서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김구원 외, 『이집트에서 중국까지』 (과천: 진인진, 2024), 234-274쪽.
- 이정우, 「二里崗 商 제국론의 허와 실」, 『中國古中世史研究』 65 (2022), 1-41쪽.
- 巫鴻, 「答貝格利對拙作《中國早期藝術和建築中的紀念性》的評論」, 『中國學術』 2 (2000), 262-285쪽.
- Bagley, Robert, "Review of Wu Hung's *Monumentality in Early Chinese Art and Architectur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58.1 (1998), pp.221-256.
- Eno, Robert, "Shang State Religion and the Pantheon of the Oracle Texts," John Lagerway and Marc Kalinowski ed, *Early Chinese Religion Part One: Shang through Han (1250 BC-220 AD)* Volume 1 (Leiden: Brill, 2009), pp.42-102.
- Lewis, Mark Edward, "Continuity and Change: The Archair States," Edward L. Shaughnessy ed, *China: Empire and Civi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2000), pp.24-42.
- Renfrew, Colin and Bin Liu, "The Emergence of Complex Society in China: the Case of Liangzhu," *Antiquity* 92 364 (2018), pp.975-990.

3. 기사

桂娟, 李文哲, 「河南淮陽發現中國最早的車轍」, 中國社會科學網『中國考古』
2020년 1월 14일.

聖王 堯舜의 연구사 궤적: 역사의 경계에서 문화적 기억까지*

이정우**

I. 머리말	V. 변화하는 聖人: 국내 학계의 聖人 활용 양상 연구
II. 堯舜의 탈역사화와 재역사화	VI. 역사의 경계 넓히기: 『史記』『五帝本紀』 연구 동향
III. “백가쟁명식 논의”: 堯舜 관련 문현의 成書 연대 문제	VII. 맷음말: 종합적 검토와 전망
IV. 사실보다는 만들어진 기억: 문화적 기 억 이론의 적용	

초록

전근대 동아시아 문현에서 聖王은 통치의 모델로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堯와 舜이다. 이들의 역사성 문제는 근대 이래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통 시대에 堯舜은 역사 속 성왕으로 인지되었지만, 20세기 초반 疑古 학풍의 영향으로, 오늘날에는 堯舜이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화와 역사의 경계선에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서구·일본·국내 학계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堯舜을 신화·전설 혹은 문화적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堯舜을 포함한 고대 문현에 나타난 聖人の 활용 양상을 분석해 그 함의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20세기 중·후반 출토 문현 연구 성과에 힘입어 堯舜의 역사적 실재를 입증하려는 움직임이 중국 학계 일각을 중심으로 확산하였다. 堯舜 禪讓을 부족사회의 관습이 투영된 것이라고 보는 연구도 있었다. 『史記』『五帝本紀』의 연구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2000년대 들어 「오제본기」 연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며, 고고학 자료와 문현 자료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논

* 본고는 필자의 학위논문 [이정우, 『사기』『오제본기』에 나타난 요순 고사의 활용 양상,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의 1장에 기초한 것임을 알려둔다.

** 단국대학교 사학과 석사 졸업, jwleemr@dankook.ac.kr

문은 堯舜 서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堯舜 서사의 연대 논쟁 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堯舜과 고대 중국의 聖人 고사에 대한 분석은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개별 문헌에 분절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고학적 증거의 부족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역사적 실존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또 堯舜이 언급되는 문헌의 成書 연대에 대한 논쟁은 先秦 시대 堯舜 서사의 시대적 변화를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문헌 전통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堯舜 및 聖王 전통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I. 머리말

유교 국가를 표방한 조선의 왕조실록에 孔子와 朱熹보다도 빈번하게 인용되는 인물들이 있다. 바로 전설상의 성왕으로 꼽히는 堯와 舜이다.¹⁾ 이들의 신하로서 治水에 큰 공을 세워 禪讓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禹까지 포함해, 堯舜禹로 범칭 되는 세 성왕에 대한 언급은 동아시아 고전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舜이 가장 많이 보이는 듯하다.²⁾ 이처

1) 『조선왕조실록』에서 舜은 실록에서 2,132번, 堯는 1,771번 언급된다. 이들에 대한 언급량은 조선 시대 활동한 대다수의 개별 군주와 신하를 능가하며, 중국사의 실존 인물인 孔子(1,558번)와 朱熹(1,133번)보다도 훨씬 많다. 양자가 언급되는 횟수를 합치고, 堯舜이 동시에 언급되는 교집합을 빼도 신하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는 宋時烈(2,701번)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 堯舜 관련 내용은 군주가 본받아야 할 규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2024년 4월 27일 접속. 人名에 舜이나 堯가 들어가는 사례를 속아내기 위해 원문 검색 결과 중 우측의 ‘결과 내 인물’ 검색 필터를 활용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堯舜이 자주 언급된 점은, 조선에서 이들이 통치의 이상적 모델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2) 2023년 8월 기준, 전근대 중국·한국 고전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인 동양고전종합db에서 舜을 찾으면 총 6,197건이 검색된다. 한편 堯는 총 5,286건, 禹는 5,308건으로 舜보다는 언급이 다소 적다. 번역문과譯註 등을 제외하고, 데이터의 범위를 고전 ‘원문/대역문’으로 한정해도 舜은 2,600건, 堯와 禹는 각각 2,181건과 2,324건으로 나와, 여전히 舜이 세 성왕 가운데 수위로 꼽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2023년 11월 8일 접속. 이는 舜이 孝로 이름을 알렸던 초기 생애부터 堯의 주목을 받아 천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의 고사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Ctext)에서 “先秦兩漢” 시기의 전래문헌으로 시대를 좁혀 堯舜禹를 검색할 경우, 舜은 1,782건, 堯는 1,639건, 禹는 1,811건이 확인된다. 禹의 비중이 미세하게 높아 보이지만, 『漢書』 등의 텍스트에 郭禹나 趙禹처럼 이름에禹가 들어가는 인물이 출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 禹는 堯舜보다 훨씬 긴 전승사(史)를 자랑하는 인물임에도, 주류 이념이자 經典 텍스트가 많은 儒家로 검색 옵션을 국한하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儒家로 분류되는 텍스트에서, 舜은 713건(先秦兩漢 전래문헌의 언급 중 儒家 비중 약 40.0%), 堯는 659건(40.2%)인데 반해, 禹는 424건(23.4%)으로 그 출현 빈도와 전체 언급 중 儒家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다(Ctext의 검색 결과는 문헌 원문과 일부 현대 중국어 대역문 포함). <https://ctext.org/> 2023년 8월 9일 접속.

럼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聖王은 이상적인 통치자 혹은 인간의 모델로서 중요시되었다. 聖王에 대한 담론을 추적하는 것은 이상적인 정치, 이상적인 인간상에 관한 논의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聖王을 언급하는 문헌 전통은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先秦 시대 과거에 대한 묘사는, 마크 루이스에 따르면, 當代의 지식인이 현재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과거의 사례를 원용하여, 현재에 실천해야 할 것들의 인가를 촉구하거나, 후인들이 본받을 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에 가까웠다.³⁾ 堯舜의 시대는 그러한 모델에 근접한,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시기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춘추전국시대부터 清末 民初에 이르기까지 堯舜으로 대표되는 聖王 정치의 이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을 포함한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인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명한 인물을 천거하여 禪讓하였던 堯舜 시대의 비전은, 堯舜을 원용하여 정권을 잡거나 통치를 확립하려는 중국의 신흥·세습 권력 모두에게 양날의 검이었다. 현대까지도 堯舜은 전통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과거 관념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중국의 전통 왕조가 몰락하는 상황 속에서, 漢代 이후 편집되어 오늘날까지 전래 되어 온 문헌(이하 전래문헌)에 기록된 역사상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堯舜의 역사적 실재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요순 선양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래 땅속에 묻혀 있던 전국시대의 죽간 문헌(이하 출토 문헌)이 발견되고 관련 연구 성과가 출간됨에 따라, 기존의 문헌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堯舜 선양 고사에 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현대 중국에서는 堯舜과 그들의 사적을 다시금 역사의 경계 안으로 진입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3) 고대 중국의 과거 쓰기에 대해서는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著, 최정섭 譯,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서울: 미토, 2006), 210~306쪽, 특히 210쪽. 이외에 Vincent S. Leung, *The Politics of the Past in Early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pp.20~101. 사학사적 접근에 대해서는 稲葉一郎, 2006, 『中國史學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3~199쪽.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설불리 堯舜을 역사화하는 것은, 그동안 이루어 졌던 실증적인 중국 고대사 연구의 의의를 평가 절하하고 전근대적 역사관으로 돌아가는 시도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堯舜의 실존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의 대신, 堯舜과 고대 중국의 聖王에 대한 중국, 일본 및 서구 학계의 연구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과거를 둘러싼 역사 인식의 다양성과 堯舜이라는 전근대의 문헌 전통이 현대 중국 학계에 남긴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중국에서 고대사 연구가 갖는 무게를 짐작하고자 한다.

古聖王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는 20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고대 중국에 관한 학술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의제이며, 본 연구가 진행된 배경 및 방향 설정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⁴⁾ 크게 고대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堯舜 고사의 연구 동향과 『史記』「五帝本紀」의 연구사로 구분하여 개괄하고자 한다.

II. 堯舜의 탈역사화와 재역사화

1. 탈역사적 관점에서의 堯舜 연구

중국 문헌에 나타나는 堯舜을 비롯한 상고시대 聖王에 관한 연구는 古史의 辨偽에 치중한 民國 시대 『古史辨』과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의 대표 격인 顧頽剛은 후에 『古史辨』「自序」에 수록된 「錢玄同 선생과 古代 史書를 논함」이라는 글에서 “累層적으로 만들어진 古史 造成說”을 제기하여 요순을 포함한 聖王의 역사성에 의문을 제기하였

4) 「오제본기」나 堯舜 고사를 다룬 여타 주요 논저에서도, 사료의 분석을 전후하여 20세기 이래 최근까지 堯舜 고사를 둘러싼 논쟁을 학술사적으로 개괄하고 있다. 예시로 郭永秉, 『帝系新研: 楚地出土戰國文獻中的傳說時代古帝王系統研究』(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8), 1~42쪽; 甘陽 主編, 李學勤 著, 『史記 五帝本紀講稿』(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2012), 48~64쪽; 藤田勝久, 『史記の再發見』(東京: 波古書院, 2023), 54~58쪽.

다. 시대가 내려갈수록 전설 속 고대사의 기간이 점차 길어져, 禹는 西周 시대에, 堯舜은 春秋 말기에 학자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이다.⁵⁾ 이는 清代 고증학자인 崔述(1740-1816)의 고대사 변증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⁶⁾

이에 따라 전근대 지식인들이 역사로 인식하였던 堯舜은 근대 이후 역사의 경계 바깥, 즉 신화 내지는 전설 속 인물로 인식되어 있다. 중국에서 이러한 학풍을 오늘날까지도 이어받은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陳泳超는 『堯舜傳說研究』에서 전설상의 존재로 堯舜이 후대 문헌과 민간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설의 지리적 분포까지 분석했다.⁷⁾ 서구에서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는 신화학적 관점에서 堯舜 전설을 고찰, 『孟子』와 『山海經』 등 전래문헌의 신화적 내용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⁸⁾ 국내에서도 중국신화학의 관점에서 堯舜 고사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⁹⁾ 그러나 마이클 푸엣(Michael Puett)은 중국 신화의 원형을 재구성하려는 중국신화학 일각의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창조의 양면성(The Ambivalence of Creation)』에서, 先秦 문헌에서 漢代에 이르기까지 黃帝 고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袁珂의 『中國古代神話』¹⁰⁾에 대한 비

5) 고힐강 著, 김병준 譯, 『고사변 자서』 (파주: 소명출판, 2006), 95-103쪽, 221-223쪽.

6) 崔述과 고대 문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형성에 관해서는 심재훈, 「동아시아를 횡단한 의고의 계보와 학술사적 전망」, 『東洋史學研究』 161 (2022), 17-22쪽 참조.

7) 陳泳超, 『堯舜傳說研究』 (南京: 南京師範大學出版社, 2000), 25-26쪽.

8) Mark Edward Lewis, "The Mythology of Early China," John Lagerwey & Marc Kalinowski ed, *Early Chinese Religion Part One: Shang through Han* (1250 BC-220 AD) (Leiden: Brill, 2009), pp.542-594. Mark Edward Lewis, *The Flood Myths of Early Chin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pp.33-38.

9) 이유진, 『中國神話의 歷史化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장현근, 「고대 중국신화의 변천과 정치화」, 『정치사상연구』 10 (2004). 정찬학, 「五帝神話의 形成과 漢代의 受容樣相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정진선, 『중국신화의 변용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선정규, 「중국 정치신화의 기능과 유형」, 『中語中文學』 53 (2012).

10) 袁珂, 『中國古代神話』 (北京: 商務印書館, 1960). 한국어 번역: 위엔커 著, 전인초·김선자 譯, 『중국신화전설』 (서울: 민음사, 1999).

판에서, 신화적 원형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내러티브를 원래 인용된 문헌의 맥락에서 분리해 다른 ‘신화적’ 문헌들과 엮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가 지닌 함의를 잘못 읽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¹¹⁾ 따라서 고대 신화를 재구성하려 하기보다는, 신화적 인물과 관련된 개별 내러티브의 저자가 어떤 사상적 맥락에서 그 내러티브를 선택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문헌 속 黃帝의 업적으로 여겨지는 국가 건설이나 제도 도입에 관한 서술이, 그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신화의 편린을 반영하기보다, 중앙집권 국가의 출현에 대한 지식인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서사라고 주장하였다. 즉, 전국시대에 새로운 제도와 국가 형태가 출현하고 있었고, 그러한 제도와 국가를 정당화하려는 동기에서 黃帝 설화를 위시한 문헌들이 창출되었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고대 중국에는 ‘신화(myth)’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先秦 지식인들은 堯舜을 역사로 인식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先秦 문헌에서도 堯舜이 신적인 존재보다 인간 군주(人王)로 묘사되며, 堯舜 고사의 신화적 원형을 명확히 입증해주는 고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화학적 접근을 모든 堯舜 고사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서구 학계에서는 『선양과 세습』¹²⁾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사라 알란(Sarah Allan)이 『묻혀버린 사상들(Buried Ideas)』을 발표, 堯舜 선양이 등장하는 전국시대 출토 문헌인 『唐虞之道』, 『子羔』, 『容成氏』, 그리고 『保訓』 네 편을 역주하였고, 전국시대 지식인들이 세습 귀족층의 관심사와 대비되는 실력주의와 대중주의 이념을 강조하고자 堯舜 선양을 다루었다고 일괄했다.¹³⁾ 또 漢 武帝 이후 『春秋』 학자들에 의한 堯舜 고사

11) Michael Puett, *The Ambivalence of Creation: Debates Concerning Innovation and Artifice in Earl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p.92-101, 특히 p.98.

12) Sarah Allan, *The Heir and the Sage: Dynastic Legend in Early China* (Taipei: Chinese Materials Center, 1981). 한국어 번역은 사라 알란 著, 오만종譯, 『선양과 세습』(서울: 예문서원, 2009). 그러나 해당 연구는 과거 구조주의 이론에 따라 聖王 고사를 분석한 연구로써, 오늘날 학계에서 통용되는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 재구성 양상에 관한 연구,¹⁴⁾ 『論語』와 『尙書』 및 관련 출토자료(예를 들어 『窮達以時』, 『鬼神之名』, 그리고 『保訓』)의 문헌학적 분석 과정에서 堯舜 고사에 접근한 연구들,¹⁵⁾ 舜과 오이디푸스를 비교한 연구도 있다.¹⁶⁾

일본 학계에서는 고힐강의 등장 이전에 이미 堯舜禹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20세기 초반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요순우의 역사적 실존을 사실상 부정하였으며,¹⁷⁾ 이를 일본 한학자들이 요순우 말살론이라 비판하면서 논쟁이 전개되었다. 시라토리는 『尙書』에 보이는 요순우의 사적은 天地人 三才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후대 중국인의 기본 도덕과 유교적 이상에 기초해 창작된 전설로 보았다. 그의 견해는 당시 비판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요순우를 실존 인물이자 숭배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실존 여부가 불확실한 인물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⁸⁾

한편 고힐강과 시라토리의 견해와 유사한 관점은 나이토 고난(内藤湖南)의 『支那上古史』에서도 확인된다.¹⁹⁾ 그는 에도 시대의 불교학자 토미나가 나카모토(富永仲基, 1715–1746)가 佛典에서 발견한 “加上”的 원칙을

- 13) Sarah Allan, *Buried Ideas: Legends of Abdication and Ideal Government in Early Chinese Bamboo-Slip Manuscript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5), pp.315–327.
- 14) Gopal Sukhu, “Yao, Shun, and Prefiguration: The Origins and Ideology of the Han Imperial Genealogy,” *Early China* 30 (2005), pp.91–153.
- 15) Michael Hunter & Martin Kern, *Confucius and the Analects Revisited: New Perspectives on Composition, Dating, and Authorship* (Leiden: Brill, 2018), 특히 『窮達以時』, 『鬼神之名』의 舜 고사와 관련해서는 pp.126–132. Dirk Meyer, *Documentation and Argument in Early China: The Shàngshū 尚書 (Venerated Documents) and the Shū Traditions* (Berlin, Boston: De Gruyter Mouton, 2021), 특히 『保訓』의 舜 고사와 관련해서는 pp.120–157.
- 16) Whalen Lai, “Unmasking the Filial Sage-King Shun: Oedipus at Anyang,” *History of Religions* 35 (1995), pp.163–184.
- 17) 해당 주장은 『白鳥庫吉全集』 第8卷 (東京: 岩波書店, 1970)에 수록되었다. 381–391쪽 참조.
- 18) 藤田勝久, 앞의 책 (2023), 54–58쪽; 심재훈, 앞의 논문 (2022), 1–45쪽.
- 19) 内藤湖南 著, 夏應元 編譯, 『中國史通論』 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18–28쪽. 원저: 湖南(虎次郎), 『支那上古史』 (東京: 弘文堂書房, 1944).

응용, 중국 문헌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를 묘사한 전설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으며,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대를 묘사한 전설이 오히려 더 오래전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盤古의 개벽 전설은 비교적 최근 시대(魏晉南北朝)에 만들어진 것이고, 三皇五帝 전설은 漢代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五帝說이 원래 지방 신에 대한 전설에 오행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며, 그 위에 三皇說이 덧붙여짐(즉 加上됨)으로써 五帝는 실제 인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보았다.²⁰⁾

최근까지도 일본 학계에서는 堯舜 고사를 전설, 신화, 또는 설화로 인식되고 있다. 稲葉一郎은 史學史적 관점에서 전국시대 사람들의 과거 인식을 고찰하였다.²¹⁾ 草野友子는 출토 문헌의 故事와 教訓書를 연구한 논저를 발표하였다.²²⁾ 湯淺邦弘은 2012년 출간된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제9권에 포함된 초간 문헌 중 하나인 『舉治王天下』를 중심으로 전래문헌과 출토 문헌에 나타난 堯舜禹 전설을 개괄하였다.²³⁾ 쿠니히로는 해당 문헌에서 순이 아닌 우가 요와 직접적인 문답을 주고받는 사이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舜은 뚜렷한 업적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 문헌에서 堯·禹보다 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尚書』「堯典」에서 舜의 업적이 강조되는 것을 간과한 면이 적지 않다.

2. 재역사화적 관점에서의 堯舜 연구

그렇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최근까지 집중적으로 발굴된 楚簡 자료는, 堯舜 전설과 관련하여 기존 문헌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고,²⁴⁾ 堯舜을

20) 藤田勝久, 앞의 책 (2023), 56–58쪽.

21) 稲葉一郎, 『中國史學史の研究』(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27–103쪽.

22) 草野友子, 『中國新出土文獻の思想史的研究——故事・教訓書を中心として——』(東京: 汲古書院, 2022), 11–80쪽, 399–473쪽.

23) 湯淺邦弘, 「上博楚簡《舉治王天下》의 堯舜禹傳說」, 『簡帛』 9 (2014), 113–128쪽.

24) 楚簡 출토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이승율, 「서장: 간백 연구 서설」, 『죽간, 목간, 백서 고대 간백자료의 세계 1』 (2013), 19–52쪽; 김석진, 『역사 문서에서 역사 책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다시금 역사의 경계 안으로 진입시키려는 움직임을 촉발했다. 그 결과, 최근 중국 학계의 상당수 연구자는 堯舜을 20세기 초 논파되었던 전설과 구별되는 역사 속 군주로 보며, 그 역사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출토 문현을 인식하고 있다. “疑古 시대를 벗어나자”라는 李學勤의 구호성 책 제목이 信古로의 연구 경향 변화를 대변한다.²⁵⁾

李學勤을 비롯해 전래 문현과 고고학 유적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학술 경향은 일찍이 王國維의 주장에서 기원한다. 왕국유는 1925년 ‘古史新證’이라는 강의에서 考古 유물(“地下”의 증거)과 문현자료(“紙上”의 증거)를 결합해 고사를 논증하는 ‘二重證據法’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上古 시대의 사건은 전설과 사실이 뒤섞여 있음을 강조하며, 전설에는 역사적 사실의 “素地”가 다분하였다고 보았다.²⁶⁾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중국 학계에서 선사(史前) 시대의 고고학적 증거와 문현 자료를 결합해 연구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 고고학계에서도 이에 부응하듯, ‘堯舜 시대’를 실제 역사적 시대로 인식하고, 고고학 유적과 연계시키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²⁷⁾ 2008년, 郭永秉은 楚簡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帝系新研』을 발표하였다.²⁸⁾ 이 저작은 전설 시대 고대 제왕 계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는 堯舜 선양 전설이 상고시대 실존했던 君長推選制의 역사적 흔적이라고 주장하며, 夏·商·周에 앞선 虞라는 나라가 실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²⁹⁾

25) 李學勤, 『走出疑古時代』(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7). 한국어 번역: 李學勤著, 이유표譯, 『의고 시대를 걸어 나오며』(서울: 글항아리, 2019).

26) 甘陽 主編, 李學勤著, 앞의 책 (2012), 57쪽. 王國維, 『古史新證: 王國維最後的講義(清華文叢之五)』(北京: 商務印書館, 1994), 1~3쪽.

27) 唐睿, 『帝舜圖像敘事及其地方化建構』,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22). 柴春椿, 『舜帝傳說與信仰研究』, 山西大學 博士學位論文 (2021). 馬興, 『堯舜時代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이외에 「五帝本紀」와 관련이 깊은 연구는 후술.

28) 郭永秉, 『帝系新研: 楚地出土戰國文獻中的傳說時代古帝王系統研究』(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8).

29) 郭永秉, 위의 책, 43~78쪽. 군장추선제는 학자들에 의해 “君位推選制”, “王位選

현재 중국 학계에는 堯舜 관련 연구와 이들이 언급된 문헌에 관한 연구가 풍부하다.³⁰⁾ 그 가운데 2020년대 출간된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22년 5월 발표된 帝舜 관련 이미지와 민간 전설의 지방화 과정을 추적한 논문,³¹⁾ 2021년 출토 문헌, 고문자학, 민속학, 그리고 고증학 등 학제 간 연구 방법을 사용해 舜帝 전설의 변화 과정에 접근한 논문이 있다.³²⁾ 두 논

擧制”, 그리고 “酋長選舉制” 등으로 불리며, 구체적인 해석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郭永秉은 선비족의 大人과 小師가 세습 받지 않고 선거로 뽑혔다는 역사서의 기록을 참고하여, 堯舜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락 연맹의 군장 또는 부족의 지도자가 추천을 통해 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군장은 혈연에 의해 계승되는 대신, 새롭게 推選된 인물에게 군장의 자리를 물려주었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현재 발굴된 신석기 후기 고고학 자료와 전국시대 출토 문헌 사이의 시간적 단절을 고려할 때, 무리한 추측으로 여겨진다. 다만 주후 전국시대 이민족에게도 君長推選制가 존재했다는 근거가 발견된다면, 이러한 관행이 중원과의 교류를 통해 禪讓 학설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듯하다. 『論語』『八佾』의 “夷狄之有君” 章처럼 夷狄과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비교하거나, 『史記』『秦本紀』에 등장하는 由余와 같이 이민족의 정치를 통해 중원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전국시대 군장추선제의 존재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향후 연구와 자료 발굴을 대비한 가설적 추측에 머물러 있다.

30) 1915년부터 2019년까지 CNKI를 토대로 堯舜과 관련된 기존 중국 학술계의 동향 분석은 심재훈, 「『산서통지』에 나타난 요순우를 기억하는 공간」, 『역사학보』 249 (2021), 219쪽. 2020년 이후 堯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CNKI 학술자료는 3건, 舜의 이름으로 검색될 수 있는 CNKI 학술자료는 약 20건에 달한다. 堯의 경우, 『莊子』의 帝堯 전승, 堯와 禮樂 문명 등의 연관 관계를 추적한 논문이 활용된다. 舜의 경우, 인·지명에 들어간 두세 건의 예외를 제외하면 舜과 음악, 舜의 경작 고사, 舜 관련 행사에 대한 年鑒 및 정기 간행물이나 학위논문, 관련 행사 보고 등이 확인된다. 帝舜으로 재차 검색해보면, 10여 건 남짓이 검색되는데,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博士 2건,碩士 2건으로 모두 별개의 인물이 작성함), 정기 간행물, 신문 보도 등이 확인된다. 관련 학위논문은 帝舜의 전승이나 지역 국가(예를 들어 舜을 선조로 삼았던 제후국) 및 지역 문화에 남은 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대개 舜의 역사성을 부각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CNKI. <https://www.cnki.net/index/> 2023년 9월 27일 접속.

31) 해당 논문은 帝舜을 전설적인 색채가 가득한 인물로 간주하면서도, “중화 민족의 도덕적 선조”이자 “용산 시대 후기에 해당”한다며 帝舜의 실재에 대해 양면적이면서도 역사성을 긍정하는 듯한 견해를 밝히었다. 唐睿, 『帝舜圖像敘事及其地方化建構』,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22).

문 모두 고사에 나타난 전설상의 舜과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역사상의 舜을 구별하고, 후자의 실재를 입증할 가능성은 모색한 듯하다.

또 선사고고학 유적인 陶寺를, 『帝王世紀』와 『郡國志』에 요의 도읍지 (堯都)로 비정된 平陽과 결부 짓는 시각도 이미 중국 학계에 널리 퍼져 있다.³²⁾ 그러나 商周 이전 신석기 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출토 문자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先史의 고고학 성과와 堯舜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시각은, 앞서 말했듯 다소 설득력이 있는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종합해 보았을 때, 최근 중국 학계 연구의 상당수는 堯舜을 신석기 후기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련 고고학적 성과, 사회 발전 단계, 禪讓의 역사적 의의, 관련 지명 고증, 그리고 전래·출토 문헌에 나타난 堯舜의 思想 등을 다루고 있다.

III. “백가쟁명식” 논의 : 堯舜 관련 문헌의 成書 연대 문제

문헌에 나타난 堯舜을 ‘믿을 수 있는 역사(信史)’의 경계 안으로 끌어오려는 중국 학계 일각의 경향 속에서도, 그러한 논의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상사적으로 堯舜을 다룬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전제가 되는 출토 문헌의 成書 연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先秦 문헌에 나타난 堯舜의 시대적 충차에 관해 통합된 견해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심재훈은 堯舜 서사의 경전으로 인식되어 온 『尚書』 『堯典』의 成書 연대 논쟁에 대해, 일찍이 “백가쟁명식” 논의가 난무한다고 지적

32) 柴春椿, 『舜帝傳說與信仰研究』, 山西大學 博士學位論文 (2021).

33) 王震中, 「陶寺與堯都:中國早期國家的典型」, 『南方文物』 3 (2015), 83–98等; 何鷺·高江濤, 「薪火相傳探堯都——陶寺遺址發掘與研究四十年歷史述略」, 『南方文物』 4 (2018), 26–40等.

한 바 있다.³⁴⁾ 다만 『唐虞之道』, 『容成氏』, 『子羔』등 출토 문헌의 경우, 성서 연대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전국시대 중기와 후기로 압축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 학계에서는 先秦 儒家의 선양 관념을 다룬 연구,³⁵⁾ 堯舜을 포함한 古帝 고사의 변천,³⁶⁾ 그리고 전래문헌을 중심으로 『尚書』에서 『漢書』까지 舜 임금의 이미지 변천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³⁷⁾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 학계에서도 유리 피네스(Yuri Pines)는 전래문헌 및 출토 문헌을 토대로 전국시대 선양 학설의 흥망성쇠를 논하는 연구를 다수 발표하였다.³⁸⁾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국시대 문헌의 成書 연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³⁹⁾ 연나라 선양 사건 이전으로 출토 문헌이 형성되었을 것이라 보지만, 이는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⁴⁰⁾ 『孟子』 「公孫丑」와 「萬章」편에서도 보듯, 연나라의

34) 심재훈, 「『산서통지』에 나타난 요순우를 기억하는 공간」, 『역사학보』 249 (2021), 224쪽.

35) 夏世華, 『先秦儒家禪讓觀念研究』, 武漢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36) 孔祥來, 『先秦文献中的“古帝”傳說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37) 張丹, 『先秦秦漢舜帝形象演變研究』, 湘潭大學 博士學位論文 (2017).

38) Yuri Pines, "Disputers of Abdication: Zhanguo Egalitarianism and the Sovereign's Power." *T'oung Pao* 91 (2005), pp.243 - 300.

39) 일례로 張丹이 舜 고사의 변천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고증대를 형성하는 문헌으로 인식한 「堯典」의 경우, 成書 연대를 둘러싸고 商周 시대 저작설부터 秦·漢 대 저작설까지 백가쟁명식 견해가 존재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재훈(2021)은 「堯典」의 성서 연대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清 중기까지 대다수 학자는 「堯典」을 夏代 사관의 저작으로 보았다. 19세기 들어 劉逢祿과 魏源, 王先謙 등이 周代의 저작으로 추정했고, 20세기 초 王國維도 周 初의 저작으로 간주했다. 일본에서 疑古 학풍을 주도한 白鳥庫吉은 1912년 강연에서 「堯典」을 춘추 시대 공자 이전의 저작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顧頽剛은 1923년 秦漢시대 만들어졌다는 학설을 제기했다. 陳夢家와 蔣善國, 劉起釤도 顧頽剛을 따라 秦漢시대의 요소가 상당히 유입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堯典」의 원 저작연대는 춘추 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양학계의 견해를 대변하는 에드워드 쇼너시(Edward L. Shaughnessy)는 춘추 후기보다 빠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信古 경향을 반영하듯, 西周 중기나 그 이상 商代까지 소급하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앞의 논문 (2021), 224쪽.

40) 출토 문헌의 成書 연대의 경우, 夏世華는 선양 관련 출토 문헌(『唐虞之道』, 『子羔』, 그리고 『容成氏』의 성서 연대를 연나라의 선양 사건 이전으로 보는 裴

선양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선양 학설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고고학적 증거나 정황이 아닌, 연나라의 선양 사건 실패만을 근거로 전국시대 출토 문헌의 상한을 끌어올리는 것은 선부르다고 할 수 있다.

서구 학계에서는 마르틴 케른(Martin Kern)이 先秦 문헌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던 『尚書』 「堯典」의 成書 연대를 고찰하였다. 그는 해당 문헌의 요순 고사가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當代의 이념적 요구에 따라 구성된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의 기초적 서사(foundational narrative)”라고 보았다.⁴¹⁾ 나아가 그는 堯의 고사를 중심적으로 다룬 「堯典」이 베버(Weber)식의 카리스마적(charismatic) 권위에 기반한 전국시대의 군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한편, 古文 『尚書』에서 「舜典」으로 불리며 순의 고사를 집중적으로 다룬 「요전」의 후반부는 관료제가 자리 잡던 전한시대의 군주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에드워드 L. 쇼너시(Edward L. Shaughnessy)는 케른이 군주권과 신권 사이의 긴장이 이미 秦漢 이전의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화두였음을 간과했다고 보았다.⁴²⁾ 전국시대 출토 문헌인 『容成氏』에서도, 舜이 여러 장관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료 임용과 관련된 서술만으로 그것을 秦漢 시기 관념의 투영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錫圭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여, 여타 전국 후기 문헌들보다 앞선 텍스트들로 보고 있다. 앞의 논문 (2009), 158–159쪽. 裴錫圭, 『中國出土文獻十講』(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8), 20쪽. 유리 피네스도 연나라의 선양 사건 이후 선양에 대한 정치적 호소력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본다. Yuri Pines, *op. cit*, pp.76–82.

41) Martin Kern, “Language and the Ideology of Kingship in the ‘Canon of Yao,’” Martin Kern and Dirk Meyer ed, *Origins of Chinese Political Philosophy: Studies in the Composition and Thought of the Shangshu (Classic of Documents)* (Leiden: Brill, 2017). pp.23–61.

42) Edward Shaughnessy, “Book review, *Origins of Chinese Political Philosophy: Studies in the Composition and Thought of the Shangshu (Classic of Documents)*, edited by Martin Kern and Dirk Meyer. Leiden and Boston: Brill, 2017,” 饒宗頤國學院院刊 第五期 (2018). p.420.

한편 李承律은 郭店楚簡『唐虞之道』의 堯舜 선양 고사를 다른 문헌에 나타나는 선양설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⁴³⁾ 『唐虞之道』의 成書 연대를 연나라의 선양 사건 이전, 전국 중기로 보는 중국 학계의 견해와 달리, 『唐虞之道』가 전국 후기荀子의 제자들에 의해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⁴⁴⁾ 이외에도 堯舜이 언급되는 『子羔』, 『容成氏』와 제자백가 문헌에 관한 다수의 사상사 논문을 발표하였다.⁴⁵⁾

IV. 사실보다는 만들어진 기억: 문화적 기억 이론의 적용

전술한 케른이 「堯典」의 성격과 관련하여 언급한 문화적 기억이란, 한

43) 李承律, 『郭店楚簡儒教の研究——儒系三篇を中心にして——』(東京: 汲古書院, 2007).

44) 이승율, 「郭店楚簡『唐虞之道』의 ‘尊賢’思想과 先秦儒國의 尚賢論」, 『東洋史學研究』 78 (2002), 52-86쪽. 해당 연구에서 이승율은 『唐虞之道』의 尚賢論이 전국 후기 이후荀子의 상현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儒家 일파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尹在碩은 郭店楚簡이 발굴된 묘장의 조성 연대를 기원전 4세기 중엽에서 3세기 초로 보거나, 묘장의 주인공을 기원전 325년~320년경에 매장된 사람으로 추정한 연구, 그리고 郭店楚簡의 성서 연대를 기원전 302년 이전으로 추정한 연구 등을 참조하여, 『唐虞之道』의 상현론이荀子(윤재석은 기원전 313~238년 생존으로 추정)의 후학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尹在碩, 「中國古代(先秦·秦漢)」, 『역사학보』 183 (2004), 211-226쪽.

45) 李承律, 「郭店楚簡『唐虞之道』譯注」, 『郭店楚の思想史的研究』 1 (1999), 52-104쪽; 李承律, 「郭店楚簡『唐虞之道』의 謙遜思想 研究(I) - 道家 및 儒家の 謙遜思想과의 比較考察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28 (2002), 235-263쪽; 李承律, 「郭店楚簡『唐虞之道』に見える「愛親」と「孝」思想の特質」, 『한국철학논집』 11 (2002), 255-299쪽; 李承律, 「앞의 논문」 (2002). 李承律, 「上海博楚簡『容成氏』의 堯舜禹禪讓의 歷史」, 『中國研究集刊』 26 (2004), 197-225쪽; 李承律,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容成氏』譯注(上)」, 『出土文獻と秦楚文化 2』 (2005), 27-218쪽; 李承律, 「楚簡子羔의 感生說과 二重의 受命論」, 『中國出土資料研究』 11 (2007), 中國出土資料學會; 李承律, 「공자의 공치 철학과 다섯 가지 프레임」, 『중국학보』 76 (2016), 431-457쪽; 李承律, 「맹자의 공치 철학: 양심·전문성·문화권력·독립성·혁명성, 그리고 차등애」,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5 (2016), 1-33쪽.

사회의 지배 엘리트에 의해 공고화되고 전승된 집단 기억을 의미한다. 이는 얀 아스만(Jan Assmann)에 의해 고대사 연구에 적용되었다. 문화적 기억은 먼 과거로 소급하여, 집단의 보편적 정당성을 찾고자 하므로 신학적 양상을 띤다. 그리고 시대나 상황에 따라 재편할 수 있는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⁴⁶⁾ 이러한 기억은 자연적 기억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인공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기에 “문화적(cultural)”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문화적 기억은 사실적 역사가 아닌 ‘기억된 역사’이다.⁴⁷⁾ 이 기억은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특정 집단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기에 선택적이다. 따라서 수많은 대안적 혹은 대항적 기억을 제압하는 권력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기억은 사회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바뀔 때만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⁴⁸⁾

중국 고대사 연구에서도 문화적 기억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케른은 「堯典」연구에 앞서, 청동기 명문과 『詩』·『書』를 고대 중국의 문화적 기억으로 이해하였다.⁴⁹⁾ 이후 그는 『楚辭』 등 고대 중국의 역사적 서사 연구에도 이를 적용하였으며,⁵⁰⁾ 문헌에 나타난 屈原을 漢代의 역사관이 투영된

46)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휴머니스트』(2005), 47-53쪽, 85-90쪽; 김학이, 「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서양사 연구』 33 (2005), 230-244쪽.

47) Jan Assman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9, 37-38.

48) 김학이, 앞의 논문 (2005), 235-244쪽. 이는 집단 기억(Mémoire collective)에 대한 모리스 알브박스(Maurice Halbwachs)의 정의와 일치하지만, 김학이는 이를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 실제로 아스만은 자신의 저서 1부(이론적 기반)의 첫 장에서 모리스 알브박스의 이론을 충실히 요약하고 있다. Jan Assmann, *op. cit.* pp.21-34.

49) Martin Kern, “Bronze inscriptions, the Shijing and the Shangshu: the evolution of the ancestral sacrifice during the Western Zhou,” John Lagerwey & Marc Kalinowski ed, *Early Chinese Religion Part One: Shang through Han (1250 BC–220 AD)* (Leiden: Brill, 2009), pp.143-200.

50) Martin Kern, “Cultural Memory and the Epic in Early Chinese Literature: The Case of Qu Yuan 屈原 and the Lisao 離騷,”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and Culture* 9 (2022).

인물로 이해하였다. 마리아 카유티나(Maria Khayutina) 또한 문화적 기억의 관점에서 西周 왕조의 창건적 과거에 대한 기억이 왕조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간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라고 보았다.⁵¹⁾

렌스 키히스만(Rens Krijgsman)은 문화적 기억 이론을 활용하여, 堯舜 고사가 포함된 清華簡 『保訓』을 분석하였다. 그는 『保訓』이 전국시대의 문화적 기억과 상호 작용하며 새로운 이념을 전국시대의 문화적 기억에 포괄시켰다고 보았다.⁵²⁾ 또한 키히스만은 문헌학적 연구인 『고대 중국 죽간 문헌 선집(Early Chinese Manuscript Collections)』에서, 『窮達以時』, 『鬼神之明』, 그리고 『容成氏』 등에 나타난 전국시대 사람들의 과거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는 “과거를 식민화하기(Colonizing the Past)”라는 부제를 통해, 전국시대 사상가들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이데올로기적 관심사를 충족하기 위해,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상고시대에 대한 설명을 식민지처럼 개척하고 정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⁵³⁾ 그리고 戰國時代에 이르러 堯舜禹와 같은 고대 중국의 문화적 기억을 구성하던 인물들은 전기적 세부 사항과 복잡성을 얻어, 새로운 이념적 목적에 복무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이는 西周 시대에 개별 씨족의 중심인물에 대한 기억에서 공유된 문화적 기억을 구성하는 인물로 과거의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⁵⁴⁾

심재훈은 記憶史적 관점에서 堯舜禹를 검토하기 위한 시도로 일련의 연구 성과들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대 중국의 문화적 기억 속 인물인 堯

51) Maria Khayutina, 2021, “The Beginning of Cultural Memory Production in China and the Memory Policy of the Zhou Royal House During the Western Zhou Period,” *Early China* 44, pp.19–108.

52) 키히스만이 활용한 문화적 기억에 대한 정의는 Rens Krijgsman, 2023, *op. cit.*, pp.63–65, 2017, “Cultural Memory and Excavated Anecdotes in ‘Documentary’Narrative: Mediating Generic Tensions in the Baoxun Manuscript” in Paul Van Els and Sarah A. Queen ed., *Between History and Philosophy: Anecdotes in Early China*, (Leiden: Brill, 2017).

53) Rens Krijgsman, *Early Chinese Manuscript Collections* (Leiden: Brill, 2023), pp.63–98.

54) Rens Krijgsman, 2023, *op. cit.*, p.70.

舜禹가 『史記』 「五帝本紀」 등 문헌에서 역사화 되고, 그것이 유동적으로 재편되며 祠廟 등의 유적으로 창출되는 과정, 그리고 疑古를 통한 성찰과 信古라는 반전을 거쳐 脫역사화·再역사화 되는 과정을 검토했다.⁵⁵⁾ 또한 아시리아학자인 레오 오픈하임(A. Leo Oppenheim)이 제기한 “전통의 물줄기(Stream of tradition)”에 주목하여, 堯舜 고사를 포함한 고대 중국 문헌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전통의 물줄기”란 기원전 제1천년기 전후 근동과 그리스에서 규범적이고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헌들이 대거 출현한 양상을 의미한다.⁵⁶⁾ 유기적인 흐름인 이 물줄기는 늘어나거나 줄어들며 변화무쌍한 조합으로 개정되거나 선집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 중 일부는 더 많이 傳寫되고 인용되면서 규범적이고 정체성을 형성하는(formative) 고전으로 등극하였다. 즉 어느 순간 “전통의 물줄기”가 댐으로 막혀 호수로 변하면서, 이전의 여러 갈래 문헌들이 “經(正)典化(canonization)”라는 마감 과정으로 수렴되었다는 것이다. 한 자 한 획도 바꾸지 못하는 경전은 시대의 추이에 따른 해석(주석) 전통을 낳았다.⁵⁷⁾

심재훈은 중국 역시 이러한 경전화의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국시대의 출토 문헌을 대표하는 楚簡 단계는 기존의 제자백가서들과 함께 다양한 문헌의 복본이 터진 “전통의 물줄기”에 상응한다. 역사류 문헌 역시 商代 갑골문의 記事刻辭로 시작해서 西周 金文의 사건 기록, 記言類와 記事類 문헌 등을 거쳐 『繫年』이라는 역사류 문헌이 탄생했고,⁵⁸⁾ 『左傳』, 『國語』 등을 거쳐 漢 代에 경전의 마감 과정과 함께 역사학

55) 심재훈, 「전설과 역사 사이: 山西省의 堯舜禹」, 『歷史學報』 241 (2019), 243-289쪽; 심재훈, 앞의 논문 (2021) 217-253쪽; 심재훈, 앞의 논문 (2022), 1-45쪽; 심재훈, 앞의 논문 (2023), 149-201쪽.

56) A. Leo Oppenheim,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pp.11-14. 심재훈, 앞의 논문 (2022), 35-36쪽.

57) Jan Assmann, *op. cit.*, pp.76-81. 심재훈, 앞의 논문 (2022), 36쪽.

58) 김석진, 『역사 문서에서 역사 책으로: 清華簡 『繫年』의 역주와 성격 고찰』,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22-163쪽; 김석진, 「戰國 楚簡 『繫年』의 史學 史적 성격: 先秦 출토·전래 역사류 기록의 문헌학적 고찰을 통해」, 『東洋史學研

의 경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史記』로 완성되었다고 본다.⁵⁹⁾

다만 현재까지 상기한 고대 중국의 문화적 기억으로서 堯舜을 설명하는 시도들은 아직까지 試論에 가까운 듯하다. 시대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제도화된 기억이라는 문화적 기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국시대 堯舜 고사가 각 학파의 집단 기억 속에서 전승됐을 가능성은 제시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문화적 기억의 단계에 편입되었음을 단정짓거나 구명하기는 어렵다. 기억 이론의 연역적 적용에 앞서, 堯舜 관련 개별 문현들에 대한 귀납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 변화하는 聖人: 국내 학계의 聖人 활용 양상 연구

한편, 국내 학계에서는 堯舜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문현에 나타나는 聖人 이미지의 활용 및 변용 양상을 분석한 논저들을 주목할 수 있다. 일찍이 김진우도 2020년대 들어 국내 중국고대사 학계에서 古聖王 연구가 주목을 받는 추세라고 개괄한 바 있다.⁶⁰⁾

김민호는 동아시아 문현에 나타난 伯夷·叔弟의 이미지 변용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원래 忠節과 무관했던 백이와 숙제가 司馬遷에 의해 충절의 상징으로 변모하는 과정 등을 고찰했다.⁶¹⁾ 이유표는 西周 金文에 나타나는 周公 사적을 검토하여,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섭정으로서, 반란을 진압하고 주나라의 기틀을 다진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로서 주공의 이미

究』 161 (2022), pp.47-153; 심재훈, 위의 논문 (2022), p.36.

59) 심재훈, 위의 논문 (2022), pp.36-38.

60) 김진우, 「새로운 자료, 새로운 방법론, 중국고대사 연구의 진전 - 2020~2021년 연구 동향과 과제 -」, 『역사학보』 255 (2022), 176-181쪽; 원용준, 「중국 고대 신화 자료의 유교적 전개 - 上博楚簡 자고(子羔)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03 (2020), 95-126쪽; 윤대식, 「순자 속 성인에서 성왕으로 - 통치와 자치의 경계 짓기 -」, 『태동고전연구』 44 (2020), 259-287쪽; 윤무학, 「목 가의 辭說에 반영된 聖王과 詩書」, 『동양철학연구』 108 (2021), 203-241쪽.

61) 김민호, 『충절의 아이콘 백이와 숙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

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했다.⁶²⁾ 이승율은 周公의 이미지 정립 과정을 고찰하였다. 즉 고대 중국에는 ‘有德者로서의 주공’과 ‘예악 제정자로서의 주공’이 있었으며, 王莽 아래 후자의 이미지가 대두해 ‘두 얼굴의 주공’으로 정착되었다고 보았다.⁶³⁾

백영선은 우발성(contingency)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舜의 즉위 고사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窮達以時』, 『孟子』, 『荀子』, 그리고 『唐虞之道』를 우연성·필연성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개별 문헌의 관점에 따라 순임금의 즉위에 대한 이들의 해석이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⁶⁴⁾ 또 『尚書』의 聖王에게서 나타나는 겸손의 태도를 분석하였다.⁶⁵⁾ 성시훈은 禹가 儒家의 성현으로 변모해 성왕의 계보에 편입되는 양상을 추적하고자, 西周 금문과 先秦 유가 계통 문헌에 나타나는 禹의 양상을 비교 검토했다.⁶⁶⁾ 나아가 西周 아래 청동기 금문에 나타난 禹를 문왕·무왕 중심의 西周 세계관과 구별되는 非周 계통 세계관의 아이콘으로 개괄하였다.

김석진은 堯舜 고사를 포함하는 출토 문헌 『保訓』을 역주하고 그 문헌사적 성격을 논하였다.⁶⁷⁾ 이외에도 전국시대 선양설에 관한 연구,⁶⁸⁾ 전국시대 巡狩 설화에 관한 연구,⁶⁹⁾ 제자백가의 역사관/성인관에 관한 연구

62) 이유표, 「西周 금문에 보이는 ‘周公’ 사적」, 『중국고중세사연구』 65 (2022), 43–82쪽.

63) 이승률, 「두 얼굴의 주공」, 『동양고전연구』 75 (2019), 31–64쪽.

64) Youngseon Back, “Revealing Contingency Through Shun’s 舜 Ascension to the Throne,” *Early China* 43 (2020), pp.61–92.

65) 백영선, 「『상서』의 성왕들 – 긴장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자-」, 『철학』 149 (2021), 1–29쪽.

66) 성시훈, 「유교적 성왕(聖王)으로 변용되는 세계의 개척자 –禹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4 (2021), 7–38쪽. 이외에도 禹와 관련된 청동기 명문에 관한 연구는 김정열, 「하늘이 禹에게 명하여 — 새로 발견된 빙공수의 내용과 그 자료적 의의 —」, 『중국고중세사연구』 20 (2008), 287–324쪽.

67) 金錫珍, 「清華戰國簡『保訓』편의 연대와 성격」, 『동양사학연구』 116 (2011), 1–74쪽.

68) 김용천, 「전국시대 禪讓論의 전개와 立賢共治」, 『태동고전연구』 38 (2017), 117–155쪽; 장현근, 「방벌(放伐)과 선양(禪讓)의 이중주」, 『한국정치학회보』 46(1) (2012), 5–24쪽.

69) 이성구, 「전국시대의 순수설화」, 『동양사학연구』 129, 1–55쪽.

가 존재한다.⁷⁰⁾ 黃帝와 嵩尤 전승 및 근대 中華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된 黃帝에 대한 논저,⁷¹⁾ 『史記』「周本記」의 文王에 대한 기록과 西周金文 및 先秦 시기 전래문헌파의 관련성을 검토한 논문⁷²⁾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대 중국에 나타난 聖人 이미지가 끊임없이 저작집단의 정치적, 철학적, 문화적 수요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해 온 과정을 추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聖人 이미지에 대한 고찰이 개별 문헌이나 소수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漢代 이후 經學史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점한 문헌(특히 『尚書』『堯典』)에 대해서는 아직 출토 문헌과 최근 연구 성과를 망라한 종합적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는 연구 성과의 누적에 따라 앞으로 점차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I. 역사의 경계 넓히기: 『史記』「五帝本紀」 연구 동향

갑골문에 상응하는 고고학 자료와 문헌자료의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제본기」와 신석기 후기 고고학 발굴을 연결 짓는 시도는 전술한 堯舜의 “재역사화” 흐름과 함께 대두되고 있다.

70) 강정인·김태환, 「성인(聖人)에 관한 『한비자(韓非子)』의 중충적 언술 검토」, 『한국정치학회보』(2017) 51.2, 221-239쪽; 이연정, 「선진시대 도통의식 검토 - 순자의 도통의식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6 (2021), 141-160쪽; 황수임·윤무학, 「한비의 역사관-諸家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5 (2016), 33-67쪽.

71) 빈미정, 「황제신화전설에 대한 문헌적 고찰」, 『중국문학』 44 (2005), 1-20쪽; 김종미, 「중국문헌(中國文獻)에 나타나는 "치우(蚩尤)"의 이중형상(1) - 제국(帝國)의 희생양, 치우(蚩尤)의 악마형상 -」, 『중국어문학지』 35 (2007), 205-231쪽; 김선자,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 신화』, (서울: 책세상, 2007); 이성구, 「黃帝傳承의 재검토」, 『中國學報』 62 (2010), 241-272쪽.

72) 우근태, 「周文王考—西周期 金文에 나타난 文王受命의 神聖化를 중심으로—」, 『동서인문』 24 (2024), 9-51쪽.

이는 顧頡剛 아래 疑古 사조의 영향 및 “走出疑古”를 강조한 최근 중국 학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0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 일본, 대만의 『史記』 연구를 망라한 華文出版社의 『史記研究集成』 논문 색인에서 「오제본기」 관련 연구는 약 30여 건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학위 논문은 석사 1건에 그쳤다.⁷³⁾ 후술하겠지만 이는 근 20년 사이에 中華文明探源工程 등의 영향으로 급증한 「오제본기」 연구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그렇지만 출토 문헌 연구 성과에 힘입어 중국 학계에서는 21세기 초 「오제본기」와 관련 문헌 자료들을 신석기 후기 고대사의 반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11월, 河南省 鄭州市에서는 “文明起源과 五帝時代－고고학과 역사의 정합성에 대한 학술 토론회”가 中國社會科學院 古代文明研究中心, 河南博物院,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에 의해 공동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고대문명의 기원과 형성에 관한 연구 및 그 방법이 검토되었으며, 夏商周 이전 ‘五帝 시대’에 관한 탐색과 인식, 고고학 성과와의 정합성 확보를 중요한 검토 과제로 삼았다. 이는 신화와 전설로 불리던 ‘五帝 시대’를 고고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화하려는 시도였다.⁷⁴⁾ 이는 중화문명탐원공정의 추진 속, 중국 학계에서 「오제본기」 연구의 전환을 시사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최근 중국 학계의 상고사 연구 경향을 대표 하였던 李學勤은 2007년 중국의 인문·사회 분야 석학으로 구성된 연례 포럼 中國文化論壇에서 “근대 이후 아무도 「오제본기」를 전문적으로 강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존의 『史記』와 중국 고대사 연구에서 「오제본기」가 상대적으로 소외당하여 월음을 암시했다. 또한, “중국 正史 첫 번째 문헌의 첫 번째 편”인 『史記』「오제본기」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기원전 3000년부터 2070년까지를 ‘五帝 시대’

73) 楊樟華·鄧瑞全 主編, 『史記研究集成』 14冊, (北京: 華文出版社, 2005), 291–527 節 참조.

74) 吉田篤志, 「五帝時代は史實か : 神話の歴史化に對する疑問」, 『大東文化大學漢學會誌』 (2007), 56쪽.

로 정의하고, 「오제본기」의 기록을 중국 초기 국가 형태의 모습을 증언하는 문헌으로 소개했다.⁷⁵⁾

李學勤이 “五帝 시대 연구의 가장 체계적인 성과”⁷⁶⁾로 소개한 許順湛의 『五帝時代研究』 역시, 五帝 시대를 실제 역사적 시대로 인식하고, 고고학과 문헌자료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五帝 시대를 전설 시대로 보는 연구는 “전설 연구이지 역사 연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黃帝 시대의 문헌 기록에 관련해서는 “전설·신화의 외피를 벗기고 역사의 내핵을 추출해야 하며,” “전설과 신화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역사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⁷⁷⁾

현재 중국의 학술자료 제공 사이트인 CNKI에서 『사기』 「오제본기」와 관련해 2024년 3월 현재 열람할 수 있는 논문은 210여 종이 넘는다. 그 가운데 「오제본기」를 주제로 근 20년 이내에 발표된 학위논문은 7종(석사 6, 박사 1)이다.⁷⁸⁾ 학술지 논문의 경우, 인용 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주제가 확인된다: 「오제본기」 속 黃帝의 歷史像에 대한 연구,⁷⁹⁾ 역사적 시대로서 ‘五帝 시대’에 대한 논의,⁸⁰⁾ 상고 제왕들의 거주지에 관한 연구,⁸¹⁾ 국가 기원론에 관한 연구,⁸²⁾ 중국 전통 도덕 문화나 관

75) 甘陽 主編, 李學勤 著, 앞의 책 (2012), 3-64쪽.

76) 甘陽 主編, 李學勤 著, 앞의 책 (2012), 64쪽.

77) 許順湛, 『五帝時代研究』,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5), 496쪽.

78) 孫錫芳, 『《史記·五帝本紀》可信性研究』,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趙文娜, 『司馬遷《五帝本紀》研究』, 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潘葦杭, 『先秦兩漢堯文化探源』,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葉慶兵, 『《史記·五帝本紀》系列人物神化史化考論』,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劉曉曉, 『《史記·五帝本紀》引《尚書·堯典》異文研究』, 西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甄英軍, 『關於“降居”“辨秩”與“五帝”——《史記·五帝本紀》的研究』,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蔡亞璋, 『《史記·五帝本紀》敘事研究』, 遼寧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79) 李憑, 「黃帝歷史形象的塑造」, 『中國社會科學』 3, (2012), 149-201쪽; 許兆昌·楊龍, 「《史記·五帝本紀》中黃帝形象的知識考古」, 『史學集刊』 5, (2012), 5-12쪽.

80) 李先登·楊英, 「論五帝時代」, 『天津師大學報(社會科學版)』 6, (1999), 35-45쪽; 陳贊, 「絕地天通與中國政教結構的開端」, 『江蘇社會科學』 4, (2010), 16-23쪽.

81) 溫玉春·曲惠敏, 「少昊·高陽·高辛·陶唐·有虞諸氏族原居今山東考」, 『管子學刊』 4 (1997), 89-93쪽.

념의 기원에 관한 연구,⁸³⁾ 『史記』의 取才와 다른 문헌과의 비교,⁸⁴⁾ 역사적 발전과정의 반영으로서 五帝의 계보에 관한 연구,⁸⁵⁾ 사마천이 채택한 五帝說에 대한 연구,⁸⁶⁾ 「오제본기」에 나타난 天命觀에 대한 연구,⁸⁷⁾ “大統一”的 기원을 黃帝로 소급하려는 연구,⁸⁸⁾ 『史記』의 首篇으로서 「오제본기」가 갖는 의의,⁸⁹⁾ 西漢 문화사에서 「오제본기」가 갖는 의의,⁹⁰⁾ 「오제본기」에 나타난 음양오행설에 관한 연구,⁹¹⁾ 사마천의 신화·역사관 연구,⁹²⁾ 舜의 葬地에 관한 연구⁹³⁾ 등이다. 인용 지수와 무관하게 2020년대에 출간

-
- 82) 蕭功秦, 「華夏國家起源新論——從“猴山結構”到中央集權國家」, 『文史哲』 5, (2016), 5-22쪽; 張榮明, 「中國上古國家的產生及特徵」, 『史學月刊』 2, (2001), 12-15쪽.
- 83) 翟滿桂·蔡自新, 「舜文化是中華民族道德文化之源」, 『湖南社會科學』 1, (2002), 93-95쪽; 孔祥安, 「中國傳統忠觀念的起源再探」, 『齊魯學刊』 4, (2016), 23-29쪽.
- 84) 張大可, 「論史記取材」, 『社會科學』 5 (1983), 67-72쪽; 吳澤順, 「《史記》引書異文釋例」, 『古籍整理研究學刊』 4 (1993), 24-27쪽; 錢宗武, 「《史記》引《書》虛詞修辭」, 『古漢語研究』 4 (1989), 73-78쪽; 李霖, 「從《五帝本紀》取裁看太史公之述作」, 『文史』 1 (2020) 87-100쪽; 尚恒元·莉惠萍, 「帝堯其人——兼探《史記》帝堯史料源流」, 『運城高等專科學校學報』 4 (2000), 24-28쪽.
- 85) 孫錫芳, 「《史記·五帝本紀》五帝譜系合理性探究」, 『雲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 (2006), 112-115쪽.
- 86) 孫錫芳, 「《史記·五帝本紀》五帝說淺析——兼論先秦時代產生的兩種五帝說」,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 4 (2006), 84-87쪽.
- 87) 趙琪, 「關於“究天人之際”與“通古今之變”的再思考——從《史記·五帝本紀》的天命說談起」, 『史學集刊』 3 (2012), 116-122쪽.
- 88) 韓湖初, 「中國上古“大統一”應從黃帝時期開始——重新評價疑古派的儒家學者“編造”說」, 『新東方』 5 (2001), 56-61쪽.
- 89) 張強·李丹, 「論《本紀》在《史記》中的地位和作用——兼論《史記》以《五帝本紀》為開篇的原因」, 『河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6), 95-102쪽.
- 90) 張新科·王曉玲, 「《史記·五帝本紀》與西漢文化的建構」, 『求是學刊』 38 (2011), 110-115쪽.
- 91) 柯小剛, 「治氣與教化:《五帝本紀》讀解」, 『海南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1 (2013), 3-8쪽.
- 92) 張筠, 「從《史記·五帝本紀》看司馬遷的神話觀和歷史觀」, 『中華文化論壇』 3 (2019), 46-54쪽.
- 93) 王暉, 「《五帝本紀》得與失:論司馬遷的上古史觀」, 『史學史研究』 2 (2020), 7-19쪽.
- 93) 于薇, 「先秦兩漢舜故事南方版本發展與瀟水流域的政治進程——兼論零陵九疑舜陵舜廟的實體化」, 『學術研究』 7 (2013), 117-125쪽.

된 연구를 살펴보면 「오제본기」에 반영된 大一統 관념,⁹⁴⁾ 문헌의 신빙성 문제,⁹⁵⁾ 기역사적 관점에서 黃帝의 전쟁 기록에 관한 연구,⁹⁶⁾ 「오제본기」 서술 속 공간적 구조에 관한 연구,⁹⁷⁾ 五帝의 권력 교체에 관한 연구⁹⁸⁾ 등이 확인된다. 문학·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대체로 「오제본기」에 나타나는 五帝의 이미지를 夏商周 이전 문명 초기 단계의 역사적 실재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고고학 자료를 문헌자료와 연관 지어 구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본 학계의 최근 『史記』 「오제본기」 연구는 기본적으로 해당 문헌을 신화, 전설 문헌으로 보지만, 상기한 중국 학계의 경향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의 『史記』 연구를 대표하는 藤田勝久가 2023년 출간한 『사기의 재발견(史記の再發見)』을 살펴보면, 제1장은 『史記』 「五帝本紀」와 「夏本紀」의 분석에 할애되고 있다.⁹⁹⁾ 해당 장에서는 「오제본기」와 「하본기」에 관하여, 20세기 이후 소개된 신석기 후기 중국 고고학 성과 및 출토 문헌 『容成氏』의 九州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두 本紀의 전승을, 다양한 문화권이 존재하였던 신석기 후기 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중국 학계에서 五帝를 역사화하는 경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연구도 존재한다.¹⁰⁰⁾

이러한 연구 경향은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성립 연대가 늦

楊載田·陳國生, 「九嶷山舜陵考釋」, 『船山學刊』 2 (2004), 33–35쪽.

94) 孫慶偉, 「《史記·五帝本紀》反映的政治一統與文化一統」, 『歷史研究』 4 (2023), 32–35쪽.

95) 赫霆, 「《五帝本紀》及《夏本紀》的可靠性問題」, 『文史雜志』 1 (2023), 82–84쪽.

96) 劉彥青, 「重組的藝術與重構的記憶:《五帝本紀》黃帝戰爭文本蠡測」,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0 (2021), 115–124쪽.

97) 楊化劍, 「《五帝本紀》的天人空間研究」,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 38 (2020), 103–106쪽.

98) 屈譜, 「《史記·五帝本紀》所見的權力更替」, 『紅河學院學報』 18 (2020), 119–122쪽.

99) 藤田勝久, 앞의 책 (2023), 41–65쪽.

100) 吉田篤志, 앞의 논문 (2007), 35–61쪽, 특히 57쪽. 해당 연구는 출토 문헌과 전래문헌의 古聖王 전승을 비교하여 그 영향 관계를 추론하였다.

다고 여겨지는 황하 문명의 역사적 근원을 보다 이전으로 소급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며, 사마천 아래 堯舜을 중국 正史의 시작으로 인식하였던 전통을 현대의 관점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찍이 여러 연구자들이 고찰했던 것처럼,¹⁰¹⁾ 특정 인물을 언급한 출토 문헌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그 문헌에 나타난 행적의 역사적 실재를 밝혀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출토 자료 및 고고학 자료와 전래문헌과의 연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VII. 맷음말: 종합적 검토와 전망

이처럼 堯舜 고사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누적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크게 중국과 중국 외 학계(구미, 일본, 국내)로 그 경향을 구분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기존 聖王 연구가 보여준 팔목할 성과답게 그 한계도 뚜렷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역사성 입증의 한계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堯舜 서사에서 신석기 후기 역사상의 흔적을 밝히려 했으나, 갑골문이나 청동기 금문에 상응하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실증에 한계를 보인다. 요순을 언급하는 전국시대 축간의 존재가 신석기 후기 요순의 사적을 구명한다고 보기

101) 예를 들어 이승율은 출토자료가 출토자료로서의 역사성을, 전래문헌은 전래문헌으로서의 역사성을 떤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郭店에서 발견된『老子』는『郭店楚簡』『老子』로서의 역사성을, 현행『老子』는 현행『老子』로서의 역사성을 띠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성이란 어떤 사상이 동일 계통의 사상이나 이질적인 사상과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할 때, 비판 및 부정하면서도 수용하며 자기 변화를 일으키고, 동시에 타자의 변화도 유발하는 과정이다. 이승율, 앞의 책 (2013), 32-46쪽. 요컨대 『郭店楚簡』『老子』에 나타난 내용은 『郭店楚簡』『老子』를 만든 집단의 사상적 지향이 투영된 것이지, 현행『老子』에 나타난 일화의 역사성을 입증해 줄 수 없다. 이를 출토문헌에 나타난 堯舜의 계보 분석에 확장해 적용하면, 『容成氏』에 언급된 舜의 계보는 전국시대 해당 계보를 만든 개인이나 집단의 역사 인식이 반영된 산물일 뿐, 그 자체로 상고시대 순의 계보를 입증해주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수용할 경우, 현재의 증거로 보았을 때 신석기 후기의 堯舜의 행적이 1,500여 년간 구전되다가 전국시대에 이르러 문헌으로 자리 잡았다는 전제를 수용해야 하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며, 堯舜이라는 이름이 과거로부터 구전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한 것인지, 역사 문헌에 등장하는 堯舜의 행적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도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둘째는 이론이나 담론적 틀의 적용 문제이다. 일찍이 신화학에서 堯舜 서사에 주목해 왔으며, 최근 문화적 기억 담론에서도 堯舜과 聖王 담론에 이것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화와 기억 담론은 오늘날 연구자들이 堯舜을 이해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 그러한 생각의 틀 자체를 고대 중국 當代의 지식인들이 내면화하고 있었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제자백가 문헌에서 보이듯 堯舜은 고대 중국 인들에게 과거의 역사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孟子』에서 堯舜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은 이상적 인간상이었지 어떠한 신화적, 신적 존재가 아니었다. 물론 堯舜 서사 이전에 어떠한 신화적 원형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고고학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한, 설부를 추측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동성이 뚜렷한 문화적 기억 담론을 포괄적 試論의 차원을 넘어 堯舜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堯舜 관련 문헌의 시대적 추이를 명확히 구명해야 할 것이다. 이는 先秦 문헌의 연대에 관한 검토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 또 제자백가 지식인의 담론이 문화적 기억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연구의 분절성이다. 특히 구미, 일본, 국내 학계 연구는 堯舜 관련 연구가 대부분 개별 문헌(『尚書』, 『堯典』)을 위시한 개별 전래 문헌 혹은 출토 문헌)이나 특정 주제(신화, 祀廟, 혹은 특정 철학적 개념 등)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어, 堯舜 고사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 물론 李承律의 연구처럼 2000년대 초반까지 출간된 전래·출토 문헌의 堯舜 선양 전설을 총망라한 연구도 존재하지만,¹⁰²⁾ 해당 연구는

사상사적 관점에서 『唐虞之道』와 제자백가 문헌을 중심으로 堯舜의 제위 계승 설화에 접근한 연구이다. 따라서 역사서인 「오제본기」에서는 堯舜이 어떠한 양상으로 활용되었는지, 사마천이 해당 문헌의 저술을 위해 참고했을 전거는 무엇이었는지, 여타 사상서, 역사서, 출토 문헌과 해당 문헌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漢代의 역사적, 학술적 배경에 따라 堯舜 고사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등을, 그리고 2020년대 까지 출간된 전래·출토 문헌의 古聖王 연구 성과를 종합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堯舜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사상사를 검토하는 것은 향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고대 중국 사상사 연구는 孔子와 墨子, 莊子 등 대표적인 사상가와 그들의 주요 저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소개되었다. 그러나 문헌 내의 모순과 焚書 등 先秦 문헌 전승 과정에서 존재하는 일련의 공백으로 인해, 각 사상가 개인과 그들의 저작이 얼마나 직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구에서도 전술한 『창조의 양면성』에서 창조(作) 서사의 변용을 중심으로 고대 중국 사상사를 개괄했지만, 성경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문헌 전통과 별개로, 고대 중국에서 창조 서사가 과연 서구만큼 경전화되었는지, 先秦 이래 고대 중국 지식인들의 내면과 사상 속에서 중요시되었는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黃帝는 유가 지식인들에게 堯舜만큼 존숭받지 못하였으며, 三皇五帝의 전설이나 盤古의 천지창조 설화도 앞서 토미나가가 지적했듯이 漢·魏 시대에 드러난 것이다.

이보다 고대 중국 지식인들이 관직 진출의 핵심적 소양으로서 암송해 왔던 堯舜 서사를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외부의 담론보다는 동아시아 지식인의 내면화된 서사를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상사 연구가 밝혀내지 못한 측면을 탐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국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수많은 동아시아 지식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인용되어온 堯舜이라는 문헌 전통을 이해하는 것은, 고대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102) 李承律, 앞의 책 (2007), 특히 3-120쪽.

지식인의 지적 세계와 잠재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현대에는 전통 시대만큼의 위상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2,500년 문헌 전통의 유산이 불과 100여 년 만에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주제어

堯(Yao), 舜(Shun), 禹(Yu), 禪讓(abdication), 五帝本紀(Annals of the Five Emperors)

<투고: 2024년 11월 15일, 심사종료: 2024년 12월 13일, 게재확정: 2024년 12월 20일>

/Abstract/

Research Trajectory of Sage-rulers Yao and Shun: From the Boundaries of History to Cultural Memory

Lee, Jeongwoo

In pre-modern East Asian literature, the figure of the "sage-king" (聖王) occupies a singularly authoritative role as a model of governance. Among these figures, Yao and Shun stand out as frequent exemplars, yet questions surrounding their historicity have fueled a longstanding scholarly debate since the advent of modern historiography. In traditional contexts, Yao and Shun were viewed as historical sage-rulers, but with the rise of the early 20th-century "doubting antiquity" (疑古) school, they came to be regarded as figures that occupy an ambiguous space between myth and history, lacking clear historical substantiation.

Influenced by this view, scholars in the West, Japan, and Korea have often approached Yao and Shun as mythic or legendary figures, or as elements of cultural memory, and have also explored how ancient texts employed the figure of the sage (聖人), including Yao and Shun, to convey deeper cultural and philosophical meanings. However, the mid-to-late 20th century saw a shift within Chinese academia, spurred by research on unearthed texts, toward efforts to substantiate the historical existence of Yao and Shun. Some interpretations have viewed Yao and Shun's abdication of power as a reflection of political practices within tribal societies. Studies on the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Shiji*), especially the "Annals of the Five Emperors" (五帝本紀), have also been shaped by these

perspectives. Since the 2000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rend of integrating archaeological findings with textual analysis in the study of this chapter.

This paper introduces and critically assesses the diverse perspectives on Yao and Shun's narratives, including debates over the chronology of their stories. Ultimately, apart from a limited number of studies, analyses of Yao, Shun, and related ancient Chinese sage narratives have largely been conducted piecemeal within individual texts, often preoccupied with the difficult question of their historical existence due to the absence of direct archaeological evidence. Moreover, ongoing debates over the compilation dates of these texts have complicated attempts to reconstruct the evolution of Yao and Shun narratives throughout the pre-Qin period.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Yao, Shun, and sage king traditions, which occupy a central place in the pre-modern East Asian literary canon, is both timely and necessary.

참고 문헌

1. 단행본

- 고힐강 著, 김병준 譯, 『고사변 자서』 (파주: 소명출판, 2006).
- 김선자,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 신화』 (서울: 책세상, 2007).
- 김민호, 『충절의 아이콘 백이와 숙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
-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著, 최정섭 譯,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 (서울: 미토, 2006).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서울: 휴머니스트, 2005).
- 甘陽 主編, 李學勤 著, 『史記 五帝本紀 講稿』 (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2012).
- 郭永秉, 『帝系新研: 楚地出土戰國文獻中的傳說時代古帝王系統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8).
- 裴錫圭, 『中國出土文獻十講』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8).
- 內藤湖南 著, 夏應元 編譯, 『中國史通論』 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원저: 湖南(虎次郎), 『支那上古史』 (東京: 弘文堂書房, 1944).
- 稻葉一郎, 『中國史學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 稻葉一郎, 『中國史學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 藤田勝久, 『史記の再發見』 (東京: 汲古書院, 2023).
- 袁珂, 『中國古代神話』 (北京: 商務印書館, 1960). 한국어 번역: 위엔커 著, 전인초·김선자 譯, 『중국신화전설』 (서울: 민음사, 1999).
- 草野友子, 『中國新出土文獻の思想史的研究——故事·教訓書を中心として——』 (東京: 汲古書院, 2022).
- 白鳥庫吉, 『白鳥庫吉全集』 第8卷 (東京: 岩波書店, 1970).
- 俞樟華·鄧瑞全 主編, 『史記研究集成』 14冊 (北京: 華文出版社, 2005).
- 王國維, 『古史新證: 王國維最後的講義(清華文叢之五)』 (北京: 商務印書館,

1994).

李承律, 『郭店楚簡儒教の研究——儒系三篇を中心にして——』(東京: 汲古書院, 2007).

李學勤, 『走出疑古時代』(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7). 한국어 번역: 이유豆譯, 『의고 시대를 걸어 나오며』(서울: 글항아리, 2019).

許順湛, 『五帝時代研究』(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5).

Lewis Mark Edward, *The Flood Myths of Early Chin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06).

Leung Vincent S, *The Politics of the Past in Early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Meyer Dirk, *Documentation and Argument in Early China: The Shàngshū 尚書 (Venerated Documents) and the Shū Traditions* (Berlin, Boston: De Gruyter Mouton, 2021).

Assmann Ja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Allan Sarah, *The Heir and the Sage: Dynastic Legend in Early China* (Taipei: Chinese Materials Center, 1981). 한국어 번역: 사라 알란, 『선양과 세습』, 오만종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09).

Oppenheim A. Leo,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Krijgsman Rens, *Early Chinese Manuscript Collections* (Leiden: Brill, 2023).

_____, *Buried Ideas: Legends of Abdication and Ideal Government in Early Chinese Bamboo-Slip Manuscript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5).

Puett Michael, *The Ambivalence of Creation: Debates Concerning Innovation and Artifice in Earl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Hunter Michael & Kern Martin, *Confucius and the Analects Revisited: New Perspectives on Composition, Dating, and Authorship* (Leiden: Brill, 2018).

2. 논문

1) 국내 학계 논문

- 강정인·김태환, 「성인(聖人)에 관한 『한비자(韓非子)』의 중충적 언술 검토」, 『한국정치학회보』 51.2 (2017).
- 김석진, 「戰國 楚簡 『繫年』의 史學史적 성격: 先秦 출토·전래 역사류 기록의 문헌학적 고찰을 통해」, 『東洋史學研究』 161 (2022).
- 김용천, 「전국시대 禪讓論의 전개와 立賢共治」, 『태동고전연구』 38 (2017).
- 김정열, 「하늘이 禹에게 명하여 — 새로 발견된 빙공수의 내용과 그 자료적 의의 —」, 『중국고중세사연구』 20 (2008).
- 김종미, 「중국문헌(中國文獻)에 나타나는 "치우(蚩尤)"의 이중형상(1) -제국(帝國)의 희생양, 치우(蚩尤)의 악마형상-」, 『중국어문학지』 65 (2007).
- 김진우, 「새로운 자료, 새로운 방법론, 중국고대사 연구의 진전 - 2020~2021년 연구 동향과 과제 -」, 『역사학보』 255 (2022).
- 백영선, 「『상서』의 성왕들 - 긴장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자-」, 『철학』 149 (2021).
- 빈미정, 「황제신화전설에 대한 문헌적 고찰」, 『중국문학』 44 (2005).
- 성시훈, 「유교적 성왕(聖王)으로 변용되는 세계의 개척자 -禹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4 (2021).
- 선정규, 「중국 정치신학의 기능과 유형」, 『中語中文學』 53 (2012).
- 심재훈, 「전설과 역사 사이: 山西省의 堯舜禹」, 『歷史學報』 241 (2019).
- _____, 「『산서통지』에 나타난 요순우를 기억하는 공간」, 『역사학보』 249 (2021).
- _____, 「동아시아를 횡단한 의고의 계보와 학술사적 전망」, 『東洋史學研究』 161 (2022).
- 우근태, 「周文王考—西周期 金文에 나타난 文王受命의 神聖化를 중심으로 —」, 『동서인문』 24 (2024).
- 원용준, 「중국 고대 신화 자료의 유교적 전개 — 상박초간(上博楚簡) 자고(子羔)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03 (2020).

- 이연정, 「선진시대 도통의식 검토 - 순자의 도통의식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6 (2021).
- 이유표, 「西周 금문에 보이는 ‘周公’ 사적」, 『중국고중세사연구』 65 (2022).
- 李成九, 「戰國時代의 巡狩說話」, 『東洋史學研究』 (2014).
- 李承律, 「郭店楚簡『唐虞之道』의 謙遜思想 研究(I) - 道家 및 儒家의 謙遜思想과의 比較考察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28 (2002).
- _____, 「郭店楚簡『唐虞之道』に見える「愛親」と「孝」思想の特質」, 『한국철학논집』 11 (2002).
- _____, 「郭店楚簡『唐虞之道』의 ‘尊賢’思想과 先秦儒國의 尚賢論」, 『東洋史學研究』 78 (2002).
- _____, 「서장: 간백 연구 서설」, 『죽간, 목간, 백서 고대 간백자료의 세계 1』 (서울: 예문서원, 2013).
- _____, 「공자의 공치 철학과 다섯 가지 프레임」, 『중국학보』 76 (2016).
- _____, 「맹자의 공치 철학: 양심·전문성·문화권력·독립성·혁명성, 그리고 차동애」,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5 (2016).
- _____, 「두 얼굴의 주공」, 『동양고전연구』 75 (2019).
- 윤대식, 「순자 속 성인에서 성왕으로 - 통치와 자치의 경계 짓기 -」, 『태동고전연구』 44 (2020).
- 윤무학, 「목가의 辭說에 반영된 聖王과 詩書」, 『동양철학연구』 108 (2021).
- 尹在碩, 「中國古代(先秦·秦漢)」, 『역사학보』 0.183 (2004).
- 장현근, 「고대 중국신화의 변천과 정치화」, 『정치사상연구』 10 (2004).
- _____, 「방벌(放伐)과 선양(禪讓)의 이중주」, 『한국정치학회보』 46(1) (2012).
- 황수임·윤무학, 「韓非의 역사관-諸家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5 (2016).

2) 중국 학계 논문

- 柯小剛, 「治氣與教化: 《五帝本紀》讀解」, 『海南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1 (2013).
- 孔祥安, 「中國傳統忠觀念的起源再探」, 『齊魯學刊』 4 (2016).

- 屈譜, 「《史記·五帝本紀》所見的權力更替」, 『紅河學院學報』18 (2020).
- 尚恒元·荊惠萍, 「帝堯其人——兼探《史記》帝堯史料源流」, 『運城高等專科學校學報』4 (2000).
- 孫慶偉, 「《史記·五帝本紀》反映的政治一統與文化一統」, 『歷史研究』4 (2023).
- 孫錫芳, 「《史記·五帝本紀》五帝譜系合理性探究」, 『雲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 (2006).
- _____, 「《史記·五帝本紀》五帝說淺析——兼論先秦時代產生的兩種五帝說」,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4 (2006).
- 蕭功秦, 「華夏國家起源新論——從“猴山結構”到中央集權國家」, 『文史哲』5 (2016).
- 溫玉春·曲惠敏, 「少昊·高陽·高辛·陶唐·有虞諸氏族原居今山東考」, 『管子學刊』4 (1997).
- 楊化劍, 「《五帝本紀》的天人空間研究」,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38 (2020).
- 楊載田·陳國生, 「九嶷山舜陵考釋」, 『船山學刊』2 (2004).
- 吳澤順, 「《史記》引書異文釋例」, 『古籍整理研究學刊』4 (1993).
- 劉彥青, 「重組的藝術與重構的記憶:《五帝本紀》黃帝戰爭文本蠡測」,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50 (2021).
- 李憑, 「黃帝歷史形象的塑造」, 『中國社會科學』3 (2012).
- 李霖, 「從《五帝本紀》取裁看太史公之述作」, 『文史』1 (2020).
- 李先登·楊英, 「論五帝時代」, 『天津師大學報(社會科學版)』6 (1999).
- 於薇, 「先秦兩漢舜故事南方版本發展與瀟水流域的政治進程——兼論零陵九疑舜陵舜廟的實體化」, 『學術研究』7 (2013).
- 王震中, 「陶寺與堯都:中國早期國家的典型」, 『南方文物』3 (2015).
- 張大可, 「論史記取材」, 『社會科學』5 (1983).
- 張筠, 「從《史記·五帝本紀》看司馬遷的神話觀和歷史觀」, 『中華文化論壇』3 (2019).
- 張強·李丹, 「論《本紀》在《史記》中的地位和作用——兼論《史記》以《五帝本紀》為開篇的原因」, 『河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6).

張新科·王曉玲, 「《史記·五帝本紀》與西漢文化的建構」, 『求是學刊』 38 (2011).

張榮明, 「中國上古國家的產生及特征」, 『史學月刊』 2 (2001).

翟滿桂·蔡自新, 「舜文化是中華民族道德文化之源」, 『湖南社會科學』 1 (2002).

趙琪, 「關於“究天人之際”與“通古今之變”的再思考——從《史記·五帝本紀》的天命說談起」, 『史學集刊』 3 (2012).

錢宗武, 「《史記》引《書》虛詞修辭」, 『古漢語研究』 4 (1989).

陳贊, 「絕地天通與中國政教結構的開端」, 『江蘇社會科學』 4 (2010).

何鶯·高江濤, 「薪火相傳探堯都——陶寺遺址發掘與研究四十年歷史述略」, 『南方文物』 4 (2018).

韓湖初, 「中國上古“大統一”應從黃帝時期開始——重新評價疑古派的儒家學者“編造”說」, 『新東方』 5 (2001).

赫霆, 「《五帝本紀》及《夏本紀》的可靠性問題」, 『文史雜志』 1 (2023).

3) 일본 학계 논문

吉田篤志, 「五帝時代は史實か：神話の歴史化に対する疑問」, 『大東文化大學漢學會誌』 (2007).

李承律, 「郭店楚簡『唐虞之道』譯注」, 『郭店楚の思想史的研究』 1 (1999).

_____, 「上海博楚簡『容成氏』の堯舜禹禪讓の歴史」, 『中國研究集刊』 26 (2004).

_____,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容成氏』譯注(上)」, 『出土文獻と秦楚文化』 2 (2005).

_____, 「楚簡子羔の感生説と二重の受命論」, 『中國出土資料研究』 11 (2007).

湯淺邦弘, 「上博楚簡《舉治王天下》의堯舜禹傳說」, 『簡帛』 9 (2014).

4) 서구 학계 논문

Lewis Mark Edward, "The Mythology of Early China," John Lagerwey and Marc Kalinowski ed, *Early Chinese Religion Part One: Shang through Han (1250 BC - 220 AD)* (Leiden: Brill, 2009).

Lai Whalen, "Unmasking the Filial Sage-King Shun: Oedipus at

- Anyang,” *History of Religions* 35 (1995).
- Back Youngseon, “Revealing Contingency Through Shun’s 舜 Ascension to the Throne,” *Early China* 43 (2020).
- Shaughnessy Edward, “Book review, *Origins of Chinese Political Philosophy: Studies in the Composition and Thought of the Shangshu*, edited by Martin Kern and Dirk Meyer. Leiden and Boston: Brill, 2017,” 『饒宗頤國學院院刊』第五期 (2018).
- Sukhu Gopal, “Yao, Shun, and Prefiguration: The Origins and Ideology of the Han Imperial Genealogy,” *Early China* 30 (2005).
- Khayutina Maria, “The Beginning of Cultural Memory Production in China and the Memory Policy of the Zhou Royal House During the Western Zhou Period,” *Early China* 44 (2021).
- Kern Martin, “Bronze Inscriptions, the Shijing and the Shangshu: The Evolution of the Ancestral Sacrifice during the Western Zhou,” John Lagerwey and Marc Kalinowski ed, *Early Chinese Religion Part One: Shang through Han (1250 BC - 220 AD)* (Leiden: Brill, 2009).
- _____, “Language and the Ideology of Kingship in the ‘Canon of Yao’,” Martin Kern & Dirk Meyer ed, *Origins of Chinese Political Philosophy: Studies in the Composition and Thought of the Shangshu (Classic of Documents)* (Leiden: Brill, 2017).
- _____, “Cultural Memory and the Epic in Early Chinese Literature: The Case of Qu Yuan 屈原 and the Lisao 離騷,”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and Culture* 9 (2022).
- Krijgsman Rens, “Cultural Memory and Excavated Anecdotes in ‘Documentary’ Narrative: Mediating Generic Tensions in the Baoxun Manuscript,” in Paul Van Els and Sarah A. Queen ed., *Between History and Philosophy: Anecdotes in Early China* (Leiden: Brill, 2017).
- Pines Yuri, “Disputers of Abdication: Zhanguo Egalitarianism and the Sovereign’s Power.” *T’oung Pao* 91 (2005), pp.243–300.
- _____, “Subversion Unearthed: Criticism of Hereditary Succession

in the Newly Discovered Manuscript,” *Oriens Extremus* (2005/06).

_____，“The Search for the Ideal Ruler” *Envisioning Eternal Empire: Chinese Political Thought of the Warring States Er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9).

5) 학위논문

- 김석진, 『역사 문서에서 역사 책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이유진, 『中國神話의 歷史化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정우, 『『사기』『오제본기』에 나타난 요순 고사의 활용 양상』,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 정찬학, 『五帝神話의 形成과 漢代의 受容樣相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정진선, 『중국신화의 변용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甄英軍, 『關於“降居”“辨秩”與“五帝”－《史記·五帝本紀》的研究』,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 孔祥來, 『先秦文獻中的“古帝”傳說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 唐睿, 『帝舜圖像敘事及其地方化建構』,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22).
- 馬興, 『堯舜時代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 潘葦杭, 『先秦兩漢堯文化探源』,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 孫錫芳, 『《史記·五帝本紀》可信性研究』,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 柴春椿, 『舜帝傳說与信仰研究』, 山西大學 博士學位論文 (2021).
- 劉曉曉, 『《史記·五帝本紀》引《尚書·堯典》異文研究』, 西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 趙文娜, 『司馬遷《五帝本紀》研究』, 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張丹, 『先秦秦漢舜帝形象演變研究』, 湘潭大學 博士學位論文 (2017).
- 葉慶兵, 『《史記·五帝本紀》系列人物神化史化考論』,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 蔡亞瑋, 『《史記·五帝本紀》敘事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 夏世華, 『先秦儒家禪讓觀念研究』, 武漢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고구려본기의 중국 史書 인용 양상과 초기 王系 기사

임 기 환*

I. 머리말	IV. 伊夷謨, 位宮, 乙弗利, 鉤[劉]를 반영하고 있는 『魏書』·『梁書』 고려전
II.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王諱와 중국 史書의 王諱	V.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중국 史書의 諱 자료 구성 과정
III. 宮, 遂成, 伯固, 伊夷模, 位宮을 반영하고 있는 『三國志』·『後漢書』 고구려전	VI. 맷음말

초록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후한서』 기사에 의거한 여러 기사는 고구려본기를 편찬할 때에 인용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고구려본기의 저본 자료가 되는 史書에 인용되었다. 그리고 宮, 遂成, 伯固라는 왕의 諱는 고구려본기에 인용되었다. 『삼국지』 고구려전에서는 고구려본기에 인용된 기사는 없다. 그렇지만 伊夷謨와 位宮이란 諱는 고구려본기에 인용되었다.

『후한서』와 『삼국지』 고구려전에 보이는 왕계를 인용하는 과정을 보면 고구려시기에는 왕의 諱만 인용하였을 뿐이지 다른 관련 기사는 무시하였다. 『후한서』와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宮-遂成-伯固-伊夷模-位宮이라는 5대에 걸쳐 부자상속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王系가 등장한다. 이 왕계를 고구려본기에서는 대조대왕-차대왕-신대왕-고국천왕-산상왕이라는 연속되는 5王系에 기계적으로 대응시켰다.

일단 고구려 당대에 『후한서』와 『삼국지』에 보이는 고구려 왕계를 국내 전승 왕계와 대응시키려고 할 때 그 대응의 기준이 된 것이 伯固와

*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kh303@snue.ac.kr

대표논저: 「고구려 부흥운동 자료의 재검토」, 『한국사학보』 94 (2024); 「고구려 멸망기 신라의 군사활동」, 『한국사학보』 90 (2023); 「고구려 태조대왕과 신대왕 王系에 대한 재검토」, 『역사문화연구』 81 (2022); 『고구려와 수·당 70년전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2).

白句였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사서와 고구려의 자체 전승 기록에서 양자 모두 전하는 伊夷模와 位宮과 관련된 기사에서 불일치가 나타났다. 이는 고구려 왕계를 중국 사서의 왕계에 맞추어 재구성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 왕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I. 머리말

고구려 초기 王系에 대한 이해는 정치사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이하 고구려본기)가 갖는 사료의 신뢰성과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특히 고구려본기에서 태조대왕~산상왕 5왕의 謚에 『후한서』 고구려전과 『삼국지』 고구려전에 보이는 다섯 왕의 謚가 모두 기록되어 있고, 더욱 3세기 말에 편찬된 『삼국지』의 왕계와 430년대 편찬된 『후한서』의 왕계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이 두 사서 편찬 시기 사이인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왕비문에 추모왕 이후 광개토왕에 이르기까지 공식 왕계의 일부가 기술됨으로써,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왕계가 언제 성립되었는지를 둘러싸고 논의가 적지 않다.¹⁾

이에 대해 노태돈, 여호규, 임기환 등 한국학자들 대부분은 광개토왕비문에 제시된 왕계가 고구려본기의 왕계와 일치한다고 보는 입장이다.²⁾ 그러나 일본학계는 津田左右吉 아래 근래 武田幸男, 高寬敏, 井上直樹 등이 『후한서』 편찬 이전의 왕계는 광개토왕비문의 왕계는 물론 고구려본기의 왕계와 다르고, 5세기 이후 『후한서』의 왕계에 맞추어 새로운 왕계가 재구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³⁾ 그런데 일본학자들은 고구려 왕계의 형성 과정을 검토하면서, 왕계만을 고려할 뿐 각 왕대의 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왕계의 복원 시도가 결과적으로 허상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⁴⁾

1) 임기환, 「고구려 王系의 성립과정과 시기」, 『한국고대사연구』 83 (2016).

2) 盧泰敦, 「高句麗의 初期王系에 대한 一考察」, 『李基白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서울: 一潮閣, 1994).

여호규, 高句麗 初期의 王位繼承原理와 古鄒加, 『동방학지』 150 (2010).

임기환, 위의 논문 (2016).

3) 武田幸男, 「高句麗王系成立の諸段階」, 『高句麗史と東アジア』 (東京: 岩波書店, 1898).

高寬敏, 『三國史記の原典的研究』, (東京: 雄山閣, 1996).

井上直樹, 「고구려 왕계의 정비와 미천왕」,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송기호교수 정년기념논총) (과천: 진인진, 2021).

4) 본 연구에서 일본학자들의 견해를 일일이 검토하지는 않겠다. 武田幸男, 高寬敏

이 글에서는 중국측 사서의 왕계 기사 검토를 주요 목표로 하되, 단순히 왕계 뿐만 아니라, 중국 사서의 기년 기사가 고구려본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 반영되었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사실 중국 사서에 보이는 초기 고구려 5왕의 謢가 언제 고구려본기의 저본 자료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막연하게 고구려시기에 이미 대응 인용되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王系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이다. 고구려본기의 기록으로 볼 때 어느 시기엔가 중국 사서에 보이는 王系 및 기타 기사를 대응시켜 정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고구려시기에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原典 연구는 고구려본기 기사를 중심으로 저본 자료로서 중국측 史書 중 어떤 사서의 어떤 기사가 선택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⁵⁾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 史書 기사를 중심으로 고구려본기 및 그 저본 자료에서 어떤 기사가 선택되고 어떤 기사가 선택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 사서의 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내 전승 자료에 인용되었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고구려본기 편찬까지 이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⁶⁾ 많은 비판과 조언을 기대한다.

등의 견해는 이미 노태돈, 여호규의 적절한 비판이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근래 井上直樹가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였는데,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만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 5) 고구려본기 원전 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참고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鄭求福 外,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高寬敏, 앞의 책 (1996).

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 (서울: 民族社, 1997).

전덕재,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서울: 주류성, 2018).

田中俊明, 「三國史記」中國史書 引用記事의 再檢討, 『조선학보』 104 (1982).

신동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인용자료에 관한 일고」, 위의 책 (1995).

신동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분주의 연구」, 『동대사학』 1 (1995).

이강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분주 재론」, 『백산학보』 67 (2004).

임기환, 「고구려본기 전거자료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2006).

전덕재,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原典과 完成－광개토왕대 이전 기록을 중심으로」, 『東洋學』 64 (2016).

- 6) 고구려본기 중 중국 사서 기사를 원전으로 하는 기사에 대한 검토는 이미 田中

II.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王諱와 중국 史書의 王諱

중국 사서의 王系 기록은 고구려본기에는 고구려왕의 諱 관련 기사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사서에 보이는 고구려왕의 諱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를 諱를 포함하여 고구려본기에서 고구려왕의 왕호 및 諱 관련 내용을 다음 <표 1>로 정리하였다.⁷⁾

<표 1> 고구려 전기 왕호, 諱 표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三國遺事 (王曆)				비 고	
	王名		諱		王名		諱			
	本文	分註	本文	分註	本文	異稱	本文	異稱		
1	東明 聖王		朱蒙 (姓 高)	鄒牟 · 衆解	東明 王		朱蒙 (姓 高)	鄒 蒙	東明聖王, 東明王 (年表) 仲牟王(新羅本 紀)	
2	琉璃 明王		類利	孺留	琉璃 王	累 利 · □ 留	(姓 解氏)		琉璃明王(年表) 琉璃王(目錄, 대무신왕 즉위년조, 대조대왕 즉위년조, 고국천왕 13년조) 孺留王(자리지)	

俊明(위의 논문 [1992])과 전덕재(위의 책 [2018]; 위의 논문 [2016])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졌다. 다만 본고는 원전 자체보다는 중국사서 기사들이 고구려본기에 반영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7) 임기환, 「고구려 왕호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8 (2002), 8쪽에서 작성한 표를 수정 보완하였다.

3	大武 神王	大解朱 留王	無恤		大虎 神王		無恤 (姓 解氏)	昧 留	
4	閔中 王		解色 朱		閔中 王		色朱 (姓 解氏)		
5	慕本 王		解憂	解愛婁	慕本 王		愛留	憂	
6	大祖 大王	國祖王	宮	於漱(小名)	國祖 王	大 祖 王	宮		國祖王(年表, 海東古記) 大祖王(目錄) 大祖(산상왕 즉위년조)
7	次大 王		遂成		次大 王		遂		
8	新大 王		伯固	伯句 (固一 作句)	新大 王		□□	伯 固(一 作 伯 句)	
9	故國 川王	國襄	男武	伊夷謨	故國 川王	國 襄	男虎	夷 謨	國壤(동천왕 8년조)
10	山上 王		延優	位宮	[山 上王]				伊夷模(三)
11	東川 王	東襄	憂位 居	郊畿(小名)	東川 王				位宮(三,梁,魏, 隋)
12	中川 王	中壤	然弗		[中 川王]				
13	西川 王	西壤	藥盧	若友	西川 王		藥盧	若 友	葬地 故國原(봉상왕 5년)
14	烽上 王	雉葛	相夫	歛矢婁	烽上 王	雉 葛	相夫		
15	美川 王	好壤王	乙弗	憂弗	美川 王	好 攘	乙弗	漫 弗	乙弗利(魏,梁)

16	故國原王	國罌上王	斯由	劉	國原王	岡上	釗	斯由	劉(梁), 釗(魏,晋)
17	小獸林王	小解朱留王	丘夫		小獸林王		丘夫		解味留王(海東高僧傳)
18	故國壤王		伊連	於只支	國壤王		伊速	於只支	

고구려본기의 기술 방식을 보면 각 왕의 즉위년조 처음에 王號와 諱를 기술하고, 薦年에 왕의 葬地 및 王호를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즉위년조의 王호와 諱에는 본문으로 기술된 王호와 諱(이하 본문 王호·諱)가 있고, 分註로 기술된 王호와 諱(이하 분주 王호·諱)가 있다. 그리고 薦年の 王호는 본문 王호와 동일하다.⁸⁾

먼저 王호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표 1>을 보면 10명 왕의 경우에만 분주 王호가 있다. 일단 분주 王호가 있는 경우를 보면, 본문 王호와 분주 王호는 서로 계통성이 다름을 쉽게 알 수 있다. 東明聖王~故國壤王대까지의 王호는 본문 王호와 분주 王호로 그 계통성을 달리하는 王호가 전해지고 있었으며, 특히 분주 王호의 大解朱留王이 「광개토왕릉비」의 大朱留王과 통하고, 國岡上王은 「모두루묘지」의 國岡上聖太王과 통하기 때문에, 분주 王호가 5세기 당대의 王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2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주계 王호가 본문계 王호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王호로서 5세기 말 이전에 성립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諱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王호의 경우는 본문 王호와 분주 王호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계통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그러면 諱의 경우도 王호의 양상과 유사할까? 나아가 본문 諱와 분주 諱가 각각 본문 王호 및 분주 王호과 서로 계통적으로 대응될 것인가?

첫째, <표 1>을 보면 일단 본문 諱과 분주 諱를 비교할 때 몇가지 경

8) 이하 고구려본기의 본문 王호와 諱 및 분주 王호와 諱에 대한 검토는 임기환, 앞의 논문 (2002), 10-22쪽 참조.

향성이 나타난다. ①양자의 관계가 同音異語인 謱로서, 朱蒙(鄒牟)·類利(孺留)·伯固(伯句)·乙弗(憂弗) 등을 들 수 있다. ②특별한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예로는 解憂(解愛婁)·藥盧(若友)·伊連(於只支) 등이다. ③중국 사서에서 전해지는 謱가 본문으로 기록된 경우이다. 宮(태조대왕), 遂成(차대왕), 伯固(신대왕)인데, 이 경우 宮의 小名인 於漱가 분주로 기록되었고, 伯固의 固의 이표기가 句임을 분주에 기록하고 있다. ④중국 사서에서 전해지는 謌가 분주로 기록된 경우로, 男武(伊夷謨)·延優(位宮), 그리고 斯由(劉[釗])를 들 수 있다. 고국원왕의 분주 謌인 '劉'는 『梁書』·『翰苑』에 보이고, 『晉書』·『魏書』·『資治通鑑』은 '釗'이다. 고구려본기의 '劉'는 『양서』에 의거하였다고 추정되는데, 구체적인 검토는 후술하겠다. 이들 휘는 어느 시기엔가 史書 편찬 시에 중국 사서를 참고하여 추가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 외 미천왕의 본문 謌인 '乙弗'도 『魏書』, 『梁書』의 '乙弗利'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본래의 謌인 '乙弗'이 비교적 정확하게 주변국에 알려져 고구려 전승과 중국 사서의 휘가 거의 동일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謌의 경우는 본문 謌와 분주 謌가 각각의 계통성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다만 鄒牟나 孫留라는 분주 謌가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鄒牟王·儒留王 왕호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왕의 왕호가 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광개토왕 이전 왕의 경우 고구려본기의 분주 謌의 일부는 늦어도 5세기 당시의 謌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왕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국양왕대까지의 謌 중에서 중국 史書에서 유래한 경우(宮·遂成·伯固·伊夷謨·位宮·劉[釗])를 제외하면, 본문 謌보다는 분주 謌가 시기적으로 먼저 정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둘째, 중국 史書에 전해지는 謌와 고구려본기의 謌 자료를 비교 검토해보자. 먼저 大祖大王, 次大王, 新大王의 본문 謌인 宮, 遂城, 伯固은 『삼국지』·『후한서』의 기록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大王系 3왕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다.⁹⁾ 다음 고국천왕의 분주 휘인 伊夷謨 및 산상왕의 분

9) 3大王의 왕계에 대한 기왕의 논의 및 3대왕의 왕계가 후대에 만들어져 가상된

주 휘인 位宮인데, 이 두 휘는 해당되는 왕과 관련된 기사에서 중국 사서의 내용과 그 대응이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양 기록 상에서 1대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문으로 고구려 왕계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주서』 고구려전에는 “書籍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라고 하였고, 『구당서』 고구려전에도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又有文選,尤愛重之.”라고 하였다. 고구려시기에 『漢書』·『後漢書』·『三國志』 등 중국 사서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있었으니, 당연히 이들 사서의 고구려전 기록을 중요하게 다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자국과의 관계 및 고구려왕의 존재에 대해서는 자신의 국내 기록과 대교하여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唐 이전에 편찬된 이들 중국 사서 『삼국지』·『후한서』·『위서』·『양서』에 보이는 고구려 왕의 謚가 대부분 고구려본기 기사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휘의 반영 혹은 인용 시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 대한 단서를 현 고구려본기 기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I. 宮, 遂成, 伯固, 伊夷模, 位宮을 반영하고 있는 『三國志』·『後漢書』 고구려전

고구려왕의 이름인 宮-遂成-伯固 관계 기사를 담고 있는 『후한서』를 먼저 검토 대상으로 하겠다. 『후한서』는 남조 송의 范曄이 430년대에 편찬한 사서로 아마도 고구려는 장수왕대에 송과의 교류를 통해 이 책을 수용하였을 것이다. 특히 그 이전에 간행된 『삼국지』에 반영되지 않은 후한과의 대외관계 및 당시의 왕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것이 아님에 대해서는 노태돈의 자세한 논증이 참고된다. 蘆泰敦, 앞의 논문 (1994), 91-99쪽 참조.

(1) 『후한서』 고구려전에서 고구려본기에 인용된 기사

사료 (가)

①王莽初，發句驪兵以伐匈奴，其人不欲行，彊迫遣之，皆亡出塞爲寇盜。遼西大尹田譚追擊，戰死。莽令其將嚴尤擊之，誘句驪侯駟入塞斬之，傳首長安。莽大說，更名高句驪王爲下句驪侯，於是貊人寇邊愈甚。②建武八年(32)，高句驪遣使朝貢，光武復其王號。③二十三年冬，句驪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詣樂浪內屬。④二十五年春，句驪寇右北平·漁陽·上谷·太原，而遼東太守祭彫以恩信招之，皆復款塞。⑤後句驪王宮生而開目能視，國人懷之，及長勇壯，數犯邊境。⑥和帝元興元年(105)春，復入遼東，寇略六縣，太守耿夔擊破之，斬其渠帥。安帝永初五年(111)，宮遣使貢獻，求屬玄菟。元初五年(118)，復與漢貊寇玄菟，攻華麗城。⑦建光元年春(121)，幽州刺史馮煥，玄菟太守姚光，遼東太守蔡諷等，將兵出塞擊之，捕斬漢貊渠帥，獲兵馬財物。宮乃遣嗣子遂成將二千餘人逆光等，遣使詐降，光等信之。(중략)⑧夏，復與遼東鮮卑八千餘人攻遼隊，殺略吏人。(중략)秋，宮遂率馬韓·漢貊數千騎圍玄菟。夫餘王遣子尉仇台，將二萬餘人，與州郡并力討破之，斬首五百餘級。⑨是歲宮死，子遂成立，姚光上言欲因其喪發兵擊之，議者皆以爲可許。尚書陳忠曰。(중략)明年，遂成還漢生口，詣玄菟降。(중략)⑩遂成死，子伯固立。其後漢貊率服，東垂少事。順帝陽嘉元年(132)，置玄菟郡屯田六部。⑪質·桓之間，復犯遼東西安平，殺帶方令，掠得樂浪太守妻子。⑫建寧二年(169)，玄菟太守耿臨討之，斬首數百級，伯固降服，乞屬玄菟云。¹⁰⁾

(가)-① 기사를 검토하자. 고구려본기 유리왕 31년조에는 (가)-① 기사 대신에 『한서』 왕망전의 始建國 4년조 기사가 상세하기 때문에 이를 발췌 인용하고 있다.¹¹⁾ 다만 고구려본기에는 嚴尤에 의해 살해된 인물이 “我將延丕”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왕망전 기사 중에서 고구려후 駟와 직접 연결된 문장은 생략하고 있다. “我將延丕” 기사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국내 전승 자료가 어느 시기까지는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고구려본기 저본 자료로서 “我將延丕”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전승 형태가 어떠하였는지가 궁금해진다. 그런데 유리왕 31년 기사는 대부분 왕망전의 문장에 의거하고 있으며, 관련 국내 전승 내용은 ‘延丕’라

10) 『후한서』 권85 고구려전.

11) 『한서』 왕망전의 이 기사는 『삼국지』 고구려전과 『후한서』 고구려전 등에도 암축된 내용으로 실려 있다. 또한 『자치통감』에도 왕망전과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일부 문장이 생략되어 있다.

는 인명 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기사에 이어서 “兩漢書及南北史皆云 誘句麗侯驕斬之”라는 分註가 붙어있다. 즉 고구려본기 편찬 시에 분주자는 저본 자료에 “延丕”라고 기록한 점과 『한서』를 비롯한 중국 사서에서 “句麗侯 駕[驕]”라고 기록하고 있는 차이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분주자가 중국 史書와 대교한 국내 전승 자료에는 延丕라는 인명 외에는 별다른 대교 내용이 없었음을 시사한다. 즉 중국 사서의 ‘句麗侯驕’ 기사를 대교하면서도 본문에서 “我將延丕”라고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전승 자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에 만약 국내 전승 자료에서 “延丕”라는 인명 이외에 어떤 다른 내용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고구려본기 기사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我將延丕”에 대한 고구려 전승 자료는 매우 소략하여 아마도 기년이나 사건 내용을 통해 『한서』 왕망전 사건국4년조 기사에 겨우 대응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²⁾

다만 이러한 고구려의 전승자료를 『한서』 왕망전 기사와 결합하여 기사를 만든 시기는 언제일까? 고구려 당대일까, 아니면 그 이후 어느 시기일까? 예컨대 고구려본기 편찬 때일까? 혹은 그 이전일까? 이에 대한 답을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필자는 고구려본기 유리왕 31년조 기사는 고구려본기 편찬시에 이미 “延丕”라는 인명이 반영된 현 고구려본기의 기사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갖는 모종의 저본 자료에 의거하여 찬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³⁾ 왜냐하면 고구려본기 편찬시까지 국내 전승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기사 형태가 단지 “我將延丕”라는 인명 정보만을 갖는 자

12) 강종훈은 고구려본기 등에 전하는 추모왕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아 당시 고구려후 추의 죽음과 관련한 기록이 사실이며, 연비의 죽음은 그 이후 유리왕대 있었던 별개의 사건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강종훈은 고구려후 추를 연비로 바꾸어 놓은 후대의 편사 시점은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강종훈,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반영된 중국계 原典 사료의 讀法 -고구려본기 유리왕 31년조 기사의 검토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40 (2020), 16쪽.

13) 임기환, 앞의 논문 (2006), 34쪽. 전덕재는 고구려본기 편찬시에 『한서』 왕망전과 국내 전승기록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앞의 책 [2018], 223쪽).

료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고구려본기 편찬시에 『한서』 왕망 전 기사를 인용하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延丕”라는 인명을 포함하는 국내 전승자료는 『삼국지』 혹은 『후한서』의 관련 기사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 사서 기사의 인용은 고구려본기 편찬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추정한다. 고구려본기에 인용되는 아래 사례를 보면 아마도 『후한서』 관련 기사였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국원왕 12년 11월조의 모용황 침입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전적으로 『자치통감』 권97 진기19 顯宗 咸康 8년조 기사에 의거하여 구성된 기사로서, 독자의 전승 자료로는 단지 ‘斷熊谷’이란 지명이 보입되어 있을 뿐이다. 『자치통감』에 의거한 기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고구려본기 편찬시에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그 당시까지 ‘斷熊谷’이란 지명을 포함하는 전승 자료는 어떠한 형태로 남아있었던 것일까? 과연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별도의 자료가 있었을까? 그러나 국내 전승 자료를 중시한 고구려본기 편찬자의 태도를 고려할 때, 만약 다른 내용을 갖는 별도의 전승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사의 내용이나 문장이 전적으로 『자치통감』에 의거한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¹⁴⁾ 결국 ‘斷熊谷’이란 지명을 제외하고는 『자치통감』 기사와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는 전승 자료가 전해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아마도 『진서』의 해당 기사에 단지 ‘斷熊谷’이란 지명만 반영되어 있던 기사였을 것으로 추정한다.¹⁵⁾ 고구려본기 편찬자들이 그 이전의 저본 자료에 있던 기사를 대체하여 『자치통감』 기사에 의거하여 재구성한 이유는 아마도 그 내용이 소략하였기 때-

14) 고구려본기에서 동일한 사건에 중국 사서의 기사와 독자의 전승 자료를 합쳐 구성한 대표적인 기사로는 동천왕 20년 8월조의 관구검 침입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문장의 앞 부분은 『양서』의 기사를 인용하면서도 그 이후의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밀우 등의 활약을 담은 국내 전승 기사를 기초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지리지의 三國有名未詳地分조에 보이는 식읍 지명의 예로 보아 『삼국사기』 편찬 이전의 저본 자료에 이미 그러한 형태로 찬술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만 현 고구려본기 기사 그대로인지는 알기 어렵다.

15) 『삼국사기』 지리지 三國有名未詳地分조에 ‘斷熊谷’이란 지명이 보이는데, 이는 『자치통감』을 전거로 하는 현 고구려본기 기사를 찬술하기 이전의 저본 자료에 이미 斷熊谷을 포함하는 기사가 있었음을 뜻한다.

문이다. 다만 고구려본기의 저본이 되었던 이들 기사를 편찬할 때까지, 독자적인 국내 자료가 어떠한 형태로 전승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¹⁶⁾

위 기사 외에도 중국 사서 특히 『후한서』에서 인용한 기사 중에는 고구려본기 편찬 때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사서에서 인용된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경우가 적지 않게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구려본기 민중왕 4년조의 기사로서 위 (가)-③을 인용한 경우이다.

[민중왕 4년] 冬十月 蠶友落部大家戴升等一萬餘家 詣樂浪投漢 [後漢書云 大加戴升等萬餘口]¹⁷⁾ (고구려본기)

위 기사에서 고구려본기 편찬자는 저본자료에 있는 기사로 본문을 작성하면서 『후한서』의 원 기사와 대교하여 分註를 작성하였다. 이 분주가 고구려본기 편찬시에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위 본문 기사는 고구려본기 편찬의 저본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엔가 사서 편찬 과정에서 『후한서』 고구려전 (가)-③를 인용한 것이다. 다만 분주에서 지적하듯이 2군데 글자의 異同이 있을 뿐이다. 통상 고구려본기의 기본 저본 자료를 「구삼국사」로 보는 게 통설인데,¹⁸⁾ 그렇다면 「구삼국사」 편찬 시에 『후한서』의 기사를 잘못 인용한 셈이 된다.

그리고 위 고구려본기 기사는 ‘冬十月’이라고 하였지만, (가)-③에서는 단지 ‘冬’이라고 하였다. 여기 10월은 『후한서』 권1 광무제기 建武23(47)년 조 “冬十月 高句麗率種人詣樂浪內屬” 기사에 의거하여 이 두 기사가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10월을 보입한 시점은 언제일까? 고구려본기 본문의 저본 자료를 작

16) 고국원왕 12년조와 유사한 예로는 보장왕 4년조의 ‘對盧高正義’, 보장왕 27년 조의 ‘信誠與小將烏沙·饒苗等’의 예가 있다.

17) 이하 고구려본기에서 인용한 기사는 관련 전거를 생략함.

18) 정구복, 「고려 초기의 “삼국사” 편찬에 대한 일고」, 『국사관논총』 45 (1993); 전덕재, 앞의 책 (2018).

성한 시기인가? 아니면 고구려본기를 편찬할 때인가? 이에 대한 답은 불분명하지만, 본문의 저본 자료 작성 시점과 같으리라고 추정한다.

그러면 위 『후한서』 기사 중에서 고구려본기에 인용된 기사와 시점을 살펴보자. 고구려본기를 편찬할 때에 이용한 저본 자료 중에는 이미 『후한서』를 참고하여 편찬한 사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는 (가)-⑥의 “元初五年, 復與穢貊寇玄菟, 攻華麗城” 기사이다. 이를 저본으로 태조대왕 66년조에 “夏六月 王與穢貊襲漢玄菟 攻華麗城”¹⁹⁾ 기사가 작성되었다. 여기서 6월이라는 기사는 『후한서』 孝安帝紀 元初五年(118)조 “夏六月 高句驪與穢貊寇玄菟” 기사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앞의 기사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 三國有名未詳地分조에 ‘蚕支落’, ‘華麗城’이란 지명이 보이고 있다. 이 삼국유명미상지분은 고구려본기의 저본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후한서』 기사 (가)-③을 인용하였음이 확실한 앞의 蚕[蠶]支落이란 지명도 미상지분조에 함께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역시 미상지분조의 화려성도 태조왕 66년조 기사의 화려성과 동일하고, 그렇다면 (가)-⑥를 인용한 기사는 고구려본기 이전의 사서 편찬 때에 인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본기에서 찾았다고 있는 『후한서』 기사에 의거한 여러 기사는 고구려본기를 편찬할 때에 인용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모종의 史書에 인용되었던 기사를 고구려본기 찬자들이 그대로 전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고구려본기에서 찾았다는 『후한서』를 전거로 한 기사 중에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저본 자료에서 작성된 기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알 수 없다.

사료 (가)-② 기사는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15년 12월조에 인용되었다.

[대무신왕 15년] 十二月 遣使入漢朝貢 光虎帝復其王號 是立武八年也 (고구려본기)

19)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66년조.

다만 12월이라는 시점은 『후한서』 광무제기 建武8年(32) “十二月 高句麗王遣使奉貢”에 의거하여 보입된 것이다. 그리고 주목되는 점은 “是立武八年也”이라고 추가된 문장이다. ‘立武’는 희획로서 곧 ‘建武’이다. 이와 같이 사건 기사 뒤에 당시 중국 왕조의 연호를 병기한 사례는 고구려본기에서 3건이 보인다.²⁰⁾ 필자는 이 3건의 기사가 어느 시점에 고구려왕의 기년과 중국 왕조의 기년을 맞추는 과정을 반영한 혼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만약 이런 추정이 옳다면 『후한서』 기사의 인용이 고구려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사료 (가)-④⑥⑦⑧ 기사는 고구려본기 해당 기년에 인용되었다. 그중 (가)-⑧기사는 시점을 단지 “夏”라고 하였는데, 고구려본기에서 이 사건을 4월이라 기록한 것은 『자치통감』 권50 漢紀42 安帝 建光 元年조 기사에 의거하였다. 따라서 고구려본기의 이 기사의 작성은 『후한서』 기사를 인용한 시점과 4월을 추가한 고구려본기 편찬 시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가)-⑪⑫ 기사도 인용되었는데, 기년 문제를 따져볼 게 있다. 먼저 기사 ⑪의 경우 『후한서』 고구려전에서는 “質·桓之間”이라고 했지만, 이를 고구려본기에서는 태조대왕 94년(146년) 추8월조에 인용하고 있다. 즉 146년 8월에 비정한 이유는 “質·桓之間”을 質帝에서 桓帝로의 교체기로 해석해서 桓帝의 즉위 년월에 맞추었다고 추정된다. 즉 이 사건을 태조왕 94년(146) 8월조에 넣은 것은 오직 “質·桓之間”이라는 문장의 해석에 따른 것이지, 어떤 사료적 근거를 갖춘 것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사료 (가)-⑫ 建寧 2년(169년) 사건은 고구려본기에는 1년 전인 신대왕 4년(168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삼국지』에도 같은 건녕 2년조 기사가 있지만, 본기의 기사는 『후한서』 기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質·桓之間”과 建寧 2년 기사를 인용하는 기년 설정 방식을 통해 『후한서』 고구려전에서 인용한 여러 기년 기사들에 해당하는 고구려 국

20)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11년조. “遣使如魏，賀改年號。是景初元年也。”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59년조. “秋九月，民奴各等，奔降於魏，各賜田宅。是魏高祖延興元年也。”

내 전승 자료가 별도로 있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점은 『후한서』 기사가 고구려 시기 당대에 인용되지 않았음을 추정케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 사료 (가)에서 고구려본기에 인용되지 않은 기사는 (가)-⑤⑨⑩이다. 이 세 기사는 모두 고구려왕 및 고구려왕의 사망과 승계와 관련된 기사이다. (가)-⑤는 宮과 관련한 첫기사이고, ⑨는 宮의 사망과 子 遂城의 즉위와 관련된 기사이다. ⑩은 수성의 사망과 子 伯固의 즉위 기사이다. 즉 왕위 계승과 관련된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는데, 고구려 국내 전승 자료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다만 고구려본기에서 본문 휘로 『후한서』의 宮, 遂成, 伯固라는 이름이 모두 기재되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2)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고구려본기에 인용된 기사

『삼국지』는 陳壽(233년~297년)가 편찬한 사서로, 고구려에 수용되어 고구려 후기에는 『후한서』와 마찬가지로 주요한 서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사서이다. 『삼국지』 고구려전의 기사 또한 고구려인들이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성이 높다.

사료 (나)

①王莽初，發高句麗兵以伐胡，不欲行，彊迫遣之，皆亡出塞爲寇盜。（중략）②漢光武帝八年，高句麗王遣使朝貢，始見稱王。③至殲·安之間(106~107/126)，句麗王宮數寇遼東，更屬玄菟，玄菟太守姚光以宮爲二郡害，興師伐之。宮詐降請和，二郡不進。宮密遣軍攻玄菟，焚燒候城，入遼隧，殺吏民。後宮復犯遼東，蔡風輕將吏士追討之，軍敗沒。④宮死，子伯固立。⑤順·桓之間，復犯遼東，寇新安·居鄉，又攻西安平，于道上殺帶方令，略得樂浪太守妻子，⑥靈帝 建寧二年，玄菟太守耿臨討之，斬首虜數百級，伯固降，屬遼東。⑦[熹]平中 伯固乞屬玄菟，公孫度之雄海東也，伯固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助度擊富山賊，破之，⑧伯固死，有二子，長子拔奇，小子伊夷模。拔奇不肖，國人便共立伊夷模爲王。自伯固時，數寇遼東，又受亡胡五百餘家。建安(196~220)中，公孫康出軍擊之，破其國，焚燒邑落。拔奇怨爲兄而不得立，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還住沸流水。⑨降胡亦叛伊夷模，伊夷模更作新國，今日所在是也。拔奇遂往遼東，有子留句麗國，今古離加駿位居是也。⑩其後復擊玄菟，玄菟與遼東合擊，大破之。⑪伊夷模

無子，涇灌奴部，生子名位宮。伊夷模死，立以爲王，今句麗王宮是也。其曾祖名宮，生能開目視，其國人惡之，及長大，果凶虐，數寇鈔，國見殘破。今王生墮地，亦能開目視人。句麗呼相似爲位，似其祖，故名之爲位宮。位宮有力勇，便鞍馬，善獵射。⑫景初二年(238)，太尉司馬宣王率衆討公孫淵，宮遣主簿大加將數千人助軍，⑬正始三年，宮寇西安平，⑭其五年，爲幽州刺史 噴丘儉所破。語在儉傳。²¹⁾

고구려본기에서 『삼국지』 고구려전의 기사를 인용한 사례는 없다. 다만 고구려본기 동천왕 10년조 “春二月 吳王孫權 遣使者胡衛通和 王留其使 至秋七月 斬之 傳首於魏”라는 기사는 『삼국지』 권3 魏志 明帝 青龍4年(236) 조 “秋七月，高句麗王宮斬送孫權使胡衛等首，詣幽州”라는 기사와 내용이 통하는데, 동천왕 10년 2월조 기사는 독자 전승이고 7월조 기사도 문장에 차이가 있어서, 과연 『삼국지』 기사를 직접 인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²²⁾ 일단 고구려 독자의 전승 자료가 포함된 기사로 판단된다.

(나)-⑤ 順·桓之間의 기사는 『후한서』의 (가)-⑪“質·桓之間” 기사와 비교하면 “寇新安·居鄉” 기사가 추가된 점 외에 거의 동일한데 다만 順·桓之間은 그 시점이 너무 불분명해진다는 점에서 『후한서』 기사대로 質·桓之間의 잘못으로 추정된다. 위 『삼국지』 기사 (나)-①~⑥기는 『후한서』의 해당 기사와 내용이 서로 통한다. 고구려본기 혹은 그 저본 자료에서 『후한서』 고구려전 기사를 다수 인용하고, 『삼국지』 고구려전 기사를 인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표 2>를 보면 쉽게 설명된다.

<표 2> 『후한서』와 『삼국지』 고구려전의 후한-고구려 관계 기사 비교표

『후한서』 고구려전	『삼국지』 고구려전
和帝 元興元年(105)春，復入遼東，寇略六縣，太守耿夔擊破之，斬其渠帥。	至殤·安之間(106~107/126)，句麗王宮數寇遼東，更屬玄菟。

21) 『삼국지』 魏書30, 고구려전.

22) 진덕재는 고구려본기 찬자가 『삼국지』 기록을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앞의 책, 240쪽).

安帝 永初五年(111), 宮遣使貢獻, 求屬玄菟.	
元初 五年(118), 復與濶貊寇玄菟, 攻華麗城.	
建光元年春(121), 幽州刺史馮煥, 玄菟太守姚光, 遼東太守蔡諷等, 將兵出塞擊之, 捕斬濶貊渠帥, 獲兵馬財物. 宮乃遣嗣子遂成將二千餘人逆光等, 遣使許降, 光等信之, 遂成因據險阨以遮大軍, 而潛遣三千人攻玄菟·遼東, 焚城郭, 殺傷二千餘人. 於是發廣陽·漁陽·右北平·涿郡屬國三千餘騎同救之, 而貊人已去.	玄菟太守姚光以宮爲二郡害, 興師伐之. 宮詐降請和, 二郡不進. 宮密遣軍攻玄菟, 焚燒候城, 入遼隧 殺吏民.
夏, 復與遼東 鮮卑八千餘人攻遼隧, 殺略吏人. 蔡諷等追擊於新昌, 戰歿, 攻曹耿耗·兵曹掾龍端·兵馬掾公孫醜以身扞諷, 俱沒於陳, 死者百餘人.	後宮復犯遼東, 蔡風輕將吏士追討之, 軍敗沒,
秋, 宮遂率馬韓·濶貊數千騎圍玄菟. 夫餘王遣子尉仇台, 將二萬餘人, 與州郡并力討破之, 斬首五百餘級.	
是歲宮死, 子遂成立, 姚光上言欲因其喪發兵擊之 (下詳)	
遂成死, 子伯固立. 其後濶貊率服, 東垂少事. 順帝 陽嘉元年(132), 置玄菟郡屯田六部.	宮死, 子伯固立
質·桓之間(145~146/167), 復犯遼東 西安平, 殺帶方令, 掠得樂浪太守妻子.	順·桓之間(126~167), 復犯遼東, 寇新安·居鄉 又攻西安平, 於道上殺帶方令, 略得樂浪太守妻子
建寧二年(169),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數百級, 伯固降服, 乞屬玄菟云.	靈帝 建寧二年(169),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降, 屬遼東.

위 표에서 보듯이 『삼국志』의 관련 기사가 『후한서』에 비하여 매우 소략하거나 혹은 아예 관련 기사가 없는 사건도 적지 않으며, 같은 사건도 『후한서』에서는 기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기술이 많다. 따라서 중국

사서를 통해 고구려와 후한의 관계 기사를 보완하려면 『후한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그리고 위 표를 보면, 『삼국지』에서 遂成이란 고구려왕이 빠져 있는 이유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그러면 『후한서』에서 다루지 않는 시기인 그 이후의 기사 즉 (나)-⑦~⑯의 기사는 어떠할까? 그런데 고구려본기에서는 『삼국지』 고구려전의 관련 기사가 아니라 같은 내용의 다른 사서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일단 『삼국지』 기사를 고구려본기와 다른 중국 사서의 기사를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삼국지』 고구려전 기사와 다른 중국 사서 기사 비교표

『삼국지』	기타 중국 사서	『고구려본기』
靈帝 建寧二年(169),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降, 屬遼東. [熹]平中 伯固乞屬玄菟 公孫度之雄海東也, 伯固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助度擊富山賊 破之,	是年(建寧 2년), 高句麗 伯固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 助玄菟太守公孫度, 擊富山賊, 討之 『冊府元龜』 권973 외신부 助國討伐 睿帝 建寧 2년(169)조	(신대왕 5년) 王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 將兵助玄菟太守公孫度, 討富山賊.
伯固死, 有二子, 長子拔奇, 小子伊夷模. 拔奇不肖, 國人便共立伊夷模爲王. 自伯固時, 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家. 建安(196~220)中,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公孫康降, 還住沸流水.	其後王伯固死, 有二子, 長曰拔奇, 小曰伊夷模. 拔奇不肖, 國人共立伊夷模爲王. 自伯固時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家. 獻帝 建安中(196~220),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公孫康降, 還住沸流水. 『通典』 권186 東夷下고구려.	(고국천왕 즉위년조) 故國川王 或云國襄, 諱男武 或云伊夷謨, 新大王 伯固之第二子. 伯固薨, 國人以長子拔奇不肖, 共立伊夷謨爲王. 漢獻帝建安初,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 詣公孫康降, 還住沸流水上.
降胡亦叛伊夷模, 伊夷模更作新國, 今日所在是也. 拔奇遂往遼東, 有子		

留句麗國，今古離加駭位居是也。		
其後復擊玄菟，玄菟與遼東合擊，大破之。		
伊夷模無子，淫灌奴部，生子名位宮。伊夷模死，立以為王，今句麗王宮是也。其曾祖名宮，生能開目視，其國人惡之，及長凶虐，國以殘破。宮曾孫位宮亦生而視人，以其似曾祖宮，故名為位宮，高句麗呼相似為位，似其祖，故名之為位宮。位宮有力勇，便鞍馬，善獵射。	至裔孫宮，生而開目能視，國人惡之。及長凶虐，國以殘破。宮曾孫位宮亦生而視人，以其似曾祖宮，故名為位宮，高句麗呼相似為位。『위서』 고구려전	山上王 謚延優 [一名位宮] 故國川王之弟也 魏書云 朱蒙裔孫宮 生而開目能視 是為太祖 今王是太祖曾孫 亦生而視人 似曾祖宮 高句麗呼相似為位 故名位宮云 ([]은 분주)
景初二年(238)，太尉司馬宣王率衆討公孫淵，宮遣主簿大加將數千人助軍。	遣太傅司馬宣王率衆討公孫淵，位宮遣主簿·大加將兵千人助軍。『양서』 고구려전	(동천왕) 十二年，魏大傅司馬宣王，率衆討公孫淵，王遣主簿·大加，將兵千人助之。
正始三年，宮寇西安平，其五年，為幽州刺史母丘儉所破。語在儉傳。		
正始中，儉以高句麗數侵叛，督諸軍步騎萬人出玄菟，從諸道討之。句麗王宮將步騎二萬人，進軍沸流水上，大戰梁口，宮連破走。(하략) (관구검전)	正始三年(242)，位宮寇西安平，五年，幽州刺史母丘儉將萬人出玄菟討位宮，位宮將步騎二萬人逆軍，大戰於沸流。位宮敗走 (하략) 『양서』 고구려전	(동천왕)二十年，秋八月，魏遣幽州刺史母丘儉，將萬人，出玄菟來侵。王將步騎二萬人，逆戰於沸流水上，敗之，斬首三千餘級。(하략)

위 <표 3>에서 고구려본기의 인용 문장을 비교해보면 (나)-⑦에 해당되는 고구려본기 신대왕 5년조 기사는 『책부원구』 권973 외신부 助國討伐靈帝 建寧 2년(170년)조 기사를 인용하였다. 그 이유는 『삼국지』와 달리

기년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국지』 기사 내용에서 富山賊을 격파한 시점은 기술 순서대로라면 熹平中(172~177)에서 공손탁 사망인 204년 사이의 일로 볼 수 있다. 공손탁이 요동태수가 된 시점을 고려하면 189년(고국천왕 11년)에서 204년의 일이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에는 이 사건을 169년(신대왕 5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冊府元龜』 권973 外臣部 建寧 2년조 기사에 의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 『冊府元龜』의 기사의 기년은 『삼국지』 기사에 의하면 명백히 오류이다. 『삼국지』 고구려전의 “靈帝 建寧二年(169)” 이하 기사를 오독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본기 신대왕 4년(168), 5년조 기사도 주목된다.

- ① 신대왕 4年, 漢玄菟郡太守耿臨來侵 殺我軍數百人 王自降乞屬玄菟 (고구려본기)
- ② 신대왕 5년, 王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 將兵助玄菟太守公孫度 討富山賊 (고구려본기)

위 신대왕 4년조 기사 ①은 『삼국지』·『후한서』 등에는 이듬해인 169년(建寧2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년조 기사는 『후한서』 고구려전에 의거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冊府元龜』 권973 建寧 2년조(169) 기사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책부원구』의 편찬 시기(1013, 고려 현종4)와 수용 시기(11세기 말)를 고려하면, 이 5년조 기사와 4년조 기사는 그 인용, 편찬 시기를 달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신대왕 4년 기사가 본래 인용된 중국 사서와 1년의 차이를 보이게 된 것도 4년조와 5년조가 시기를 달리하며 인용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고구려본기 편찬시에 5년조 기사를 새로 보입하면서, 앞의 기사와 년대가 중복되게 되자, “玄菟郡太守耿臨來侵~” 기사를 1년 앞으로 소급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삼국사기』 권45 明臨荅夫傳과 고구려본기 신대왕 8년조 기사를 비교해보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²³⁾ 따라서 고구려본기 편찬의 저본 자료에 이미 중국측

23)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임기환, 앞의 논문 (2006), 31쪽의 서술을 참고 바람.

사서에 의거한 기사 보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중국 사서 기사의 인용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도태수 耿臨 기사는 저본 자료에 이미 인용되어 있었으며, 현도태수 公孫度 기사는 『책부원구』 편찬 시점인 1013년 이후여야 하기 때문에 고구려본기 편찬 시에 인용되었다.

(나)-⑧은 내용상으로는 비슷하지만,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즉위년(179년) 문장 표현을 보면 『通典』 권186 東夷下 고구려조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다. (나)-⑪과 관련된 내용을 고구려본기에서는 『위서』를 인용한다고 書名까지 밝히고 있지만 『삼국지』의 내용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다. (나)-⑫는 문장은 거의 비슷하지만 太尉, 大傅의 표기로 의해 고구려본기 동천왕 12년조 기사는 『양서』 고구려전의 기사를 인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동천왕 20년조 기사도 『삼국지』 관구검전 기사가 아니라 『양서』 고구려전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나)-⑨, ⑩에 해당되는 기사는 고구려본기에서 인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 기사가 기년 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구려본기 혹은 그 저본 자료에서 인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본기에서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인용한 기사는 없다.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삼국지』 고구려전 기사가 아니라, 위 <표 3>에서 보듯이 『책부원구』·『통전』·『위서』·『양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구려본기에서 고구려왕의 謚로 기록하고 있는 伊夷謨, 位宮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사서는 『삼국지』 고구려전이다. 즉 고구려본기의 저본 자료에서 伊夷謨와 位宮이란 謚의 경우에만 『삼국지』 고구려전에 의거한 것일까? 그런데 『삼국지』 이후 고구려시기에 편찬된 『위서』 고려전에서는 位宮이란 이름이, 『양서』 고려전에서는 伊夷謨와 位宮이란 이름이 나타난다. 아울러 『위서』와 『양서』 고려전에는 해당 시기상 『삼국지』 이후의 고구려 왕계로서 乙弗利, 釗[劉], 安, 璞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위서』와 『양서』 고려전 기사를 고구려본기에서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IV. 伊夷謨, 位宮, 乙弗利, 釗[劉]를 반영하고 있는 『魏書』·『梁書』 고려전

(1) 『魏書』 고려전에서 고구려본기에 인용된 기사

『魏書』는 北齊의 魏收(507~572년)가 554년 편찬한 사서로 아마도 고구려에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魏書』는 고구려본기 편찬 때에 주요하게 다루어진 사서이다. 특히 고구려본기 건국 전승의 일부 문장은 『위서』 고구려전의 기사를 기본으로 하여 찬술된 것으로 판단되며,²⁴⁾ 毛屯谷, 卒本川의 지명에 대해서는 『위서』 고구려전 기사를 대교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²⁵⁾ 또한 山上王의 즉위와 관련해서는 『위서』 기사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위서』 기사 중 건국전승은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고구려 전기의 왕계 및 대외관계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사료 (다)

(전략) ①朱蒙至紇升骨城，遂居焉，號曰高句麗，因以爲氏焉。初，朱蒙在夫餘時，妻懷孕，朱蒙逃後生一子，字始閻諧。及長，知朱蒙爲國主，卽與母亡而歸之，名之曰閻達，委之國事。朱蒙死，閻達代立。閻達死，子如栗代立。如栗死，子莫來代立，乃征夫餘，夫餘大敗，遂統屬焉。②莫來子孫相傳，至裔孫宮，生而閉目能視，國人惡之。及長凶虐，國以殘破。③宮曾孫位宮亦生而視，人以其似曾祖宮，故名爲位宮，高句麗呼相似爲位。位宮亦有勇力，便弓馬。④魏 正始(240~248)中，入寇遼西安平，魏正始中入寇遼西安平，爲幽州刺史毋丘儉所破。⑤其玄孫乙弗利，利子釗，烈帝時與慕容氏相攻擊。(중략) ⑥世祖時，釗曾孫璉(하략)²⁶⁾

사료 (다)에서 보듯이 『위서』 고려전에는 『삼국지』, 『후한서』 고구려전

24) 임기환, 「고구려 건국전승의 始祖 出自와 北夫餘, 東夫餘」, 『고구려발해연구』 54 (2016), 167-168쪽.

25) 고구려 건국 전승에서 다음의 기사가 대표적이다. “至卒本川 [魏書云 至紇升骨城]”, “朱蒙行至毛屯谷 [魏書云 至普述水]” 등.

26) 『魏書』 권100 고려전.

에 보이지 않은 고구려 초기 건국전승과 초기 왕계를 전하고 있다. 朱蒙-子 閻達[閻譜]-子 如栗-子 莫來 왕계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왕계도 전하는데, (다)-② “莫來子孫相傳, 至裔孫宮”이라고 하여 宮의 존재를, 이어서 (다)-③ “宮曾孫位宮”을 언급하고 있다. 宮과 曾孫인 位宮의 왕계는 곧 『삼국지』 고구려전의 왕계 기사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다)-⑤에 보이는 位宮의 玄孫 乙弗利-子 釤-曾孫 磬이란 왕계는 새로운 정보에 의한 것이다. 『위서』에 보이는 고구려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435년 고구려에 사절로 방문한 북위 李敖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통상 추정하고 있다. 宮 이전의 초기 왕계는 중요한 기사이지만, 본 연구의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위서』고구려전의 새로운 정보가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만 검토하도록 하겠다.

『위서』의 초기 왕계 기사는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공식 왕계와는 다른 왕계가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²⁷⁾ 하지만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왕비문에 추모왕-유류왕-대주류왕-17세손인 광개토왕이라는 공식 왕계가 표방된 이상 북위의 공식 사절이 고구려로부터 공식 경로로 입수한 정보라고 한다면 광개토왕비문에 기록된 왕계가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서』의 편찬에 반영된 정보는 그 이전 고구려와 밀접하게 교류하였던 北燕에서 수집한 고구려에 대한 정보가 북위로 전해지고 이 정보가 『위서』의 편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위서』의 새로운 정보에서 관등 관련 기사 등은 매우 소략하다. 게다가 왕계 기사에서도 宮과 曾孫 位宮에 대한 왕계는 새로운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삼국지』 기사를 전재한 것에 불과하다.²⁸⁾ 그리고 “位宮

27) 이에 대한 여러 견해에 대한 정리는 여호규, 「광개토왕릉비의 건국설화와 왕위계승 기사 검토」, 『광개토왕비의 탐색』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5), 192-193쪽 참조.

28)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는 『위서』에 보이는 왕계가 당시 고구려로부터 전해진 왕계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지만, 구체적 근거는 없다. 당시 『위서』 편찬자가 갖고 있는 정보는 궁-증손 위궁/위궁-현손 을불리/을불리-釤(고국원왕)-증손 磬(장수왕)이라는 세가지 정보일 뿐이다. 이중 궁-증손 위궁이란 정보는 『삼국지』에 의거한 것이며, 위궁에서 磬까지의 관계를

玄孫 乙弗利-釁-曾孫 磬”라는 왕계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즉 『삼국지』 이후의 왕계를 기록하는 기준이 乙弗利(미천왕)-釁(고국원왕)으로서 이 두 왕은 前燕과의 관계에서 전연족이 특별하게 기억할 만한 왕이기 때문이다. 이점은 아래에서 보듯이 『양서』 고려전에 반영된 기사를 보아도 잘 드러난다. 왕계 뿐만 아니라 乙弗利와 釁, 그리고 전연, 후연 등 사이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 사서로는 유일하게 “句驪王 安”(광개토왕)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양서』의 이러한 정보 역시 전연과 후연과 남조 사이의 교류를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별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 위 기사 중에서 고구려본기에 인용된 문장은 (다)-②③이다. 고구려본기에서는 이 기사를 산상왕의 謚인 位宮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검토는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인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검토하도록 하겠다. 산상왕 즉위년조의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山上王 謚延優 [一名位宮] 故國川王之弟也。魏書云, 朱蒙裔孫宮, 生而開目能視, 是爲太祖, 今王是太祖曾孫, 亦生而視人, 似曾祖宮, 高句麗呼相似爲位, 故名位宮云。

고구려본기에서는 『위서』를 인용하면서 궁을 “朱蒙裔孫”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다)-②에서는 “莫來子孫相傳, 至裔孫宮,”이라고 하여 막래가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면 왜 고구려본기 인용문에서는 본래의 문장을 변형하여 “朱蒙裔孫宮”이라고 하였을까?²⁹⁾ 현재 자료상에서 그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위 인용 문장을 작성한 찬자는 『위서』 기록 중 (다)-①에 보이는 초기 왕계의 謚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莫來子孫

보여주는 2개의 정보가 『위서』 편찬자가 갖고 있는 정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서』 편찬자가 고구려 전체 왕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井上直樹, 앞의 논문 (2021).

29) 김성한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필자와는 설명이 다르다. 김성한, 「中國史書에 나타난 高句麗 初期 王系와 宮의 肅孫化」, 『고구려발해연구』 66 (2020), 19쪽 주42.

相傳, 至裔孫”이라는 문장을 초기 왕계 중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시조 朱蒙의 裔孫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고구려본기에는 『위서』 고구려전에 보이는 초기 왕계의 왕 이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고구려인들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³⁰⁾

다음 (다)-⑤에 보이는 위궁의 玄孫 乙弗利와 그의 아들 釗라는 이름이 고구려본기 기사에 반영되었다고 볼 가능성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고구려본기에는 미천왕의 謚가 ‘乙弗’이고 고국원왕의 경우에는 분주 이름이 ‘劉’로 되어 있다. 고구려본기의 ‘乙弗’이 『위서』의 乙弗利 기사를 수용한 것인지, 고구려 국내 전승 자료에 ‘乙弗’이라는 謚가 전해지고 있으며, 당시 乙弗 이란 이름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위서』 편찬 자료에 반영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위서』에는 乙弗利의 아들이 ‘釗’라고 하였는데, 고구려본기에는 분주에 ‘劉’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劉’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양서』 고려전 관련 기사를 검토하자.

『양서』는 姚思廉에 의해 629~636에 편찬되었기에 고구려에 수용되어 고구려인들이 『양서』 고려전의 기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일단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분만 살펴보자.

사료 (라)

① 光武八年(32), 高句驪王遣使朝貢, 始稱王. 至殤·安之間, 其王名宮, 數寇遼東, 玄菟太守蔡風討之不能禁. 宮死, 子伯固立. 順·和之間, 復數犯遼東寇抄, 靈帝 建寧二年,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乃降屬遼東. 公孫度之雄海東也, 伯固與之通好. ② 伯固死, 子伊夷摸立. 伊夷摸自伯固時已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戶. 建安(196~219)中,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 降胡亦叛伊夷摸, 伊夷摸更作新國. 其後伊夷摸復擊玄菟, 玄菟與遼東合擊, 大破之. ③ 伊夷摸死, 子位宮立. 位宮有勇力, 便鞍馬, 善射獵. 魏 景初二年, 遣太傅司馬宣王率衆討公孫淵, 位宮遣主簿·大加將兵千人助軍. 正始三年(242), 位宮寇 西安平, 五年, ④ 幽州刺史毋丘儉將萬人出玄菟討位宮, 位宮將步騎二萬人逆軍, 大戰於沸流. 位宮敗走, 儉軍追至 峴懸車東馬, 登丸都山, 屠其所都, 斬首虜萬餘級, 位宮單將妻息遠竄. 六年, 儉復討之, 位宮輕將諸加奔沃沮, 儉使將軍王頃追之, 絶沃沮千餘里, 到肅慎南界, 刻石紀功, 又到丸都山, 銘不耐城而還. 其後,

30)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復通中夏 ⑤晉 永嘉(307~312)亂, 鮮卑 慕容廆據昌黎 大棘城, 元帝授平州刺史. ⑥句驪王 乙弗利頻寇遼東, 麮不能制. 弗利死, 子劉代立, (중략) ⑦孝武太元十年(385), 句驪攻遼東·玄菟郡, 後燕 慕容垂遣弟農伐句驪, 復二郡. ⑧垂死, 子寶立, 以句驪王 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⑨至孫高璉 (하략)

『양서』 고구려전 기사의 앞부분인 (라)-①②③은 전적으로 『삼국지』 고구려전 기사를 발췌하여 전재하고 있으며. 정시 5년 기사는 『삼국지』 毌丘儉傳에서 발췌하였다.³¹⁾ 물론 약간의 출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太傅司馬宣王”로 바뀐 부분이 그러하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고구려본기 동천왕 12년조 해당기사가 『양서』를 인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의 하나는 『삼국지』 고구려전에 의거하다 보니, 당연히 『후한서』에 보이는 遂成 존재가 누락되어 있다. 梁 시기는 이미 『후한서』가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양서』 고려전 편찬자는 『후한서』 고구려전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이다. 그래서 고구려 왕계는 宮-伯固-伊夷模-位宮이다. 따라서 (라)-①②는 고구려본기의 인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고구려본기는 『양서』 고구려전에서 (라)-④ 기사 중 “到肅慎南界, 刻石紀功, 又到丸都山, 銘不耐城而還.” 문장을 동천왕 20년 10월조 기사에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得來 관련 문장은 『자치통감』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³²⁾ 국내 전승기사 뒤에 연결되어 있는 중국 사서 인용 문장 중에서 『자치통감』 기사의 인용은 당연히 고구려본기 편찬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양서』 문장을 인용한 시기는 불분명하다. 『양서』와 『자치

31)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에 대해서는 전상우,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原典)과 편찬 방식」, 『동북아역사논총』 68 (2020) 참조.

32)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0년 10월조 “魏將到肅慎南界, 刻石紀功, 又到丸都山, 銘不耐城而歸. 初其臣得來, 見王侵叛中國, 數諫, 王不從. 得來嘆曰, 立見此地, 將生蓬蒿. 遂不食而死. 母丘儉令諸軍, 不壞其墓, 不伐其樹, 得其妻子, 皆放遣之”

전덕재도 『양서』와 『자치통감』 기사를 인용하였다고 파악하였다(앞의 책 [2018], 241쪽).

통감』에서 인용한 문장은 『삼국지』 관구검전의 문장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지』 관구검전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고구려본기 혹은 그 저본 자료의 편찬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위 기사 외에 고구려본기에서 인용한 기사는 찾아지지 않는데, 무엇보다 『위서』 기록과 마찬가지로 乙弗利, 劉라는 고구려왕의 謂가 주목된다. 특히 『위서』의 ‘釁’과 달리 『양서』 고구려전에는 ‘劉’로 되어 있으며, 모든 판본이 동일하다.³³⁾ ‘釁’라는 이름은 『위서』 이외에도 『晉書』 권109 「慕容皝載記」에도 ‘釁’라고 되어 있고, 『위서』 백제전에도 고국원왕을 ‘釁’라고 지칭하고 있다. 어느 표기가 옳으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없이 고구려본기의 ‘劉’라는 謂는 『양서』 고려전 기록에 의거하였을 가능성성이 있다. 물론 『삼국사기』 정덕본의 판각상 오류일 수도 있다. 그 이전의 판본을 참고했을 『三國史節要』에는 ‘釁’로 되어 있는데, 본래 고구려본기에 ‘釁’라고 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삼국사절요』 편찬자가 교정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일단 현행 정덕본 고구려본기 표기인 ‘劉’가 오각이 아니라면 고구려본기의 ‘劉’라는 기록은 『양서』 고려전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서』의 고구려 왕계 정보는 왕명에 대해서는 『위서』와 유사한데, 乙弗利(미천왕)가 기준이 되면서 乙弗利와 子 劉에 대한 정보만 일치할 뿐 劉[釁]와 高璉의 관계는 불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양서』에는 다른 사서에는 보이지 않는 고구려왕 安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 396년에 모용보가 즉위한 후 고구려왕 安을 책봉하였기에 기년상으로 安은 광개토왕으로 비정된다. 385년 이후의 기록은 아마도 후연에서 東晉측에 전해진 정보가 아닐까 싶다. 후연이 고구려왕을 책봉한 기록은 후연이 동진에 자기의 위상을 과장하고 강조하기 위한 외교적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양서』에는 “至孫高璉(장수왕)”라고 하여 句驪王 安(광개토왕)과 高璉의 관계를 父子 관계가 아니라 불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진 혹은 송과 직접 교류한 장수왕 초반의 정보가 오히려 불확실하였음을 반영한다.

33) 趙燦鵬, 『梁書諸夷傳異文比勘』(濟南市: 齊魯書社, 2014), 91쪽.

이는 『양서』의 乙弗利, 劉, 安에 대한 정보가 전연, 후연과의 교류를 통해 획득한 정보였음을 방증한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고구려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후한서』·『삼국지』·『위서』·『양서』에서 인용한 기사는 고구려본기 편찬 때 인용된 기사도 있을 테지만, 분명 그 이전의 저본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 확실한 기사도 다수이다. 다만 그 저본 자료의 범위가 「구삼국사」를 비롯하여 고구려시기까지 소급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각 기사의 인용시기가 언제인지 를 파악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어쨌든 앞장에서 고구려시기에 인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기사를 따로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고구려왕의 謚 경우에는 후대에 인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고구려 당대에 인용하였을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자.

V.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중국 史書의 謚 자료 구성 과정

고구려시기 당대에 중국 왕조로부터 『삼국지』·『후한서』·『위서』·『양서』 등을 수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사서의 고구려전 등에서 전하는 왕계가 고구려본기에서 전하고 있는 고구려 자체 왕계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하다. 고구려에서도 국초부터 王系를 비롯한 중요한 사건, 사실 등을 기록 정리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서를 편찬하였다.³⁴⁾ 따라서 이 과정에서 중국 사서의 기록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사서에 보이는 고구려왕의 謚가 고구려본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 당시 혹은 그 이후 어느 시기엔가 두 왕계를 서로 대응하여 정리하였음은 분명하다. 일단 왕계의 대응 과정을 추정해보자.

34)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11년 1월조 “詔大學博士李文眞, 約古史爲新集五卷. 國初始用文字時, 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

앞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삼국지』와 『후한서』 고구려전에 보이는 고구려 왕계에는 차이가 있다. 즉 『삼국지』가 宮-伯固 임에 반하여 『후한서』는 宮-嗣子 遂成-伯固로서 遂成의 존재가 추가되면서 왕대 수 1대가 늘어났다. 그리고 『삼국지』 고구려전에서는 다루고 있는 시기범위상 伯固 이후의 왕계인 伯固-伊夷模-位宮 왕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宮-伯固-伊夷模-位宮이란 왕계에 따라 位宮의 曾祖가 宮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位宮이 “今句驪王” 즉 『삼국지』 고구려전 관련 기록 당시의 고구려왕임도 기술하고 있다.

사료 (가), (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宮은 『삼국지』에는 嫡帝·安帝 기간 즉 106~107년 이후에 그 활동상이 보이고 있고, 『후한서』에는 建武 25년(49)~元興 원년(105)년 사이에 즉위하여 建光 원년(121년)에 사망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후한서』에서 “句驪王 宮 生而開目能視” 云云의 문장은 『삼국지』의 문장을 전재함이 분명한데, 『삼국지』에서 이 기사는 位宮에 대해 서술하면서 그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다시 말해서 『후한서』 편찬자들도 위궁에 대해서는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궁-위궁의 관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궁에 대한 설명에서 이런 내용을 추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宮의 활동 시기는 고구려본기 왕계에 의하면 태조대왕에 해당하며, 고구려본기에는 태조대왕의 謱로 宮을 기록하고 있다.

遂成은 121년에 宮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122년에 현도군에 내항하였다는 기년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 遂成은 고구려본기에는 次大王인데, 차대왕이 태조대왕의 선양으로 왕위에 오른 시점이 146년으로 되어 있다. 121년에는 11월에 태조대왕이 王弟 遂城으로 하여금 “統軍國事”하게 한 시점이다. 왕위계승의 시점이 『후한서』와 고구려본기에 차이가 있다. 다만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수성이 “統軍國事”하는 시점과 『후한서』에서 왕위에 오른 시점이 일치하고 있어, 후한측에서 오해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⁵⁾

35) 여호규, 「고구려 초기 왕위계승원리와 古鄒加」, 『동방학지』 150 (2010), 175쪽;

그런데 『후한서』(사료 가)를 보면 수성의 활동과 궁의 활동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建光 元年(121) 봄에는 “宮乃遣嗣子遂成將二千餘人”이라고 하였고, 가을에는 “宮遂率馬韓·漢貊數千騎圍玄菟”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후한이 고구려 군사활동의 주체가 宮인지, 遂成인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면 121년에 宮의 사망과 遂成으로의 왕위 계승이 사실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고구려 본기의 저본 자료는 이 부분에서 『후한서』 기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삼국지』에는 遂成이란 존재가 없이 宮에서 伯固로 왕위 계승을 기술하고 있다. 伯固는 고구려본기에는 新大王이다. 백고의 계승 시점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백고의 즉위 이후 順·桓之間(126~167)에 “復犯遼東, 寇新安·居鄉”과 서안평 공격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서안평 사건은 『후한서』에서는 質·桓之間(145~146/167) 사건으로 역시 백고 즉위 이후의 사건이다. 『후한서』 기사에서도 遂成은 왕위계승 기사 이외에는 사망 때까지 아무런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즉 그 존재감이 약했기 때문에 『삼국지』를 편찬할 때, 遂成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宮에서 伯固로 계승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겠다. 『후한서』 기사를 보면 伯固대에는 陽嘉元年(132년), 質·桓之間(145~146/166년), 建寧2年(169), 熹平中(172년~177년), 公孫度(~204)가 요동에 근거하는 시점의 기사가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즉 후한 입장에서는 宮이라 존재와 伯固라는 존재는 뚜렷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 遂成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궁(태조대왕)에서 수성(차대왕)으로 왕위 계승한 해가 146년이고 수성에서 백고(신대왕)으로 왕위 계승한 해는 165년이다. 따라서 『후한서』 기사에서 陽嘉元年(132년), 質·桓之間(145~146/166년)의 사건은 태조대왕대이고, 建寧2年(169) 이후 사건은 신대왕대이다. 즉 『후한서』 기사에 보이는 궁-수성-백고 대의 사건 기사는 고구려 자체의 왕계 기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에서 이러한 차

노태돈, 『고구려사연구』(서울: 사계절, 1999), 81-82쪽.

이를 의식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즉 구체적인 사건 기사를 대응시키기 보다는 단지 궁=태조대왕, 수성=차대왕, 백고=신대왕이라는 3왕의 왕계만을 차례로 대응시킨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삼국지』 사료 (나)에 의하면 伯固의 2子인 伊夷模가 왕위 계승하고 있다. 伊夷模 대의 사건으로는 이이모의 즉위 사건에 이어 建安(196~220) 중에 公孫康의 공격 기사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중요한 기사로는 이 때 공손강에 투항하였던 발기와 소노가가 “還住沸流水”하자 伊夷模가 “更作新國”하였는데, 그 치소가 위궁 대의 도읍 소재지라는 기사이다.(사료 나-⑧⑨) 伊夷模의 뒤를 이어 位宮이 즉위하였는데, 『삼국지』에 의하면 정 시 5년(244) 유주자사 卍丘儉의 공격을 받았던 당시의 왕이다. 위궁 때의 사건으로는 景初 2년(238) 공손연 공격, 正始 3년(242) 서안평 공격, 5년의 관구검 원정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신대왕(伯固)에서 고국천왕(伊夷模)로의 계승은 179년이고, 고국천왕에서 산상왕(位宮)으로의 계승은 197년이며, 산상왕에서 동천왕으로 왕위계승은 227년이다. 따라서 기년상으로 보거나 고구려 자체 전승 기록과 『삼국지』의 대응 기사 내용으로 보더라도 建安(196~220) 중에 일어난 발기와 이이모 분쟁은 산 상왕대로 대응되고, 관구검의 침공은 동천왕대에 맞추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본기에서 왕의 譚는 사건 기년에 관계없이 단지 王系에만 맞추어 대응하였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최초로 고구려 자체 왕계와 중국 사서에 전하는 왕계의 대응은 단지 해당 왕대의 사건 등을 무시하고 단지 왕계 자체의 대응에 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한서』와 『삼국지』 고구려전에 의해 宮-遂成-伯固-伊夷模-位宮이라는 5대에 걸쳐 부자상속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王系가 등장한다. 이 왕계를 고구려본기에서는 대조대왕-차대왕-신대왕-고국천왕-산상왕이라는 연속되는 5王系에 대응시켰던 것이다. 그 대응의 직접적인 증거가 중국 사서에 보이는 고구려왕의 譚가 고구려본기에는 본문 譚(宮-遂成-伯固), 혹은 분주 譚(伊夷模-位宮)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에는 고국천왕=伊夷模, 산상왕=位宮이라는 대응에 대해서는 중국 사서의 기사를 직접 인용한 기사가 있다. 이를 검토하면 왕

의 휘를 대응시키는 과정이 드러날지도 모르겠다. 먼저 고구려본기 고국 천왕 즉위년조 기사이다.

사료 (마)-①

故國川王 [或云國襄] 諱男武 [或云伊夷謨] 新大王伯固之第二子 伯固薨 國人以長子拔奇不肖 共立伊夷謨爲王 漢獻帝建安初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 各將下戶三萬餘口 詣公孫康降 還住沸流水上 ([]은 분주임)

위 사료에서 “伯固薨~還住沸流水”의 기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지』의 해당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기사가 고국천왕의 즉위 기사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문장이 고구려 국내 전승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용 전거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이 일단 유의된다. 그런데 보다 정확한 문자 비교를 위해서 『삼국지』의 해당 기사 및 『통전』 권186 변방2 동이 고구려조의 해당 기사를 살펴보자.

사료 (마)-②

伯固死，有二子，長子拔奇，小子伊夷模。拔奇不肖，國人便共立伊夷模爲王。建安(196~220)中，公孫康出軍擊之，破其國，焚燒邑落。拔奇怨爲兄而不得立，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還住沸流水。（『삼국지』 고구려전）

사료 (마)-③

其後王伯固死，有二子，長曰拔奇，小曰伊夷模。拔奇不肖，國人共立伊夷模爲王。自伯固時數寇遼東，又受亡胡五百餘家。獻帝 建安中(190~220)，拔奇怨爲兄而不得立，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 詣公孫康降，還住沸流水。（『通典』 고구려조）

獻帝, 消奴加, 公孫康 이란 문장 표현에서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즉위년조 본문 기사 (마)-①은 『삼국지』 기사 (마)-②를 인용하였다기보다는 문장의 유사성으로 보아 『通典』 기사 (마)-③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⁶⁾ 그런데 『通典』의 “建安中”이란 기록을 고구려본기에서는 “建安初”로 바꾸

36) 신동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인용자료에 관한 일고」, 앞의 책 (1995), 50쪽.

었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추론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즉 고구려본기에서 伊夷謨를 고국천왕에 대응시켰는데, 建安 연호의 시작은 190년으로 고국천왕 12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이모의 즉위 기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건안초”로 바꾸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통전』 혹은 『삼국지』의 문장을 인용한 편찬자는 고국천왕과 이이모의 대응에서 기년이 잘 맞지 않고 있음을 충분히 의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이 고구려본기 본문 기사로 인용되는 과정을 추정해 보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伊夷謨’의 표기에서 고구려본기의 분주에는 ‘謨’인데, 『삼국지』나 『통전』의 기사에는 ‘模’이라는 점이다. 즉 고구려본기의 위 문장은 『통전』 혹은 『삼국지』의 해당 기사를 인용하면서도 굳이 ‘伊夷模’를 ‘伊夷謨’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이는 앞 문장인 “諱男武 [或云伊夷謨]”라는 분주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改書한 것으로 보인다.³⁷⁾ 이 때 『통전』을 인용하면서 동시에 분주와 위 문장의 ‘伊夷謨’를 동시에 개서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즉 『통전』으로부터 위 문장을 인용할 때 이미 男武를 ‘伊夷謨’로 표기한 어떤 저본 자료가 있었으며, 그 저본 자료에 대해 신뢰성을 갖고 있어서 『통전』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伊夷謨’로 개서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정리된다. (1단계) 고국천왕의 이름을 ‘伊夷謨’로 표기한 시기, (2단계) 이 표기에 근거하여 『삼국지』 혹은 『통전』 등 기사를 인용하면서, 해당 기사의 ‘伊夷模’를 ‘伊夷謨’로 개서한 시기이다. 그러면 2단계는 언제일까? 고구려본기의 이 문장이 『통전』 기사에 의거한 것이라면, 『통전』의 편찬 시점인 801년 이후가 될 터이니, 고구려 멸망 이후이다.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① 고구려본기 편찬자에 의해 인용되었을 가능성, ② 고구려본기 편찬시 저본 자료에 이미 인용되었을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본기 산상왕 즉위년조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37) 신동하, 위의 논문, 36쪽 주17.

사료 (바)-①

山上王 謹延優 [一名位宮] 故國川王之弟也 魏書云 朱蒙裔孫宮 生而開目能視是爲太祖 今王是太祖曾孫 亦生而視人 似曾祖宮 高句麗呼相似爲位 故名位宮云 ([]은 분주임)

위 기사에서도 分註인 “一名位宮”과 연관되어 “魏書云” 이하의 문장이 인용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분주 謹를 근거로 “魏書云…”이란 기사를 보입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전의 저본 자료에서부터 있었던 “魏書云” 이하의 문장을 근거로 거꾸로 “一名位宮”이란 분주를 작성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사료 (마) 고국천왕 즉위년조의 예로 보아 분주가 먼저 작성되었거나, 아니면 동시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위서』를 인용했다는 위 기사는 정작 『위서』 기사와 다소 다르며, 혹은 『삼국지』 기사의 요소도 반영되어 있다.

사료 (바)-②

至裔孫宮，生而開目能視，國人惡之。及長凶虐，國以殘破。宮曾孫位宮，亦生而視人。以其似曾祖宮，故名爲位宮，高句麗呼相似爲位。（『위서』 고려전）

사료 (바)-③

伊夷模無子，涇灌奴部，生子名位宮。伊夷模死，立以爲王，今句麗王宮是也。其曾祖名宮，生能開目視，其國人惡之，及長大，果凶虐，數寇鈔，國見殘破。今王生墮地，亦能開目視人。句麗呼相似爲位，似其祖，故名之爲位宮。（『삼국지』 고구려전）

위 세 문장을 비교해보면 고구려본기의 문장은 『위서』를 기본으로 하되 약간의 증감이 있다. 먼저 “國人惡之。及長凶虐，國以殘破。”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은 생략했다. 그리고 “是爲太祖 今王是太祖曾孫”라는 문장이 추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삼국지』의 “今句麗王宮是也”，“今王”이란 문장 서술을 원용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쨌든 이러한 문장 인용방식은 저본 자료를 충실히 따르는 『삼국사기』 편찬 태도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위서』의 인용 시기는 『삼국사기』 편찬 이전 즉 고구려본기의 저본 자

료가 된 모종의 사서를 편찬할 때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때 굳이 “是爲太祖 今王是太祖曾孫”라는 문장을 추가할 이유를 추측하기 어려운데, 혹 『위서』를 인용하는 사서의 저본 자료에 『삼국지』 기사를 인용하여 작성한 문장이 있었고, 이를 『위서』를 인용하는 문장으로 개변하는 과정에서 『삼국지』의 기사와 같은 흔적이 남게 된 것은 아닐까 억측해본다. 이런 추정이 옳다면 고구려본기 이전에 2단계의 기사 인용하는 과정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사료 (바)-① 기사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太祖(大王)과 宮이 동일 인물임이 전제되어 있고, 둘째 태조대왕이라는 왕호가 성립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태조대왕과 궁을 동일 인물로 보는 구체적인 기사로서 고구려본기 태조대왕 94년조 분주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案海東古記，高句麗國祖王高宮，以後漢建武二十九年癸巳卽位，時年七歲，國母攝政。至孝桓帝卒初元年丙戌，遜位讓母弟遂成。時宮年一百歲，在位九十四年。

海東古記라는 사서에는 國祖王 즉 태조대왕이 高宮이며 그의 동생이 遂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해동고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지만, 위 기사의 國祖王의 재위기간과 기년, 나이가 현 고구려본기와 동일하다. 고구려본기 저본 자료의 하나임은 분명한데, 일단 國祖王이란 표기에서 분주계 왕호와 관련된 사서일 것이다. 물론 <표 1>에서 보듯이 『삼국유사』 왕력에는 본문계 왕호를 사용하면서 유독 國祖王만 분주계 왕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동고기에서 사용한 고구려 왕호가 『삼국유사』 왕력과 유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호에서 본문계 왕호가 분주계 왕호보다 늦은 시기에 만들어지고, 그 시점을 필자는 新集을 편찬 때로 보았다.³⁸⁾ 어쨌든 위 (바)-① 기사는 두가지 점을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작성된 기사이다. 즉 고구려 왕계와 중국 사서의 宮이란 존재를 대응시킨 이후, 그리고 태조대왕이라는 왕호가 사용된 이후에 작성되

38) 임기환, 앞의 논문 (2002), 37-39쪽.

었다.

위 사료 (마)-①와 (바)-①는 각각 해당 왕의 즉위년조 기사를 구성한다는 점, 분주에 기록된 譚와 연관되는 중국 사서의 기사를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원 사서명을 밝혔느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볼 때 이 두 기사의 인용은 서로 다른 저본 자료 혹은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물론 두 기사를 작성한 시기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사료 (바)-①에서 『위서』를 인용하면서 “是爲太祖 今王是太祖曾孫”과 같은 문장의 변개가 있었다는 점에서 별다른 근거는 없지만 좀더 이를 시기에 인용되었을 가능성은 열어두고자 한다.

그러면 사료 (마)-①와 (바)-①를 통해 이 기사가 작성되는 과정을 고구려본기 편찬으로부터 거꾸로 추적해보자.

(4)시기 : 고구려본기의 편찬

(3)시기 : 사료 (마)-① 기사의 작성 - 저본 자료 ⑩

(2)시기 : 사료 (바)-① 기사의 작성 - 저본 자료 ⑮

(1)시기 : 분주 휘 伊夷謨 / 位宮의 작성 - 저본 자료 ⑦

위 시기 중에서 (3)-(4), (2)-(4)의 선후 관계는 분명하지만 (2)와 (3) 시기의 선후 관계는 불분명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료 (마)-①이 『통전』 기사를 인용한 것이라면 801년 이후, 즉 고구려 멸망 이후이다. 사료 (바)-① 기사의 작성은 『위서』의 인용이니 554년 이후가 될 터이지만, 문장 중에 작성 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가 바로 ‘太祖’이다. 필자는 태조대왕 왕호의 성립을 영양왕 11년(600) 新集 편찬 때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료 (바)-① 기사의 작성은 新集 편찬을 포함하여 그 이후의 사서 편찬 때로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사료 (바)-①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는 山上王의 분주 휘 “一名位宮”이다. 位宮을 산상왕의 휘에 대응시킨 시점과 伊夷謨를 고국천왕의 휘에 대응시키는 시점은 아마도 같은 시기일 것이다.³⁹⁾

(1)시기 시점 즉 저본 자료 ⑦의 작성 시점은 언제일까? 정황상 고구려

당대로 짐작되는데, 현재 이를 명확하게 할 근거는 없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伊夷謨와 位宮를 포함하여 宮-遂成-伯固라는 『후한서』·『삼국지』 고구려전에 보이는 5왕의 휘를 고구려 왕계에 대응시키는 일은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사서와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두 사건을 고려하면, 伊夷模는 산상왕에, 位宮은 동천왕에 대응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아마 고구려 당대가 아니라면 이이모=고국천왕, 위궁=산상왕이란 대응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왕계의 대응은 고구려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료 (바)-①의 작성 즉 저본 자료 ⑤의 작성 시점은 고구려 당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太祖’라는 용례에서 짐작된다. 필자는 고구려의 태조대왕은 국조왕이 바뀐 왕호로서 차대왕, 신대왕과 연결되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왕호로 파악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용어인 개국 시조로서 ‘太祖’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⁴⁰⁾ 즉 ‘태조대왕’이 아니라 ‘태조’라는 용법은 태조대왕의 왕호가 갖는 의미를 오해해서 사용된 용법으로 짐작되며, 그렇다면 최소한 고구려 당대는 아닐 것이며, 아마도 고려 초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 당대에는 중국 사서에 보이는 왕의 이름을 고구려 자체 왕계에 대응시키는 수준에서 사서 편찬이 이루어졌다고 짐작된다. 즉 앞서 언급한 (1)시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후 고국천왕=이이모 및 산상왕=위궁이란 대응에 맞추어 중국 사서의 기사에 의거하여 사료 (마)-①과 사료 (바)-①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고구려 멸망 이후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저본 자료를 기초로 편찬된 고구려본기에 고구려 자체의 전승과 중국 사서의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

39) 왕호 및 謓의 분주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고구려본기 대부분의 분주 기사가 “一云”, “或云”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료(바)-① 산상왕 謓의 경우에만 “一名”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 점에서 산상왕의 휘 기사가 다른 분주 기사와는 다른 방식 혹은 다른 시기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40) 임기환, 앞의 논문 (2016), 108-109쪽.

건이 서로 다른 왕대에 중첩되어 기술되는 현상으로 두드러지게 되었던 것이다.

일단 고구려 당대에 『후한서』와 『삼국지』에 보이는 고구려 왕계를 국내 전승 왕계와 대응시키려고 할 때 그 대응의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가 중요했을 것이다. 그 기준을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新大王의 본문 謂가 伯固, 분주 謂가 白句인 점이 눈길을 끈다. 白句는 伯固의 異表記라 기보다는 오히려 고구려 자체의 전승일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측 사서의 왕계와 고구려 국내에 전승 왕계를 대응시킬 때, 그 대응의 기준이 된 것이 伯固와 白句였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伯固가 본문 謂로, 白句가 분주 謂로 정리된 것은 宮(대조대왕)·遂成(차대왕)·伯固(신대왕)라는 3왕의 謂를 동시에 정리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고국천왕(男武)이나 산상왕(延優)의 경우는 이미 고구려 자체에서 전승되는 謂가 있기 때문에, 중국 사서에서 전하는 謂가 분주 謂로 정리되었을 것이다.⁴¹⁾

결과적으로 謂의 대응에서 역사적 사건 기록과는 다르게 고국천왕=伊夷模, 산상왕=位宮이라는 대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伯固와 白句를 대응 시켜 왕계 정리의 기준을 삼은 결과이다. 이와 같이 중국 사서에 전해지는 5왕의 휘가 고구려본기의 謂와 같은 형태로 대응된 것은 고구려 당대에 어느 시기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때가 언제일까? 高寬敏은 海東古記(新集)의 편찬시 중국 사서에 전하는 5왕의 謂를 통해 대조 대왕~산상왕의 왕계가 새로 정리되었다고 보았다.⁴²⁾ 필자도 그 시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때 왕계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서의 왕명을 국내 전승 왕계에 기계적으로 대응시켰을 뿐이다. 발기와 이이모의 왕위계승 분쟁 기사나, 관구검에 침입 기사 등 역사적 사실의 대응과는 무관하였다. 중국 사서에 전하는 왕계와 고구려 자체의 왕계 상에서 역사적 사건이 불일치하게 된 결과는 고구려 왕계를 『후한서』에 맞추어 재구성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 왕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증

41) 임기환, 앞의 논문 (2002), 21쪽.

42) 高寬敏, 앞의 책 (1996), 122쪽.

거라고 할 수 있다.

VI. 맷음말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본기의 기록으로 볼 때 어느 시기엔가 중국 사서에 보이는 王系를 대응시켜 정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고구려 시기에 정리되었을 가능성 있는 기사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후한서』 기사에 의거한 여러 기사는 고구려본기를 편찬할 때에 인용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고구려본기의 저본 자료가 되는 史書에 인용되었다. 다만 왕계 관련 기사는 인용되지 않았음에도 宮, 遂成, 伯固라는 왕의 謱는 고구려본기에 인용되었다. 고구려본기에서 『삼국지』 고구려전에서는 고구려본기에 인용된 기사는 없다. 그렇지만 伊夷謨와 位宮이란 謱는 고구려본기에 인용되었다. 다음 『위서』와 『양서』 고려전에서는 고구려 본기에 여러 기사가 인용되었으며, 乙弗利와 釗[劉]라는 이름도 인용되었다.

『후한서』와 『삼국지』 고구려전에 보이는 왕계를 인용하는 과정을 보면 고구려시기에는 왕의 謱만 인용하였을 뿐이지 다른 관련 기사는 무시하였다. 『후한서』와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宮-遂成-伯固-伊夷模-位宮이라는 5대에 걸쳐 부자상속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王系가 등장한다. 이 왕계를 고구려본기에서는 대조대왕-차대왕-신대왕-고국천왕-산상왕이라는 연속되는 5王系에 기계적으로 대응시켰다.

일단 고구려 당대에 『후한서』와 『삼국지』에 보이는 고구려 왕계를 국내 전승 왕계와 대응시키려고 할 때 그 대응의 기준이 된 것이 伯固와 白句였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사서와 고구려의 자체 전승 기록에서 양자 모두 전하는 伊夷模와 位宮과 관련된 기사에서 불일치가 나타났다. 이는 고구려 왕계를 중국 사서의 왕계에 맞추어 재구성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 왕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後漢書』(Hou Hanshu), 『三國志』(Record of the Three Kingdoms), 高句麗本紀(Goguryeo-Bongi), 宮(Gung), 伯固(Baeckgo), 伊夷模(Yimo)

<투고: 2024년 12월 15일, 심사종료: 2024년 12월 20일, 게재확정: 2024년 12월 23일>

/Abstract/

Quotations from Chinese historical accounts in the Goguryeo Bongi and Genealogy of early kings

Lim, Ki Hwan

Several articles based on the Huhanseo(後漢書) recorded in the Goguryeo-Bongi(高句麗本紀) were not cited when compiling the Goguryeo-Bongi, but were already cited in the historical books that served as the source material for the previous Goguryeo-Bongi. And the kings' names Gung(宮), Sunsung(遂成), and Baeckgo(伯固) are quoted in the Goguryeo-Bongi Text. In the Record of the Three Kingdoms(三國志), there are no articles cited in the Goguryeo-Bongi Text. However, the kings' names Yimo(伊夷謨) and Yuigung(位宮) are cited in the Goguryeo Text.

In the Huhanseo(後漢書) and Record of the Three Kingdoms(三國志), there is a Goguryeo royal family called Gung(宮), Sunsung(遂成), Baeckgo(伯固), Yimo(伊夷謨) and Yuigung(位宮) which was inherited through five generations of wealth. This royal line corresponds to the five successive royal lines in the Goguryeo-Bongi King Daejo-dae(太祖王), King Cha-dae(次大王), King Shin-dae(新大王), King Gokukcheon(故國川王), and King Sansang(山上王).

When trying to correspond the Goguryeo royal lineage shown in the Huhanseo(後漢書) and Record of the Three Kingdoms(三國志) with the royal lineage of domestic transmission, it is judged that 伯固 and 白句 were the basis for the correspondence. This is not the result of reconstructing the Goguryeo royal line to fit the royal genealogy of the Chinese librarians. Rather, it is evidence that the genealogy of Goguryeo kings was already complete.

참고 문헌

1. 단행본

- 노태운, 『고구려사연구』(서울: 사계절, 1999).
鄭求福 外,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서울: 民族社, 1997).
전덕재,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서울: 주류성, 2018).
高寬敏, 『三國史記の原典的研究』(東京: 雄山閣, 1996).
趙燦鵬, 『梁書諸夷傳異文比勘』(濟南市: 齊魯書社, 2014).

2. 논문

- 강종훈,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반영된 중국계 原典 사료의 讀法 -고구려
본기 유리왕 31년조 기사의 검토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40
(2020).
- 김성환, 「中國史書에 나타난 高句麗 初期 王系와 宮의 蔚孫化」, 『고구려발
해연구』 66, 2020,
- 盧泰敦, 「高句麗의 初期王系에 대한 一考察」, 『李基白古稀紀念韓國史學論
叢(上)』(서울: 一潮閣, 1994)
- 신동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분주의 연구」, 『동대사학』 1 (1995).
- _____,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인용자료에 관한 일고」, 앞의 책 (1995).
- 여호규, 「광개토왕릉비의 건국설화와 왕위계승 기사 검토」, 『광개토왕비의
탐색』(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5).
- _____, 「高句麗 初期의 王位繼承原理와 古鄒加」, 『동방학지』 150 (2010)
- 이강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분주 재론」, 『백산학보』 67 (2004)
- 임기환, 「고구려 건국전승의 始祖 出自와 北夫餘, 東夫餘」, 『고구려발해연
구』 54 (2016).

- _____, 「고구려 王系의 성립과정과 시기」, 『한국고대사연구』 83 (2016).
- _____, 「고구려 왕호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8 (2002).
- _____, 「고구려본기 전거자료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2006).
- 전덕재,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原典과 完成－광개토왕대 이전 기록을 중심으로」, 『東洋學』 64 (2016).
- 정구복, 1993, 「고려 초기의 “삼국사” 편찬에 대한 일고」, 『국사관논총』 45 (1993).
- 武田幸男, 「高句麗王系成立の諸段階」, 『高句麗史と東アジア』 (東京: 岩波書店, 1898).
- 田中俊明, 「“三國史記” 中國史書 引用記事의 再検討」, 『조선학보』 104 (1982).
- 井上直樹, 「고구려 왕계의 정비와 미천왕」,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송기호교수 정년기념논총) (과천: 진인진, 2021).

송대 ‘文治主義’에 대한 재고찰

김 한 신*

I. 머리말

- | | |
|---|--|
| II. 군에 대한 문민적 통제: ‘문치주의’는
송을 문약하게 만들었는가? | IV. 요·금 군사력의 한계: 국력이 뒷받침되
지 못한 군사력 |
| III. 송나라를 둘러싼 국제질서: 송나라는
과연 ‘제국’이었나? | V. 결론: 송은 과연 문약한 나라였는가?
과연 ‘제국’이었나? |

초록

이 글은 송나라의 ‘문치주의(文治主義)’가 과연 송나라의 문약(文弱)함을 초래했는지에 대해 기존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송나라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특징을 재조명한다. 송나라는 유교적 정치 이념에 기반한 문치주의를 통해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체제를 확립했으며, 이는 군사적 혼란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오늘날 송나라의 문치주의는 주로 군사적 실패와 대외적 굴욕의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문치주의에 비판적인 관점이 19세기와 20세기 중국의 굴욕적 역사에 대한 감정이 투영된 결과임을 주장하며 송나라의 군사적·정치적 현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 한다.

송나라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력한 방어시설과 첨단 군사 기술(화약 무기, 조선술 등)을 활용하여 북방 유목 민족 국가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비록 북방유목민족 군대의 압도적인 전력에 번번이 패배하여 영토 일부를 상실하고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나, 장기간 지속된 전쟁에서 북방유목민족 군대 역시 약점을 노출하였다. 송나라는 요·금나라와의 전쟁에서 강남 지역의 풍부한 경제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300년 이상 통일된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성취를 이루었다.

*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 kimhanshin@naver.com

‘문’을 중시하고 ‘무’를 억제하는 정책[崇文抑武]은 무인의 독립적 군벌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문치주의가 군사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또한 송나라의 문인 관료들은 전쟁과 외교에서 실리적이고 유연한 결정을 내리며 국가의 안정을 도모했다. 송나라가 결국 몽골에 의해 멸망했지만, 막강한 몽골군을 40여 년간 저지할 수 있었던 점은 송나라의 군사력과 문치주의의 성과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송나라의 문치주의는 단순히 문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군사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정책이었다. 송나라의 멸망은 문치주의 때문이 아니라, 몽골의 등장에 의한 국제질서의 대대적인 변화와 그들의 압도적 군사력에 따른 불가항력적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고대부터 軍隊는 국가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아 평상시 그것을 관리, 통제하며 유사시엔 그 물리적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심화되면서, 민간인과 군인 사이의 間隙은 점차 커지고 민간의 군에 대한 개입이 군대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군에 대한 민간의 개입과 통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군대가 독점하고 있는 폭력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주면서도 군에 대한 문민적(文民的, civil) 통제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宋나라는 과거 왕조에 비해 군에 대한 문민적 통제를 가장 강력하게 시도 하였던 시기였다. 송은 앞선 당대나 오대시기 군에게 부여된 자율성이 가져온 치명적인 폐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군사작전 효율성의 저하를 감내하면서도 문민적 통제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선택하였다. 송나라의 선택은 후대 사람들에게 다양한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후 명대나 청대의 군사정책은 대체로 문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 글에서 ‘文治主義’란 軍에 대한 문민적 통제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문치주의’에서 ‘문치’란 文敎와 禮樂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로서, 이는 중국 정치의 유구한 전통이었다. 『禮記·祭法』에 이르길 “문왕은 문치로 다스리고 무왕은 무공으로 다스려 백성들의 재앙을 제거해 주니 이는 모두 백성에게 큰 공적을 세운 것이다.”라고 하였으니¹⁾ 문치는 무공과 대응하는 것이었다. 즉 역대 왕조에서 난을 평정할 때는 무공으로 하여야 하지만,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때는 문치로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漢代 이후 문치의 주된 사상은 유교의 정치 이념에 바탕을 두었다. 이 과정은 漢武帝 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른바 “무제의 시대에 이르러 유학을 드높이 표창하고 백가를 배척하니, 마땅히 크게 다스려짐이 있

1) “文王以文治，武王以武功，去民之菑，此皆有功烈于民者也。”『禮記』「祭法」。

었다.”라는 것이었다.²⁾ 문치주의의 정치이념으로서 유학의 독존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아래, 중국 역대 왕조에서 그 정책적 기조는 대체로 큰 혼들림 없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개설적인 역사서에서는 유독 송대의 문치주의를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서술들이 자주 발견된다. 송나라는 주변의 요나라, 서하, 금나라에게 거듭 군사적으로 열세를 보여왔다.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세례를 바쳤던 부정적인 모습들은 송나라의 찬란한 문화적 성취와 전대미문의 경제적 성장 그리고 급격한 인구 증가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송대 군사적 열세의 원인을 문치주의적 국방 정책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송대 문치주의적 국방 정책을 소위 ‘중문경무(重文輕武)’ 즉 ‘문’을 중시하고 ‘무’를 경시하였다고 보는 관점에³⁾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송대의 문치주의와 그 결과로서의 대외적 굴욕을 연결시키는 관점은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탈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20세기 학자들의 감정이 투영된 결과였다는 것이다.⁴⁾ 그들은 유교를 근대화의 걸림돌로 지목하였고 송나라의 문약한 유교적 문민 통치가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들은 19세기 중국의 문약함의 기원을 외부 세력에 의해 거듭해서 영토를 침탈당했던 송나라의 역사적 선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나친 ‘문치주의’가 송나라의 문약함을 초래하였다는 기준의 개설적 설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송나라의 문인들은 무인을 기피하여 군사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요나라나 금나라에 대항하

2) “當武帝之世，表章儒術而罷黜百家，宜乎大治。”馬端臨『文獻通考』권191.

3) “민간(文)을 중시하고 군대(武)를 중시하지 않는다(重文輕武)”는 송나라의 기본 정책에 대한 최초의 현대적 설명은 方豪에 의해 제기되었다. 方豪, 『宋史』(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4); Peter Lorge, “The Northern Song Military Aristocracy and the Royal Family,” *War and Society* 18.2 (2000), pp.37 - 47. 참조.

4) Peter Lorge, “Military Institutions as a Defining Feature of the Song Dynasty” *Journal of Chinese History* 1 (2017), p.294.

여 분산적이고 소극적인 방어책과 도피와 타협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오히려 효율적인 방어에 실패하였다고 비판한다.⁵⁾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무인들의 성장을 견제하였다는 점에서는 실제에 부합하지만, 당시 실제 군사적인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이념적이고 정치사적인 편협한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할 것이다.

II. 군에 대한 문민적 통제: ‘문치주의’는 송을 문약하게 만들었는가?

송태조 建隆 2년(961) 즉 송나라가 건국된 바로 다음 해에 송태조 趙匡胤은 자신의 친척인 石守信 등을 불러 연회를 열었다. 술에거나하게 취했을 때, 태조가 “그대들의 힘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고, 그대들의 공덕을 생각한다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오. 그러나 천자(의 자리) 또한 매우 어려워서 오히려 절도사(시절)의 즐거움만 못한 것 같소. 나는 그동안 밤새 편히 누워 잠든 적이 없었을 정도였소.”라고 하자, 석수신 등이 놀라 그 이유를 물었다. 태조가 대답하길,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오. 그 누가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겠소?”라고 하였고, 석수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재차 묻기를, “폐하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천명은 이미 정해졌는데 누가 감히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태조가 답하여 말하길, “그렇지 않소. 그대들은 비록 다른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휘하의 사람이 부귀를 탐해서 일단 黃袍를 그대의 몸에 입힌다면 그대들은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오.” 그 자리에 있었던 장수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신 등은 어리석어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폐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태조는 그 장수들에게 보유하고 있던 병권을 풀어 놓고, 자신의

5) 王曾瑜, 『宋朝軍制初探』(北京: 中華書局, 2011), 526-529쪽.

고향으로 돌아가 대대손손 편안하게 지낼 것을 권유하였고, 그 부장들은 감히 그 뜻을 거부할 수 없었다.⁶⁾

이 고사는 후대에 ‘杯酒釋兵權’ 즉 ‘술잔을 나누며 병권을 내려놓았다’라고 일컬어지며 널리 회자되고 있다. 술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에는 사실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 그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어느 날 태조는 그 이전 오대시기에 발생하였던 잣은 군사 정변과 왕조의 교체가 다시 재현될 것을 걱정하여 그 측근이었던 趙普 (922-992)에게 그 대책을 물었다. 태조 본인 역시 군사 정변에 의한 역성 혁명을 일으킨 당사자였기에 일단 정권을 장악하고 나자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에 조보는 오대시기의 잣은 반란의 원인이 지방 절도사의 세력이 지나치게 크고 황제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병권을 빼앗아 중앙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 결과 태조와 조보는 술자리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공신이었던 장수들의 병권을 빼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후대 학계에서는 송나라가 그 이전의 오대 왕조들처럼 잣은 왕조교체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주석병권’의 결과 확립된 송대 군에 대한 문민적 지배의 결과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북송 초기 새롭게 등장한 송나라는 당대 후반기 아래 지속된 정치적 혼란의 재현을 두려워하여 지역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무인 절도사의 군사권을 제한하고 점차 그 직을 제거하였다. 대신 중앙에서 파견된 문관 출신 관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위 ‘문치주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변경에서 북방 유목민족에 대한 군사적 대응력을 약화시켜 송나라의 군사적 약체화를 초래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송나라 군사력의 약체화를 논하는 경우 대부분 그 운영의 비효율성에 주목한다. 송의 군대는 주로 전쟁의 효율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중앙 정부의 통제를 위협할 수 없도록 조직되었다고 평가된다. 북송의 樞密院은

6) 『續資治通鑑長編』 권2 宋太祖 趙匡胤 建隆二年 (辛酉, 961).

황실 군대를 통제할 권한이 없는 재상 밑에서 운영되었고 군통수권은 오로지 황제 1인에게만 주어졌다. 추밀원에는 樞密使 또는 知樞密院事が 있었으며, 차관으로는 樞密副使 또는 同知樞密院事が 두어졌다. 국초를 제외하고 대개 문관이 임명되었으며, 추밀원의 관리 중에서 중서성의 同中書門下平章事·參知政事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였다. 군대의 총사령관들은 황제로부터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여받았으나 자의적으로 군을 이동하거나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추밀원의 명령이 있어야 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송은 3년에 한 차례씩 군대에 정기적인 인사 이동을 단행하여 지휘관과 사병과의 관계를 약화시켜 당대 절도사들의 전횡을 미연에 방지했다.

남송 초기 악비나 한세충과 같이 국가적 전란의 위급한 시기에 독립적인 군사지휘권을 지닌 군벌들이 일시적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급한 시기가 지난 후에는 다시금 군사권은 중앙정부로 귀속되었다. 1126년 정강(靖康)의 변으로 수도 카이펑이 함락당하고 1127년 남송 고종이 즉위하며 남송이 건국되었지만, 금나라의 거센 군사적 압박은 지속되었다. 국경방어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자, 唐代이래 군사 행동 전후로 한 지역의 질서를 통제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임명되는 임시적인 직책이었던 宣撫使가 이 시기에 들어서 금과의 국경지대를 따라 거듭 임명되었다. 이를 악비나 한세충과 같은 武人們이 맡아 긴급한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군권과 재정권을 모두 부여받았다. 그러나 금과의 전쟁이 소강 상태로 흐르고 강화의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남송 고종과 재상 진회는 악비나 한세충을 선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추밀부사로 임명하여 중앙의 관직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군대의 직접적인 지휘권을 박탈하였다. 다음으로 그들의 군대는 賦前諸軍으로 강제 귀속시켰고 그 해당 지역에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제하는 總領所를 설치하여 선무사들에게 부여되었던 재정권도 회수하였다.⁷⁾

7) 다만 開禧北伐이나 송-몽전쟁과 같이 급박한 군사적 대치 상황이 전개되면, 송조정은 총령소를 다시 선무사의 휘하로 귀속시켜 지휘관에게 재정권을 부여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였다. 雷家聖, 「南宋四川總領所地位의演變－

兩宋代 전시기를 거쳐 ‘문치주의’ 즉 군대에 대한 문민적인 통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는 당대나 오대와 같이 군인들이 황권에 도전하는 사건들을 송대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군에 대한 문민적 통제의 성공이 송나라의 군사적 실패를 초래한 원인이었다고 보는 인식 역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인식에 따르면, 송대의 ‘문치주의’는 지나치게 ‘문’을 중시하고 ‘무’를 경시하였기에 군사력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다. 문약한 조정 대신과 황제는 전쟁이 불가피했던 때에도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수비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호전적인 주변국들과 평화적 합의를 통한 해결을 주로 모색하였다. 그 결과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송나라 황제들은 북방 유목민족 국가의 신하 지위를 인정한 굴욕적인 조약의 체결을 감수하였다.⁸⁾

그러나 사실 송나라는 중국 역대 왕조 중에서도 손꼽히는 군사대국이었다. 송 조정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100만명을 상회하는 상비군을 중앙과 변경 요충지에 주둔시키고 있었고, 당대 이래 비상 상황에서 군사업무를 담당하던 추밀원을 상실기구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정과 국가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서성과 대등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추게 하였다. 송대 과학기술 분야의 성취 역시 대부분 군사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전장에서는 세계 최초로 화약을 이용한 무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⁹⁾ 중국 복건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以總領所與宣撫司·制置司的關係為中心, 『臺灣師大歷史學報』第41期 (2009), 28-31쪽.

8) 디터 쿤, 육정임 옮김, 『하버드 중국사 송-유교 원칙의 시대』 (서울: 너머북스, 2015), 27-28쪽.

9) “(송나라에는) 성을 지키는 무기로 震天雷라 불리는 화포가 있었다. 쇠로 만든 단지에 화약을 채우고 불을 붙이면 터져서 불을 일으켰다. 그 소리가 천둥 치는 듯하여 백 里 바깥까지 들렸으며 사방 반 敵이상을 불태웠다. 또 터지면 쇠로 만든 갑옷이라 할지라도 뚫어 벼렸다. … 중략 … 또 飛火槍이란 것이 있었다. 화약을 주입하여 불을 붙이면 십여 步를 날아가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었다. 대군이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무기를 두려워하였다.” “其守城之具有火砲名「震天雷」者，鐵罐盛藥，以火點之，砲起火發，其聲如雷，聞百里外，所爇圍半敵之上，火點著甲鐵皆透。… 中략 … 又飛火槍，注藥以火發之，輒前燒十餘步，人亦不敢近。大兵惟畏此二物云。” 『金史』 권113.

술의 발전으로¹⁰⁾ 남송대 활약한 수군(水軍)은 강과 바다에서 강력한 북방 유목국가의 침입을 장기간 효과적으로 막아내었고 수운을 통한 원활한 물자 수송으로 동서로 길게 뻗은 국경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한 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력 증대를 위한 송 정부의 재정적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당시 송나라는 적대적인 국가들에 둘러싸여 육로를 통한 외국과의 교류는 막혀있었지만, 조선술의 발전과 더불어 원양항해술의 발전으로¹¹⁾ 唐代에 비해 해상교역의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송나라는 해상 교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市舶使를 확대 설치하였는데,¹²⁾ 이

10) “남방 나무의 성질은 물에 잘 맞는다. 그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복건에서 만든 배가 상이고 광동과 광서의 배가 다음이다. 온주와 명주의 배가 또한 그 다음이다. 북방의 나무는 물에 적당하지 않다. 바닷물이 짜고 강하기 때문에 나무의 재질이 망가질 수 있다. 그 때문에 배가 바다에 들어가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감당할 수 없으며 때때로 전복될까 하는 근심이 있다.” “南方木性 與水相宜 故海舟以福建船爲上 廣東西船次之 溫明州船又次之 北方之木 與水不相宜 海水鹹苦能害木性 故舟船入海不能耐久 又不能禦風濤 徒徒有覆溺之患。”呂頤浩『忠穆集』권2,『論舟楫之利』.

11) 송대에는 나침반이 널리 보급되었고, 이는 원양항해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심팔은 『夢溪筆談』에서指南針 즉 나침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 “방술가가 바늘 끝을 자석으로 갈면 바늘 끝이 남쪽을 가리키지만 종종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완전히 남쪽을 가리키지 않는다. 자성을 띤 바늘을 물 위에 놓으면 흔들거리고 손톱이나 그릇 가장자리에 놓고 시험해 볼 수도 있는데 회전 속도가 더 빠르지만 이런 물건은 단단하고 매끄러워 바늘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실로 바늘을 들어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중략 … 자석이 남쪽을 가리키는 특성은 편백나무가 서쪽으로 치우쳐 성장하는 것과 같이 아직 그 이치를 추론할 수 없다.” “方家以磁石磨針鋒，則能指南，然常微偏東，不全南也。水浮多蕩搖，指爪及碗唇上皆可爲之，運轉尤速，但堅滑易墜；不若縷懸爲最善。… 中략 … 磁石之指南，猶柏之指西，莫可原其理。”『夢溪筆談』雜志. 「指南針」.

12) “회녕년간(1068-77)에 처음으로 법을 바꾸어 천주인(泉州人)이 해외와 교역하는 경우 나갔다 귀국할 때 반드시 동쪽으로 가서 광주(廣州) 市舶使에 들르고 이를 위반하면 그 화물을 몰수하였다. 바닷길이 돌아가느라 멀어서 몰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반이 더 되어 매년 벌을 받는 사람이 많았다. 지방관 진청(陳偁)이 상소하여 시박사를 천주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철종이 즉위한 지 2년째인 1087년 처음으로 명하여 천주에 시박사를 두었다.” “熙寧中，始變市舶法，泉人賈海外者，往復必使東詣廣，否則沒其貨。海道

는 외국 상인들을 관리하는 해관(海關)과 같은 기구였다. 국가 재정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팽창한 군사비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던 송나라 정부에게 해상교역에서 거두어지는 세금은 큰 도움이 되었다. 한때 전체 세수의 20%를 해상교역에 부과된 세수로 충당하기도 하였다.¹³⁾

거듭해서 출현하였던 호전적인 유목민족 국가들의 위협 속에서도 북송과 남송 시기를 합쳐 3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 전체 또는 중국 남부에 통일된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탁월한 문화적 성취와 전대미문의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록 송대는 몇 차례의 군사적 큰 실패로 인하여 전란이 끊임 없었던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국가의 전토가 전장화되는 대규모적인 전란은 몇 차례에 불과하였다. 우선 1004년 전연의 맹약 이후 요나라와는 수십 년간 큰 전쟁이 없었고, 1041년과 1081년[五路伐夏] 서하에 대한 두 차례의 원정은 군사적으로 송나라에 큰 피해를 주기는 하였지만 그 전투는 변경지역에 주로 국한되었다. 그리고 금나라 군대에 의해 남송은 화북을 상실하였지만 이후 영웅적 군벌들의 활약으로 반격하여 대산관(大散關, 섬서 보계현 서)에서淮水에 이르는 국경을 유지하였다. 또한 1142년 소홍화의(紹興和議)에서 맹약이 체결된 이후 상당히 오랜 시기 동안 중국 남부지역은 안정적으로 통치되었다.

따라서 송 조정이 ‘무’를 경시했다는 인식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적인 분야에 집중된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무’가 지나치게 중시되고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운 사령관이 독립적인 군벌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기 위해서 ‘무’를 억누르는 정책을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 설명일 것이다. 문인 관료들은 금나라와

回遠, 竊還家者過半, 歲抵罪者衆. 太守陳偁奏疏, 願置市舶於泉, 不報. 哲宗卽位之二年, 始詔泉置市舶.),”『文獻通考』권62 職官考16 提舉市舶.

13) Lo Jung-Pang, *China as a Sea Power 1127-1368: A Preliminary Survey of the Maritime Expansion and Naval Exploits of the Chinese People During the Southern Song and Yuan Periods*, (Singapore: NUS press, 2011).

의 전쟁에서 급부상한 한세충이나 악비와 같은 영웅적인 무인들이 대중적인 지지를 통해 조정에서 문인관료가 장악한 해게모니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무인들을 견제하였다. 그들은 과거 당말과 오대시기 절도사들의 자의적인 통치에서 비롯된 정치적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인의 발호’를 억제하고 그 군대를 중앙군에 편재시켰을 뿐 전체 국방력을 약화시켰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송 고종 소홍(紹興) 11년(1141) 자고진(柘阜鎮) 전투에서 보여지듯이 전체를 통솔하는 지휘체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남송 초기의 변경의 군벌들을 중앙에서 황제가 유기적으로 통솔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¹⁴⁾ 실제로 그 군벌들은 항금(杭金)전쟁 초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점차 독자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항금전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즉 이러한 정책은 “문”을 중시하고, ‘무’를 억제한다”(崇文抑武)라고 표현될 수 있으며¹⁵⁾ 이는 분명 앞서 언급된 ‘무’를 경시한다는 ‘중문경무(重文輕武)’라는 분명히 다른 정책이었다.

북송대 부필(富弼)(1004~1083)은 요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나라의 군사적 강성함과 대비되는 송나라의 상대적 열세를 걱정하였다. 그는 그 원인으로서 근년이래 모든 사대부가 전쟁을 연구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민생을 추구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한탄하였다.¹⁶⁾ 그러나 부필이 걱정하였던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무’를 경시하였던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유교적 사대부들이 시문(詩文)의 작성보다는 국방력 강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었다. 한편 군대의 고위 관직에 문인 관료를 임명하였던 것에는 문인 관리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과거제의 확대로 인한 문인 관료

14) 寺地遵, 『南宋初期政治史研究』(廣島: 溪水社, 1988), 224~226쪽, 259~260쪽; 박세완, 「남송 건국기 방위 재건구상: 兩淮지역에서의 腹背之顧 전략을 중심으로」, 『제67회 역사학대회 동양사부 발표집』(2024), 21~44쪽.

15) 陳峰, 『宋代軍政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2~3쪽; 陳峰, 『武士的悲哀: 北宋崇文抑武現象研究』(北京: 人民出版社, 2011).

16) 趙汝愚, 『宋朝諸臣奏議』(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Peter Lorge, 앞의 논문(2017), p.277.

의 증가와 한정된 관직을 두고 벌어진 지나친 경쟁은 본디 무관직에 해당하는 직책에도 문관들이 임명되는 경향을 가속화하였다. 부필의 경우와 같이 문인 관료들의 문약함을 지적하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중앙집권적인 관료제가 국가 전반에 정착되고 인쇄술의 발전으로 문서행정이 더욱 활성화된 송대에 있어서 변경의 무관직에도 문서행정을 통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문인 관료들을 임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였다.

비록 문인 관리들이 중앙 조정과 지방의 주요 관직을 장악하고 ‘문’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 조정의 가장 진급한 관심사는 언제나 국방 분야의 안전들이었다. 또한 송나라 조정에서 최고 결정권자인 황제도 비록 어릴 때부터 문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지만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무’에 정책 결정상 더욱 큰 비중을 두었다. 오히려 ‘무’의 가치가 지나치게 중시되던 중앙 조정의 분위기 속에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문인 관료들은 중앙 조정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문’의 가치를 존중하는 운동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주로 경력신정 이후 등장하여 남송대 朱熹가 北宋五子로 칭송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대부들은 이러한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평화의 방법을 王道로 보았고, 전쟁은 羅道라고 규탄했다. 그 결과 북방 유목국가들의 굴욕적인 요구사항을 감내하면서까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국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명·청대에 朱子學의 지배적인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후대 역사학자들이 명·청대의 인상을 송대에 소급 적용한 결과, 송대의 조정 역시 문민적인 문화가 지배적이었고 그 분위기 속에서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굴욕적인 외교적 해결책이 채택되어졌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서성이나 추밀원의 고위 문인 관료들은 주로 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군 관련 안건에 대해 문인관료들은 경우에 따라 지극히 主戰論적인 결정을 내렸다.¹⁷⁾ 비록

17) 송과 요의 전쟁이나 송과 서하의 전쟁에 직면해서 당시 관료들 중에는 주전파와 주화파가 나뉘지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불사하자는 주전파의 의견이 우세를 차지하였다. 예를 들어, 요나라의 침공에 맞서 당시 진종의 친정과

송대 그들의 주전론적 결정은 대체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유가적 문인들은 당시 그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목적에 따라 유연하고 실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III. 송나라를 둘러싼 국제질서: 송나라는 과연 ‘제국’이었나?

중화제국이라는 칭호는 주변 국가들과 조공책봉관계를 통한 군신관계와 의례적인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에 중국의 왕조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천자의 나라’ 중국은 주변국의 조공을 받고 주변국의 지도자에게 책봉을 내려 제후국으로 인정하였다. 신해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통시

화전을 주장하였던 寇準이 주장하길: “폐하의 神武로 신과 뜻을 맞추어 친정한다면 적은 스스로 도망갈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기묘한 계책을 내어 그들의 謀議를 어지럽히거나, 방어를 튼튼히 하여 그들의 군대를 지치게 함으로써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묘와 사직을 버리고 초(楚)나 촉(蜀)으로 출행한다면 어찌 인심이 궤멸하지 않겠습니까. 적이 승기를 타고 깊이 들어온다면 천하를 다시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陛下神武，將臣協和，若大駕親征，敵當自遁。不然，出奇以撓其謀，堅守以老其師，勞佚之勢，我得勝算矣。奈何棄廟社，欲幸楚、蜀，所在人心奔潰，敵乘勝深入，天下可復保耶”『宋史紀事本末』 권 21. 「契丹盟好」. 이후 구준의 간언을 받아들인 진종은 친정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그로부터 40여 년 후 탕구트 족이 건설한 서하의 지도자 李元昊가 송나라에 대한 신속관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황제로 칭하면서 국서를 전하자, 이에 격분한 步軍副都指揮使, 鄭延路副摠管으로 있던 劉平이 仁宗에게 서하에 대한 攻守의 책략을 올려 말하길: “지금 李元昊의 國勢는 아직 미약하니 만약 이 기세를 타고 부연(鄜延), 환경(環慶), 경원(涇原), 진룡(秦隴) 4로(路)의 병마를 이용해서 두 길로 나누고 더욱이 번이(蕃夷)와 한족 궁수를 합한다면 정병이 가히 20만에 달해 이는 이원호 무리의 3배나 되고 군량을 운반하는 것이 2백리에 달할 것이다. 양도(兩道)로 나누어 출격하면 한 달이 못 되어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今元昊國勢未強，若乘此用鄭延·環慶·涇原·秦隴四路兵馬，分兩道，益以蕃漢弓箭手，精兵可得二十萬，三倍元昊之衆，轉糧二百里，不出一月。”『宋史』 권 325 「劉平傳」 당시 인종을 비롯한 관료들은 서하에 대한 공격을 결정하였고, 이후 7여 년간 지속된 장기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공책봉관계로 중국 역대왕조의 대외질서를 설명하는 것은 중국 역사에서 중화제국이라고 불릴만한 압도적인 제국이 중국에 지속적으로 존속되었을 때에 한정해서 가능한 것으로서, 위진남북조시기나 오대십국시기와 같은 분열의 시기에는 복수의 중화제국이 동시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주변국과의 불평등한 위계질서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 시기 복수의 중화제국과 주변국의 교류는 조공책봉관계라는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상당히 평등하고 실리적인 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오대십국시기 남부의 지방정권이었던 吳越의 경우에는 주변의 고려 등과 동등한 관계로 외교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송의 건국과 중국 남부의 통일은 역사서에서 ‘당’제국의 부활과 계승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송은 ‘당’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앞서의 ‘오대’왕조를 계승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연운십육주(燕雲十六州)’라고 하는 장성 이남의 군사적 요충지를 상실한 채로 북방유목민족 국가와 화북을 분할 한 상황에서 건국된 송나라는 과거 당제국과 같이 북방민족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후진 석경당에 의해 할양된 연운십육주의 일부인瀛州와莫州에 해당하는 즉 소위 관남(關南)지역이 오대 말기後周世宗에 의해 수복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북송 태조와 태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고토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漢代이래 중국의 주요한 군마 생산기지였던 감숙성 및 하서회廊(河西回廊)지역이 새롭게 등장한 탕구트족의 西夏에게 상실되면서 북방유목민족을 상대할 충분한 기병을 갖추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서구 학계에서는 중국 역대 통일 제국들과 구별하여 송나라를 완전한 제국이 아닌 약소제국(lesser empire)으로 지칭하기도 한다.¹⁸⁾ 주변국의

18) Wang Gungwu, “The Rhetoric of a Lesser Empire: Early Sung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p.47–65.

입장에서는 북방과 남방에 복수의 ‘천자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에 따라 두 국가와의 관계를 조율하였다.

북방 유목민족들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화북지역이 戰場化되고 결국 상실되었지만, 송나라는 당말 이래로 화북지역을 압도하는 경제력과 인구를 지니게 된 江南지역을 중심으로 거둬들여진 세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정을 운용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구 측면에서 학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거란의 인구는 380만(거란족 75만)에서 최대 900만(거란족 150-250만), 고려는 약 250-300만, 서하는 약 300만 정도로 추정되는 반면 북송의 인구는 그 열 배에서 수십 배가 넘는 9,000만에 이르렀다.(혹자는 1억 명 이상으로 추정한다) 압도적인 인구뿐만 아니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고도로 발전한 상업과 크게 확대된 해상교역을 통해 송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¹⁹⁾ 연구에 따르면 12세기 송나라의 국민소득은 유럽의 3배에 이를 정도였고, 수백만 명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철 생산량은 1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었다.²⁰⁾ 송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당시 송을 둘러싼 북방 유목민족 국가의 경제력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작았다. 송은 이러한 경제적 규모를 갖고 대규모의 문인관료군과 상비군만 100만 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송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서 건설된 약소제국이었지만, 인구 규모와 경제력은 漢이나 唐과 같이 과거 중국역사에서 등장했던 제국들을 압도하였다. 송은 제국 전반기 벌어진 요나라와의 전쟁에서 황제의 친정을 앞세워 가까스로 요나라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지만, 과거 오랑캐라 취급하던 국가와 대등한 관계를 규정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송태조 아래 끊임없는 실패에도 지속해온 ‘攘夷’의 대업을 포기함을 공식화

19) Joseph P. McDermott & Shiba, Yoshinobu, "Economic change in China, 960-1279". In Chaffee, John; Twitchett, Deni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5.2 (2015). p.435.

20) Liu, William Guangling, *The Chinese Market Economy 1000-1500*, (Albany: SUNY Press, 2015). p.294.

하였다.²¹⁾ 40년 후 西夏의 稱帝에서 촉발된 송나라의 대규모 군사원정은 세 차례 이어진 전투에서 처참한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그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체결한 조약에서는 李元昊를 西夏主에 책봉고 군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명분을 챙겼다.²²⁾ 송나라는 과거 漢武帝나 唐太宗과 같이 주변 유목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압도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송나라의 압도적인 경제적 풍요로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주변 국가들은 송나라와 평화조약을 통해 歲幣을 받고 互市의 정기적인 개장을 약속 받음으로써 정치적 명분보다는 실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북방유목민족 국가들 역시 송과의 장기간 단절은 자국내 물자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는 민심의 이반과 정치적 분열을 초래하였기에 큰 부담이 되었다. 서하의 경우 송과의 전쟁으로 소홀해진 틈을 타 野利族의 반란을 겪게 되었고, 거란과의 관계도 크게 악화되어 송과의 평화조약을 강력하게 원하게 되었다.²³⁾ 심지어 神兵이라 불리는 강력한 기병을 이끌고 송나라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기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금나라 역시 이후 남송이 축적된 경험과 강남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금의 기병전술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게 되면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전환되자 안정적인 세폐의 확

21) 박지훈, 「송요 간의 전쟁과 和議 - 潭淵의 전역과 맹약을 중심으로」, 『동북아 역사논총』 34 (2011), 122-124쪽.

22) 이근명, 「11세기 중반 宋-西夏의 대립과 和約 체결」, 『역사문화연구』 74 (2020), 73-74쪽.

23) 송과 서하의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서하의 수출품은 靑白鹽이라고 불리는 巖鹽이었다. 서하가 300만 정도의 인구로 송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아아라니 커 하게도 주로 송에게 파는 소금이었다. 따라서 송은 일찍부터 청백염의 수입을 금지하여 서하의 준동을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송나라 서북부 지역 주민들 역시 서하로부터의 청백염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고 대체 할만한 것도 없었기에 가격이 폭등하고 밀수입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원호가 북송을 침략함으로써 시작된 서하와 송의 전쟁에서도 청백염의 수입금지정책을 활용하였는데, 이번에는 북송의 상인들로 하여금 변경지역에 와서 食鹽을 판매하도록 하여 그 경제 봉쇄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 결과 이원호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내부적인 반발로 인하여 송과 군신관계를 맺는 대신 세폐를 받고 또한 権場을 통한 청백염의 판매를 재개하는 실리를 택하였다. 이근명, 위의 논문, 69-70쪽.

보와 강남지역과의 지속적인 교역이라는 실리를 선택하게 되었다.²⁴⁾ 요컨대 송의 군사 체제는 요나라·서하 그리고 금과의 전쟁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나, 상대방 국가들 역시 송나라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완전하게 송을 압도하지는 못하였다. 즉 송나라는 군사적으로는 약소제국으로서 과거 오대시기의 중원왕조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주변국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강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압도적인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주변국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켰던 새로운 유형의 ‘제국’이었다.

IV. 요·금 군사력의 한계: 국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군사력

앞서 요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와서 그들의 특징을 면밀하게 관찰한 부필이 언급한 바와 같이 투철한 상무정신으로 무장한 활기찬 기마병을 거느린 북방 유목국가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원의 농경민족들을 수월하게 제압하였다. 요나라와 금나라의 기마병 앞에서 보병 위주의 송나라는 손쉽게 무너지기 일쑤였고, 도저히 그 군사적 격차는 메꿔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중국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하였고, 송과 화친을 맺은 이후에는 해릉왕(海陵王)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남부를 차지하려는 대규모 군사행동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 요나라와 금나라가 중국 남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지속하지 못했던 것은 우선 당시 그들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주지역에서 출현한 거란의 요나라와 여진의 금나라는 몽골 초원지역의 유목민족 세력과

24) 남송은 금과 일련의 평화조약인 紹興和議(1142)·隆興和議(1165)·嘉定和議(1208)를 맺는데, 소홍화의에서는 금나라와 굴욕적인 군신관계를 맺게 되지만 이후 금나라 海陵王의 침략 실패와 송의 開禧北伐 실패와 같은 사건 뒤에 맺은 두 차례의 평화조약에서는 叔姪관계와 伯姪관계로 변경되고 세례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다.

중원의 중국 왕조의 약탈·조공·교역 등을 통한 공존이 무너지고 두 세력이 공멸하는 시점에 등장하였으나 곧 초원의 유목민족들과 중원의 중국 왕조가 세력을 회복하게 됨에 따라 그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²⁵⁾ 당시 정복왕조 주변에는 남부의 송나라, 서부의 서하, 그리고 동부에는 고려가 존재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은 압도적인 숫자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979년 중원과 중국 남부의 통일 이후에는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적 정벌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서하, 고려, 여진, 그리고 몽골 등은 군사적인 역량에서 정복왕조들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송은 이러한 주변국가들과 직접적인 혹은 암묵적인 동맹을 통해서 정복왕조들을 견제할 수 있었다. 특히 요나라에 대해서는 고려와 여진을 통해 견제하였다면, 금나라에 대해서는 역시 고려나 새롭게 부상하던 몽골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었다. 정복왕조를 둘러싼 국제적 정치 지형은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지닐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를 모두를 복속시킨 몽골의 등장까지 이러한 세력 균형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10세기에서 13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국제적 균형관계가 요나라와 금나라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하였던 주요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라와 금나라의 군사력이 몽골의 경우처럼 그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역량을 지니지 못하였다는 점이다.²⁶⁾ 요나라의 실제 군사력을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이는 동일한 전쟁에 동원된 거란군의 규모에 대해 다양한 사료가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사료를 토대로 추정해본다면 10세기 말 거란군 정예 기병은 10만 명 정도로 그 중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숫자는 대략 5만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거란은 그들이 다스리던 한인과 밸해인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이들로부터 차출된 향병(鄉兵)은 실제 전쟁에서는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했다.²⁷⁾ 거란의 군대는 중원의

25) 토마스 바필드, 윤영인 역, 『위태로운 변경』(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26) 윤영인,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정복왕조” 거란의 군사력」, 『동양고전연구』 85 (2021).

왕조가 약화되었던 944년 후진의 석중귀(石重貴)를 토벌하기 위해 중원을 침공하였고 3년간의 전쟁 끝에 개봉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한족의 거센 저항에 거란은 3개월만에 철수하였고, 이후에는 연운 16주의 방어에만 역량을 집중하였다. 실제로 중원과 중국 남부를 통일한 송이 등장하게 되면서 거란은 더 이상 중원을 쉽사리 공략할 수 없었다.

반면에 송나라는 전국 초기에는 수도였던 개봉이 요와의 국경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낙양 또는 장안으로의 천도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변경에서 개봉에 이르는 지역에는 황하 이외에는 특별한 자연적 장애물이 없었고 그마저도 겨울에 유량이 줄어들고 결빙되면 거란의 기마병을 막을 수도 없었다. 따라서 송은 초기에 접경지역에 거대한 규모의 인공 장애물을 설치하는데, 雄州·莫州·霸州 등지에 600여리에 달하는 둑을 쌓고 물길을 막아 조절하는 두문(斗門)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곳곳에 다양한 규모의 수로와 인공 호수를 만들어 거란의 기병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관남지역의 변경에 느릅나무와 벼드나무를 심어 인공숲을 조성하여 기병의 통행을 방해하고 보병에게는 매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송은 변경에 대규모의 병력을 주둔시켰다. 변경지역에는 총 2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였고 하북과 하동에는 의용군이 30만 명에 이르렀다.

거란의 기병에 대항한 송의 방어전략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효용성이 크게 입증되었다. 1004년 요나라는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벌을 시작하였으나 관남지역의 요충지인瀛州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

27) 漢兒라고도 불리웠던 정주민족인 한족과 밸해인으로 구성된 이들의 정체성은 대단히 모호하였고 유목민족 국가나 중국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소속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리하였다. 실제로 금나라가 초기에 송나라의 방어선을 손쉽게 뚫고 남하할 수 있었던 것은 송나라에 투항한 밸해인 장수 郭藥師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다시 금나라에 투항하여 길잡이 역할을 하였고, 그가 이끌던 한아부대는 모두 금나라에 투항하여 송에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모호한 정체성은 당말기 오대십국시기 연운십육주에 거주하면서 보여지기 시작하였다. Naomi Standen, *Unbounded Loyalty: Frontier Crossing in Liao China*,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참조.

았다. 영주를 점령하지 못했음에도 거란군은 결국 전연(澶淵)까지 이르렀지만 예상외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보급과 퇴로에 대한 염려가 심화되었고 결국 협상을 모색하게 되었다. 수세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던 송 역시 이러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결국 국경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변경에 주둔하는 군대와 군사시설의 확충을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요나라에 매년 비단 20만 필(匹)과 은 10만 량(兩)의 세폐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²⁸⁾ 소위 ‘전연의 맹약(澶淵之盟)’이라고 불리는 이 평화 협정은 후대 학자들에게 다양한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장기간 지속된 평화의 맷가로서는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한편 송이 지불하는 세폐가 요나라의 입장에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리라 추정하면서 송나라가 돈으로 평화를 샀다는 평가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단과 은으로 이루어진 30만의 세폐는 당시 영주와 막주 지역에서 매년 거둬지는 세금에 해당되는 양으로써 이는 요나라가 관남지역을 되찾게 되었을 때 추가로 거두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에 해당되었다. 결국 1004년 요나라의 남침은 영토적 정복활동이었다기 보다는 변경 지역에서 강화되고 있었던 송나라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고 연운 16주에 대한 송의 영유권을 영구히 포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여진족의 금나라 역시 뛰어난 기병 전력을 바탕으로 거란을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 중원을 장악하면서 강력한 정복왕조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같은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인들의 눈에도 금나라 여진 기병들의 활약은 마치 신이 보낸 신병(神兵)과도 같이 보였다고 전해진다.²⁹⁾ 그런데 신이 보낸 군사와도 같았던 금나라의 기병은 후대에 갈수록 약화되고 결국 몽골군에 의해 너무나도 손쉽게 몰락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기병의 중추

28) 세폐에 대한 조항 이외에도 협약을 통해 송진종은 형이되고 요성종은 아우가 되는 대등한 형제관계임을 규정하였다. 다만 『遼史』에 의하면, 함께 원정에 참여했던 요성종의 어머니 승천태후(承天太后)에 대해 송진종은 숙모라고 호칭하였지만 그 기록은 『宋史』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29) 『契丹國志』 권10.

를 이루는 여진 군호들이 중원지역으로 이주해 온 뒤 한화되어 안일한 생활과 사치풍조에 빠져 더 이상 과거의 질박한 상무정신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가들의 도덕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것으로서, 왕조 쇠퇴의 원인을 정신적인 원인에서 찾으려는 시도였다. 또한 몽골군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금나라의 여진 기병이 송나라와의 전쟁 중에서 특유의 상무정신을 상실하고 나약해졌다는 징조는 찾아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은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금나라의 군사적 약체화를 금군의 동원체계 상의 문제점과 군마(軍馬)자원의 고갈에서 찾는 연구는 금군이 몽골에게 격퇴당했던 원인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³⁰⁾ 요나라 시기 여진인들의 거주지역은 풍부한 말의 산지로서 거란군의 주요한 군마공급지였다. 거란은 여진의 군마가 고려나 송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나라가 건국되고 요나라와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여진인들은 군마를 생산할 겨를이 없었기에 금대 중기에 이르기까지 군마를 외부에서 유입하는 것에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여진인들은 몽골 초원의 유목민들과는 달리 농업을 중시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을 권장한 까닭에 점차 비농경지역 또는 농목혼합지역에 대한 농경지화가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금대 중기에 일시적으로 군마 수량이 회복되었지만 곧 군마학보에 어려움이 확대되었고, 외부로부터의 유입 역시 점차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칭기즈칸의 등장 이후 몽골지역에서 부족간의 항쟁이 격화되면서 몽골초원지역으로부터의 군마 유입 역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금나라는 필사적으로 군마를 확충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우수한 몽골 초원의 군마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체품으로서 토번의 군마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토번은 주로 송나라와 군마를 거래하고 있었고, 풍부한 재정을 갖춘 송나라가 제시한 높은 가격을 금나라는 맞춰줄 수 없었다. 게다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말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던 송으로 금나라의 군마가 밀수출되는 일도 빈번하

30) 박세완, 「金代中期 軍馬資源 流入減少에 對하여」, 『중국사연구』 136 (2022).

게 존재하였다. 군마 유입의 어려움은 곧바로 대규모 기병 위주의 전술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특히 주변 세력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원정은 더 이상 추진될 수 없었다.

이 밖에도 금나라는 송나라와 달리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는 대규모 상비군을 보유할 수 없었다. 이는 여진인들의 부족적 생활의 특징이기도 하였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금나라의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군대의 동원에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었다. 이는 북송 말 송나라 사람 심관(沈琯)이 금나라와의 전쟁을 주장하던 이강(李綱)에게 금나라 군대의 허실을 논하는 서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관은 이강에게 말하기, “그들은 병력을 모으는 것을 어려워하니 반년 동안 조발(調發)해야 겨우 이 정도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³¹⁾ 군마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군대의 동원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갑작스런 외부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외부 원정을 준비하거나 보병이 중심이 되어 진군의 속도가 느린 송군의 공격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몽골과 같은 기병 위주 군대의 속도전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³²⁾

금나라는 해상의 맹약을 지키지 않은 송나라를 공격하여 회종과 흠종을 사로잡았고, 도망가는 고종을 쫓아 장강을 넘어 강남지역에까지 이르렀다. 비록 바다로 달아난 고종을 잡아들이는 것에는 실패하였지만, 결국 북송을 멸망시키고 화북을 차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금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기인한 결과이지만, 여러 다양한 요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금군의 전략은 소위 ‘長驅直入’이라고 하는 기병의 뛰어난 기동력으로

31) 박세완, 「금조 동원체계의 시베열적 분석」, 『동양사학연구』 164 (2023).

32) 실제로 송 영종 개희(開禧)년간(1205년~1207년) 재상 한탁주(韓侂胄)에 의해 주도된 소위 ‘開禧北伐’에서 45,000명의 남송군이 금나라를 침공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금나라 군대 동원의 특징이 잘 드러났다. 당시 성장하는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남송의 공격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금나라 章宗은 남송의 침공이 지속되고 상당한 피해를 당하게 되자 남방을 안정시키고자 6만 명의 정예 중장기병을 동원하여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켰다. 그러나 금나라는 여전히 몽골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적진 깊숙이 돌파하여 곧장 황제를 공격하는 모험적인 전술이었는데, 당시 발해인 출신 송나라 사령관 郭藥師와 항금전투의 주력이었던 漢兒부대가 금으로 투항하게 되면서 금군의 모험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³³⁾ 그러나 금군의 전략은 공성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유목민족 기병전술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후방에 함락하지 못한 많은 송군 거점들을 뒤로 한 채 곧장 수도 개봉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곽약사나 한아군대의 투항이 없었다면, 전쟁의 향방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후 남송은 무너진 기강을 점차 회복한 후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돌발적으로 장구직입하는 금나라 군대를 후방에서 괴롭히는 전술로 이후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요컨대 압도적인 충격력을 지닌 金軍 기병 전술에 개전 초기 연전연패하던 송군은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적의 침공시에 적의 후방이되는 군사적 요충지에 대규모의 군대를 배치하여 장기적으로 적을 폐퇴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술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금군 역시 종전을 검토하게 되었다.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소흥화의(紹興和議)(1141)는 비록 남송의 입장에서 굴욕적인 군신관계로 규정되었지만, 멸망직전까지 몰렸던 남송이 효과적인 전술을 통해 전세를 뒤바꾼 결과였다.³⁴⁾

V. 결론: 송은 과연 문약한 나라였는가?

송나라는 북방 유목민족 정복왕조에 의해 국토의 일부를 상실한 채 굴욕적인 조약을 감수하면서 평화를 유지하였다. 송나라의 군사적 약체화의 원인으로서는 주로 송나라가 표방하였던 문치주의가 지목되고 있다. 그러

33) 박세완, 앞의 논문, 21-44쪽.

34) 이후 송과 금 사이의 군신관계는 해릉왕의 무모한 남침 실패로 맺어진 융흥화의(隆興和議)에서 숙질관계로 개선되었다가, 재상 한탁주의 무모한 복벌(開禧北伐) 실패로 체결된 가정화의(嘉定和議)에서는 伯姪관계로 다시금 약화되었다.

나 이러한 고전적인 시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식민지화되었던 굴욕적인 근대 역사의 기원을 송나라에서 찾으려는 20세기 전반기의 계몽주의적 시각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다. 우선 송나라는 결코 문약한 나라가 아니었다. 비록 정복왕조의 압도적인 기병에 번번히 패퇴하였고 특히 금나라 군대에 의해 화북을 상실하기도 하였지만, 요나라나 금나라는 송나라의 전토를 차지할 수는 없었을뿐만 아니라 長期戰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냈다. 비록 보병 위주의 전력이었지만, 송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였고, 정복왕조에 대해서 견고한 방어 시설을 건설하고 그들이 지닐 수 없었던 강력한 수군을 건설하여 대응하였다. 이는 송나라의 막대한 재정적인 능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하였다. 다만 유교적 문치주의는 ‘무’를 경시하지는 않았지만 군사적 모험주의나 무인의 부상을 경계하였기에 송나라에는 과거 한무제나 당태종과 같이 외부 확장정책을 추진한 황제는 출현하지 않았다. 또한 문치주의를 지향한 문인 관료들이 소극적인 전술을 고수하고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송나라가 북방유목민족의 강력한 기병을 오랫동안 상대하면서 체득하게 된 효율적인 방어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러나 송나라는 결국 몽골의 침입에 의해 1279년 멸망하였다. 세력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였던 10~13세기 다원적 국제질서가 몽골이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제국에 의해 붕괴되면서 송은 몽골을 견제할 우군을 상실한 채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뛰어난 공성능력과 해군력까지 지니게 된 몽골군이 송나라의 군사적 거점들을 각개 격파하게 되자 송나라는 더 이상 벼텨낼 수 없었다. 그러나 대규모 상비군과 수군으로 막강한 몽골군대를 40여 년간 막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송의 군사력에 대한 고전적인 생각을 더욱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오히려 요나라와 금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와 부를 지닌 송나라와의 장기간의 군비 경쟁 속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었고, 결국 송나라보다 먼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1279년 광동성 崖山에서 벌어진 남송 최후의 전투에서 송나라 문인들은

몽골의 군대에 맞서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쳤고, 전쟁의 패배가 명확해지자 모두 자결을 선택하였다. 충신 陸秀夫는 배위에서 최후까지 어린 황제 소제(少帝)에게 『대학(大學)』을 강의하다가 적군에 포위당하자, 소제를 등에 업고 끈으로 자신과 묶은 후에 바다에 뛰어들어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비록 몽골에 투항한 문인 관료들도 많았지만, 육수부·文天祥·張世傑의 송말 3걸을 비롯하여 과거 어느 왕조의 최후보다도 많은 문인들이 왕조의 멸망을 막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문을 숭상하는 ‘문치주의’는 송나라를 문약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송나라에서 무인들의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제약하고 유연한 외교정책으로 장기간의 평화와 전대미문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군사적 효율성보다는 군에 대한 문민적 통제를 선택한 송나라의 사례를 본받으면서도, 이후 중국의 왕조들은 양자간의 조화를 위한 방법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주제어

문치주의(文治主義, Civil Governance Ideology), 군사력(軍事力, Military Power), 송나라(宋朝, Song Dynasty), 송문억무(崇文抑武, Exalting the Civil and Suppressing the Military), 북방유목민족(北方遊牧民族, Northern Nomadic Tribes)

<투고: 2024년 12월 09일, 심사종료: 2024년 12월 18일, 게재확정: 2024년 12월 20일>

/Abstract/

Reevaluating the "Civil Governance Ideology" (文治主義) of the Song Dynasty

Kim, Hanshin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conventional view that the "civil governance ideology" (文治主義) of the Song dynasty led to its so-called "civilian weakness" (文弱). It re-evaluates the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ong dynasty. Grounded in Confucian political principles, the Song dynasty established a system of civil control over the military, which contributed to mitigating military turmoil and constructing a stable centralized regime. However, the civil governance ideology of the Song dynasty has often been criticized as the root cause of military failures and diplomatic humilia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such critical perspectives reflect sentiments projected onto the Song dynasty from the humiliating experiences of 19th and 20th-century Chinese history and seeks to reinterpret the military and political realities of the Song era.

The Song dynasty maintained the largest standing army in the world and effectively countered the northern nomadic states through strong defensive infrastructure and advanced military technologies, including gunpowder weaponry and shipbuilding techniques. Although the Song army repeatedly suffered defeats against the overwhelming power of the northern nomadic forces, resulting in the loss of territories and the signing of humiliating treaties, the long-term conflicts also revealed vulnerabilities in the nomadic armies. The Song dynasty leveraged the economic strength and resources of the

prosperous southern regions to sustain a unified political system for over 300 years, achieving unprecedented economic prosperity and cultural accomplishments.

The policy of "revering the civil and suppressing the military" (崇文抑武) contributed to preventing the independent militarization of generals and facilitated the formulation of efficient defense strategies, countering claims that civil governance weakened the military. Moreover, civil officials of the Song dynasty often made pragmatic and flexible decisions in matters of war and diplomacy to maintain national stability. Although the Song dynasty eventually fell to the Mongols, the fact that it resisted the formidable Mongol forces for over 40 years suggests that the Song's military capabilities and the achievements of its civil governance merit a reassessment.

In conclusion, the civil governance ideology of the Song dynasty should not merely be seen as a symbol of weakness but as a policy tha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chieving military stability and economic prosperity. The collapse of the Song dynasty should not be attributed solely to its civil governance but rather understood as an inevitable outcome of the dramatic shifts in international order and the overwhelming military superiority brought about by the emergence of the Mongol Empire.

참고 문헌

1. 원문자료

- 『契丹國志』
- 『金史』
- 『夢溪筆談』
- 『文獻通考』
- 『續資治通鑑長編』
- 『宋史』
- 『宋史紀事本末』
- 『禮記』
- 『忠穆集』

2. 단행본

- 토마스 바필드, 윤영인 역, 『위태로운 변경』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 方豪, 『宋史』,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4).
- 寺地遵, 『南宋初期政治史研究』, (廣島: 溪水社, 1988).
- 王曾瑜, 『宋朝軍制初探』, (北京: 中華書局, 2011).
- 趙汝愚, 『宋朝諸臣奏議』,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陳峰, 『宋代軍政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 陳峰, 『武士的悲哀: 北宋崇文抑武現象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11).
- Standen Naomi, *Unbounded Loyalty: Frontier Crossing in Liao China*,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 William Guangling, Liu, *The Chinese Market Economy 1000–1500*, (Albany: SUNY Press, 2015).

Jung-Pang Lo, *China as a Sea Power 1127-1368: A Preliminary Survey of the Maritime Expansion and Naval Exploits of the Chinese People During the Southern Song and Yuan Periods*, (Singapore: NUS press, 2011).

3. 논문

- 박세완, 「金代中期 軍馬資源 流入減少에 對하여」, 『중국사연구』 136 (2022).
- _____, 「금조 동원체계의 시배열적 분석」, 『동양사학연구』 164 (2023).
- _____, 「남송 건국기 방위 재건구상: 兩淮지역에서의 腹背之顧 전략을 중심으로」, 『제67회 역사학대회 동양사부 발표집』 (2024).
- 박지훈, 「송요 간의 전쟁과 和議 – 澶淵의 전역과 맹약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4 (2011).
- 윤영인,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정복왕조” 거란의 군사력」, 『동양고전연구』 85 (2021),
- 이근명, 「11세기 중반 宋-西夏의 대립과 和約 체결」, 『역사문화연구』 74 (2020).
- 雷家聖, 「南宋四川總領所地位的演變－以總領所與宣撫司·制置司的關係為中心」, 『臺灣師大歷史學報』 第41期 (2009).
- Gungwu Wang, “The Rhetoric of a Lesser Empire: Early Sung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Lorge Peter, “The Northern Song Military Aristocracy and the Royal Family,” *War and Society* 18.2 (2000).
- _____, “Military Institutions as a Defining Feature of the Song Dynasty,” *Journal of Chinese History* 1 (2017).
- McDermott Joseph P. & Yoshinobu, Shiba, "Economic change in China,

152 『사학지』 제65집 (2024. 12)

960–1279,” In Chaffee, John; Twitchett, Deni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5.2 (2015).

왕안석(王安石)의 개혁과 북송 중엽의 정계

이 근 명*

- | | |
|---------------------------|-----------------------|
| I. 머리말 | IV. 개혁을 둘러싼 북송 정계의 분열 |
| II. 왕안석의 발탁과 조례사(條例司)의 설립 | V. 신법의 내용과 농촌 사회 |
| III. 조례사의 기능과 지위 | VI. 맷음말 |

초록

왕안석의 개혁은 결코 소농민 친화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신법 조항 가운데 면역법, 보감법, 보마법 등은 의심할 나위 없이 향촌 내 소농민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소농민 보호 정책이라 알려져 있는 청묘법조차 과연 그것이 소농민 보호의 기능을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신법은 국가 재정의 확보가 우선시되는 것이었다.

왕안석의 신법은 국가의 행정, 재정, 군사,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방향은 북송 중엽 위기 국면의 타개였다. 북송 중엽 위기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심각한 재정 적자였다. 신법의 취지는 재정의 확보에 있었으며, 그밖에 소농민 보호라든가 시장 경제 원리의 도입 등은 설령 그러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었다.

왕안석의 신법이 시행된 시기는 11세기 후반기이다. 당시 향촌에는 자연재해와 기근이 단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구제 정책의 하나로 무연고 사망자를 장사지내 주는 사업, 이를하여 누택원(漏澤園) 조성 사업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기도 하였다.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재정 사업을 펼친 다음 안정적인 수익을 기약할 수 없는 시대였다. 따라서 신법의 제조항에는 언제나 재원의 환수를 위한 안전 장치가 부수되어 있었다. 바로 연대책임과 상환의 강제였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큰 소동이 발생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naryspa@hanmail.net

하였다. 구법당이 지적하는 신법의 폐단, 부작용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신법이 지니고 있는 포괄성, 그리고 대대적인 재정 확보의 추구, 이것 이야기로 신법이 구법당 인사들로부터 반대를 받게 되는 근원적 요인이 되었다. 신법은 그 도입의 초기, 아니 제치삼사조례사라는 임시 기구의 설립 당초부터 심각한 반대에 직면한다. 그리고 그 반대는 신법 제조항이 선포되어 갈수록 격렬해졌다. 신법 내지 신학의 국가중심주의, 무리한 재원 확보 추구로 인해, 조종(朝宗)의 법도에 대해 남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던 사대부 관료들로부터 반대를 샀던 것이라 여겨진다.

I. 머리말

신법 혹은 변법(變法)이라 불리는 왕안석의 개혁은 북송의 중엽인 1069년(神宗 熙寧 2) 2월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제치삼사조례사, 즉 조례사는 개혁을 총괄하는 임시 기구였다. 조례사는 설립 이후 개혁의 각 제도를 심의하여 입안하였다. 그리하여 1069년(희녕 2) 7월에는 균수법(均輸法)이, 이어 9월에는 청묘법(青苗法)이, 그리고 11월에는 농전수리법(農田水利法)이 반포되었다. 이후에도 신법은 속속 발포되었다. 이듬해인 1070년(희녕 3)에는 면역법(免役法, 募役法)과 보갑법(保甲法)이 도입되었다. 다음으로는 시역법(市易法),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 보마법(保馬法), 면행법(免行法), 장병법(將兵法) 등이 시행되었다. 이밖에도 과거제의 개혁, 창법(倉法) 등 왕안석의 개혁은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개혁으로 송대의 역사는 중대한 굴절을 겪게 된다. 신법의 도입과 함께 송조의 지배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제도와 사회경제, 농민 생활 등이 가위 상전벽해라 할 정도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사가들은, 왕안석의 신법을 두고 당송간 변혁의 총결산이라든가, 혹은 이후 북송의 역사 전개를 규정지은 일대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왕안석 개혁의 성격을 둘러싸고서는 북송 중반의 신법 시행 당시 아래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체로 전통시대를 통해서는 왕안석에 대한 악평이 주류를 점하였다. 신법으로 인해 국정이 파탄되고 마침내 북송의 멸망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남송 초기 「신종실록」의 개수(改修) 아래 확정되어 전근대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원대에 편찬된 『송사』, 그리고 청대 중반의 『사고전서』는 그러한 왕안석 내지 신법에 대한 인식의 귀착점이었다. 심지어 명말청초의 왕부지(王夫之)는 『송론(宋論)』에서 왕안석을 두고 ‘소인’이라는 모멸적 평가를 내리고 있을 정도이다. 물론 이러한 압도적 악평 내지 부정 일변도의 분위기 속에서도 왕안석에 대해 극소수이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한 인물도 없지 아니했다. 남송

의 육구연(陸九淵), 청대 『왕형공연보고략(王荊公年譜考略)』을 지은 채상상(蔡上翔) 등이 그러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모두 왕안석과 동향인 강서(江西) 출신이었다.

그러다가 왕안석에 대한 평가가 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중국이 제국주의 열강의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정을 지휘하며 국가적 난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왕안석의 모습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가 제안했던 신법 조항들에 대한 평가도 이전과는 판이해져서,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었다고 이해되었다. 왕안석에 대한 총체적 창찬이 지배적인 흐름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양계초(梁啓超)와 같은 인물은, 왕안석이 출현했던 것은 중국사의 영광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왕안석에 대한 호의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근래의 송대사 연구자들은 왕안석 및 그의 개혁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인 견해를 보인다. 왕안석의 개혁이야말로 대지주·대상인의 횡포로부터 약자인 중소농민·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사회구제적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률의 원칙을 도입하여 북송 중엽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한 진보적 측면이 있었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신법에 반대한 이른바 구법당에 대해 사회 개혁과 진보를 거스를 보수파라 규정한다.

왕안석의 개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본질적이면서도 어려운 화두이다. 왕안석의 개혁, 즉 신법에 대해 북송 조정의 명망 있는 신료들은 거의 일치되게 반대하였다. 구법당 관료들은 왜 신법에 대해 반대하였던 것일까? 이에 대해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은 수십년 전부터 명쾌한 해석을 가하고 있다. ‘신법이 대지주, 대상인의 이해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왕안석의 개혁은 소농민, 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지녔고, 그리하여 신법으로 말미암아 대지주 대상인들이 피해를 보았기에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관료들의 반대에 직면하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소박할뿐더러 몰역사적인 논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역사적 사건을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퀘퀘묵은

시각이다.

이 논고에서는 우선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 개괄한 연후에 신법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왕안석 및 그의 개혁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왕안석의 개혁이 당시의 농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시키려 한다. 신법이 소농민, 소상인의 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가라는 점 이야기로 신법 이해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 왕안석의 발탁과 조례사(條例司)의 설립

1067년(英宗 治平 4) 정월, 북송의 제5대 황제인 영종(英宗)이 봉어하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였다. 그가 바로 신종(神宗)이다. 당시 신종은 약관 20세의 청년이었다. 그는 이후 1085년(元豐 8) 38세의 나이로 사거하기까지 20년 가까이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 왕안석에 대한 절대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왕안석의 신법도 신종이란 인물이 없었다면 아마 중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아니 적어도 신법이란 개혁이 대단히 다른 형태를 띠었을 것이 분명하다.

11세기 중엽 건국한 지 100여년을 넘긴 북송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 문제 상황을 두고 전통시대의 지식인들은 ‘삼용(三冗)의 위기’라 불렀다. 삼용이란 말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용관(冗官)과 용병(冗兵), 용비(冗費)를 일컫는다. 즉 관료 및 군대 수효의 과다, 그리고 과중한 재정 지출을 가리킨다. 용관과 용병이 문제되는 것도 두말할 나위 없이 결국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용은 요컨대 국가 재정의 심각한 적자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렇다면 당시 송조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것일까? 신종이 즉위하기 직전인 1065년(英宗 治平 2), 재정 수지는 총 420만 민(緝)의

적자를 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당시 총 세입의 약 3.5%에 달하는 것이었다.¹⁾ 적자의 규모 자체도 문제려니와, 더 심각한 것은 재정 지출의 대부분이 군대와 관원의 보수 등 경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군대 유지비는 전체 예산의 7, 8할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였다.²⁾

이와 같은 재정 불균형은 그대로 농민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인종의 통치기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치세를 구가하였다고 일컬어졌다. 이른 바 ‘경력(慶曆)의 다스림’이란 말이 그러한 정치적 안정을 상징해 준다. 하지만 전후 40여년에 걸친 인종의 통치기는 결코 안정이나 태평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대내외적인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특히 농민 부담은 전례 없이 무거워졌다. 상세 염세 등 전매제가 강화되고 절변(折變)과 부가세, 화적(和糴)과 화매(和賣) 등 각종 부담이 증가 일로의 양상을 보였다.³⁾

농민 부담의 증가는 그대로 농촌 사회의 심각한 동요를 유발하였다. 1059년(인종 가우 4)에는 연간 발생한 전국의 겁도(劫盜)가 무려 900여 차례에 달했다고 한다. 실로 ‘처처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해마다 봉기의 횟수가 많아지고 또 해마다 규모도 커진다.’⁴⁾라 할 정도의 기세에 있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말미암아 1043년(인종 경력 3)에 부필(富弼)은 이미, ‘사방에서 대도가 일어나 장차 도성으로 밀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조정에서는 이를 막을 힘이 없으니 장차 어찌할 것인가!’⁵⁾라고 탄식하고 있다.

1) 1065년(영종 治平 2)의 총 세입은 1억 1,613만 민, 총 세출은 1억 2,034만 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汪聖鐸, 『兩宋財政史』(北京: 中華書局, 1995), 682쪽 참조.

2) 예컨대 1061년(인종 嘉祐 6)부터 1065년(영종 치평 2)까지 三司使의 지위에 있었던 蔡襄은, 총 118만 명에 달하는 군대 유지비가 세출 가운데 약 6분의 5를 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論兵十事奏』, 『全宋文』 권1003, 上海辭書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合刊).

3) 이 때문에 漆俠과 같은 학자는, ‘인종 통치 시기는 송대 역사상 제1차의 賦稅 격증기’라고 말한다(『宋代經濟史』 上冊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7], 「宋封建國家的賦役制度」上, 393쪽).

4) 『資治通鑑長編』(이하 『長編』이라 약칭함, [北京: 中華書局本]) 권143, 인종 경력 3년 9월 丁丑.

신종이 즉위한 시점은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산적한 시기였다. 물론 이러한 위기 국면에 당하여 이전에도 수 차례 개혁의 시도가 취해진 바 있다. 개혁을 주창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왕안석이 신법을 시행하던 때 앞 장서서 그 개혁에 반대하던 노신 부필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질타하였다. 그는, ‘만일 조정에서 구태의연하게 백성의 원한을 피하려 들 뿐 서둘러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도적은 더욱 만연해 갈 것이다. 변란(變亂)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될 터이니 장차 백성들은 어찌 살 것인가? 또 사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⁶⁾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마찬가지로 신법에 대한 대표적 반대론자였던 구양수(歐陽脩)나 사마광(司馬光)도, 인종의 통치기에 는 국정의 쇄신을 강력하게 주창하였다. 그렇기에 남송 시대의 인물인 진량(陳亮)은 북송 중엽을 평하며, “경력 가우(嘉祐) 시기를 당해서 당세의 명사들은 늘 제도가 바뀌지 않는 것을 근심했다.”⁷⁾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종의 즉위 이전에 시도된 개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종 경력 연간 범중엄(范仲淹)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이른바 경력(慶曆)의 신정(新政)이다. 하지만 이 개혁은 여이간(呂夷簡)을 위시한 집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인종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영종(英宗) 또한 나름대로 강력한 개혁의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신 병약했던 데다가 즉위 직후 터져 나온 복의(濮議)로 말미암아 개혁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말았다.

신종의 즉위 당시 왕안석은 모친의 거상(居喪)을 막 마친 상태였다.⁸⁾ 신종은 이러한 그를 중앙관으로 부르려 했으나 병을 이유로 고사하자, 일단 현재의 난징인 강령(江寧)의 지부(知府)로 삼았다가⁹⁾ 6개월 후 마침내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임명하였다.¹⁰⁾ 신종이 즉위한지 9개월여만인 1067년

5) 위와 같음.

6) 위와 같음.

7) 『陳亮集』(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7]), 권12, 「銓選資格」, 134쪽.

8) 『長編』 권209, 영종 治平 4년 윤3월 庚子.

9) 위와 같음.

10) 『續資治通鑑長編拾補』(北京: 中華書局本, 이하 『長編拾補』라 약칭함) 권2, 영종 치평 4년 9월 戊戌.

(치평 4) 9월의 일이었다. 당시 왕안석의 나이는 47세였다. 한림학사란 직위는 황제의 조칙을 기초하며 한편으로 황제의 지근거리에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서, 이를 경유하여 재집(宰執) 등의 요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다.

1068년(희녕 원년) 4월 왕안석은 한림학사로 임명된 지 7개월만에 입경했다. 신종은 즉시 그를 불렀다. 사서에서는 이러한 신종의 신속한 왕안석 호출을 ‘월차(越次)’라 적고 있다. 순서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그의 새 인물 내지 새로운 정책제안에 대한 기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신종이 왕안석과 처음 대면하여 그의 정책 주장을 접하고 채 반년이 지나지 않아 신종은 왕안석 중심의 국정 개혁을 거의 굳혔다.

신종의 왕안석 중용의 방침은 매우 신속히 결정되었다. 당시 신종이 얼마나 왕안석 중심의 국정운영을 서둘렀나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화¹¹⁾에서 잘 드러난다. 왕안석이 입경하고 수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신종은 왕안석과 만나 천하사에 대해 견해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신종이, ‘경이 아니면 짐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해줄 사람이 없소. 짐은 장차 정사(政事)를 경에게 맡기고자 하니 사양하지 않기를 바라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왕안석은 신종의 조급함을 만류하며, ‘폐하께서 진실로 臣을 임용하고자 한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신종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짐이 경을 안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신종은 왕안석의 중용에 대해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종은 이듬해인 1069년(희녕 2) 2월 마침내 왕안석을 부재상인 참지정사(參知政事)로 기용했다.¹²⁾ 왕안석의 개혁주장을 중심으로 한 정국운영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왕안석이 한림학사로 임용되어 수도 동경에 당도한 지 불과 10개월만의 일이었다.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 즉 약칭하여 조례사(條例司)는 1069년(희녕 2) 2월 왕안석이 참지정사로 발탁된 직후 설립된다. 왕안석을 중심

11) 『長編拾補』, 권4, 신종 희녕 2년 2월 庚子.

12) 위와 같음.

으로 한 정권이 구성되면서 곧바로 발족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례사는 과연 어떠한 전후 맥락에서 설치되었던 것일까? 다시 말하여 신종과 왕안석은 어떠한 배경에서 조례사라는 임시기관의 설립에 동의하였던 것일까?

조례사 설치의 직접적인 계기는 신종의 변방(邊防)에 대한 자문이었다. 신종은 새로이 집정(執政)이 된 왕안석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섬서 일대의 군수(軍需)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을 물어보았다. 이러한 자문이 조례사의 설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전후의 사정에 대해 『속자치통감장편습보(續資治通鑑長編拾補)』에서는,

이에 앞서 신종은, “어떻게 하면 섬서의 전가(錢價)를 무겁게 하고 가히 변곡(邊穀)을 축적할 수 있겠소?”라고 물었다. 왕안석은 대답하여 가로되, “전가를 무겁게 하려면 마땅히 천하의 개합(開闢)하고 염산·effuse하는 법을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천부(泉府)의 일관(一官)은 선왕(先王)이 바로 이를 통해 겸병을 통제하고 빈약자(貧弱者)를 지원하며 천하의 재물을 변통하고 이익이 한 군데에서 나오도록 하던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고로 조례사를 두어 이재(理財)의 술(術)을 강구하도록 했다.¹³⁾

고 기록하고 있다. 왕안석은 섬서의 전가(錢價)를 유지하면서도 무리 없이 군수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신종에게, 천하의 개합하고 염산하는 법, 즉 유통체계의 개선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 바람직스러운 방안은, 다름 아닌 선왕의 천부¹⁴⁾인 바, 천부의 정신을 본받은 기관을 통해서 물가통제력 및 재원을 국가가 장악하고 이를 통해 겸병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은 이러한 왕안석의 제언을 받아들여, ‘삼사(三司)의 전반적인 체제 및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하는 권한’을 지닌 제치삼사조례사를 설립했다.¹⁵⁾ 조례사란, 바로 이와 같이 신종의 변방문제에 대한 관심 및 왕안석의 재정관이 합치된 산물이었다.

13) 『長編拾補』 권4, 神宗 熙寧 2년 2월 甲子.

14) 泉府란 『周禮』에 등장하는 官名으로서 地官에 속하며, 市稅를 징수하는 한편 시장의 溢貨 내지 잉여 물자를 매입하였다가 민간의 수요가 있을 때 매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15) 『長編拾補』 권4, 神宗 熙寧 2년 2월 甲子.

그런데 이렇게 설립된 조례사란 기구의 조직상 통속관계는 어떠하였던 것일까? 즉 북송 관제 내에서 조례사는 어떠한 기구에 배속되었을까? 조례사의 임무는 재정정책, 즉 삼사의 관장업무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조례사는 결코 삼사의 예속기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1069년(희녕 2) 8월 사마광(司馬光)이 조례사라는 임시기구의 설치에 반대하며, ‘재정과 관련한 문제는 삼사의 업무로되 문사(文士) 몇 사람을 모아 별도로 일국(一局)을 만들고 정책을 바꾸고 있으며 삼사는 간여하지 못한다.’¹⁶⁾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조례사를 지휘하는 최상위 직위에는 중서(中書)와 추밀원(樞密院)의 고위 관원이 임용되었을 뿐 삼사 출신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조례사의 중추 직위인 겸상문자관(檢詳文字官)에도 마찬가지로 삼사 출신은 전연 임용되지 않았다.¹⁷⁾ 이처럼 조례사는 삼사의 정책을 점검한다는 의미를 지닌 기관이었지만 관제상(官制上)으로는 삼사와 완전히 별개의 관서였다. 1069년(희녕 2) 11월 조정에서 조례사의 존치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왕안석이,

이것이 폐하께서 이재에 특별히 일사(一司)를 설치하시어 진승지(陳升之)와 신으로 하여금 통솔하게 한 뜻입니다. 시사(時事)에 따라 특별히 일사(一司)를 설치했으므로 마땅히 병합해서는 안 됩니다.¹⁸⁾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조례사의 관제상 지위를 잘 보여준다. 당시 재상의 직위에 올랐던 진승지(1011~1077)는 조례사의 중서 병합을 주장하고 있었다. 재상인 자신이 조례사라는 작은 부서의 수장을 겸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¹⁹⁾ 이에 대해 왕안석은 위 인용문에서 보듯, 황제인 신종이 이재라는 중대한 현안문제를 긴급히 처리하기 위

16) 司馬光, 『體要疏』(『司馬光奏議』,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6]) 권25.

17) 東一夫, 『王安石新法の研究』(東京: 風間書房, 1970), 283~298쪽을 참조.

18) 『長編拾補』 권6, 神宗 熙寧 2년 11월 乙丑.

19) 당시 陳升之는, “陳升之既拜相 遂言. 制置三司條例司難以簽書……若制置百司條例則可 今旦制置三司一官條例 則不可.”(『長編拾補』 권6, 神宗 熙寧 11월 乙丑)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해 조례사를 특별히 설립한 것이니 만큼 재상이 겸직한다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떴다. 조례사는 비록 규모는 크지 아니하나 당시 중앙 정부의 여타 기구와는 별도의 기관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 설치의 조령에서도, “별도로 관사(官司)를 두어 제치삼사조례사라 이름하였다.”²⁰⁾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조례사는 기존 관료기구와는 아무런 형식적 통속관계를 지니지 않은 독립기관이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업무상 당시 최고의 민정기관이었던 중서와는 중합되는 면이 많았다. “조례사의 주청하는 바는 모두 중서와 관련된다.”²¹⁾는 왕안석의 발언이라든가, 앞서 살핀 것처럼 진승지가 조례사의 폐지를 주장하며 그 이후의 처리와 관련하여 중서로 병합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 등이, 그러한 조례사와 중서 사이의 업무상 중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까닭에 당시의 지식인들 중에는, 조례사가 중서 회하에 두어졌다고 인식했던 이 조차 있었다.²²⁾ 바로 이러한 성격으로 해서 훗날 조례사가 마침내 폐지될 때, 그 업무는 중서로 귀속되기에 이른다.

III. 조례사의 기능과 지위

조례사 창설의 직접적인 계기는 앞서 살핀 것처럼 신종의 섬서일대 군수문제에 대한 자문이었다. 그렇다면 신종은 염원해 마지않던 왕안석 등용을 실천에 옮긴 후, 어찌하여 다름 아닌 섬서 일대의 군수 문제를 먼저 제기하였던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신종의 문제제기에 대해 왕안석은 어떠한 이유에서 유통체계의 개혁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였고, 또 신종

20) 『長編拾補』 권4, 神宗 熙寧 2년 2월 甲子.

21) 위의 책, 권6, 神宗 熙寧 2년 11월 乙丑.

22) 邵伯溫(1056~1134)이 『邵氏聞見錄』에서, “未幾 中書省置三司條例司 相與議論者 以經綸天下爲己任. 始變祖宗舊法 專務聚斂 私立條目 頒於四方 妄引周官 以實誅賞.”(권 10)이라 적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은 이에 동조하여 마침내 조례사라는 이재 기관의 설립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물론 이러한 자문의 원인(遠因)으로는 신종의 군사적인 공업(功業) 성취에 대한 욕구 및 이와 관련한 군사문제에 대한 관심을 들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신종의 자문으로부터 유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으로 이어지는 논의의 귀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입중법(入中法)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송시대를 통해 서북일대에는 거란 및 서하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수많은 군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북송정부는 하북과 섬서의 군수조달을 위해, 각처의 상인들로 하여금 군량과 마초(馬草)를 납입시키고 이들에게 염인(鹽引)과 다인(茶引) 및 현전(現錢) 등을 댓가로 지불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수조달의 체계를 입중법이라 불렀던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입중법이 11세기에 접어들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기 시작했다.²³⁾ 대상인들의 농간과 관리들의 작간(作奸)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폭등하고, 또한 입중(入中) 상인에 대한 적절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군수물자의 조달이 막심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섬서지역의 경우 철전(鐵錢)과 동전이 병용되었던 사실은 이러한 입중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 입중제도를 둘러싸고 진종 및 인종 연간을 통해 이른바 삼세법(三稅法)과 사세법(四稅法), 그리고 현전법(見錢法) 등의 변천이 거듭되고 있었던 것 역시, 그러한 여러 폐단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왕안석은 신종이 서하와의 접경지역인 섬서일대 변량(邊糧) 문제의 해결을 자문하자, 상인의 통제 및 국가권력에 의한 유통기능의 회수를 역설했던 것이다. 이러한 왕안석의 주장에 신종이 동조하여 조례사의 설립에 이르렀던 것이다. 결국 조례사 설립의 의도는, 훗날 균수법(均輸法)이라 불리는 정책의 시행을 위한 것이

23) 이하 북송 중엽 서북 일대의 入中法 상황 및 제도변화에 대해서는, 宋晞, 「北宋商人的入中邊糧」(同氏著, 『宋史研究論叢』, 第1冊, [臺北: 國防研究院, 1962]) 및 金永眞, 「北宋前期 京師米行商의 入中邊糧活動-商業資本形成에 關한 一考察」, 『歷史學報』 101, (1984)을 참조.

었다.

이렇게 조례사가 최초 균수법의 시행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선 신종은 조례사가 설립된지 채 1개월이 안 된 1070년(희녕 2) 3월 18일 조령을 내려, “천하의 재화가 유적(留積)하여 불통(不通)하는 까닭에 특별히 보신(輔臣)에게 명하여 조례사를 설치하게 했다.”²⁴⁾고 밝히고 있다. 이 조령에서는 또한, ‘장차 물자의 유통과 관련한 여러 폐단을 시정할 터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좋은 견해가 있으면 제치삼사조례사에 전의하라.’고 하명하고 있다.²⁵⁾ 신종 자신 조례사의 설립이 다름 아니라 천하의 유통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언(明言)하고 있는 것이다.

왕안석의 「걸제치삼사조례(乞制置三司條例)」라는 상주문²⁶⁾ 역시, 조례사의 설립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상주문은 제목에서 밝히고 있듯 조례사 설립후 그 운영 및 활동의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건의하는 성격을 띤 것이었다. 또한 그 서두는, ‘삼사의 전반적인 체제 및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하라는 조령을 받들어 그 검토 결과를 보고 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²⁷⁾ ‘삼사의 전반적인 체제 및 제도의 검토’란 바로, 조례사 설립 당시 부여되었던 직무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발운사(發運司)를 통한 상공(上供) 구조의 개선, 대상인에 의한

24) 『宋會要輯稿』(北京: 中華書局 影印本, 이하 『宋會要』라 약칭), 「職官 五」「制置三司條例司」, 神宗 熙寧 2년 3월 18일, 職官 5之1.

25) 위와 같음. 又詔曰. 朕惟 理財之臣 失於因循 其法遂至於大壞. 而天下之貨 留積而不通. 故特詔輔臣 俾之置司 講求利病 將採宿弊 而更張之.……內外臣僚 有能知財用利害者 詳具事狀聞奏. 其諸色人 亦具事理 於制置三司條例司陳狀. 在外者 卽隨所屬州軍投狀 繳申條例司.

26) 王安석의 『臨川先生文集』 권70에 실려 있는 이 문장을 두고 『王荊公年譜考略』 을 찬술한 蔡上翔은 神宗 熙寧 2년 2월에 작성되었다고 하고 있으나(『王荊公年譜考略』 권14, 『王安石年譜三種』, [北京: 中華書局, 1994]), 『宋會要』에 의하면 熙寧 2년 7월에 올려진 것으로 되어 있다(「職官 五」「制置三司條例司」, 職官 5之2). 또한 이 문장은 물론 王安石에 의해 작성된 것이지만 『宋會要』에서는 ‘制置三司條例司言’이라 적고 있다.

27) 『宋會要』, 「職官 五」「制置三司條例司」, 神宗 熙寧 2년 7월 17일, 職官 5之2. 制置三司條例司言. 奉詔取索三司條例 看詳具合行制置事件以聞.

물가 유통권한의 장악 및 그로 말미암은 폐해의 개혁, 국가권력의 유통권 확보와 이를 통한 재원의 창출 등, 사실상 균수법의 개요를 밝히고 있다. 최초 신종과 왕안석의 의도는 조례사를 설립하며 다만 훗날 균수법이라 지칭되는 개혁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례사가 이처럼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구조 및 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던 만큼, 그 정부기구 내 지위 내지 권한은 과격적이라 할 정도였다. 한기(韓琦, 1008~1075)가 청묘법을 비판하며 조례사에 대해,

또한 제치사(制置司)는 비록 대신이 주령(主領)하나…(중략)...일찍이 보지 못했던 정탈(定奪)의 관서입니다. 업무는 중서 및 추밀원과 논의하지도 않고 폐하의 뜻(聖旨)을 받들지도 않은 채 곧바로 시행합니다. 이러한 즉 중서 바깥의 또다른 중서인 셈입니다.²⁸⁾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기에 의하면 조례사란 기구는, 당시 양부(兩府) 혹은 이부(二府)라 불렸던 최고의 정부기관인 중서나 추밀원과도 업무를 논의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독자적 정책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정탈의 관서’인 만큼, 조례사는 또다른 중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그가 조례사를 두고 황제의 재가도 없이 업무를 추진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간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 한기의 판단으로는 조례사가 청묘법을 강행하며 지방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묘법의 몇 가지 구체적인 시행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황제에 대한 보고도 생략한 채 발포했다는 것이다.²⁹⁾

사실 조례사는 그 설립 당초부터 제반 업무의 추진에 있어 황제에 대해 보고만 한 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왕안석의 주도로 조례사란 기구의 운영지침을 정할 때 황

28) 『宋會要』, 「食貨 四」「青苗 上」, 神宗熙寧 3년 3월 4일, 食貨 4之29.

29) 韓琦가 구체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今直指揮 許散絹與鄉村戶 依青苗法 納錢 及令方郭戶 願請者亦聽.”(위와 같음)이라는 조례사의 편의적인 지침이었다.

제의 윤허를 받아 그러한 편의적인 업무 추진 권한을 확보했던 것이다.³⁰⁾ ‘조례사에서는 업무를 상주만 한 채 곧바로 시행하였다’³¹⁾는 『장편』의 기록은 그러한 편의적인 정책추진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권한에 의거하여 조례사는, 한기가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반대파의 입장에서 볼 경우, ‘정탈(定奪)의 관서’라 할 정도로 파격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례사는 그 존속기간을 통하여 가위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예컨대 어사중승(御史中丞)의 직위에 있던 여공저(呂公著, 1018~1085)는 조례사의 관료기구 내 비정상적인 지위를 비판하며,

다만 제치조례사(制置條例司)는 실로 국가의 안위와 생민(生民)의 휴척(休戚)과 관계됨에도 재상이 더불어 논의할 수 없습니다. 재상이 가하다 여기면 함께 공론하나 불가하다 여기면 또한 앓아서 성폐를 논할 수 없으며 다만 끝에 서명할 따름입니다.³²⁾

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 조례사는 국가의 안위나 민중생활에 관련된 중대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재상의 반대를 도외시한 채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그는, ‘조례사가 위로는 정부체계를 벗어나 있으며 아래로는 관련된 관리조차 배제하고 업무를 처리한다.’³³⁾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조례사에 의해 그 업무 전반을 점검받는 위치에 있었던 삼사는, 조례사에 저희에 가위 절대적으로 예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북송 전반 재정을 총괄하는 기관이었던 삼사의 정부 조직 내 비중 내지 지위가 얼마나 막강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퀘언을 요치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신종 연간 삼사의 업무를 개혁하고자 했던

30) “應有合行事件 令具條例以聞 乞下制置司 參酌施行.”(『宋會要』, 「職官 5」「制置三司條例司」, 神宗熙寧 2년 7월 17일, 職官 5之11)이라는熙寧 2년 7월의 詔令이 바로 그것이다.

31) 『長編拾補』 권6, 神宗熙寧 2년 11월 乙丑, 奏設制置條例司 引之共事 凡所欲爲自條例司直奏行之 無復齟齬.

32) 『長編』 권210, 神宗熙寧 3년 4월 戊辰.

33) 위와 같음. 今制置一司 上既不關政府 下又不委有司.

왕안석 자신이, ‘삼사가 팔할하는 업무는 극히 포괄적이다.’³⁴⁾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다. 이러한 삼사에 대해 조례사는, 만일 삼사측에서 조례사의 관할 업무인 균수법에 대해 이론이 있을 경우, 삼사의 장관인 삼사사(三司使)로 하여금 균수법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인 발운사(發運司)가 위치한 회남(淮南)에까지 찾아가도록 규정할 정도였다.³⁵⁾ 이 만큼 조례사는 정부조직 내 절대적인 권한 내지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왕안석 자신도 조례사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은 1070년(희녕 3) 정월 개봉부(開封府) 일대에서 청묘전(青苗錢)을 민간에 강제 할당하여 물의를 일으킨 제거관(提舉官)들에 대한 처리에서 잘 드러난다.³⁶⁾ 이들에 대해 신종은 최초 중서로 불러 문책하려 했으나, 왕안석은 그럴 경우 민간에서 신법 자체에 대해 회의를 품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신법에 문제를 일으킨 관료는 신법을 입안한 조례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왕안석은 신법과 관련한 조례사의 권위가 중서로 인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례사에 파격적인 권한이 부여되자, 그 활동은 점차 황제인 신종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례사가 최초의 설립 의도와는 달리 1070년(희녕3) 7월 균수법을 실행한 이후 9월에는 청묘법을, 이어 11월에는 농전수리조약(農田水利條約)을 반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갔던 것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례사는 처음 설립될 때에는 단지 변방(邊防)을 위해 원활한 조달체계를

34) 王安石, 『臨川先生文集』(中華書局 香港分局, 1971) 권49, 「翰林學士除三司使制」. 三司使天下之盛選也. 自尚書六官 名存實去 而三司之職事所總居多.

35) 『宋會要』, 「職官 5」「制置三司條例司」, 神宗熙寧 2년 9월 2일, 職官 5之3. 구체 적으로는, “詔. 三司如有與制置條例司商量公事 令吳充往彼淮南制置發運司.”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詔令에서 淮南發運司에 가도록 규정되어 있는 吳充은 당시 三司의 장관인 權三司使였다. 이에 관해서는 『宋史』(北京: 中華書局本) 권 312, 「吳充傳」을 참조.

36) 이하 開封府 提舉官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長編拾補』 권7, 神宗熙寧 3년 正月 庚申을 참조.

수립한다는 제한된 목표만을 지녔으나,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가 개혁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권부(權府)로 발전해간 것이다.

그리하여 조례사의 임의적인 정책시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황제의 명령도 과급되지 않는 또다른 정부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조례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서나 추밀원과도 의논하지 않고 황제의 뜻조차 받들지 않는다.’³⁷⁾든가, ‘위로는 정부 체계를 벗어나 있으며 아래로는 유관 관리조차 배제한 채 업무를 처리한다.’³⁸⁾는 비판 등은 그러한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왕안석 또한 효율적인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편의적으로 황제를 배제하는 것 또한 무방하다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취하기조차 했다.³⁹⁾ 요컨대 조례사는 신종의 외정을 위한 개혁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점차 그 존속기간을 통해 성격이 변질되어 왕안석의 주도 하에 전반적인 개혁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다.

IV. 개혁을 둘러싼 북송 정계의 분열

인종 말년 이래 강녕부(江寧府)에 기거하던 왕안석이 중앙으로 발탁되는 것은 1068(희녕 원년) 4월의 일이다. 이 무렵 왕안석의 명망은 전중국에 두루 퍼져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사마광은, ‘왕안석이 발탁을 고사해서 그렇지, 중앙으로 오기만 하면 국정을 훌륭히 운영할 것이라는 평판이 자자했다.’⁴⁰⁾고 술회하고 있다. 이러한 중망은 풍부한 학식과 관직에

37) 『宋會要』, 「食貨 四」「青苗 上」, 神宗熙寧 3년 3월 4일, 食貨 4之29. 事不關中書樞密院 不奉聖旨 直可施行者.

38) 『長編』 권210, 神宗熙寧 3년 4월 戊辰. 今制置一司 上既不關政府 下又不委有司.

39) 唐介에 의하면 당시 王安石은, “安石旣執政 奏以中書處分事用劄子 皆言奉旨不中理者尙十八九 不若令中書自出牒 不必稱聖旨.”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今安石不欲稱聖旨 則是政不自天子出也.”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長編拾補』 권4, 神宗熙寧 2년 4월 丁未).

40) 司馬光, 『溫國文正司馬公文集』(四庫全書本) 권60, 「與介甫書」.

대한 무욕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종이 1069년(희녕 2) 2월 그를 참지정사로 발탁하기에 앞서 중신에게 자문하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였다. 신종은 우선 재상직에서 물러나 지방관으로 전임하는 한기(韓琦)에게 자문하였다. 그러자 한기는, “왕안석은 한림학사라면 남음이 있으나 재보(宰輔)로 삼으면 안 됩니다.”고 답하였다.⁴¹⁾ 이어 재상인 증공량(曾公亮)과 참지정사인 오규(吳奎)에게 물었다. 오규는, “신은 과거 왕안석과 더불어 군목판관(郡牧判官)으로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집이 세고 우활(迂闊)합니다. 중용하게 되면 필시 기강을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⁴²⁾ 반면 증공량은, “왕안석은 문학이나 식견이 높습니다. 결코 기망(欺罔)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⁴³⁾

다음으로 신종이 자문을 구한 사람은 참지정사 당개(唐介)였다. 당개는 왕안석을 중용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왕안석은 호학가(好學家)로 고사(故事)에 엄매어 있으므로 중용하면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⁴⁴⁾ 마지막으로 시강(侍讀)인 손고(孫固)에게 물어보았다. 손고는, “왕안석은 문행(文行)이 심히 높으니 시종 직위 정도가 좋습니다. 재상은 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속이 좁습니다.”라고 말하였다.⁴⁵⁾

이와 같이 반대 목소리는 다양하였으나 대략 우활하다는 것과 고집이 세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주조였다. 특히 경전 속의 전고를 들어 시정(時政)을 비판하는 자세, 나아가 조정의 관행이나 통념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신념에 의거하여 거침없이 행동하며 논란을 야기했던 사실 등을 문제로 들었다. 이러한 성향에 비추어 중책을 담당할 경우 국정에 큰 소용돌이를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점했다.

왕안석은 신종의 부름으로 인해 입조하여 알현할 때부터 선왕(先王)의

41) 『宋史』 권312, 「韓琦傳」.

42) 『宋史』 권316, 「吳奎傳」.

43) 위와 같음.

44)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6), 권59, 「王安石事迹 上」.

45) 『宋史紀事本末』 (北京: 中華書局, 1977) 권37, 「王安石變法」.

법도에 따라 국정을 일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068(희녕 원년) 4월 왕안석은 한림학사로 임명되고 7개월만에 입경(入京)하였다. 신종은 즉시 그를 궁궐로 불렀다. 이때 그는, ‘요순(堯舜)을 본받아 간요(簡要)하고 번잡하지 아니한 방향으로 정책을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⁴⁶⁾ 신종의 하문(下問)에 응대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본조백년무사차자(本朝百年無事劄子)」에서는, ‘송조가 개창된 이래 태평을 구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산적된 상태이다. 백년 동안이나 무사하였던 것은 실로 천우신조이다.’라고 단언하였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행보와 발언으로 인해 왕안석은 중앙으로 발탁되고 채 1년이 되기 전에 이미 조정 노신들로부터 경계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신종은 조정 내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069년(희녕 2) 2월 왕안석을 참지정사로 임명하고, 그의 주장에 따라 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했다. 이 직후 어사대의 장관인 어사중승 여회(呂誨)가 상주하여 강력히 왕안석을 탄핵하였다. ‘크게 간사하지만 충직한 듯 보이고 크게 아첨을 일삼지만 신실(信實)한 듯 보인다.’라는 것이었다.⁴⁷⁾ 또 ‘바깥으로 박야(朴野) 한 듯하나 안으로 교사(巧詐)함을 숨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찍이 왕안석에 대해 제기된 바 없는 극렬한 공격이었다. 여회는 또 이른바 10대 죄상을 나열하며 왕안석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했다.⁴⁸⁾ 왕안석은 이에 충격을 받고 신종에게 사직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신종은 왕안석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에 의지해 내외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 작정하고 있는 상태였다. 신종은 여회를 어사중승에서 파직시켰다.

조례사는 왕안석의 구상에 의거하여 개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기관이다. 설립 이후 조례사는 개혁 정치, 즉 신법(變法)의 시행을 총괄하기에 이른다. 1069년 7월의 균수법을 위시하여 9월의 청묘법, 11월의 농전수리법 등을 비롯한 신법 조항이 조례사의 검토 및 건의를 토대로 반포되었다. 조례사의 설립은 신법의 개시를 알리는 조

46) 『長編拾補』 권3上. 熙寧 元年 4월 乙巳.

47) 『宋史』 권321, 「呂誨傳」.

48) 『長編拾補』 권4, 熙寧 2년 5월 癸未.

치였다.

신법이 시행되자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곧바로 제기되었다. 신법에 대한 반대는 재집(宰執)과 시종관(侍從官)을 비롯한 중앙의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관각(館閣)의 학사들, 심지어 왕안석이 발탁한 조례사의 관원 사이에서도 터져 나왔다.⁴⁹⁾ 이러한 반대론 중 가장 신랄하고 적극적인 것은 대간(臺諫)이 제기한 비판이었다. 대간들은 실로 일치된 목소리로 신법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이러한 반대에는 어사대 장관인 어사증승이나 간원(諫院)의 장관인 지간원(知諫院), 그리고 그 예하의 어사대관(御史臺官, 知雜事와 6察 등)과 간관(諫官)이 거의 망라되어 있었다.

1069년(희녕 2) 7월 조례사에서 입안한 최초의 신법 조항인 균수법이 발표되자, 대간(臺諫)은 ‘하루도 빠짐없이 상주문을 올려 공박하였다.’⁵⁰⁾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맹렬히 반대했다. 시어사지잡사(侍御史知雜事) 유기(劉琦), 어사리행(御史裏行) 전의(錢顥) 등은 ‘왕안석이 멋대로 현도(憲度)를 바꾼다.’⁵¹⁾라고 공격하며, 균수법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간원 진양(陳襄), 동지간원(同知諫院) 범순인(范純仁)도 반대에 가세했다. 범순인은 ‘조종(祖宗)의 법도를 바꾸며 재리(財利)를 탐취(貪取)한다.’⁵²⁾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주론설향(奏論薛向)」「재론설향(再論薛向)」「우론설향(又論薛向)」「주결파균수(奏乞罷均輸)」 등을 잇달아 상주하며 균수법 폐기를 주장했다. 가위 대간 전원이 반대하였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였다. 8월 이와 같은 대간의 전면적 반대에 직면하자, 왕안석은 신종의 승인을 얻어 유기(劉琦)·전의·범순인·진양 등을 어사 및 간관 직위에서 해임시켰다. 당시 전의는 균수법에 관한 의견 표명을 미루고 있던 손창령(孫昌齡)을 향해, “그대는 지난날 금릉에서 관리로 있으며 왕안석에게

49) 그 대표적인 사례가呂惠卿의 뒤를 이어 條例司 檢詳文字官으로 임용되었던 蘇轍 및 李常, 그리고 相度利害官으로 재직하였던 程顥 등이다.

50) 『宋名臣言行錄』(四庫全書本) 『後集』 권5, 「唐介」.

51) 『東都事略』(四庫全書本) 권79, 「王安石傳」.

52) 『宋史』 권314, 「范純仁傳」.

아부하여 그 추천을 받아 대간이 되었다. 지금 나는 멀리 유배에 처해지지만 그대를 개념 보다 못하게 여긴다.”⁵³⁾라고 말하고 있다.

11월 청묘법이 반포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대간의 공격은 격렬하였다. 여회의 후임으로 어사중승이 된 여공저(呂公著)⁵⁴⁾는 네 차례에 걸쳐 상주문을 올려 제거관(提舉官)의 파견 및 청묘전(青苗錢)의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⁵⁵⁾ 시어사지잡사 진양은 무려 다섯 차례나 반대 상주문을 올렸다.⁵⁶⁾ 감찰어사리행(監察御史裏行) 장전(張戩)과 정호(程顥) 등도 상주하여 반대하였다. 우정언(右正言) 손각(孫覺)도 상주문을 올려, ‘왕안석이 경전을 거론하며 자신의 조치를 선왕의 법도라 부회하고 있다. 장차 커다란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했다.⁵⁷⁾ 간관 이상(李常)도 다섯 차례나 상주하여, ‘청묘법은 수탈 정책이기에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간 적대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⁵⁸⁾ 이상은 또, ‘주현에서는 돈을 풀어 강제로 이자를 납입하게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⁵⁹⁾ 이러한 이상(李常)의 상주문에, 신종과 왕안석은 그와 같은 관리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은 이 요구에 대해 간관의 간언 관행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파직을 요청했다.⁶⁰⁾

이러한 사태에 재상 증공량(曾公亮)은 ‘간관에게는 풍문언사(風聞言事)가 허용되어 있다.’며 이상을 옹호하였다. 이에 신종은, ‘누구 말을 들었느냐고 캐묻거나 부실한 발언이라고 치죄한다면 언로를 막는 것이라 하겠으나, 위법 관료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어찌 잘못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왕안석 또한, ‘지금은 위법의 관료를 견책하려는 것인데 어찌

53) 『宋史』 권321, 「錢顥傳」.

54) 이에 관해서는 李之亮, 『宋代京朝官通考』 4 (成都: 巴蜀書社, 2003), 23쪽을 참조.

55) 『歷代名臣奏議』(四庫全書本) 권266, 「理財」.

56) 위와 같음.

57) 『長編拾補』 권7, 熙寧 3년 3월 丙申.

58) 『歷代名臣奏議』 권265, 「理財」.

59) 『長編』 권210, 神宗 熙寧 3년 4월 壬午.

60) 『宋史』 권344, 「李常傳」.

풍문간언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이러한 공박 끝에 조정에서는 이상을 간관에서 파직하는 것으로 결말지었다.⁶¹⁾

면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간의 반대는 어김없이 계속되었다. 1071년(희녕 4) 면역법의 개봉부계(開封府界) 실시가 결정되자 어사중승 양회(楊繪)와 감찰어사리행 유지(劉摯)는 상주문을 올려 면역법 10해를 주장했다.⁶²⁾ 그러자 왕안석은 이해 6월 신종에게 양회를 어상중승 직위에서 파직하여야 한다고 청구했다. 그는 ‘양회 같은 인물을 언로(言路)에 있게 하면 사방의 봉법(奉法) 관료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찌 정령(政令)을 시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진언하고 있다.⁶³⁾ 신종은 왕안석의 청원을 거부했다. 하지만 7월 증포(曾布)가 양회와 유지의 발언, 즉 면역법의 10해론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자 양회와 유지는 다시 반발했고, 신종도 마침내 이들을 파직할 수밖에 없었다.⁶⁴⁾

이처럼 대간들은 새로운 신법 조항이 발표될 때마다 그 선봉에서 반대를 주도했다. 노신이 반대론을 개진하다가 낙직될 때에는 그것을 비판하며 신종 및 왕안석과 맞섰다. 그리하여 1069년(희녕 2)으로부터 1070년(희녕 3) 사이에 걸쳐 대간 대부분이 왕안석으로부터 노여움을 사서 좌천되고 밀았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송사』 「왕안석전」은, “여공저는 왕안석의 추천으로 인해 승진했지만 신법 폐지를 주청하다가 파직되어 지영주(知穎州)로 좌천되었다. 어사 유술(劉述)·유기·전의·손창령·왕자소(王子韶)·정호·장전·진양·진천(陳薦)·사경온(謝景溫)·양회·유지, 그리고 간관 범순인·이상·손각·호중유(胡宗愈) 등도 자신들의 반대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모두 잇따라 물러났다.”라고 적고 있다. 이 가운데 여공저는 1069년(희녕 2) 6월 여회가 왕안석을 비판하다 좌천되자 그 후임으로 어사중승에 임명된 인물이었다.

대간의 신법에 대한 공격은 극렬한 논조를 띠었다. 신법 조항에 대해서

61) 『長編』 권210, 神宗 熙寧 3년 4월 壬午.

62) 『宋史』 권322, 「楊繪傳」 및 권340, 「劉摯傳」.

63) 『長編』 권224, 神宗 熙寧 4년 6월 甲寅.

64) 위의 책 권225, 神宗 熙寧 4년 7월 丁酉.

뿐만 아니라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왕안석의 인격에 대해서조차 거침없이 힐난했다. 왕안석을 두고, ‘간사하여 아첨을 좋아한다.’거나, ‘대간사충 대사사신(大姦似忠 大詐似信)’이라고 말하였다.⁶⁵⁾ 나아가 왕안석을 비호하는 신종까지 공박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왕안석을 해임하지 아니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⁶⁶⁾

왕안석은 당초 비판에 대해 매우 관용적인 자세를 취했다. 비판을 통해 신법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으리라 판단했다. 하지만 대간의 극렬한 공박을 거듭 대하여 점차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기 시작했다. 『장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두고, ‘개보(介甫)는 최초 고집의 뜻이 없었지만 어느때부터인가 대간의 심한 비판을 더는 참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다.⁶⁷⁾

대간의 강렬한 비판은 조정 관료를 양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간의 신법 조항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신법 반대론에 대한 엄호가 계속되며, 조정은 신법 추진파 및 반대파로 확연히 구분되기에 이르렀다. 조례사의 존폐가 심각한 쟁론 대상으로 떠올랐던 시기, 즉 1070년(희녕 3) 전반 무렵의 일이었다.

V. 신법의 내용과 농촌 사회

왕안석 주도의 신법 조항은 발포될 때마다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최초의 개혁 조치인 균수법으로부터 청묘법, 모역법, 시역법, 보갑법 등이 모두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반대의 주요인은 국초 아래의

65) 『宋史紀事本末』 권37, 「王安石變法」.

66) 당시 孫覺이, ‘지금 藩鎮 大臣들이 이처럼 곡진하게 상언했으나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唐末이나 五代라면 필시 晉陽 군대가 일어나서 君王 주변의 惡을 제거하겠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발언까지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宋名臣言行錄』後集 권8, 「呂公著」 침조,

67) 『長編』 권210, 神宗 熙寧 3년 4월 甲申.

전통에 반할 뿐더러 농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었다. 농민층에게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공박하였다. 나아가 농촌 사회를 그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왕안석은 신법이야말로 겹병지가(兼并之家)로부터 피해를 받는 약소 농민을 구제하는 조치라고 말하였다. 신법은 과연 농촌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었을까? 왕안석이 말하는 대로 대지주 내지 겹병지가의 횡포 아래 신음하는 약자에게 우호적인 조치였을까? 여기서는 왕안석의 신법 조항 가운데 농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조치, 즉 청묘법과 모역법, 보갑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묘법은 잘 알려져 있듯 춘궁기의 농민에게 동전을 지급하고 추수 후 이자를 덧붙여 상환시키는 것이었다. 청묘법은 당시 농촌의 관행이었던 배칭(倍稱)의 이자, 즉 10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2할 내지 3할만을 부과하였다. 법 규정 자체는 고리대에 시달려야 했던 소농민에게 대단히 유리한 듯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묘법에 대한 반대는 매우 격렬하였다. 왜 이러한 비난이 벗발쳤던 것일까?

이러한 반대를 두고 1960년대 일본 및 중국에서 중국사학계의 주류를 점하였던 유물사관의 신봉자들은, ‘청묘법이 대지주와 대상인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청묘법의 낮은 이자율로 인해 대지주와 대상인의 고리대 사업이 지장을 받았고, 그로 인해 대지주 및 대상인과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관료층이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법에 반대하는 구법당의 주류는 사마광 및 이정(二程)을 중심으로 하는 도학자(道學者)였다. 또 구법당에는 구양수와 한기, 부필, 증공량 등 당대의 명신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을 고리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청묘법에 반대하는 존재라고 한 마디로 타기할 수 있는 것일까?

청묘법의 시행은 농촌 사회에 심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청묘법은 규정 그대로 시행되지 아니했다. 중앙 정부에서는 신법의 시행 실적을 근무 평가와 결부시키고 있었다. 지방관은 연말에 청묘법의 시행 실적을 중앙에 보고해야만 했다. 청묘법의 시행 실적이란, 그 운용을

통한 재정 이익의 규모를 일컫는다.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했을 경우 근무 평가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지방관은 청묘전을 가능한 한 많이 살포하여 많은 수익을 남겨야 했고, 그리하여 무리한 시행이 비일비재하였다.

나아가 청묘법의 규정 자체 재정의 확보와 원금 보전을 위한 부대 조치가 다양하게 부설되어 있었다. 우선 하층민뿐 아니라 상호(上戶)와 도시민인 방곽호에게도 대출이 허용되었다. 상호의 경우 추가 대여를 원하면 허용해 주도록 되어 규정되었다. 이러한 상호에 대한 대출은 청묘법의 취지, 즉 약자 보호 및 겸병지가 억제라는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묘전의 대여 이후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도 입안되었다. 상환의 보증을 위해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그것이다. 청묘전 대여자는 모두 10호씩 결보(結保)하였으며 상호가 갑두(甲頭)로 지정되었다. 결보된 조직내에서 미상환자가 발생하면 갑두 이하 모든 가구가 공동으로 상환을 책임졌다.

지방 관아의 원리금 상환 보증을 위한 조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주현(州縣)에서는 아예 체납의 우려가 다분한 하호(下戶)에 대해 대여를 기피하기도 하였다. 청묘법의 취지인 ‘하호의 보호’를 돌아보지 않고 청묘법의 원활한 운영, 즉 대여와 환수의 편의에 주안점을 두기에 이를 것이다. 물론 제도의 입안 당초부터 청묘법은 상호를 대여의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았다. 하등호에게 대여하되 임여가 있을 경우에는 3등호 이상에게도 대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방곽호(坊郭戶)라 해도 향촌에 대한 대여 후 마찬가지로 임여가 생기면 대여가 가능했다.⁶⁸⁾ 그러나 지방 관들은 청묘전의 실태(失陷), 즉 하호의 체납을 우려하여 가능한 한 상호에게 대여하려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렇기에 당시인들은 청묘법이 사실상 국가권력에서 재리(財利)를 확보하는 수단일 뿐 혜정(惠政)의 실질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상호에게 청묘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실 겸병지

68) 이러한 운영의 실태에 대해 韓琦는, “今乃鄉村自一等而下蓋立差錢貫陌, 三等以上更許增數, 坊郭有物業抵當者, 依青苗例支借”(馬端臨, 『文獻通考』[北京: 中華書局 影印本] 권21, 「市糴考」)라 말하고 있다.

가(兼并之家)를 억제한다는 취지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실상은 하호를 기피하고 상호를 대여의 주대상으로 삼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모역법은 당시의 농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구법당 진영에서는 일치된 목소리로 하등호에게 불리한 제도였다고 역설하였다. 구법당의 시각으로는 모역법이 결코 하등호에게 유리할 수 없는 제도였다. 오히려 모역법의 실시로 말미암아 새로이 면역전의 부담만 늘었을 뿐이다.

하지만 신법당은 전연 다른 시각을 보였다. 증포(曾布)에 의하면 모역법은 모든 계층에게 이롭지만 특히 중등호와 하등호에 더 큰 혜택을 주었다고 한다. 상호에 비하여 중등호와 하등호의 부담을 훨씬 줄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혜경(呂惠卿) 역시 모역법이 하등호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각지의 모역법 실시 정황은 대단히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관이 역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모역법을 원만하게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역전을 징수할 때 지역 사정에 따라 적절히 변용을 가하여 지역 사회를 안정시켰다고 하는 사례도 산견된다. 반면 모역법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일부 지방관은 모역법을 거부하고 차역법의 시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존하는 자료, 특히 각지의 면역전 징수 통계를 보면, 모역법이 매우 충실히 실행되고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면역전은 농민들로부터 극히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었다.

지방관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잉여를 남겨 이로써 은상(恩賞)과 승진을 도모하였다. 모역법의 시행 실적을 높이고 재정 잉여를 많이 남길수록 조정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조정에서는 지방관에 대해 근무 실적을 평가할 때 재정 잉여를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었다. 송 조정은 모역법의 실시에 있어 재정의 확보에 대단히 민감한 자세를 취하였다. 실제의 시행에 당하여 재정의 잉여가 장려되는 측면까지 나타났다. 이로 인해 모역법이 지니고 있던 본래의 취지, 즉 차역법의 폐단을 없앰으로써

농민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점은 상당 정도 퇴색하고 말았다. 하등호에게 면역전을 징수한다거나 혹은 과도한 수준으로 관잉전(寬剩錢)을 부과하였던 것도 바로 이러한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지방관들은 모역법을 운영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잉여를 남겨 이로써 은상과 승진을 도모하였다고 한다. 감사와 수령 등의 지방관은 어떻게든 좋은 근무 평가를 받아야 상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모역법의 시행 실적을 높이고 재정 잉여를 많이 남길수록 조정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조정에서는 지방관을 평가할 때 재정 잉여를 기준의 하나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⁶⁹⁾

신법이 시행되던 시기 송 조정의 재정 중시 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李瑜) 및 이중사(李中師)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1071년(희녕 4) 10월 모역법을 시행하며 송 조정은 각 지방에 명하여 필요한 면역전의 액수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주로(利州路)에서는 전운사 이유가 40만, 전운판관 선우신(鮮于侁)이 20만이라 답하였다. 하지만 어사대의 시어사지잡사(侍御史知雜事) 등관(鄧綰)은, ‘이주로에 실제 필요한 면역전은 96,60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운사 이유는 끝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어사대의 탄핵을 받았다. 취령(聚斂)을 일삼아 관잉전을 과도하게 축적했다는 것이 탄핵의 사유였다. 이로 인해 이유는 처벌을 받았지만, 조정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복직시켰다.⁷⁰⁾

이중사와 관련된 사건은 1072년(희녕 5)에 발생하였다. 이때 이중사는 지하남부(知河南府)의 직위에 있었는데, 모역법을 시행하며 조정의 뜻에 영합하여 많은 잉여를 남겼다. 하남부의 면역전 징수액은 인근 지역과 비

69) 『長編』 권313, 神宗 元豐 4년 6월 己巳. 이때 判司農司 舒亶의 奏請에 따라, “自今以提舉司承受本寺文字, 歲終以十分爲率, 會計結絕件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京西民力素薄, 希願到任, 惟務剋剝, 多求美餘, 妄冀朝廷, 緣此進用.”(『長編』 권357, 神宗 元豐 8년 6월 甲戌)이라든가, “免役法行, 常平使者, 欲加斂緡錢, 以取贏爲功.”(『宋史』 권321, 「孫洙傳」)이라 하듯, 각처 지방관들은 다투어 재정 잉여를 축적함으로써 進用을 구하고자 하였다.

70) 『長編』 권227, 神宗 熙寧 4년 10월 庚申.

교하여 매우 과도하였다. 하남부의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일어날 정도였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그가 솔선하여 신법을 시행하였다고 평가하고 군목사(群牧使)로 승진시켰다.⁷¹⁾

조정의 이유 및 이중사에 대한 조치는 당시 송조가 지방관의 재정 잉여 도출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지방관이 어떠한 물의를 야기하든 재정의 잉여만 남기면 모두 눈감아 주었던 것이다. 송조는 어쩔 수 없이 일시 이유에게 징계를 가하였지만 잠시 후 곧바로 복직시켜 버렸다. 심지어 이중사에 대해서는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일어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지만 장려와 포상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관들로 하여금 조정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게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관들은 ‘조정과 제거사(提舉司)의 뜻에 영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것이 광범위한 흑자로 나타났던 것이다.

요컨대 송 조정은 모역법의 실시에 있어 재정의 확보에 대단히 민감한 자세를 취하였다. 실제의 시행에 당하여 재정의 잉여가 장려되는 측면까지 나타났다. 이로 인해 모역법이 지니고 있던 본래의 취지, 즉 차역법의 폐단을 없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점은 상당 정도 퇴색하고 말았다. 하등호에게 면역전을 징수한다거나 혹은 과도한 수준으로 관잉전을 부과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보갑법은 북송 시대의 향촌 사회, 그리고 농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보갑법의 과급 효과에 대해 사마광을 위시한 신법 반대파들은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사마광은, ‘대보장(大保長)과 도부보정(都副保正)이 보정(保丁)으로부터 농물을 사실상 강제하였다. 농물을 주지 않으면 보정들을 매질하였다. 군사 훈련도 강제하였으며 불시의 동원으로 농업에도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공박하고 있다.⁷²⁾ 심지어 ‘보장 및 보

71) 앞의 책, 권241, 神宗熙寧5년 12월 己丑 및 『宋史』 권331, 「李中師傳」 참조.

72) 『송사』 권 192, 「兵 6」『保甲』, 사마광은 1085년(원풍 8) 신종이 붕어한 직후 상주문을 올려, “三四年來 又令河北·河東·陝西置都教場 無間四時 每五日一教 特置使者比監司 專切提舉 州縣不得關預 每一丁教閱 一丁供送 雖云五日 而保正·長以泥珊瑚草爲名 聚之教場 得賂則縱 否則留之 是三路耕耘收獲稼穡之業几盡廢也.”라고 말하고 있다.

정 등의 횡포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살과 뼈를 잡아도 그 수탈에 맞출 수 없었다.'고까지 말한다.⁷³⁾

보정과 보장의 이러한 우월한 지위 및 보정에 대한 횡포를 두고 왕암수(王巖叟)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도보정과 부보정, 그리고 대보장과 소보장은 평상시 촌내에 거주할 때, 혼인이나 장사가 있을 때마다 뇌물을 받는다. 여름이나 가을의 수확시에는 사마(絲麻)라든가 미맥(米麥)의 공납을 요구한다. 심지어 시장에서 만날 때도 먹고 마시는 것의 비용을 떠넘긴다. 위세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정이 당해야만 한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매질을 한다.⁷⁴⁾

보정장은 평상시에도 보정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들은 온갖 명목으로 보정을 갈취하였고, 보정은 세력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횡포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보갑법에서는 보장 및 보정의 보정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공식화하고 있었다. 더욱이 상번(上番) 시기 보정이 보정이나 보장에게 폭력 행위를 할 경우 2등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⁷⁵⁾ 법적 지위란 면에서 보정은 보장이나 보정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당시 보갑에서는 보정장에 의한 보정의 구타가 공공연히 횡행하였다.

사마광과 왕암수가 말하는 바와 같은 백성의 고초는 사실 왕안석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었다. 1072년(희녕 5) 보갑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그는, “진실로 올바른 사람을 얻어 시행하지 못한다면 백성을 다그치며 소란스럽게 할 것이며 온갖 물자를 징발하려 들 것이다.”⁷⁶⁾라고 말하고

73) 司馬光, 『司馬光奏議』 권31, 「乞罷保甲狀」.

74) 『장편』 권361, 신종 원풍 8년 11월丙午. 都副兩保正·大小兩保長 平居于家 婚姻喪葬之間遣 秋成夏熟 絲麻穀麥之邀求. 遇于城市 一飲一食之責望 此迫于勢而不敢不致者也. 一不如意 則以藝不應法爲名 面捶辱之.

75) 『장편』 권 237, 신종 희녕 5년 8월壬辰. 이러한 가중 처벌에 대해 송조는, “上番日 保正長·保丁畝罵所轄巡檢 依本屬刺史·縣令法. 保丁畝罵保長·保正 加凡鬪二等.”이라 규정하고 있다.

76) 王安石, 『上五事劄子』(『臨川先生文集』, 香港 三聯書店, 1971). 荷不得其人以行

있다. 그는 보갑법이 실제 시행 단계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갑법의 도입으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 바로 무기를 구비하는 것과 교열 및 상번(上番)의 업무였다. 무기는 민간에 소지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교열은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농한기인 동계에만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해 두고 있었다. 상번 또한 거리와 인원수에 따라 적정히 그 규모와 정도를 지정하였다.⁷⁷⁾ 그런데 이러한 무기의 구비와 교열 및 상번은 규정 그대로 시행된다 하여도 농민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

명말청초의 왕부지(王夫之)는 『송론(宋論)』에서, ‘보갑법은 그 명분은 그럴싸하다.’고 말하고 있다.⁷⁸⁾ 향촌의 이웃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선행을 권장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갑법은 그 시행 시기를 통하여 향촌 질서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갑법 추진의 당사자인 왕안석이, ‘경우에 따라 보갑법이 백성을 다그치며 소란스럽게 할 것이며 온갖 물자의 공납을 육박지를 것’이라 우려하였던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왕안석 자신 보갑법이 폐해를 낳을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1085년(원풍 8) 신종이 붕어한 직후 감찰어사 왕암수(王巖叟)는 보갑법의 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또한 양자로 내보내고 데릴사위가 되기도 한다. 그 노모를 재가시키기도 하고 형제가 분가하여 보갑의 면제를 추구하기도 한다. 스스로 독을 먹고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그 피부를 불로 태워서 불구자가 됨으로써 면제를 받으려 한다. 온 집안이 모두 도망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노약자에게 집안을 맡기고 보정이 스스로 도망하는 경우도 있다.⁷⁹⁾

之 則搔之以追呼 駭之以調發.

77) 이에 대해서는, 『宋會要』「兵 2」『鄉兵』, 神宗 熙寧 8년 10월 7일, 兵 2之10 참조.

78) 이근명, 『왕안석 자료 역주』(서울: HUIINE, 2017), 144쪽.

79) 『장편』 권 361, 신종 원풍 8년 11월 丙午. 又有逐養子·出婿 再嫁其母而兄弟析居以求免者 有毒其目·斷其指·炙烙其肌膚以自至于殘廢而求免者 有盡室以逃而不

당시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섭정을 시작하고 낙향하여 있던 사마광을 집정으로 부르며 신법의 폐기와 구법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었다.⁸⁰⁾ 왕암수는 이러한 시기에 신법의 부당성과 폐해를 강조하며 경화(更化)에 동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보갑법의 심각성은 실로 놀랍다. 민간에서는 보갑의 보정 징발을 피하기 위해 가히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노모를 재가시킨다든가 혹은 형제가 분가하였다든 것은, 한 가구에 정(丁)이 두 사람이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부모가 있는 경우 형제간 분가가 불가능하기에 호적상 노모의 존재를 없애려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한 집안에 丁이 하나만 남게 되면 보갑의 징집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다.

보갑법은 최초에는 향촌 자경 조직으로서 경기로 일원에 도입되었다가 이후로 군체로 변모되어 갔다. 단순한 향촌 자경 조직이라 하더라도 모역법의 시행으로 면역전을 납입하는 향촌민의 입장에서 보면, 차역제로의 복귀를 강요하는 법제였다. 면역전을 납입함으로써 종전의 차역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대급부를 얻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하물며 민병제로 변모하는 단계가 되면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되기에 이르렀다. 군역이라는 전연 새로운 수취 체계 아래 놓이게 되었다. 보갑법은 북송 중기의 농민 생활에 많은 부담을 야기하였다. 보갑법은 결코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든가,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을 지닌 법제가 아니었다.

VI. 맷음말

歸者 有委老弱于家而保丁自逃者.

80) 司馬光이 執政인 門下侍郎에 임용되는 것은 1085년(원풍 8) 5월의 일이다. 그는 이듬해인 1086년(철종 元祐 원년) 윤2월呂公著와 함께 재상인 左僕射의 직위에 오른다. 『송사』 권 211, 및 권 212의 「宰輔表」 참조.

왕안석의 개혁, 즉 신법에 대해 조정의 명망 있는 관료들은 거의 일치된 반대하였다. 구법당 관료들은 왜 신법에 대해 반대하였던 것일까? 이에 대해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들은 수십년 전부터 명쾌한 해석을 가하고 있다. ‘신법이 대지주, 대상인의 이해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왕안석의 개혁은 소농민, 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지녔고, 그리하여 신법으로 말미암아 대지주 대상인들이 피해를 보았기에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관료들의 반대에 직면하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소박할 뿐더러 몰역사적인 논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역사적 사건을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퀘퀘 묵은 시각이다.

사실 왕안석의 개혁은 결코 소농민 친화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신법 조항 가운데 면역법, 보감법, 보마법 등은 의심할 나위 없이 향촌 내 소농민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소농민 보호 정책이라 알려져 있는 청묘법조차 과연 그것이 소농민 보호의 기능을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모든 신법 조항은 국가 재정의 확보가 우선시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신법의 시행 실적, 즉 잉여의 확보가 지방관 고과의 기준이 되었다.

왕안석의 신법은 국가의 행정, 재정, 군사,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방향은 북송 중엽 위기 국면의 타개였다. 북송 중엽 위기의 핵심은 또 다른 아니라 심각한 재정 적자였다. 신법의 취지는 재정의 확보에 있었으며, 그밖에 약자인 소농민 보호라든가 시장 경제 원리의 도입 등을 설명 그러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었다.

왕안석의 신법이 시행된 시기는 11세기 후반기이다. 당시 향촌에는 자연재해와 기근이 단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구제 정책의 하나로 무연고 사망자를 장사지내 주는 사업, 이를하여 누택원(漏澤園) 조성 사업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기도 하였다.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재정 사업을 펼친 다음 안정적인 수익을 기약할 수 없는 시대였다. 따라서 신법의 제조항에는 언제나 재원의 환수를 위한 안정 장치가 부수되어 있었다. 바로 연대책임과 상환의 강제였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큰 소동이 발생하였다. 구법당이 지적하는 신법의 폐단, 부작용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

다.

신법이 지니고 있는 포괄성, 그리고 대대적인 재정 확보의 추구, 이것이 야말로 신법이 구법당 인사들로부터 반대를 받게 되는 근원적 요인이라 판단된다. 신법은 그 도입의 초기, 아니 제치삼사조례사라는 임시 기구의 설립 당초부터 심각한 반대에 직면한다. 그리고 그 반대는 신법 제조항이 선포되어 갈수록 격렬해졌다. 신법 내지 신학의 국가중심주의, 무리한 재원 확보 추구로 인해 신법은, 조종(朝宗)의 법도에 대해 남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던 사대부 관료들로부터 반대를 샀던 것이라 여겨진다.

주제어

북송(Nothern Song), 왕안석(Wang An-shi), 신법(New Policy), 청묘법(青苗法, Qing-myao System), 보갑법(保甲法, Bao-jia System), 모역법(募役法, Mu-yi System)

<투고: 2024년 12월 09일, 심사종료: 2024년 12월 18일, 게재확정: 2024년 12월 22일>

/Abstract/

Wang An-shi's New Policy and the Peasant Life during Northern Song Dynasty

Lee, Geun-myung

Wang An-shi's reforms have never been in favor of poor farmers. Among the New Policies, the Mu-yi System (募役法), the Bao-jia System (保甲法), and the Bao-ma System (保馬法) are undoubtedly far from the protection of poor farmers in rural area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Qing-myao System, known as a protective policy for poor farmers, functioned as the protection of small farmers. Securing national finances was a priority for all New Policy provisions.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the New Policy, that is, securing surplus, became the standard for the work evaluation of local officials.

New Policy was to carry out comprehensive reforms in almost all areas of the country's administration, finance, military, and education. And its basic direction was to overcome the crisis phase in the middle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The core of the mid-North Song crisis was none other than a serious fiscal deficit. The purpose of the New Policy was to secure finances, and the protection of small farmers, the weak, and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principles were only secondary factors, even if they had such aspects.

Wang An-shi's New Policy was implemented in the second half of the 11th century. At that time, natural disasters and famine occurred intermittently in China. As a result, as one of the relief policies, projects to bury the dead without any connection were widely carried

out. It was an era in which stable profits could not be guaranteed after the state carried out financial projects in all directions. Therefore, the New Policy was always accompanied by a stabilizer for the return of financial resources. It was the coercion of joint responsibility and repayment. This caused a great commotion in the private sector. The abolition and side effects of the New Policy pointed out by the opposition party were undeniable.

The inclusiveness of the New Policy and the pursuit of securing a large amount of finances are considered to be the fundamental factor in which the New Policy is opposed by the opposition party members. New Policy faces serious opposition from the beginning of its introduction. And the opposition became increasingly fierce as the New Policy manufacturing port was declared. Due to the new law's state-centeredness and unreasonable pursuit of financial resources, it is believed that the new law was opposed by bureaucrats who gave unique value to the tradition of the Song Dynasty.

참고 문헌

1. 자료

『宋會要輯稿』(北京: 中華書局 影印本).

이근명, 『왕안석 자료 역주』(서울: HUINE, 2017).

_____ 편역, 『송명신언행록』(서울: 소명출판, 2019).

司馬光, 『司馬光奏議』(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6).

_____ , 『涑水記聞』(北京: 中華書局, 唐宋史料筆記叢刊本).

楊仲良,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全4冊)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6).

王安石, 『王文公文集』上·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4).

_____ , 『臨川先生文集』(中華書局 香港分局, 1971).

李燾, 『續資治通鑑長編』(北京: 中華書局 點校本).

陳邦瞻, 『宋史紀事本末』(全3冊) (北京: 中華書局, 1977).

詹大和 外, 『王安石年譜三種』(北京: 中華書局, 1994).

脫脫 等, 『宋史』(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黃以周 等, 『續資治通鑑長編拾補』(全4冊) (北京: 中華書局, 2004).

2. 단행본

柳瑩杓, 『王安石詩歌文學研究』(서울: 法仁文化社, 1993).

제임스 류 저, 이범학 역, 『왕안석과 개혁정책』(서울: 지식산업사, 1991).

高克勤, 『王安石與北宋文學研究』(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6).

東一夫, 『王安石新法の研究』(東京: 風間書房, 1970).

鄧光銘, 『北宋政治改革家王安石』(北京: 人民出版社, 1997).

鄧小南, 『祖宗之法』(北京: 三聯書店, 2006).

- 李金水,『王安石經濟變法研究』(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7).
- 范文汲,『一代名臣王安石』(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 徐文明,『十一世紀的王安石』(北京: 當代中國出版社, 2007).
- 楊碩,『宋神宗與王安石變法』(貴陽: 貴州人民出版社, 2005).
- 葉坦,『大變法』(北京: 三聯書店, 1996).
- 李之亮,『宋代京朝官通考』4 (成都: 巴蜀書社, 2003)
- 李華瑞,『王安石變法研究史』(北京: 人民出版社, 2004).
- 張祥浩,『王安石評傳』(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7).
- 趙益,『王霸義理-北宋王安石改革批判-』(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0).
- 漆俠,『王安石變法』(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9).
- _____,『王安石變法』(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1).
- 湯江浩,『北宋臨川王氏家族及文學考論』(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3. 논문

- 葛金芳 等,「熙寧新法的富民與富國之爭」,『晉陽學刊』1988-1, (1988).
- 顧全芳,「重評司馬光和王安石變法」,『學術月刊』1990-9, (1990).
- _____,「評論王安石變法」,『晉陽學刊』1985-1, (1985).
- 顏中其,「王安石變法同北宋封建社會各階層的利害關係」,『吉林師範大學學報』1979-1, (1979).
- 葉坦,「評宋神宗的改革思想與實薦」,『晉陽學刊』1991-2, (1991).
- 吳泰,「熙寧元豐新法散論」,『宋遼金史論叢』1, (北京: 中華書局, 1985).
- 王瑞明,「王安石變法的社會效果」,『宋史論集』, (鄭州: 中州書畫社, 1983).
- 汪聖鐸,「王安石是經濟改革家嗎?」,『史學月刊』1989-5 (1989).
- 王曾瑜,「王安石變法簡論」, 同氏著,『凝意齋集』, (蘭州人民出版社, 2003).
- 程念祺,「王安石變法的幾個經濟問題」,『上海師範大學學報』1986-3 (1986).
- 周良宵,「王安石變法縱探」,『史學集刊』1985-1, 2 (1985).
- 漆俠·郭東旭,「關於王安石變法研究中的幾個問題」,『中國史研究』1988-4 (1988).

18세기 초 식민지 보스턴에서 감염병 통제, 인두법, 그리고 정치

이 현 주*

- | | |
|---------------------------------|-------------------|
| I. 들어가며 | IV. 인두법과 공중보건 |
| II. 갈등의 전조: 1691년 특허장 | V. 정치 분열과 인두접종 통제 |
| III. 감염병 확산 금지를 위한 공중보건법의
발달 | VI. 나가며 |

초록

17세기 중반 무렵부터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보스턴의 주민들은 대규모 두창(smallpox) 유행의 위험에 대비해 공중위생 및 격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적인 공중보건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1721년에서 1722년 사이 보스턴에서 두창이 유행 했을 때 그 지역의 의사 자브디엘 보일스턴(Zabdiel Boylston, 1679 - 1766)은 두창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두법(smallpox inoculation)을 도입했다. 그러나 인두를 접종받은 환자들은 두창 환자와 마찬가지로 면역이 없는 타인에게 두창을 전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인두법의 도입은 당시 큰 논란이 되었다.

보스턴의 ‘인두접종 논쟁(Inoculation Controversy)’은 변화하는 식민지 시대 및 그 시대 의학을 관찰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역사적 렌즈의 역할을 해왔다. 인류가 두창의 위험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두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보스턴은 미국의 초기 감염병 대응 정책 발달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했고, 이는 이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에서 더 나아가 본고에서는 영국과 북아메리카 식민지 간의 급변하는 정치적 갈등이라는 보다 넓은 역사적 맥락

* 단국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maat782000@gmail.com/maat782000@dankook.ac.kr

위에서 인두법 도입의 의의와 보스턴의 두창에 대항한 감염병 통제 정책의 발전을 논의한다.

I. 들어가며

두창(smallpox)은 바리올라 바이러스(*variola viru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이 질병이 지구상에서 박멸되었음을 선언했다. 현재는 두창 예방을 위한 백신 뿐만 아니라 치료제¹⁾도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혹여 있을 수 있는 생물학적 테러의 위험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두창은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였다. 두창 백신 이전에 존재했던 두창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인 인두법(smallpox inoculation)은 18세기 초에 처음 북아메리카 영국식민지에 소개되었다. 인두법은 두창 환자의 고름을 이 질병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의 피부에 절개를 통해 주입해 면역력을 기르게 하는 의술이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두법이 실시되었던 곳은 18세기 북미 대륙의 영국식민지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 중 하나였던 동북부의 매사추세츠 식민지에 위치한 보스턴이었다. 보스턴에서는 1721년과 1722년 사이에 두창이 대규모로 유행했는데, 이 때 이 지역의 의사 자브디엘 보일스턴(Zabdiel Boylston, 1679–1766)이 인두접종 기술을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인류 최초의 백신이자 최초의 두창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 우두법(cowpox vaccination)이 18세기 말 영국인 의사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 1749–1823)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이 시기까지 미국에서 두창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 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두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18세기 동안 인두법의 도입과 보급은 사회 및 공중보건적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처음 인두법이 보스턴에 소개되었을 때 이 신기술에 대한 반대는 매우 거셌다. 그간 여러 역사학자들이 18세기 초

1) 최초의 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Tecovirimat)가 2018년 미국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았다.

보스턴 인두접종 논쟁에 대해 연구를 해왔는데, 축적된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통해 우리는 인두법 도입이 단순히 새로운 의료 기술의 도입이라는 측면을 넘어, 매우 포괄적인 종교적, 의학적,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²⁾

하지만, 다년간 축적된 인두법 도입에 관한 보스턴의 논쟁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인두법 도입 이전에 공중보건 정책과 관련해 식민지 보스턴에 형성된 사회적, 정치적 긴장이 어떻게 인두법 도입과 그에 관한 공중보건 정책의 입안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2016년 출판된 스테판 코스(Stephen Coss)의 『1721년의 열병: 의학과 미

2) 보스턴이라는 역사적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인두법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중반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시대에 따라 종교, 공중보건제도의 발전, 의료전문화, 인종문제, 근대 과학의 발전, 에피데믹(epidemic)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두법의 역사와 인두법을 둘러싼 논쟁이 조명되었다. 순서대로 아래의 문헌 참고. 종교적 관점에 대해서는 John Barrett, "The Inoculation Controversy in Puritan New England,"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12 (January 1942), pp.169–190; 공중보건제도 발전에 대해서는 John Ballard Blake, *Public Health in the Town of Boston, 1630–182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의 특히 pp.52–73; John Blake, "The Inoculation Controversy in Boston: 1721–1722," *The New England Quarterly* 25 (December 1952), pp.489–506; 의료전문화와 관련해서는 James Schmotter, "William Douglass and the Beginnings of Medical Professionalism: A Reinterpretation of the 1721 Boston Inoculation Controversy," *Historical Journal of Western Massachusetts* (Fall 1977), pp.23–36; 인종적 관점에 중심을 둔 연구로는 Margot Minardi, "The Boston Inoculation Controversy of 1721–1722: An Incident in the History of Race,"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61 (January 2004), pp.47–76; 근대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는 Maxine Van De Wetering, "A Reconsideration of the Inoculation Controversy," *The New England Quarterly* 58 (March 1985), pp.46–67; Tony Williams, *The Pox and the Covenant: Mather, Franklin, and the Epidemic That Changed America's Destiny* (Illinois: Sourcebooks, Inc., 2010); Robert Tindol, "Getting the Pox off All Their Houses: Cotton Mather and the Rhetoric of Puritan Science," *Early American Literature* 46 (2011), pp.1–23; 에피데믹의 맥락에서 초기 인두법을 다루는 연구는 Ola Elizabeth Winslow, *A Destroying Angel: The Conquest of Smallpox in Colonial Bost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4)의 pp.44–58; Amaile M. Kass, "Boston's Historic Smallpox Epidemic," *Massachusetts Historical Review* 14 (2012), pp.1–51.

국 정치를 혁명화한 유행병(*The Fever of 1721: The Epidemic That Revolutionized Medicine and American Politics*)』이 1721년 보스턴 두 차 유행 동안 인두법을 둘러싼 식민지의 정치적 갈등을 잘 그려낸 바 있지만, 이 저작은 1721년 애피데믹에 앞선 영국과 식민지의 감염병 통제를 둘러싼 정치 갈등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 코스의 책이 인두법 관련 논쟁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논의의 핵심은 의학이나 공중보건학적 측면 보다는 인두법 논쟁을 통해 식민지 보스턴에 형성된 정치문화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스턴의 인두법을 둘러싼 논쟁과 정치 갈등을 17세기 말부터 지속되어 온 감염병 통제를 둘러싼 영국과 북아메리카 식민지 간의 장기 갈등의 역사 속에서 공중보건학적인 측면에 집중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갈등의 전조: 1691년 특허장

17세기 중엽까지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영국의 통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 지역은 1629년 영국왕으로부터 매사추세츠만(灣) 식민지(Massachusetts Bay Colony)로 특허장(charter)을 받았는데, 식민지 주민들은 지방 행정 및 정치에 있어서 자율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1660년 찰스 2세(Charles II, 1630~1685, 재위: 1660~1685)의 왕정복고(Stuart Restoration)와 함께 영국은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무역과 항해를 규제하는 법률(The Acts of Trade and Navigation)」이 확대되었고, 이에 본국의 규제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거부감은 높아만 갔다.³⁾ 찰스 2세의 통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식민지와 영국 간의 긴장은 극에 달하게 되는데, 급기야 1684년 10월 왕은 매사추세츠만

3) Richard L. Bushman, *King and People in Provincial Massachusetts*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2), pp.11–13, 99–104; G. B. Warden, *Boston 1689–1776*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0), pp.28–29.

식민지에 내린 특허장을 취소했다. 1685년 2월 왕위를 이어받은 제임스 2세(James II, 1633~1710, 재위:1685~1688)는 뉴잉글랜드 차치령(the Dominion of New England)을 선포하고, 총독으로 에드문드 안드로스(Sir Edmund Andros, 1637-1714)를 파견했다. 1686년 12월 20일 청교도 보스턴에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왕의 명을 전달하러 온 안드로스 총독은 강압적인 정책으로 식민지인들의 지지를 잃었다.⁴⁾

1688년이 되자 혁명과 제임스 2세 통치의 종식에 대한 소식이 북아메리카 영국식민지에도 전해졌다.⁵⁾ 이에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인기가 없었던 안드로스 총독을 다음 해에 축출했다. 동질성이 없는 지역을 왕명으로 엮어 놓았던 (따라서 식민지인들의 불만의 대상이었던) 뉴잉글랜드 차치령은 해체되었다.⁶⁾ 1690년 기존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인들은 예전의 특허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인크리즈 매더(Rev. Increase Mather, 1639-1723), 엘리샤 쿡(Elisha Cook, Sr., 1637-1715), 그리고 토마스 오크스(Thomas Oakes, 1644-1719)등의 3인의 식민지 대표를 영국에 파견했다. 이들은 모두 식민지에서 유력한 종교적, 정치적 리더였다. 인크리즈 매더는 저명한 청교도 성직자로 1685년부터 하버드 대학(Harvard College)의 총장대행(Acting President)을 맡고 있었고,⁷⁾ 의사였던 엘리샤 쿡과 토마스 오크스는 식민지 의회의 대표로 매사추세츠만 식민지 정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⁸⁾

4) John A. Schutz, *Legislators of the Massachusetts General Court 1691-1780: A Biographical Dictionary*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7), pp.2-3; Bushman, op.cit., pp.102-103.

5) Jonathan Barth, *The Currency of Empire: Money and Power in Seventeenth-Century English Americ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1), p.247.

6) Schutz, op.cit., pp. 2-3; Bushman, op.cit., pp.102-103. Barth, op.cit., pp.247-248.

7) Harvard University Library, 2005 February 4, “Mather, Increase, 1639-1723. Papers of Increase Mather: An Inventory”, <https://web.archive.org/web/20060902165525/http://oasis.harvard.edu:10080/oasis/deliver/~hua28004> (2024년 11월 15일).

8) Sidney Lee e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Volume 41* (New York: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 새로운 영국 정부는 광범위한 식민지 자치권을 보장하는 기존 특허장의 회복을 거부했다. 대신 영국 정부는 새로운 특허장과 함께 매사추세츠만 직할식민지(the Province of Massachusetts Bay)를 선포하기를 원했다. 영국 왕실의 계획을 알아차린 매더는 쿡과 오크스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새로운 특허장을 받아들였고, 1688년 혁명 이후 공동으로 왕좌에 오른 윌리엄 3세(William III, 1650~1702, 재위: 1689~1702)와 메리 2세(Mary II, 1662~1694, 재위: 1688~1694)는 1691년 10월 7일 새로운 특허장에 서명했다.⁹⁾

1691년 특허장(The Charter of 1691)¹⁰⁾은 기존의 매사추세츠만 지역을 새로운 지정학적 체계에 편입시켰다. 매사추세츠만 직할식민지는 지리적으로보다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존의 매사추세츠만 뿐만 아니라 메인(Maine),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노바스코샤(Nova Scotia), 뉴욕(New York)의 일부가 하나의 거대한 행정구역으로 묶였다. 정치 및 사법 체계도 새롭게 정비 되었다. 영국 왕이 이 직할식민지(Province)의 총독(governor)을 직접 임명하게 되었고, 총독은 식민지의 입법 및 정치기구였던 매사추세츠 일반의회(General Court)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총독은 의회에 대해 거부권, 소환권, 유예, 휴정의 권한을 가졌고, 상원(the Council)의원을 임명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소유했다. 더불어 그는 군사 및 민사 작전을 통솔하는 총사령관(commander-in-chief)의 지위를 부여받았다.¹¹⁾

그러나, 1691년 특허장이 식민지 사회에 불리온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이후 시대를 통해 아주 오래 지속될 정치적 딜레마였다. 일부 식

MacMillan and Co, 1895), p.290; John Langdon Sibley, *Graduates of Harvard University, In Cambridge, Massachusetts Volume I 1642-1658* (Cambridge: Charles William Server, 1893), pp.520-525.

9) Bushman, op.cit., pp.103-104.

10) 1691년 10월에 승인되었고, 효력은 1692년 5월부터 발휘되었음.

11) Bushman, op.cit., pp.102-103; Bruce Tucker, "The Reinvention of New England, 1691-1770," *The New England Quarterly* 59 (September 1986), pp.316-317.

민지인들은 1691년의 특허장이 헌법적 보호를 포함하는 그들의 영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새로운 특허장이 식민지 자치권을 제한하고, 식민지의 영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고 염려했다.¹²⁾ 그리하여 3인의 대표가 보스턴으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특허장에 대한 해석차에 따라 보스턴의 정치 지도부가 분열되었다. 매사추세츠 일반의회는 당시 상원(House of Assistants of Council)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입법을 위해서는 양원 모두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1691년 특허장 이후, 엘리샤 쿡의 지도 아래 하원 내에 ‘대중당(popular party)’이라 불리는 정치인들이 결집했다. 이들은 구특허장이 보장하던, 식민지 자치권 수호를 위해 노력했다.¹³⁾ 이들의 식민지 자치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종종 식민지 상원 및 총독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1692년과 1694년 사이 식민지 자치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결의안들이 매사추세츠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이후 몇 년 동안 3분의 1이 넘는 결의안들이 상원에 의해 부결되었다. 이와 함께 매사추세츠만 칙할식민지의 주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보스턴과 영국 정부 사이의 긴장감도 커졌다.¹⁴⁾

III. 감염병 확산 금지를 위한 공중보건법의 발달

정치적 격동 이후 영국이 식민지에 대한 통치권을 새롭게 정비하는 가운데 매사추세츠만 칙할식민지에서는 영국 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식민지 자치권에 대한 염원 간의 갈등이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1699년 매사추세츠 일반의회는 처음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법」(An Act for the Better Preventing of the Spreading of Infectious

12) Ibid., p.319; Bushman, op.cit., p.103.

13) Schutz, op.cit., p.3; Bushman, op.cit., pp.103–104.

14) Bushman, op.cit., pp.106–107; Tucker, op.cit., pp.318–323; Schutz, op.cit., pp.3–4.

Sickness)을 통과시켰다.¹⁵⁾ 이 법률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결의를 담고 있었다. 첫째, 누가 통제의 대상인가? 둘째, 누가 감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감염자 및 감염 의심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넷째, 누가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법률을 위반한 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¹⁶⁾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중 매사추세츠만 직할식민지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이 법은 질병에 의한 위험은 식민지에서 자체적으로 더 잘 통제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 법은 감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또는 유행병이 돌고 있는 지역이나 항구에서 온 사람이 도시에 진입하는 것을 통제했다.¹⁷⁾ 그 실행과 권위 행사 문제에 있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1699년 법률은 식민지인들의 스스로 의심스러운 사람과 선박을 현지의 감시 하에 두고 통제하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해항 단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보스턴의 예는 이 법의 실행에 있어 식민지 기관이 어떻게 자율권을 행사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예이다. 감염자 및 감염 의심자 검사와 보고를 위한 선박 정박지가 해안에 있는 영국군 주둔 요새였고, 요새의 책임자들에게 접근하는 선박을 조사할 권리가 주어졌지만 관례적으로 보스턴의 행정조직인 보스턴 행정위원회(the Selectmen of Boston)가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었다. 감염 가능성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승객과 선원들은 선박 내부 또는 다른 격리(quarantine) 장소에 격리되었다. 1699년 법에 의하면, 환자의 격리, 분리(isolation), 치료에 드는

15) *The Acts and Resolves, Public and Private of the Province of the Massachusetts Bay: to Which Are Prefixed the Charters of the Province with Historical and Explanatory Notes, and an Appendix 1692-1714 Volume 1* (Boston: Wright & Potter, Printers to the State, 1869), pp.376-377; Blake, *Public Health in the Town of Boston, 1630-1822*, p.32.

16) *Acts and Resolves Volume 1*, p.377.

17) Wendy E. Parmet, "Health Care and the Constitution: Public Health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Framing Era," *Hastings Constitutional Law Quarterly* 20 (Winter 1993), p.287; Blake, *Public Health in the Town of Boston, 1630-1822*, p.31.

모든 비용은 당사자인 승객과 선원이 지불하게 되어 있었다.¹⁸⁾

그러나 매사추세츠만 직할식민지의 일반의회의 결정과는 달리 영국은 1699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법을 승인하지 않았다. 런던의 무역과 대농장을 위한 위원회(The Lords of Trade and Plantations)¹⁹⁾와 왕실추밀원(the Kings Privy Council)은 식민지에서 통과된 1699년 법을 거부했다. 그들의 거부 사유는 이 법이 식민지인에게 너무 많은 자치권을 허락한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1699년 법이 남용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법이 식민지인들에게 너무나 큰 정치적·행정적 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했다. 매사추세츠의 항구는 영국의 선박과 선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항구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지 통치자들은 1699년 법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국 상선을 규제하는데 이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영국의 반대로 식민지에서 처음 발의된 해항에서의 감염병 통제에 관련된 법인 1699년 법은 무산되고 말았다.²⁰⁾

2년 후 식민지인들은 다시 한 번 더 유사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결국 1701년 6월 「질병에 관한 법률(An Act Providing in Case of Sickness)」로 그 결론이 났다. 협상과 타협의 결실이었던 1701년의 법은 1699년의 법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이 새로운 법에서는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처벌 조항이 많이 약화되었고, 식민지 자치를 통제하는 다층적 행정체계가 명시되었다. 예를 들어, 식민지의 행정위원회는 의심스러운 선박 또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총독에 의해 임명되는 치안판사(The Justice of Peace)로부터 영장(warrant)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다. 도시의 보안관(sheriffs) 또는 순경(constables)은 행정위원의 자문에 따라 병자에게 숙소 및 필요한 물

18) *Acts and Resolves Volume 1*, p.377.

19) 1675년 찰스 2세 시기에 만들어진 위원회로 추밀원에 영국령 식민지에 대한 조언을 했음.

20) *Acts and Resolves Volume 1*, p.377; Blake, *Public Health in the Town of Boston, 1630-1822*, pp.32-33; Barrett, op.cit., pp.170-171.

품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더 나아가 1701년의 법은 총사령관의 권위로 총독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식민지 기구의 자치권을 제한했다. 비용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조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일차적으로 비용은 환자 당사자, 환자의 부모나 주인, 또는 격리 대상자가 소속된 도시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환자가 궁핍할 경우에는 현재 격리된 도시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식민지의 재무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신원 불명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감염자를 위해 자치 정부가 지출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얼핏 무산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표시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조항을 통해 식민지 자치 정부와 식민지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²¹⁾

1701년 법이 만들어질 당시 가장 유력한 실질적인 적용 대상으로 고려되었던 두창²²⁾은 다행히 1720년까지는 대규모로 유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703년, 1710년, 그리고 1719년에 소규모로 두창이 발생해 보스턴이 지속적으로 두창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제한적이나마 1701년 법을 바탕으로 보스턴은 감염병 통제를 위한 행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1701년 법에서 보스턴의 질병 통제 및 감시에 대한 권리가 축소되었을지도, 자치 정부는 효율적인 유행병 통제를 위해 해안의 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들은 보스턴 해안에 새로운 격리 및 조사 시설들을 건설하고, 감염자 관리를 더욱 체계화시켜나갔다.²³⁾ 하지만, 1799년 보스턴에

21) *Acts and Resolves Volume 1*, pp.469-470.

22) 이론적으로는 페스트, 홍역, 그리고 다른 유행성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만, 실제로 이 시기 보스턴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고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질병은 두창이었다.

23) *A Report of the Record Commissioners of the City of Boston Containing the Records of Boston Selectmen, 1701 to 1715* (Boston: Rockwell and Churchill, 1884), pp.23-26, 105, 122; *A Report of the Record Commissioners of the City of Boston Containing the Records of Boston Selectmen, 1716 to 1736* (Boston: Rockwell and Churchill, 1885), pp.46-47, 57, 59; Edward Rowe Snow, *The Islands of Boston Harbor* (Carlisle: Commonwealth Editions,

공중보건을 위한 독립 행정 기구인 보스턴 보건국(Boston Board of Health)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이 도시의 공중보건에 대한 업무는 7~13명의 보스턴의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보스턴 행정위원회에서 담당했다. 따라서 1799년까지 정치기구와 보건 행정 기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정치적 문제가 공중보건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은 농후했다.

IV. 인두법과 공중보건

한편,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는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튀르키예 등에서 이용되던 인두법이 영국의 『왕립학회지(*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에 소개되었다. 1721년 런던으로 귀국한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에 파견되었던 영국인 대사의 아내 메리 몬태규(Lady Mary Wortley Montagu, 1689-1762)가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 찰스 메이틀랜드(Dr. Charles Maitland, 1668-1748)로 하여금 자신의 딸에게 튀르키예식 인두접종을 하게 함으로써 영국에서 인두법이 처음 실시되었다. 유사한 시기 미국에서는 대규모 두창 유행이 예상된 1721년 봄, 청교도 성직자 코튼 매더(Cotton Mather, 1663-1728)가 보스턴의 유학파 의사 윌리엄 더글拉斯(William Douglass, c. 1691-1752)에게서 빌린 『왕립학회지』의 글을 바탕으로 인두법을 정리해 지역의 의사들에게 실용화를 종용했으나, 보스턴 의사 자브디엘 보일스턴 단 한명만 그의 요청에 응답

2002), p.168; *Acts and Resolves, Public and Private, of the Province of the Massachusetts Bay: The Charters of the Province, with historical and Explanatory Notes, and an Appendix, 1715-1741 Volume 2* (Boston: Wright & Potter, 1874), pp.95; Justin Winsor ed., *The Memorial History of Boston Including Suffolk County, Massachusetts 1630-1880 Volume 1* (Boston: James R. Osgood and Company, 1883), p.388, 505, 562-563, Justin Winsor ed., *The Memorial History of Boston Including Suffolk County, Massachusetts 1630-1880 Volume 3* (Boston: James R. Osgood and Company, 1883), p.218.

했다.²⁴⁾ 6월 2일 보일스턴이 그의 여섯 살 난 아들과 두 명의 흑인 노예에게 인두를 접종시킴으로써 미국에서 최초의 인두접종이 이루어졌다.²⁵⁾

선헤가 없었던 관계로 보스턴 행정위원회는 이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우선 보일스턴을 소환해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다. 한편, 보일스턴은 인두접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7월 17일 지역신문《보스턴 가젯》(The Boston Gazette)에 자신의 인두접종 경험에 대한 글을 실었다. 그러나 인두법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은 커지고, 인두접종 후 남성이 여성으로 변화되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²⁶⁾ 결국, 7월 21일 보스턴 행정위원회는 보일스턴을 세 번째로 소환하게 된다. 이번에는 보일스턴이 위원회가 직접 자신이 인두를 접종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볼 것을 부탁했으나 행정위원회는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치안판사, 지역의 유명 의사들, 그리고 보스턴 행정위원회가 참여하는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²⁷⁾

의사 대표로 참석한 윌리엄 더글拉斯는 프랑스 의사 로렌스 달훈(Laurence Dal'Honde, 1694-1746)의 인두접종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플랑드르 등에서 활동했던 그의 경험에 의하면 인두접종으로 인한 치명률은 꽤 높았다.²⁸⁾ 10여 년 이후 윌리엄 더글拉斯 자신도 인두접종을 하게 되고, 호흡기로 감염되는 두창에 비해 인두법이 덜 위험하

24) Genevieve Miller, *The Adoption of Inoculation for the Smallpox in England and Fra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7), pp.71-73; Winslow, op.cit., p.46-48. 이현주, 「18세기 초 인두 접종 지식과 기술 도입 다시보기: 런던과 보스턴을 중심으로」, 『의료사회사연구』 11 (2023), 97, 99-100쪽.

25) Winslow, op.cit., pp.46-48; Barrett, op.cit., p.172.

26) Zabdiel Boylston, *An Historical Account of the Small-Pox Inoculated in New England, Upon all Sorts of Persons, Whites, Blacks, and of all Ages and Constitutions* (London: S. Chandler, 1726), pp.4-5.

27) Blake, *Public Health in the Town of Boston, 1630-1822*, pp.56-57.

28) Ibid.; Boylston, *An Historical Account*, pp.4-5; George L. Kittredge, "Lost Works of Cotton Mather," *Proceedings of the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45 (1912), p.457; Arthur William Boylston, *Defying Providence: Smallpox and the Forgotten Eighteenth-Century Medical Revolution* (North Charleston, South Carolina: 2012), pp.37-38.

고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만, 1721년 당시 더글라스는 이 신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보스턴 행정위원회 역시 더글라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결국 보일스턴이 보스턴에서 더 이상 인두를 접종하는 것을 금지했다.²⁹⁾ 이후 더글라스는 지역 신문을 통해 보일스턴이 보스턴에 “감염을 퍼트리고 있다(propagating the infection)”고 비난하며, 검증이 되지 않은 신기술 이용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했다.³⁰⁾ 더글라스와 보일스턴의 갈등 관계를 해외에서 신의학 교육을 받고 온 이민자와 전통적인 도제 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지역 토박이 의사 사이의 알력 다툼으로 해석하는 역사가들도 있지만, ‘검증’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더글라스의 태도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의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의료전문가로서의 신중함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여하튼 양자 간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두법을 둘러싼 논쟁은 보스턴 사회를 분열시켰다.

더글라스에 대항해 보스턴의 종교인 사회에서 중요 인물이었던 여섯 명의 성직자들이 공식적으로 보일스턴의 인두접종을 지지하는 글을 출판했던 것이다.³¹⁾ 인크리즈 매더, 코튼 매더(Cotton Mather, 1663~1728), 벤자민 콜만(Benjamin Colman, 1673~1747), 토마스 프린스(Thomas Prince, 1687~1758), 존 웹(John Webb), 그리고 윌리엄 쿠퍼(William Cooper)가 『보스턴 가젯』에서 보일스턴을 홀륭한 기술을 가진 성공적인 의사로 칭찬하며 인두법을 “신의 인류에 대한 친절한 섭리(Kind Providence to Mankind)”라고 칭했다.³²⁾ 이들의 지지에 힘입어 8월 초 보일스턴은 보스턴 행정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인두접종을 재개했다.

인두접종 논쟁은 보스턴의 종교계뿐만 아니라 언론도 분열시켰다. 위에서 언급된 『보스턴 가젯』은 주로 인두접종 찬성에 대한 글을 실었다. 반면 인두법 논쟁이 극에 달하고 있던 8월 초, 후일 미국의 혁명기 동안 중

29) Blake, *Public Health in the Town of Boston, 1630-1822*, pp.56-57; Blake, “The Introduction Controversy in Boston: 1721-1722,” p.493; Boylston, *An Historical Account*, pp.4-5.

30) *Boston News-Letter*, July 17 to July 24, 1721, p.3.

31) *Boston Gazette*, From July 27 to July 31, 1721, p.3.

32) Ibid.

요한 인물로 부상하는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의 형, 제임스 프랭클린(James Franklin, 1697–1735)이 《뉴잉글랜드 쿠런트 가젯(The New England Courant Gazette)》을 처음으로 간행해 더글라스를 비롯해 코튼 매더에게 반대하는 청교도 성직자들과 보스턴 지식인들의 글을 신문에 실었다.³³⁾

인두법 논쟁의 정점에서 보스턴 행정위원회가 가장 염려했던 점은 인두법이 두창 유행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더글라스 및 인두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인두접종은 두창 유행을 막기보다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인두접종 환자가 면역이 없는 사람에게 두창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위험은 당시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었다. 1721년 11월이 되어서야 영국에서 처음으로 인두접종을 실시했던 찰스 메이틀랜드가 인두환자로부터 두창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다음 해인 1722년 2월이 되어서야 그의 실험이 책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이다.³⁴⁾ 인두접종 환자가 두창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인두법을 지지하는 보일스턴 및 매더 그 누구도 보스턴 행정위원회가 염려하던 이러한 공중보건상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보일스턴의 인두접종은 재개되어, 8월에는 17명, 9월에는 31명, 그리고 10월에는 18명의 환자가 더 인두를 접종 받았다. 한편, 10월에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11명까지 증가했고, 11월에는 24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두창은 이웃 도시로 번져나가게 되어, 록스버리(Roxbury)와 찰스타운(Charlestown) 등 인접 마을에서도 보일스턴에게 인두를 접종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11월 인두접종환자의 수는 더 증가해, 보일스턴은 2인의 파트너와 함께 104명의 환자에게 인두를 접종했다.³⁵⁾

33) Kass, op.cit., p.22.

34) Charles Maitland, *Mr. Maitland's Account of Inoculating the Small Pox* (London: J. Dowling, 1722), pp.27–29, 34–35; Miller, op.cit., p.88.

35) Dennis Don Melchert, “Experimenting on the Neighbors: Inoculation of Smallpox in Boston in the Context of eighteenth century medicine,” Ph.D. diss., The University of Iowa, 1973, pp.214–215; Blake, *Public Health in the Town of Boston, 1630–1822*, p.61; Blake, “The Introduction Controversy in

V. 정치 분열과 인두접종 통제

1721-22년 두창 유행 기간 동안 인두법을 둘러싼 논쟁은 의학적, 종교적 논쟁을 넘어 보스턴 사회 및 정치를 분열시켰다. 우선, 이 시기 인두법 전파에 있어 종교와 여성의 통한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인두법을 지지하던 목사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인두 보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코튼 매더를 중심으로 존 웹의 아내 사라(Sarah Webb), 의사 보일스턴의 아내 등을 통해 인두접종을 위해 보일스턴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³⁶⁾ 더불어 종교적 네트워크를 넘어 매더의 보스턴 상류사회 와의 인맥이 인두법 수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일스턴의 환자 중 다수가 타운의 부유한 관리이거나 지식인들이었고, 왕실이 나서서 인두법 실험을 주도했던 영국왕실에 연관되어 있는 상류층 중 많은 사람들이 인두법 도입에 보다 더 적극적이었다.³⁷⁾ 하충계급 일수록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고, 의료 비용의 문제도 보다 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인두법을 수용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 인두를 접종 받은 사람에 대한 공중보건 정책상의 격리나 관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류층에 집중된 인두접종자는 인두접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인두를 접종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창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적, 계급적 측면의 문제는 18세기 내내 인두법과 함께 거론되는 문제로 대두 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초기 논쟁에 있어 중요한 점은 인두접종 논쟁이 앞서 언급한 1691년 특허장으로 인해 분열된 보스턴 정계의 자치권을 둘러싼 갈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분리

Boston: 1721-1722," pp.495-496.

36) Boylston, *Defying Providence*, pp.69-70; Melchert, op.cit., p.200.

37) Ibid., pp.240-251, 328.

해 인두법 논쟁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1720년대 초반까지 보스턴 정계는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구특허장(Old Charter)과 신태허장(New Charter) 그룹이 양대 세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당파(the Royal Party)라는 소규모 정치 그룹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³⁸⁾ 1691년 특허장과 식민지의 자치권을 둘러싼 논쟁은 후세 대로 전해져 구특허장 그룹은 엘리샤 쿡의 아들 엘리샤 쿡 주니어(Elisha Cooke, Jr, 1678-1737)가, 신태허장 그룹은 인크리즈 매더의 아들 코튼 매더가 이끌었다. 매더는 당시 총독 사缪엘 셔트(Samuel Shute, 1662-1742)를 지지하던 왕당파와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쿡은 이들에 맞서 늘어가는 영국의 간섭으로부터 식민지 보스턴의 자치권을 수호하고자 했다.³⁹⁾

이러한 정치 상황은 인두법 논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쿡 주니어는 유력 정치인이었을 뿐 아니라 보스턴에서 이름 있는 의사였다. 1721년 당시 총독 사缪엘 셔트가 매더 그룹과 연합해 보스턴에서 인두법 종을 지지하자, 쿡 주니어는 신태허장 그룹의 유력인사인 코튼 매더의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를 느꼈다.⁴⁰⁾ 이에 쿡 주니어는 자신의 직업 네트워크를 이용해 인두법의 안전성 검증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보일스턴에게 맞서던 월리엄 더글라스와 연합했다.⁴¹⁾ 결국, 앞서 소개한 새롭게 만들어진 지방지 《뉴잉글랜드 쿠런트 가젯》까지 인두법 반대를 지지하게 되면서, 더글라스, 프랭클린 등의 의료계 및 언론계의 중요 인사들이 식민지 정부의 자치권을 중시하는 쿡 주니어의 구특허장 세력과 연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분

38) Coss, op.cit., pp.14-17, 49-50, 80-83; J. A. Leo Lemay, *The Life of Benjamin Franklin, Volume 1, Journalist, 1706-1730*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5), pp.81-83.

39) Lemay, op.cit., pp.81-84; Bushman, op.cit., pp.104-117, 120-121, 144-149; Edward Digby Baltzell, *Puritan Boston and Quaker Philadelphia*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6), p.146.

40) Lemay, op.cit., p.84; Boylston, *Defying Providence*, pp.62-63; Boylston, *An Historical Account*, p.4, 112, 118

41) Boylston, *Defying Providence*, p.64.

열 속에서 인두법 논쟁은 결국 감염원을 통제할 권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식민지 자치 정부가 그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가라는 논쟁으로 귀결되게 되었다.

쿡 주니어는 1721년 당시 보스턴 행정위원회의 7인의 위원 중 하나였으며, 매사추세츠만 직할식민지 의회에 파견되는 2인의 보스턴 대표 중 하나였다.⁴²⁾ 보스턴 행정위원회가 인두법에 대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감염병 확산 통제를 둘러싼 보스턴의 오래된 자치권에 대한 쿡 부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었다. 공중보건상의 위험을 감지한 보스턴 행정위원회가 여러 차례 보일스턴에게 인두접종 금지를 선언했으나, 인두법은 새롭게 소개된 의료기술로, 보일스턴의 의료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1720년 대 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1701년 질병에 관한 법에도 의사 개인에게 공중보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보스턴 행정위원회가 인두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타운 밖의 격리시설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치안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행정상의 복잡함으로 인해 인두접종자 격리는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⁴³⁾

한편, 법률적, 행정적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일스턴의 인두접종은 계속되었고, 그를 지지하는 종교인 및 지식인들은 보스턴 행정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신도들에게 인두접종을 권유했다. 시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으나, 법률적으로 인두접종을 규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⁴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두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은 커져 갔고, 급기야 매더의 집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가 발생했다. 두 창 감염 확산이 소강기에 들어가는 1722년 봄까지도 보일스턴은 인두접종을 계획했고, 보스턴 행정위원회는 영장 신청을 통해 보일스턴의 환자를

42) Ibid., pp.62-63.

43) *A Report of the Record Commissioners of the City of Boston Containing the Records of Boston Selectmen, 1716 to 1736*, pp.90-91; *A Report of the Record Commissioners of the City of Boston Containing the Records from 1700 to 1728* (Boston: Rockwell and Churchill, 1883), p.159; Melchert, op.cit., pp.225-226.

44) Blake, "Inoculation Controversy," p.495.

보스턴 해안의 스펙테클 섬(Spectacle Island)에 격리하고, 보일스턴에게 더 이상의 인두접종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도록 했다.⁴⁵⁾

더글라스의 비난처럼 1721-22년 두창 확산에 얼마나 보일스턴이 책임이 있는지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보일스턴이 인두접종을 시작한 시점에 이미 보스턴에 두창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환자 격리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을 겪어가며, 1701년의 질병에 관한 법이 보스턴 자치 정부가 인두법을 비롯한 감염원 통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이에 쿠 주니어의 주도로 보스턴 행정위원회는 인두접종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안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해 그들은 보스턴 행정위원회의 허가 없이 행해지는 인두접종을 범죄화시키고자 했으며, 1701년 감염 확산 통제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감염 통제에 관한 식민지 위원회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이에 그들은 주민의 보호,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전권을 위원회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⁴⁶⁾

1722년 5월, 다시 한 번 쿠의 주도로 매사추세츠 하원이 「인두접종에 의한 두창 감염 확산 방지 법 (Bill to prevent the Spreading of the Infection of the Smallpox by the practice of Inoculation)」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반대로 이 법안은 결국 부결되었다. 여름에 이르기 까지 이 안건에 대한 상·하원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여름 휴가 동안, 상원이 섬에 억류되어 있는 보일스턴의 환자들을 풀어줄 것을 허가한 반면, 하원은 그 안을 거부했다.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권리의 소재를 둘러싼 정계의 공방은 계속되었고, 이 갈등 상황 속에서 기존의 공중보건법과 정책에 어떻게 인두법을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답안은 결국 마련되지 못했다.⁴⁷⁾

45) *A Report of the Record Commissioners of the City of Boston Containing the Records of Boston Selectmen, 1716 to 1736*, p.97, 165; Blake, "Inoculation Controversy," p.497.

46) *A Report of the Record Commissioners of the City of Boston Containing the Records from 1700 to 1728*, pp.66-167.

47) Ibid., p.167; Blake, "Inoculation Controversy," pp.497-498.

VI. 나가며

1720년대 초 인두법이 소개되자 보스턴 행정위원회는 두창 통제에 있어 기존의 1701년 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어떠한 선례도 없이 보스턴인들은 기존의 공중보건법 체계에 인두법이라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통합시키기 위해 개인의 의료행위와 공중보건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했다. 그러나, 1721-22년 보스턴에서 인두법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게 되며, 결국, 1720년 대 초 인두법 규제에 대한 사법적·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좀 더 장기적인 정치적 배경에 기반을 두고 분석했다. 식민지 시기 동안 보스턴은 종종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17세기 중엽에 들어서는 공중위생 정책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초적인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17세기 후반에 들어서 식민지인들은 더욱 효과적인 유행병 통제를 위해 좀 더 광범위한 해항 통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영국의 식민지 정치에 대한 간섭 및 식민지 자치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중보건법 제정에 있어 식민지 자치 정부의 권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후 식민지 사회와 본국과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보스턴 정계가 분열의 양상을 보이게 되고, 질병 및 감염에 대한 관리법 및 보스턴의 공중보건 정책이 만들어져가는 과정도 이러한 정치적 지각 변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인두법 규제를 위한 시도들이 좌초되고 보스턴 사회가 오랜 시간 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데는 보스턴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인두법을 바라보는 종교, 의학, 사회, 계급적 시각차를 넘어, 친영국파와 자치권을 중시하는 식민지인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의 영향이 커 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1721년 보스턴 인두법 논쟁 이전 17세기 말

부터 계속되어 온 감염병 통제를 둘러싼 영국 본국과 식민지 보스턴인들의 갈등으로부터 기인했다. 인두법 논쟁을 이러한 좀 더 큰 틀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인두법과 관련된 공중보건법 및 정책에 관한 당시의 논쟁이 일회적인 것이거나 지역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1721-22년 보스턴 인두법 논쟁은 이후 혁명기에 더 크게 불거져 나오는 영국 본국 정부와의 갈등의 역사의 일부였음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주제어

두창(smallpox), 공중보건(public health), 식민지 보스턴(colonial Boston), 인두법(smallpox inoculation), 식민지 정치(colonial politics)

<투고: 2024년 11월 20일, 심사종료: 2024년 12월 09일, 게재확정: 2024년 12월 20일>

/Abstract/

Infectious Disease Control, Smallpox Inoculation, and Politics in Early 18th Century Colonial Boston

Lee, Hyon Ju

In response to the public's fear of a large-scale smallpox epidemic, in the mid-seventeenth to early eighteenth centuries, colonial Boston adopted rudimentary public health policies including sanitary and quarantine laws. Local physician Zabdiel Boylston (1679 - 1766) first used the inoculation procedure in Boston amid the 1721 - 1722 smallpox epidemic. His practice provoked considerable opposition, for the inoculation procedure itself created new cases of smallpox, and these contagious persons were subject to traditional public health controls.

The Boston "Inoculation Controversy" has frequently been a lens through which historians have observed a changing colonial society and medical world. As the town in which began the triumphant history of inoculation and vaccination in America, Boston has taken pride in its historical connec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se medical technologies; accordingly, a huge historical literature focuses on smallpox in this colonial town. Most of the substantial works on the early reception of inoculation ideas in Boston show an intense interest in the controversies swirling around the procedure's adoption or rejection.

This article, however, will examine the familiar history of the inoculation controversy from another perspective—the connection between Bostonians' struggle for political autonomy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public health policy will be considered as

important as the debate over inoculation.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Boston became a provincial hub within the British Empire, and local events, including inoculation, reflected simultaneous assimilation into and distinction from the mother country. Smallpox control often prompted local debates about Boston's relationship to Britain, namely concerns about local governing autonomy and contests for authority prior to inoculation. This article will summarize changes to public health law to show how inoculation fueled the burgeoning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ing bodies and imperial political authorities, as well as illustrate how preexisting political tensions in colonial Boston heightened the chasm between inoculation and anti-inoculation supporters.

참고 문헌

1. 1차 자료

Boston Gazette

Boston News-Letter

The Acts and Resolves, Public and Private of the Province of the Massachusetts Bay: to Which Are Prefixed the Charters of the Province with Historical and Explanatory Notes, and an Appendix 1692-1714 (Boston: Wright & Potter, Printers to the State, 1869).

Acts and Resolves, Public and Private, of the Province of the Massachusetts Bay: The Charters of the Province, with historical and Explanatory Notes, and an Appendix, 1715-1741 (Boston: Wright & Potter, 1874).

A Report of the Record Commissioners of the City of Boston Containing the Records from 1700 to 1728 (Boston: Rockwell and Churchill, 1883).

A Report of the Record Commissioners of the City of Boston Containing the Records of Boston Selectmen, 1701 to 1715 (Boston: Rockwell and Churchill, 1884).

A Report of the Record Commissioners of the City of Boston Containing the Records of Boston Selectmen, 1716 to 1736 (Boston: Rockwell and Churchill, 1885).

Boylston, Zabdiel, *An Historical Account of the Small-Pox Inoculated in New England, Upon all Sorts of Persons, Whites, Blacks, and of all Ages and Constitutions* (London: S. Chandler, 1726).

Maitland, Charles, *Mr. Maitland's Account of Inoculating the Small Pox* (London: J. Dowling, 1722).

2. 2차 자료

- 이현주, 「18세기 초 인두 접종 지식과 기술 도입 다시보기: 런던과 보스턴을 중심으로」, 『의료사회사연구』 11 (2023).
- Baltzell, Edward Digby, *Puritan Boston and Quaker Philadelphia*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6).
- Barrett, John, "The Inoculation Controversy in Puritan New England."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12 (January 1942), pp.169–190.
- Barth, Jonathan, *The Currency of Empire: Money and Power in Seventeenth-Century English Americ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1).
- Blake, John Ballard, *Public Health in the Town of Boston, 1630–182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 _____, "The Inoculation Controversy in Boston: 1721–1722." *The New England Quarterly* 25 (December 1952), pp.284–300.
- Boylston, Arthur William, *Defying Providence: Smallpox and the Forgotten Eighteenth-Century Medical Revolution* (North Charleston: CreateSpace, 2012).
- Bushman, Richard L., *King and People in Provincial Massachusetts*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2).
- Coss, Stephen, *The Fever of 1721: The Epidemic That Revolutionized Medicine and American Politic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6).
- Harvard University Library, 2005 February 4, "Mather, Increase, 1639–1723. Papers of Increase Mather: An Inventory", <https://web.archive.org/web/20060902165525/http://oasis.harvard.edu:10080/oasis/deliver/~hua28004> (2024년 11월 15일).
- Kass, Amaile M., "Boston's Historic Smallpox Epidemic." *Massachusetts*

- Historical Review* 14 (2012), pp.1-51.
- Kittredge, George L., "Lost Works of Cotton Mather," *Proceedings of the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45 (1912), pp.418-479.
- Lee, Sidney e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Volume 41* (New York: MacMillan and Co, 1895).
- Lemay, J. A. Leo, *The Life of Benjamin Franklin, vol.1: Journalist, 1706-173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5).
- Miller, Genevieve, *The Adoption of Inoculation for Smallpox in England and Fra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7).
- Melchert, Dennis Don, "Experimenting on the Neighbors: Inoculation of Smallpox in Boston in the Context of eighteenth century medicine" (Ph D. diss., The University of Iowa, 1973).
- Minardi, Margot, "The Boston Inoculation Controversy of 1721-1722: An Incident in the History of Race."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61 (January 2004), pp.47-76.
- Schmotter, James, "William Douglass and the Beginnings of Medical Professionalism: A Reinterpretation of the 1721 Boston Inoculation Controversy." *Historical Journal of Western Massachusetts* (Fall 1977), pp.23-36.
- Schutz, John A., *Legislators of the Massachusetts General Court 1691-1780: A Biographical Dictionary*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7).
- Sibley, John Langdon, *Graduates of Harvard University, In Cambridge, Massachusetts Volume I 1642-1658* (Cambridge: Charles William Server, 1893).
- Snow, Edward Rowe, *The Islands of Boston Harbor* (Carlisle: Commonwealth Editions, 2002).
- Tindol, Robert, "Getting the Pox off All Their Houses: Cotton Mather and the Rhetoric of Puritan Science." *Early American Literature* 46 (2011), pp.1-23.

- Tucker, Bruce, "The Reinvention of New England, 1691–1770." *The New England Quarterly* 59 (September 1986), pp.315–340.
- Warden, G. B., *Boston 1689–1776*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0).
- Wendy E. Parmet, Wendy E., "Health Care and the Constitution: Public Health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Framing Era." *Hastings Constitutional Law Quarterly* 20 (Winter 1993), pp.267–335.
- Wetering, Maxine Van De, "A Reconsideration of the Inoculation Controversy." *The New England Quarterly* 58 (March 1985), pp.46–67.
- Winslow, Ola Elizabeth, *A Destroying Angel: The Conquest of Smallpox in Colonial Bost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4).
- Winsor, Justin ed., *The Memorial History of Boston Including Suffolk County, Massachusetts 1630–1880 Volume 1* (Boston: James R. Osgood, 1883).
-
- _____, *The Memorial History of Boston Including Suffolk County, Massachusetts 1630–1880 Volume 3* (Boston: James R. Osgood, 1883).

개항기 외국인 내지 여행 허가와 “Passport” 제도의 수용

김 동 희*

- | | |
|----------------------------|-------------------------------|
| I. 머리말 | IV. 자국민에 대한 “Passport” 제도의 운영 |
| II. 조선 정부의 외국인 내지 여행 허가 과정 | V. 맷음말 |
| III. “Passport”의 번역에 대해서 | |

초록

여권은 해외여행의 필수품이다. 왜냐하면 여권을 가져야만 해외에서 자신의 국적을 증명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여권의 역사는 18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면서 시작된 이 여권 제도가 동아시아, 한국사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이다. 당시에는 여권을 “호조(護照)”, “집조(執照)”, “빙표(憑票)”라고 불렀다. 이것들은 외래어인 “Passport”를 번역한 것으로 각각 성격이 달랐다.

“호조”와 “집조”가 처음 공식 문서에 등장하는 것은 조약문에서이다. 조약문에서는 조선 내지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소지해야 하는 문서로 규정되어 있다. 영어로는 둘 다 “Passport”로 번역되었지만 이 두 가지 문서는 발급 주체와 성격이 다른 문서이다. 먼저 “호조”는 조선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보호를 보증하는 문서이다. 여기서 보호는 단순히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보장만이 아닌 차마(車馬)나 숙사(宿舍)의 제공, 금전의 차용도 포함된 것이다. 이에 반해 “집조”는 조선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에서 조선 내지를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집조를 소지한 사람은 여행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kdhmh@naver.com

이 집조와 호조를 조선에서는 “Passport”로써 자국민에게도 발급하였다. 하지만 처음에는 집조와 호조가 아닌 빙표를 발급했다. 최초 빙표의 발급이 시작된 것은 청국 정부의 요청 때문이었다. 청국 정부는 청국으로 도항하는 조선인에게 빙표를 발급하라고 요구했다. 빙표를 소지한 사람은 청국에 도착하면 빙표를 제시하고 호조나 집조로 교환해야만 청국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즉 빙표는 청국과 조선 사이라는 일정 구간의 통행을 허가하는 허가증인 것이다.

한편 조선 정부는 해외로 파견되는 외교관에게는 외국에서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조를 발급했다. 이 집조는 빙표와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였다. 이후 조선 정부에서는 해외로 도항하는 자국민에게 빙표가 아닌 집조를 발급하기로 하는데 이 때의 집조도 외교관의 집조와는 다른 것이었다.

I. 머리말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Passport”이다. Passport를 소지하면 해외에서 자신의 국적을 증명하고 유사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현대에는 해외로 도항하는 사람이 Passport를 소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렇게 제도화된 것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Passport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자국으로 들어오는 혁명가들을 막으려고 입국자에게 신원 증명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신원 증명을 위해서 해외로 도항하는 자국민에게 증명서로 발급한 것이 현대 Passport의 기원이다.¹⁾

이 “Passport”는 현재 한국에서는 “여권”으로 번역한다. 이것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旅券”을 그대로 한국어로 바꾼 것이다. 중국에서는 “護照”라고 번역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Passport”를 여권으로 번역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 “Passport”가 등장하는 19세기 말 조선에서는 이것을 “호조(護照)”, “집조(執照)”로 번역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는 해외로 도항하려는 조선인에게 발급된 것이 아닌, 조선의 내지를 여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문서였다. 이것을 해외로 도항하는 자국민에게 발급하면서 조선인의 해외여행 “Passport”제도가 시작되었다. 또한 당시 위의 두 문서와는 다른 “빙표(憑票)”라는 문서도 조선 정부가 “Passport”로써 도항하는 조선인에게 발급하였다.

하지만 개항기 등장하는 이 “호조”, “집조”, “빙표”가 어떤 문서이고 어떤 성격인지 한국사 연구에서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물론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증으로써 “호조”제도가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한 연구²⁾도 있고, 조선인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써 집조를 다룬 연구³⁾도 있

1) 세계사적으로 여권의 역사에 대한 연구서로는 존 토피 지음, 이충훈·임금희 옮김, 『여권의 발명』(서울: 후마니타스, 2021)가 있다.

2) 민희수, 「개항기 檢證으로서의 ‘護照’제도의 도입과 운영」, 『역사학보』 229 (2016).

3) 서호철,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 호적제도의

다. 이 연구들에서도 위 세 가지 문서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하려고 시도 하였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는 “호조”를 제외한 “집조”와 “빙표”가 여권으로써 사용되는 예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용례가 많기 때문이다. 개항기 “집조”는 증명서⁴⁾, 어업 허가증⁵⁾ 등, “빙표”는 어음⁶⁾, 채권⁷⁾, 입장권⁸⁾ 등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용례 때문에 혼돈이 생기지만, 발급 대상, 발급 주체 등도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를 모두 확인하고 종합하여 정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한 것들을 고려하며, “Passport”가 어디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것의 번역어인 “호조”, “집조”, “빙표”를 조선 정부는 어떻게 이해하고 발급했는지 시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입경을 허가 하는 과정에서 “Passport”와 관련된 용어가 어디서 등장하는지 밝히고 3장에서 “호조”, “집조”的 차이점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빙표”가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 이는 한국사에서 근대를 대표하는 “Passport” 제도가 성립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김설하, 「여권(Passport)의 기원과 등장으로 본 개항기 한국의 근대성, 1883~1905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도형, 「여행권(집조)을 통해 본 초기 하와이 이민의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 (2013).

_____, 「도산 안창호의 ‘여행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 행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2015).

_____, 「한국 근대 旅行券(旅券) 제도의 성립과 추이」, 『한국근현대사연구』 77 (2016).

졸고, 「개항기 집조·빙표제도와 조선인의 해외도항」, 『동아시아문화연구』 제77집 (2019).

4) 『皇城新聞』 1900년 5월 25일, 「德船免稅請願」.

5) 『官報(일본)』 명치 23년 1월 9일, 「兩國通漁規則」.

6) 『皇城新聞』 1899년 1월 23일, 「換票遺失」.

7) 『皇城新聞』 1898년 11월 7일, 「法律第一號」.

8) 『漢城週報』 1887년 7월 18일, 「일본박물관」.

II. 조선 정부의 외국인 내지 여행 허가 과정

조선 정부도 청과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외국인이 개항장에서 정해진 일정 범위를 벗어나 내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1882년까지는 조선의 개항장에 들어온 외국인은 개항장으로부터 반경 10리⁹⁾ 안에서만 왕래하거나 거주할 수 있었다. 조선 정부는 자국민과 외국인이 섞여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76년 2월 조선은 일본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강화도조약이라고도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처음으로 외국과 맺은 조약이다. 측량을 한다는 평계로 조선 강화도까지 해안선을 따라 거슬러 올라온 운양호(雲揚號)를 조선군이 공격한 것을 빌미로 개항을 강요한 일본에 의해 이 조약은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는 원래 왜관이 설치되어 있던 부산의 초량항을 개항장으로 변경하고, 이후 2곳의 다른 지역에도 개항장을 설치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양국 정부는 1876년 7월 『조일수호조규 부록(附錄, 이하 부록)』을 체결하여 조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였다. 그중 제4관에는 다음과 같이 일본인들의 활동 범위 즉 간행리정(間行里程)이 규정되어 있다.¹⁰⁾

제4관 – 이후 부산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里程)은 부두로부터 기산(起算)하여 동서남북 각 직경 10리로(조선의 이법(里法)) 정한다. 동래부(東萊府) 내의 한 곳에서 특별히 이 이정 안을 오가며 일본국 인민은 마음대로 통행하고 조선 토산물과 일본국 물품을 사고팔 수 있다.

『부록』의 교섭을 담당했던 조인희(趙寅熙)와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는 위 조관을 두고 “10리”를 조선리로 할 것인가. 일본리로 할 것인가를

9) 조선리이다. 조선에서는 1리가 약 400m로 10리는 약 4km이다. 이에 반해 일본리는 1리가 4km로 10리는 40km이다.

10) 『高宗實錄』 13권, 고종 13년 7월 6일.

두고 다투었다. 일본대표 미야모토는 일본의 10리가 조선의 80리 정도이며 그 정도가 되어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선 대표 조인희는 일본리로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안 되며, 이미 표준은 왜관 시절부터 정해져 있던 것으로 이를 따르자고 말하였다.¹¹⁾ 미야모토는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면장(免狀)을 소지한다면 10리를 넘어 내지 여행도 허락하는데 일본리 10리를 조선 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며 재차 설득하려고 하였다. 조선 정부는 만약 그 범위가 확장되면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충돌할 위험이 있다며 거절했다.¹²⁾

일본의 태정대신(太政大臣) 산죠 사네토미(三條實美)는 일본리 10리로 정할 수 없다면 5리 즉 조선리로 50리로 할 것을 지시했다.¹³⁾ 하지만 이 또한 조선에서 이전에 이미 정해진 것을 바꿀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⁴⁾ 결과적으로 『부록』에는 조선에서의 일본인의 활동 범위는 조선 정부가 주장한 대로 항구를 중심으로 조선리 10리로 정해졌다.¹⁵⁾

뒤이어 조선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은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이하 조미조약)』이다. 『조미조약』에도 제6관에 상대국에서 인민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⁶⁾

제6관 - 조선국 상인이 미국의 각 처에 간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 주택을 빌리고, 땅을 사서 창고를 짓는 것도 편리대로 할 수 있다... 미국 상인이 개항한 조선 항구에 간다면 해당 지역의 정계 안에서 거주할 수 있다. 주택이나 땅을 빌리고 집을 짓는 일은 그 편리대로 할 수 있다... 미국 상인은 양화(洋貨)를 내지로 운반할 수 없으며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할 수도 없다. 아울러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해 팔 수도 없다. 만

11) 『倭使日記』 v.4-9b, 「丙子六月十八日講修問答」.

12) 『倭使日記』 v.4-22a, 「丙子六月二十日講修問答」.

13) 『日本外交文書』 v9, 219쪽.

14) 『倭使日記』 v.5-5a~5b, 「丙子六月二十九日講修問答」.

15) 간행리정과 관련해서는 박한민, 「개항장 ‘間行里程’ 운영에 나타난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한국사연구』 165 (2014).

16) 『高宗實錄』 19권, 고종 19년 4월 6일.

약 이를 위반하여 내지로 화물을 운반한다면 그 상인은 영사관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조약에서는 미국에서 조선인은 그 거주나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활동 범위의 제한이 없다. 이에 반해 미국 상인들은 개항장으로부터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도 내지 통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자 고려했지만, 조선 정부에서 이것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내지 통상 권한을 두고 조선과 협상을 계속하는 것보다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¹⁷⁾

조선 정부가 외국인들의 내지 여행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자국민과 외국인이 충돌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정부는 조선의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1882년 『조일강화조약(朝日講和條約, 혹은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이라고도 한다.)』과 함께 『조일수호조규속약(續約, 이하 속약)』을 체결하며 이전에 조선 정부가 허가하지 않았던 간행리정의 확장과 내지 여행에 대한 규정을 관철시켰다.

임오군란(壬午軍亂)의 사후 처리로 맺어진 『속약』은 모두 2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⁸⁾

제1관-부산, 원산, 인천의 각 항구의 통행 이정(里程)을 이제부터 사방 각 50리로 하고(조선의 이법(里法)을 따른다), 2년 뒤에는 다시 각각 100리로 한다. 지금부터 1년 뒤에는(조약이 비준된 날부터 계산하여 1년) 양화진을 개시(開市)한다.

제2관-일본국 공사(公使)와 영사(領事) 및 그 수행원[隨員]과 그 가족은 마음대로 조선의 내지 각 곳을 유력(遊歷)할 수 있다.(유력할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禮曹)는 호조[照]를 발급한다. 각 지방관은 호조를 확인하고 호송(護

17) 『근대한국외교문서IV—朝美修好通商條約』 문서번호.91, 「李鴻章의 조미조약 초안 일부 전달」, C. Holcombe(1881년 12월 4일)→R. W. Shufeldt.

18) 『高宗實錄』 19권, 고종 19년 7월 17일.

送)해야 한다.)

먼저 제1조는 『부록』을 교섭할 때 일본 정부가 주장했던 일본리 10리 즉 조선리 100리를 그대로 규정했다. 조선리 100리는 40km이다. 40km라는 거리는 개항장인 인천에서 조선의 수도인 한양까지 다다를 수 있다. 게다가 양화진은 한양의 입구에 있는 나루터이다. 즉 이 조항으로 일본인은 인천에서 한양까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2조는 일본의 공사, 영사와 그 직원, 종자, 가족까지 내지 여행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선 내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외교를 담당하는 예조에서 발급한 “호조(護照)”라는 문서가 필요했다. 이 호조는 그 이름 그대로 조선의 지방관이 이것을 소지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보호는 단순한 호송뿐만 아니라 차마(車馬), 숙사(宿舍)의 제공, 금전의 대출까지 포함되어 있다.¹⁹⁾ 이 호조의 발급을 조약문에는 예조(禮曹)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후 조선의 관제가 개편되면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이하 외아문)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제물포조약』과 『속약』은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체결된 것이다. 조선의 신식군대인 별기군(別技軍)과의 차별 대우에 불만이 폭발한 구식 군대와 여기에 호응한 일반 백성들은 궁궐, 조선 정부의 개화파 관료들의 자택뿐만 아니라 일본 공사관도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공사관 건물이 소실(燒失)되었고 별기군 조교였던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를 비롯하여 일본인 십수 명이 살해당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의 지불, 공사관에 일본군 주둔, 공사와 영사, 그리고 수원의 내지 여행 등 7개의 요구 사항을 조선 정부에 제시했다.²⁰⁾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였지만

19) 실제로 일본의 영사관 직원인 이소바야시 신조(磯林眞三)는 1882-1884년 사이 호조를 휴대하고 여러 차례 조선의 내지를 여행했다. 여행 도중 충청 감영에서 는 여비를 차용하기도 했다(『舊韓國外交文書』 1권, 「일안」1, 문서번호 195). 그 러다가 1884년 10월 조선 내지를 여행하다 조선인에게 살해당했다. 조선 정부는 이소바야시를 보호하기 위해 병사를 보내기도 하였지만 살해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舊韓國外交文書』 1권, 「일안」1, 문서번호 351).

조선 정부는 아직 군란을 수습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뒤 이어 조선 정부가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하지만 청의 중개로 이루어진 이 조약은 영국 정부의 유보, 임오군란의 발발로 비준(批准)되지 않았다. 그 사이 임오군란의 수습으로 청병을 파병한 청국 정부는 조선과 『조청수륙무역장정(朝淸水陸貿易章程, 이하 장정)』을 체결했다. 『장정』의 제4조에는 상인과 여행자의 내지 여행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들어가 있다.²¹⁾

... 양국 상인은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피차의 상무위원(商務委員)에게 품청하고 지방관이 회함(會銜)한 집조(執照)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구입할 처소를 명시하고, 차마(車馬)와 선박은 해당 상인이 준비해야 한다... 피차 내지로 들어가 유력(遊歷)하려는 자는 상무위원회에 품청하고 지방관이 회함한 집조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는 『속약』에서의 “호조”와는 다른 “집조(執照)”라는 문서가 등장한다. 그리고 다른 점은 호조는 예조, 외아문과 같이 조선의 정부 기관이 발급하지만, 집조는 상대국에 주재하는 상무위원(商務委員)이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연서(連署)한 것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호송, 편의의 제공이 보장되는 호조와는 다르게 집조는 운송수단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장정을 교섭할 때 조선 정부는 내지 통상 허가에 대해서 일론의 간섭이 있을 것 같다면 거절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장정』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조약으로 보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장정』을 조약이 아닌 황제의 속방에 대한 시혜임을 명확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장정』의 전문(前文)에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

20) 『青又日錄』 임오년 7월 7일.

21) 『高宗實錄』 19권, 고종 19년 10월 17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국역에는 “執照”가 ‘허가증’으로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원문 그대로 적었다.

는데 있지 않다”라는 문구를 넣었다.²²⁾ 따라서 조선의 교섭안은 거의 묵살되었다.

한편 자국의 이익이 적다고 비준을 거절한 영국 정부는 『장정』의 조약문을 바탕으로 이전의 조약문을 개정하여 새롭게 체결하자며 조선 정부와 교섭했다. 그래서 여러 불공평한 내용이 포함된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이하 조영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중 제2, 4, 8관에 내지 여행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²³⁾

제2관 ... 2. 양국이 파견하는 사신과 총영사관 등 및 일체의 수원들이 모두 상호 각 처를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하며 금지하지 않는다. 조선국에 있는 자에게는 대조선국의 관원이 호조(護照)를 발급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사람을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한다는 뜻을 거듭 주도면밀하게 한다.

제4관 ... 6. 통상 지역에서 100리(조선리) 이내의 지방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한 관원이 서로 의정(議定)한 경계 내에서는 영국인들이 모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집조(執照)를 지니지 않아도 된다. 단 영국인이 집조를 지니고 조선의 각 처를 돌아다니면서 통상하고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해 들어와 팔거나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소지해야 하는 집조는 영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관인(官印)을 찍거나 붓으로 서 압(書押)한다. 경유하는 어느 장소든 지방 관원이 집조를 검사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수시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필요한 차부(車夫)와 선부(船夫) 등을 고용하여 행리(行李)와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는 것도 그 편의에 따라 할 수 있다. 영국인이 집조 없이 위에서 정한 경계을 넘거나 혹은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 넘겨 처벌하게 한다. 집조 없이 경계를 넘은 영국인에 대해서는 곧 상황에 따라 처벌하고 감금하거나 혹은 별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간은 1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22) 權赫秀, 「조공관계체제 속의 근대적 통상관계」,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연구』(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262쪽.

23) 『高宗實錄』 20권, 고종 20년 10월 27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국역을 보면 제2관에는 “護照”을 ‘호조’로, 제4관에는 “執照”을 ‘여행증명서’로, 제8관에는 “護照”을 ‘여권’으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원문대로 각각 “호조”, “집조”, “호조”로 번역하였다.

제8관 ... 2. 영국 군함이 조선 안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탄 관리와 문관, 무관, 병사, 인부들이 해안에 상륙할 수 있다. 단, 호조(護照)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내지(内地)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위 『조영조약』의 조항을 보면 “집조”와 “호조”的 구분이 확실해진다. 제2관과 8관의 “호조”는 『속약』과 마찬가지로 조선 정부가 영국의 외교관 혹은 군인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이 호조를 소지한 사람은 조선의 지방관 아예 자신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조선 정부는 소지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한편 집조는 장정에서 규정된 집조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내지를 왕래할 수 할 수 있지만 그 필요한 차마나 보호에 대해서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즉 호조는 조선 정부가 외국인의 보호를 보장한다는 문서이고, 집조는 외국인이 조선 내지를 여행할 때 지방관의 요청에 따라 제시해야 하는 여행증명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선 정부가 일본이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았던 내지 여행을 『조영조약』에 포함시킨 것은 청국에게만 허락한 내지 통상의 권리로 자국도 균점하려는 영국 정부와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조선 정부, 그리고 조선에서의 청이 가지는 이익을 균점하려는 일본, 미국 등의 여러 국가의 의도가 맞았기 때문이다.²⁴⁾

이 『조영조약』은 이후 조선·대한제국이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모본(模本)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조약을 체결한 일본, 미국, 청국도 『조영조약』에 준하게 개정하였고, 이후 체결되는 조선-독일(1883), 조선-이탈리아(1884), 조선-러시아(1884), 조선-프랑스(1886), 조선-오스트리아(1892), 대한제국-벨기에(1901), 대한제국-덴마크(1902) 각각의 조약도 『조영조약』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III. “Passport”的 번역에 대해서

24) 한승훈, 「朝英條約(1883.11)과 불평등 조약 체제의 재정립」, 『한국사연구』 135 (2006), 235-245쪽.

최종적으로 『속약』의 외국인 관료에 대한 내지 여행 허가, 『장정』의 외국인 상인 및 여행자에 대한 내지 여행 허가는 『조영조약』에 포함되면서 조선은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인민에 대한 내지 여행을 허가했다. 조선의 내지에 들어가려는 외국인은 조약의 규정대로라면 관료는 조선 정부가 발급한 호조(護照)를, 상인이나 여행자는 자국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집조(執照)가 필요했다. 그런데 『조영조약』의 조선 측 한역본에는 “護照”와 “執照”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영국 측 영역본에는 “Passport”로 나와 있다. 즉 현재는 여권이라고 번역되는 “Passport”가 당시에는 “호조”와 “집조”로 번역된 것이다. 영단어인 “Passport”가 조선에서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호조와 집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기존에는 대체로 내지를 여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사증(查證)을 호조, 외국으로 도항하려는 자국민에게 조선 정부가 발급한 여권을 집조라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반례가 많아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²⁵⁾ 예를 들어 현재 부산시립박물관에 1899년 3월 30일 프랑스 공사 겸 총영사인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가 자국민인 ‘비달(飛達)’에게 발급한 집조가 전시되어 있다. 이 집조에는 “대한 광무 3년 3월 30일 유대법흥명공사대신공서발(大韓光武三年三月三十日由大法國欽命公使大臣公署發)”이라고 발급처를 밝히며 그 옆에 “집조인화압(執照印花押)”이라고 적고 그 위에 도장을 찍었다. 한편 조선인에게 발급된 “호조”도 확인된다. 1888년 미국에서 귀국하는 김교삼(金敎三)에게 주미전권공사(駐美全權公使) 박정양(朴定陽)이 호조를 발급하였다.²⁶⁾ 따라서 사증=호조, 여권=집조라는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

25) 민희수, 앞의 논문 (2016), 123쪽.

26) 『美行日記』 무자년 10월 7일.



〈그림 1〉 플랑시가 발급한 집조(1899년 3월 30일
발급,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한편 개항 초기에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서 집조와 호조를 혼용하다가 1890년대 들어서 집조를 자국민에 발행하는 여권으로 구별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²⁷⁾ 또는 호조는 외국인 관료, 집조는 외국인 상인 및 여행자에게 발급하는 것이었지만 내국인의 해외 도항이 많아지면서 집조가 내국인에게 발급되기 시작했고, 외국인에게 발급하던 집조도 호조라는 명칭에 편입됐다는 주장도 있다.²⁸⁾

그런데 위 주장들은 발급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간과하고 있는 것 이 있다. 『조영조약』에도 나와 있듯이 집조와 호조는 그 발급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제2관을 보면, 호조는 “조선 정부”가 영국인에게 발급한다. 이에 반해 집조는 “영국 영사관”에서 영국인에게 발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의 사례는 아니지만, 집조·호조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던 청국의 사례가 있다. 조선에서의 여행기로도 유명한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은 1898년 말 무렵 청국을 여행할 때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²⁹⁾

27) 서호철, 앞의 논문 (2007), 271쪽.

28) 민희수, 앞의 논문 (2016), 151쪽.

29) 이사벨라 버즈 비숍 지음, 김태성·박종숙 옮김, 『양자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

여권은 그 크기로나 거창한 인장으로나 엄청난 위력을 갖는 문서였다. 그것으로 나는 여행 중에 갖가지 배려와 혜택을 받았고 몽골과 만주를 포함한 여덟 개 성의 어느 지역이든 제한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여권을 내밀기만 하면 나를 대하는 관원들의 태도가 금세 달라졌다. 이와 별도로 한구(漢口)에서 발행된 확실한 영사 여권도 소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할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위 글에는 “여권”이 두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는 “크고 거창한 인장을 가진 여권”, 두 번째는 “한구(Hankow)에서 발행된 확실한 영사 여권”이다. 영어 원문에는 모두 “Passport”로 번역되어 있다.³⁰⁾ 하지만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의 여권은 제시할 경우 갖가지 배려와 혜택을 받았고, 관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묘사하였다. 이 권한으로 보아 크고 거창한 인장을 가진 여권은 중국 정부가 발행한 호조라고 볼 수 있다. 후자는 영사가 발급하였고 사용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하는 걸로 보아 집조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내지를 여행할 때 누구는 집조를 소지해야 하고, 누구는 호조를 소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규정을 가진 제도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가 한국사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플랑시가 집조를 발급해 준 비달은 프랑스 군인이다. 규정대로라면 군인인 비달은 호조를 휴대해야 한다. 하지만 플랑시는 집조를 발급했다. 그것은 플랑시에게는 호조를 발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랑시는 집조를 발급하는 동시에 조선 정부에 비달에게 호조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호조를 발급하며 비달이 지나는 연도(沿道)에 연락하여 그를 보호하도록 하였다.³¹⁾

이렇게 외국인 관료는 호조 소지, 외국인 상인 및 여행자는 집조 소지

다』(서울: 효령출판, 2005), 277-278쪽.

30) Mrs.J.F.Bishop, *The Yangtze Valley and Beyond* (London:John Murray,1899), pp.308-309.

31) 『沿途各郡案』2권, 「프랑스 포군참령이 서울로 올라오는 행도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沿道 각 군에 훈령」.

라는 조약문대로의 규정은 사실 조약체결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1883년 재조 미국 공사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여행하려는 일반인 미국인 피에르 소니 조니(Pierre Sonis Jony) 외 1명의 호조를 발급해 줄 것을 조선 정부에 요청했다.³²⁾ 그리고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도 조선의 내지를 여행할 때 호조를 소지했다.³³⁾

영국은 『조영조약』의 내용을 협상할 때, 내지여행권을 요구했다. 그것은 물론 상인들의 통상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조선 내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었다.³⁴⁾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발급 대상이 관료인가 아닌가에 따라 호조가 발급된 것이 아니라, 호조는 한자 뜻 그대로 조선 정부가 그 소지자의 보호를 보증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문서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 내지를 여행하는 외국인 모두가 호조를 발급받은 것은 아니었다. 1902년 1월 외부(外部)에서는 내부(内部)에 외국인의 호조 소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각국과의 조약문 제4관을 근거로 들며 요청했다. 제4관은 집조와 관련된 규정이다. 만약 조선·대한제국 정부가 각국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집조를 내지 여행하는 통행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당시 외국인은 호조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많은 편의가 있겠지만, 재조선 자국 공관이 발급한 집조를 소지하여도 내지를 여행할 수 있었다.

한편, 내지에서 상행위를 하는 외국인에게 “노조(路照)”를 발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언제부터 발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갑오개혁 이후인 1896년 외부에서 한성부(漢城府)로 보낸 훈령을 보면 외국인이 여행[遊歷] 할 때에는 외부에서 호조를 발급했고, 외국인 상인에게는 한성부에서 노조를 발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부득이하게 이러한 규

32) 『舊韓國外交文書』 10권, 「美案」1, 문서번호 39.

33) 『舊韓國外交文書』 10권, 「美案」1, 문서번호 503.

34) 『근대한국외교문서IV—朝英修好通商條約』 문서번호.91, 「선교사들의 전교, 내지여행권 명문화 청원」,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 (1883. 11. 13) → G.L.G. Granville (1883. 11. 14).

칙을 어기고 한성부에서 여행자에게 호조를 발급하자 외부에서 다시 규정을 정하여 이를 구별하고자 했다.³⁵⁾ 1900년대에 들어서는 각국 영사관에서 외부의 교섭국(交涉局)에 노조 발급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노조 발급을 요청받은 교섭국에서 호조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영사관 측에서 노조와 호조를 구분하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³⁶⁾

이상에서 보듯이 집조와 호조는 처음부터 발급 주체가 다르고 그 성격도 달랐다. 호조는 조선 정부가 발급한 보호를 보증해주는 문서이고, 집조는 재조선 각국 공관에서 발급한 조선 내지 여행증명서인 것이다. 호조의 발급 대상 역시도 애초부터 조약문대로 관료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중국에서 이미 운용되던 제도가 조선으로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도 이미 그 운용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혼용되거나, 호조만을 외국인의 내지 통행허가증으로 사용하고 집조는 자국민의 여권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IV. 자국민에 대한 “Passport” 제도의 운영

외국인에게 “Passport” 즉 집조와 호조를 발급받게 하여 내지 여행을 허가한 조선 정부는 해외로 도항하는 자국민에게도 “Passport”로써 집조와 호조를 발급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집조와 호조를 발급한 것은 아니었다.

『조청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된 이후인 1883년 10월 주조선 청국 상무위원(商務委員) 진수당(陳樹棠)은 조선의 외아문에 청국으로 불법 도항하는 조선인이 많다면 청국으로 도항하는 조선인에게 “빙표(憑票)”를 제대로 발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조선인의 청국 도항은 다음과 같

35) 『京畿道來去案』奎17981-v1, 032a, 外部大臣 李完用(1896년 7월 17일 발신)→漢城府觀察使 楊箕煥.

36) 『外部日記』1권, 광무 7년 2월 24일.

은 순서로 이루어 진다.³⁷⁾

1. 청국 도항을 원하는 조선인은 도항 목적, 목적지 등을 적어 조선 정부에 빙표를 요청한다.
2. 조선 정부는 청국 정부와 상의하여 빙표를 발급한다.
3. 조선인은 중국의 동해관아문(東海關衙門)에서 빙표를 제시하고 호조(護照)로 교환하여 호조를 소지하고 청국에 입국한다.

여기서 조선인이 조선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집조와 호조가 아닌 “빙표(憑票)”가 등장한다. 이 빙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881년 영선사(領選使)가 파견될 때이다.

영선사의 파견을 조선과 청국이 상의할 때 해로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조선에서 사절단이 해로를 이용하여 청국에 간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청국 정부는 영선사의 학도에게만 특별하게 해로를 허용하고 “빙표”를 소지하도록 하였다.³⁸⁾ 영선사 일행은 동결 문제로 해로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 빙표를 가지고 기존의 육로를 따라 청국의 북경과 천진에 도착했다. 그리고 지나는 곳에서 청국 관원이 요구할 때 이 빙표를 제시했고 귀국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빙표를 발급받았다.³⁹⁾ 또 영선사 일행은 목적지인 천진에 도착한 뒤 청국 내지를 여행할 때는 청국의 규정에 맞게 청국 정부에 호조를 요청하여 발급받았다.⁴⁰⁾

하지만 『장정』의 해당 조항을 보면 조선인은 호조가 아닌 주청국 조선 상무위원이 발급한 집조를 소지하고 내지를 여행해야 한다. 위의 공문에서는 동해관아문(東海關衙門)에서 빙표를 제출하고 호조를 발급받게 되어 있어 조약문과는 규정이 다르다. 이것은 아직 조선에서 상무위원을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상무위원이 파견된 것은 이듬해인 1884년이다.⁴¹⁾ 주 천진 상

37) 『舊韓國外交文書』 8권, 「청안」 1, 문서번호13.

38) 『啓下咨文冊』 1권, 광서 7년 3월 24일, 「學徒憑票發交來員祇領事 北京禮部回答」.

39) 『陰晴史』 고종 18년 11월 12일, 고종 18년 12월 2일, 고종 19년 1월 7일.

40) 『陰晴史』 고종 19년 3월 21일, 고종 19년 4월 22일, 고종 19년 9월 25일.

무위원으로 파견된 남정철(南廷哲)은 이전과 다름없이 불법 도항하는 조선인이 많다며 외아문에 도항하는 조선인에게 빙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외아문에서는 이 공문에 따라 각 개항장과 관(關)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보냈다.⁴²⁾

지금부터 본국 상민은 본항(本港)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려면 감리서에서 발급한 빙표(憑票)를 영수해야 한다. 빙표에는 이름, 연령, 용모, 보증인, 휴대품, 목적지를 기입한다. 보증인이 확실하지 않던가, 화물이 명확하지 않으면 빙표를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 천진에 도착하면 상무공서(商務公署)에 가서 빙표를 제시한 뒤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다. 통상이 끝나고 귀국한다면 사용한 빙표는 폐기한다. 빙표 양식과 본 아문에 보내온 주진대원의 공문 사본을 보내니 접수하면 빙표 발급을 시행하라

이 자료를 보면 빙표에 대한 규정은 1. 빙표에는 소지자의 개인정보가 기입되어 있고, 2. 보증인이 필요하며, 3. 빙표를 소지한 조선인은 청국에 도착하면 조선 상무공서에 가서 빙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장정의 규정에 따라 상무공서에서는 빙표를 제시한 조선인에게 집조를 발급했을 것이다.

외아문에서 지시한 이 공문과 위의 진수당의 것을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먼저 차이점은 진수당의 제시한 도항 절차는 빙표 발급-동해관아문 도착-호조 발급이다. 하지만 외아문에서는 빙표 발급-천진 도착-상무공서에서 빙표제시로 절차가 되어 있다. 이는 상무위원이 파견되어 더 이상 동해관아문에서 호조를 발급받지 않고도 천진에서 조선의 상

41) 주 천진(天津) 상무위원으로 1883년 10월 김선근(金善根)이 임명되었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1884년 1월 김선근을 대신하여 남정철이 임명되었고 남정철은 3월 고종에게 사폐(辭陞)하고 천진으로 부임했다; 『高宗實錄』 21권, 고종 21년 1월 27일, 고종 21년 3월 17일.

42) 『書契所報關錄』 卷18104-v2, 084b~085b. 외아문(1884년 6월 22일 발) → 按撫使義州府尹兼監吏三港口監吏官.

원문 : 自今以後、本國商民、從本港入中國者、宜領貴監理憑票內、註明本人年貌鄉貫、何人立保、帶何土貨、向何地方。如保人不實、土貨不明、不准給票、及到天津商務公署、呈檢受憑、轉向他處、賣完回國、原憑票繳銷憑票格式、與本衙門、送駐津大員公文、另爲抄送、到卽依此施行 是矣。

무위원이 집조를 발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통점은 빙표라는 것이 여행하는 동안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 즉 조선과 청 사이의 구간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의 영선사 일행이 소지한 빙표도 동일하다. 그리고 빙표를 소지한 자는 청국에 도착하면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빙표가 아닌 집조 혹은 호조가 필요했다. 즉 이를 통해서 “빙표”는 일정 구간에서만 유효한 통행 허가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1888년 2월 조선 정부는 청국으로 도항하는 조선인에게만 발급 하던 이 빙표를 개항장에서 승선하는 모든 조선인에게 발급하라고 각 감리서에 명령했다.⁴³⁾ 이 때부터 인천 감리서⁴⁴⁾에서 출입항한 조선인의 빙표를 조사한 기록인 『仁川港警察所憑票摘奸成冊(奎-26195)』 이하 『빙표성책』⁴⁵⁾의 1888-1889년분이 남아 있다. 『빙표성책』에는 출입항하는 조선인의 거주지, 이름, 관직(관직에 있는 경우), 소지품, 소지한 문서, 동행자, 도항목적, 목적지 등과 함께 보증인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다.⁴⁶⁾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빙표성책』을 근거로 도항자들이 소지한 문서가 “빙표”, ‘공문’, ‘호조’ 등으로 구구하고 발급처도 제각각인데”라고 하여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⁴⁷⁾

이러한 주장은 잘못되었다. 그 근거로 『빙표성책』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총 937건의 입출항 기록이 적혀있다. 이중 소지 증서가 “빙표”로 적힌 것

43) 『東萊通案』 奎18116-v1, 002a, 외아문(1888년 2월 24일 발) → 동래감리서 (1888년 3월 3일).

44) 개항장의 여러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민희수, 『한국 근대 開港場·開市場의 감리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이 있다.

45) 현재 규장각 원문 검색 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46) 당시 발급됐던 빙표 원본도 현재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 1989년 9월 27 일자에 「최고여권 백년전 『빙표』 공개」라는 제목으로 원산감리서에서 총청감영의 관할지역에서 거주하던 37세의 상인 백영화(白永和)에게 발급한 빙표가 실려 있다. 가로 30, 세로 47cm의 얇은 한 장의 종이로 되어 있는 이 문서에는 소지자 백영화의 이름, 신장, 용모와 보증인 등이 적혀 있다.

47) 서호철, 앞의 논문 (2007), 272쪽.
김설하, 앞의 논문 (2009), 13쪽.

이 917건, “공문”이 3건, “호조”가 3건, 증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14건이다. 이를 통해 보면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빙표를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문을 소지한 3인은 모두 공무로 도항하는 자로 소속 기관이 발급한 공문을 소지하였다.

호조를 소지한 3명의 경우는 모두 귀국한 자들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이 호조는 보호를 보증하는 문서이다. 즉 외국으로 가는 조선인에게 조선 정부가 그 보호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발급할 수 없다. 따라서 호조를 소지하고 출국한 사람은 없다. 호조를 소지하고 귀국한 3명 중 1명은 위에서도 언급한 김교삼이다. 김교삼은 1887년 알렌(Horace Newton Allen)과 함께 미국으로 도항했다. 그가 미국으로 도항할 때 어떠한 증명서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전권 공사 박정양이 조선에 들어갈 때 제시하라고 호조를 발급한 것이다.⁴⁸⁾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로 한 사람은 주일공사관에 파견된 김가진(金嘉鎮)의 반당(伴倘-경호원)인 백낙현(白樂賢)이다. 그는 후술할 이유로 집조나 빙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일본 공사의 이름으로 발급된 호조를 소지했다. 또 한 사람은 윤선(輪船) 구입을 위해 일본으로 도항한 허담(許燭)이다. 그는 구입한 윤선을 타고 인천으로 돌아왔고 그는 외아문에서 발급한 호조를 소지하고 있었다.⁴⁹⁾

빙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총 14명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개항장 감리서에 용건이 있어 온 사람들이어서 바로 돌아갔다. 나머지 3명은 3월에 입항한 것으로 보아 빙표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도항한 사람들이다.

또한 동일 인물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조선 정부가 빙표를 일정 구간의 통행 허가증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조선인은 대체로 출발하는 곳의 개항장 감리서에서 빙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그 빙표는 도착지에 도착하면 반납하고 다시 출발할 때 그곳의 감리서에서 빙표를 새로 받았다. 그래서 발급처가 여러 감리서일 수밖에 없다. 해외로 도항하는 경우에

48) 『美行日記』, 무자년 10월 7일.

49) 『釜山港監理署目錄』奎18148의 1-v.1, 28b.

는 출발지에서 발급한 빙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아올 때 반납했다. 해외로 도항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대체로 청과 일본인데 여기는 빙표를 가지고 가서 개항장의 조선 공관에서 청이라면 집조로, 일본이면 내지면 장(內地免狀)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해당 국가의 내지로 갈 수 있었다. 출발지의 감리서가 아닌 외아문에서 발급한 빙표도 있는데, 이는 정부 관료나 직원이 용무가 있어서 해외로 갈 때 발급받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선 정부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빙표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었음이 확실해졌다.

한편 개항장에서 발급하는 빙표와는 다르게 외국의 공관으로 파견되는 조선인 외교관에게는 “집조”가 발급됐다. 이들에게 발급된 것이 “호조”가 아닌 “집조”인 것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들의 신원을 증명하여 그 보호를 타국 정부에 요청하기 위한 문서였기 때문이다. 1887~1888년 외교관에게 발급된 집조의 사본인 『執照原簿』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⁵⁰⁾ 이 『집조원부』에는 총 28건의 집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나누어 보면 1. 1887년 6월 파견된 주일공사 민영준(閔泳駿) 일행 5건, 2. 1887년 8월 파견된 주미공사 박정양(朴定陽) 일행 10건, 3. 1887년 9월 파견된 주 영·독·러·이·프 공사 조신희(趙臣熙) 일행 6건, 4. 1887년 12월 21일 추가로 주 영·독·러·이·프로 파견된 영사 이용태(李容泰) 일행 3건, 5. 추가로 일본으로 파견된 홍우관(洪禹觀), 6. 박정양과 교대하기 위해 1888년 10월 10일 파견된 이완용(李完用) 일행 3건이다.⁵¹⁾

『집조원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주일공사로 파견된 민영준 일행은 총 13명인데 발급 건수는 5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나머지 8명은 제5호인 통역관 안경수(安鷄壽)의 집조에 부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백낙현이 귀국할 때 집조가 없어서 일본 공사인 민영준이 호조를 발급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으로 파견된 인원에게는 모두에게 각각 집조가 발급된

50) 『執照原簿』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51) 이보다 앞서 집조가 발급된 기록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김도형, 「한국 근대 여행권(旅券) 제도의 성립과 추이」, 『한국근현대사연구』 77 (2016), 25~26쪽).

것이다. 이 인원 중에는 허용업(許用業)이나 김노미(金老昧)와 같은 노비들도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일본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각 개인이 한장의 집조(Passport)를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조신희의 집조에는 집조의 문구가 한역문 뿐만 아니라 불역문, 영역문으로도 실려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집조의 번역을 “Passport”라고 분명히 적어두었다. 이러한 양식의 집조는 집조 원부에는 조신희의 것만 실려 있지만, 1893년 미국에 파견된 장봉환(張鳳煥)이나 1895년 발급된 일본과 미국행 윤현 (尹玉+憲)의 집조에도 조신희의 집조처럼 한역문과 더불어 불역문, 영역문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식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⁵²⁾

이처럼 1888년 2월부터는 해외로 도항하는 외교관에게는 “집조”를, 일반인에게는 “빙표”가 발급되었다. 그런데 1892년 6월 조선의 외아문에서는 개항장에서 승선하는 조선인에게 앞으로는 “빙표”가 아닌 “집조”를 발급할 것이라고 각 감리서에 하달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외아문은 조선의 상인이 해외로 갈 때 발급받는 문서의 양식이나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⁵³⁾ 하지만 1892년 4월부터 1893년 1월까지 인천항을 출입한 조선인들을 조사한 기록인 『仁川港警察署憑票摘奸成冊』(규-20230)⁵⁴⁾을 보면 조선인이 소지한 문서는 대부분 “빙표(憑票)”로 적혀있다. 따라서 명칭의 통일을 위해서 제도를 개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명칭을 “집조”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외교관에게 발급되던 집조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집조원부』의 집조와 안창호가 소지했던 집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⁵⁵⁾

하지만 이렇게 변경되면서 집조의 발급을 외아문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빙표제도와는 다르게 출발지에서 발급받은 집조를 그대로

52) 『내일신문』 2024년 1월 5일, 「오늘날 여권과 별차이 없는 ‘집조(執照)’」.

53) 『仁川港關草』 套18075-v.5, 009b,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1892년 5월 19일발)
→ 삼항(三港).

54) 이 자료도 규장각 원문데이터베이스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55) 박주미 글, 이지후 그림, 『안창호의 여권』 (서울: 밝은 미래, 2021), 24쪽.

소지하다가 귀환했을 때 반납하게 되었다. 즉 이는 조선 정부의 “Passport” 제도가 기존의 빙표와 같이 해당 구간에 대한 통행만을 허가한 것이 아닌 현재의 여권처럼 목적지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맷음말

19세기 말, 쇄국을 유지하고 있던 조선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개항을 하였다. 그리고 청과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개항장을 설치하여 자국민과 외국인을 분리했다. 처음 부산이 개항되었을 때에는 일본인들은 개항장까지 들어오는 것은 자유로웠지만 개항장에서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 내지로 갈 수는 없었다. 조선 정부는 뒤이어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일본과 동일하게 개항장에서 반경 10리라는 범위를 미국인이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모두 조약을 교섭할 때 내지 여행 조항을 넣고 싶어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선 정부가 완강하게 거부했다.

다만 청국이 그러했듯이 조선도 계속되는 외부와의 접촉으로 외국인의 내지 여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로 일본과 체결한 『속약』에는 간행리정(間行里正) 범위의 확장, 원산, 인천, 양화진의 개방을 규정했고, 또 외국인 관원과 그 수행원의 내지 여행을 허가하였다. 이미 일본이 요구한 간행리정 범위의 확장으로 조선의 큰 도시들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되었고, 조선의 예조가 발급한 호조(護照)를 소지하면 내지 더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있었다. 더욱이 그 호조 소지자는 조선의 지방관아에서 이동 수단,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고,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전의 차용까지 가능하였다. 조약체결 당시에 이 증서 발급은 예조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조선의 관제 개편으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외아문)에서 담당하여 이후 조선 내지를 여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영사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호조를 발급했다. 호조는 청에서 시행하고

있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이어서 조선은 청과 『조청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고 상업과 유람 목적의 일반인에게도 내지 여행을 허가했다. 외국인 상인이나 여행자들은 조선 내지를 여행하기 위해 집조(執照)를 발급받아야 했다. 집조는 내지를 여행하려는 외국인이 조선 주재 자국의 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 집조에는 개항장 관할 지방관의 인장도 찍혀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발급 주체는 조선 주재 외국 공관이었다. 집조 소지자는 이동 수단과 보호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며 조선의 지방관에게 요청할 수 없었다.

이처럼 호조와 집조는 발급 주체와 기능이 달랐다. 기존의 한국사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문서를 동일한 성격의 문서로 보고 혼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호조와 집조를 동시에 사용하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어느 한 쪽으로 제도가 정리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대한제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기존에 발급된 호조와 집조를 살펴본 결과 이 두 가지 문서는 서로 다른 문서로 제도가 양립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그대로 조선 정부가 도입하여 자국민에게 시행했다.

조선 정부는 외국으로 도항하려는 자국민에게 처음에는 빙표(憑票)를 발급했다. 빙표는 정해진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영선사가 중국에 파견될 때 처음으로 등장한다. 청 정부는 청으로 도항하려는 조선인에게 빙표를 발급하라고 조선 정부에 요구했다. 조선 정부는 이후 이 빙표 제도를 확대하여 조선의 개항장에서 승선하여 이동하는 조선인들에게 발급받도록 했다.

빙표를 소지한 조선인은 목적지가 청이나 일본인 경우 목적지에 도착하면 빙표를 재주 조선 공관에 맡기고 집조나 내지면장(內地免狀)으로 바꿔 체류하다가 돌아올 때 그 빙표를 다시 받아 귀국했고, 목적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목적지 감리서에 빙표를 반납하고 돌아올 때 그 감리서에서 다시 빙표를 발급받았다.

한편 조선 정부는 외국으로 파견되는 외교관에게 집조를 발급했다. 이 집조는 관직을 가진 공사나 영사 뿐만 아니라 종자 같은 노비에게도 일일

이 발급되었다. 즉 개인 문서였던 것이다. 또한 “집조”를 “Passport”로 번역한 집조도 확인된다. 그런데 외교 관들에게 발급되는 이 집조는 일반인들에게 발급되는 빙표와는 다르게 운영되었다.

이후 조선정부는 갑자기 빙표가 아닌 집조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집조를 발급한다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것을 맡기고 다시 다른 문서로 바꿀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단 일반인에게 발급하는 집조는 외교관에게 발급하는 것과 다른 것이었다.

한편 조선인에게 호조는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 체류하는 조선인의 보호 권한이 조선 정부에 없었기 때문이다. 호조를 소지하고 귀국한 김교삼의 예를 보면 박정양은 그 호조가 조선에서만 사용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호조를 발급받은 세 사람은 모두 집조를 소지하지 않은 채 출국했다. 그래서 귀국할 때 조선에서 자신을 증명할 문서가 없어서 조선에 들어올 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호조를 소지한 것이었다. 이처럼 조선 정부는 처음부터 집조와 호조를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했다.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제도가 주먹구구였다던가, 혼동하였다던가, 그런 식의 운용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인은 조선 정부가 발급한 집조를 소지하고 외국에 나갔다. 이러한 집조 제도는 통감부로 여권 발급권이 이관될 때까지 이어졌다.

주제어

여권(passport), 집조(Jipjo), 빙표(Bingpyo), 호조(Hojo), 출입국관리(immigration)

<투고: 2024년 11월 16일, 심사종료: 2024년 12월 10일, 개재확정: 2024년 12월 15일>

/Abstract/

Permission for Foreign Travel in Korea's Interior and the Adoption of the “Passport” System in Opening of Ports Period

Kim, DongHee

The passport is essential for international travel because it verifies a person's nationality abroad, ensuring protection. The history of such a document dates back to the 18th century when it was introduced to verify the identity of foreigners entering a country.

This passport system began to appear in East Asian and Korean history in the late 19th century, where the document was called “hojo” (護照), “jipjo” (執照), or “bingpyo” (憑票). These terms were translations of the foreign word “passport” but each had a distinct character.

“Hojo” and “jipjo” first appear in official documents in treaties, defined as documents that foreigners traveling within Korea's interior had to carry. Although both terms are translated as “passport” in English, the documents differ in issuing authority and function.

“Hojo” was a document issu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foreigners, guaranteeing their protection. This protection included not only personal safety but also provisions like access to transportation, accommodations, and financial loans. In contrast, “jipjo” was a document issued by foreign embassies in Korea for their nationals traveling within the Korean interior. Those holding a “jipjo” were responsible for arranging their own travel needs.

In Korea, “jipjo” and “hojo” were also issued to Korean nationals as “passports.” However, initially, rather than “jipjo” or “hojo,”

“bingpyo” was issued. The issuance of the first “bingpyo” began at the request of the Qing government, which required Korean travelers to China to carry “bingpyo.” Upon arrival in China, the “bingpyo” holder had to present it and exchange it for a “hojo” or “jipjo” to be allowed to conduct activities in China. In other words, “bingpyo” was a permit for passage between Korea and China.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sued “jipjo” to diplomats sent abroad to serve as proof of identity in foreign countries, a system separate from the “bingpyo.” Later,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ssue “jipjo” instead of “bingpyo” to Korean nationals traveling overseas, though this “jipjo” was different from the one issued to diplomats.

The second section addresses the origins of civilizations. It suggests that the studies of polytheistic religions in the ancient Near East, which benefit from relatively abundant textual records, could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ancient Chinese religions of the Shang period, which rely primarily on narrative-deficient oracle bone inscriptions. Furthermore, the study compares the urban-state formation and expansion of Mesopotamia’s Uruk civilization with the Erlitou site in ancient China and its diffusion. Despite the risks of such comparisons—particularly those arising from disregarding regional environmental differences—the analysis reveals that, aside from the absence of a writing system, Erlitou meets several criteria for a state level society established through the study of Uruk archaeological materials. However, unlike Uruk, Erlitou lacks clear archaeological evidence for cultural and political expansion.

참고 문헌

1. 단행본

- 이사벨라 베즈 비숍 지음, 김태성·박종숙 옮김, 『양자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서울: 효령출판, 2005).
- 박주미 글, 이지후 그림, 『안창호의 여권』(서울: 밝은 미래, 2011).
- 존 토피 지음, 이충훈·임금희 옮김, 『여권의 발명』(서울: 후마니타스, 2021).

2. 논문

- 權赫秀, 「조공관계체제 속의 근대적 통상관계」,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연구』(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 김도형, 「여행권(집조)을 통해 본 초기 하와이 이민의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 (2013).
- _____, 「도산 안창호의 ‘여행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 행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2015).
- _____, 「한국 근대 旅行券(旅券) 제도의 성립과 추이」, 『한국근현대사연구』 77 (2016).
- 김동희, 「개항기 집조·병표제도와 조선인의 해외도항」, 『동아시아문화연구』 77 (2019).
- 김설하, 「여권(Passport)의 기원과 등장으로 본 개항기 한국의 근대성, 1883~1905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민회수, 『한국 근대 開港場·開市場의 감리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_____, 「개항기 査證으로서의 ‘護照’제도의 도입과 운영」, 『역사학보』 229 (2016).
- 박한민, 「개항장 ‘間行里程’ 운영에 나타난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한국사연구』 165 (2014).

- 서호철,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 호적제도의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한승훈, 「朝英條約(1883.11)과 불평등 조약 체제의 재정립」, 『한국사연구』 135 (2006).

회 보

단국사학회 연혁

1965. 10. 5. 사학과 교수 학생 동문의 연구 논문지 발간에 합의하고
‘史壇’이라 가칭함
1967. 7. 3. 사학과 연구논문지 ‘史壇’을 ‘史學志’로 개칭하고 題字는
集子기로 합의함
韓漢(號 石峰)『千字文』에서 集字
(1583, 宣祖 16년 刊, 金晟兩 소장본)
1967. 7. 16. 『史學志』 편집학생을 위촉함.
편집부장: 전성남(4학년)
편집차장: 박혜원(3학년)
편집부원: 송병은(2학년), 이일지(2학년), 고영진(1학년),
김혜재(1학년)
1967. 9. 2. 창간호 발간, 경남 사천지구 폐총발굴 보고회 개최(대학싸롱)
1967. 9. 5. 창간호 발행
1967. 11. 24. 제2집 편집회의 개최, 임원 선출(사학과 연구실)
편집부장: 박혜원(4학년)
편집차장: 송병은(3학년)
편집부원: 이일지, 고영진, 김혜재, 오영분, 안정숙
1968. 9. 29. 제2집 발행
1968. 10. 10. 조명화 동문(미광사 대표)『史學志』 발간기념 6만원 희사
1968. 10. 12. 한동신 동문(영광교회 목사)『史學志』 발간기념 2만원 희사
1968. 11. 23. 제2집 발행 및 고적조사보고서 제2책 출판 자축회 개최
(가정학관)
1968. 12. 15. 제3집 편집회의 개최, 임원 선출(사학과 연구실)
편집부장: 김혜재(3학년)
편집차장: 오영분(3학년)
편집부원: 최성민(2학년), 안정숙(2학년)

1969. 4. 12. 편집부원 추가 선출
김현자, 서정관, 김내영(1학년)
1969. 7. 4. 제3집 발행
1970. 9. 20. 제4집 편집위원 선출
김은재(4학년), 오영분(4학년), 최성민(3학년), 안정숙(3학년),
서정관(2학년), 태옥자(1학년), 장정길(1학년)
1970. 11. 3. 제4집 발행
1971. 9. 22. 제5집 편집위원 선출
최성민(4학년), 안정숙(4학년), 서정관(3학년), 태옥자(3학년),
지용화(2학년)
1971. 11. 3. 제5집 발행
1972. 10. 16. 제6집 편집위원 선출
윤근(1학년), 윤연중(2학년), 지용화(3학년), 태옥자,
이임덕(4학년)
1972. 11. 3. 제6집 발행
1973. 11. 3. 제7집 발행
1974. 9. 22. 제8집 편집학생 선출
조찬아(4학년), 오명옥(3학년), 박명희(3학년), 김경란(2학년)
1974. 11. 3. 제8집 발행
1975. 9. 22. 제9집 편집학생 선출
강종구(4학년), 오명옥(4학년), 박명희(4학년), 정계숙(2학년)
1975. 11. 3. 제9집 발행
1976. 9. 23. 제10집 편집학생 선출
배은숙(1학년), 차홍도(2학년), 정계숙(3학년), 이초연(3학년),
류재식(4학년)
1976. 11. 3. 제10집 기념호 발간
1977. 11. 3. 제11집 개교 30주년기념호 발행
1978. 11. 3. 제12집 단양신라적성비 특집호 발행
1979. 11. 3. 제13집 중원고구려비 특집호 발행
1980. 11. 3. 제14집 발행

1981. 11. 3. 제15집 발행
1982. 11. 3. 제16집 벽암(碧巖) 박무성 박사 화갑기념논총 발행
1983. 11. 3. 제17집 발행
1984. 11. 3. 제18집 발행
1986. 2. 15. 제19집 발행
1986. 11. 30. 제20집 기념호 발행
1988. 4. 15. 제21집 개교 40주년 및 박무성 교수 정년기념특집호 발행
1989. 6. 10. 제22집 발행
1990. 7. 20. 제23집 발행
1991. 7. 1. 단국사학회 회칙, 1차 개정됨
1991. 7. 20. 제24집 발행
1992. 7. 20. 제25집 발행
 초대 회장으로 김원모 교수 피선
1993. 7. 20. 제26집 발행
1994. 7. 20. 제27집 발행
1995. 4. 15. 제28집 용암(龍巖) 차문섭 박사 정년기념논총 발행
1996. 7. 15. 제29집 발행
1997. 9. 21. 제30집 개교 및 사학과 개설 50주년 기념호 발행
1998. 12. 21. 제31집 송병기 교수 정년퇴임기념호 발행
1999. 12. 21. 제32집 발행
2000. 12. 21. 제33집 발행
2001. 12. 21. 제34집 발행
2002. 12. 21. 제35집 발행
2003. 12. 25. 제36집 발행
2005. 8. 31. 제37집 발행
 제2대 회장으로 윤내현 교수 피선
2006. 8. 31. 제38집 발행
 학회조교에서 학회간사: 박관식으로 바뀜
2007. 8. 31. 제39집 발행
 학회간사: 이석빈

2008. 8. 31. 제40집 발행
2009. 8. 31. 제41집 발행
학회간사: 임근실
2010. 1. 1. 단국사학회 회칙, 4차 개정됨
사학지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1. 6. 30. 제42집 발행
제3대 회장으로 서영수 교수 피선
2011. 12. 31. 제43집 발행
학회간사: 한실비
2012. 6. 30. 제44집 발행
2012. 10. 12. 우당 이희영 선생 순국 80년 기념 북경 국제학술회의 공동 주관
2012. 10. 31. 단국대학교 개교 65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공동 주최
2012. 12. 31. 제45집 발행
2013. 6. 30. 제46집 발행
제4대 회장으로 최희재 교수 피선
2013. 12. 31. 제47집 발행
2014. 3. 1. 학회간사: 이현아
2014. 6. 30. 제48집 발행
2014. 12. 31. 제49집 서영수 교수 정년퇴임기념호 발행
2015. 6. 30. 제50집 발행
2015. 12. 31. 제51집 발행
2016. 3. 1. 학회간사: 전수진
2016. 6. 30. 제52집 발행
2016. 12. 31. 제53집 발행
2017. 6. 30. 제54집 발행
제5대 회장으로 김영제 교수 피선
2017. 12. 31. 제55집 발행
2018. 3. 1. 학회간사: 나용재
2018. 6. 30. 제56집 발행
2018. 9. 1. 학회간사: 전상우

250 『사학지』 제65집 (2024. 12)

- 2018. 12. 31. 제57집 발행
- 2019. 6. 30. 제58집 발행
- 2019. 12. 31. 제59집 발행
- 2020. 6. 30. 제6대 회장으로 박경식 교수 피선
- 2020. 12. 31. 제60집 발행
- 2021. 12. 31. 제61집 발행
- 2022. 3. 1. 제7대 회장으로 김현수 교수 피선
- 2022. 9. 1. 학회간사: 홍성환
- 2022. 12. 31. 제62집 발행
- 2023. 3. 1. 학회간사: 권유진
- 2023. 12. 31. 제63집 발행
- 2024. 3. 1. 제8대 회장으로 전덕재 교수 피선
- 2024. 6. 30. 제64집 발행
- 2024. 9. 1. 학회간사: 이창현
- 2024. 12. 31. 제65집 발행

단국사학회 회칙

제정 : 1967. 08. 01

제1차 개정 : 1991. 07. 01

제2차 개정 : 2000. 08. 01

제3차 개정 : 2005. 01. 30

제4차 개정 : 2010. 01. 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단국사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

제2조(목적) 본회는 역사에 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역사학의 발전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회 기관지 『사학지』 발간
- (2) 학회 목적에 부합되는 도서 출판
-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학술 및 문화교류
- (5)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 증진
- (6) 기타 역사 연구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버금가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2)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자.

- (3)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버금가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4) 기관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회지에 논문제재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 (2) 특별회원은 회지에 논문제재권이 있으며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 (3) 회비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 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7조(분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분한다.
- (2) 이사 가운데 총무, 연구, 섭외, 재무 등의 일을 맡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되며, 이사는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3)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상임이사의 업무는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기 구

제10조(총회)

-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이전에 회원에게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회 소집을 알린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 (4) 총회는 이사회 및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사업보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임원 개선을 의결한다.

제11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의안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안을 의결 집행한다.

제12조(위원회)

- (1) 본회의 기관지인 『사학지』 출간 및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술 활동 기획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 본회의 운영을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학술 고문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3)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 장 재정 및 행정

제13조(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 (2) 회비의 액수, 재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재산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장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행정) 회장은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 5 장 해 산

제15조(해산) 학회의 해산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6조(재산 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총회 의결에 따라 처분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 이사 3분의 2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3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사학지』 출판규정

제정 : 1967. 08. 01

제1차 개정 : 1991. 07. 01

제2차 개정 : 2000. 08. 01

제3차 개정 : 2005. 01. 30

제4차 개정 : 2010. 01. 01

제5차 개정 : 2020. 01.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단국사학회 (앞으로 학회로 줄임)의 학회지인 『사학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내용)

『사학지』에 실리는 글은 역사학 연구를 강조하는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독창성을 가진 미발표된 논문, 비평논문, 서평, 연구 동향, 그 밖의 학회 활동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발간시기)

『사학지』의 발간은 연 1회로 하되,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4조 (투고 자격)

『사학지』는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만 투고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아닌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고할 수 있다.

제5조 (원고 형식)

『사학지』 투고는 원고 작성 요강에 따라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 작성 요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규로 정한다.

제6조 (원고 길이)

투고 원고 매수는 각주를 포함하여 원고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 게재와 관련된 추가 소요 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 내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제출 원고)

투고자는 게재를 원하는 원고를 워드프로세서로 투고신청서(학회 홈페이지 - www.dkhistory.re.kr - 또는 학회지에 소정 양식 게재)와 함께 학회 이메일로 제출한다.

제8조 (심사)

투고된 원고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 수정 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이 규정의 제15조 (부칙 2 : 논문심사)에서 정한다.

제9조 (투고자 연락 책임)

편집위원회는 원고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단, 투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주 저자에게만 통보한다. 주 저자는 투고 원고의 글쓴이 명단 가운데 맨 앞에 표기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게재료)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사학지』에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게재를 위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집)

『사학지』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별쇄본)

게재 원고의 투고자에게는 해당호의 『사학지』를 3부 우송하며, 해당 논문의 별쇄본은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할 수 있으나 이에 관련된 소요 경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4조 (부칙 : 효력)

이 출판 규정은 학회 이사회에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을 갖는다.

『사학지』 심사규정

제정 : 1967. 08. 01

제1차 개정 : 1991. 07. 01

제2차 개정 : 2000. 08. 01

제3차 개정 : 2005. 01. 30

제4차 개정 : 2010. 01. 01

제1조 (심사과정)

- (1) 투고된 원고는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과 내용의 학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를 받는다. 단, 논문 이외의 글은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며, 계재를 결정하는 최종판정의 권한을 갖는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의견,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근접한 분야를 전공하는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중 선정될 수 있다.

제2조 (심사절차)

- (1) 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일체의 단서를 없앤 상태의 원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심사마감일을 미리 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 (3)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기준)

- (1)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연구의 독창성, 체제와 논리의 명확성, 자료 활용의 타당성, 학계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투고논문의 학문성을 심사해야 한다. (A : 계재, B : 수정 후 계재, C : 수정 후 재심사, D : 계재 불가)
- (2) 심사위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정 없이 계재 가,' '수정 후 계재,' '수

정 후 재심,’ ‘계재 불가’로 판정하고, 심사평가서에 종합적인 심사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계재 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심사결과에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A 계재

A·B 수정 후 계재

B·B 수정 후 계재

A·C 새로운 심사위원위촉,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A·D 새로운 심사위원위촉,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C 새로운 심사위원위촉,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D 새로운 심사위원위촉,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C·C 수정 후 재심사

C·D 계재불가

D·D 계재불가

제5조 (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6조 (부칙 : 효력)

이 출판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을 갖는다.

『사학지』 투고규정

제정 : 1967. 08. 01

제1차 개정 : 1991. 07. 01

제2차 개정 : 2000. 08. 01

제3차 개정 : 2005. 01. 30

제4차 개정 : 2010. 01. 01

제5차 개정 : 2017. 01. 01

제6차 개정 : 2020. 01. 01

제7차 개정 : 2024. 09. 01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단국사학회의 학회지인 『사학지』 투고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사학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사학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4조(논문의 성격) 『사학지』는 역사학과 관련이 있는 전공 학술 논문을 수록한다.

- 1)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투고 논문이 표절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 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5조(발행 시기) 『사학지』 발간은 연 2회로 하되,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6조(투고 시한) 원고투고 마감일은 매년 4월 말과 10월 말로 한다.

제7조(투고 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본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문호를 개방한다.

제8조(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로 한다.

단, 논문의 분량이 150매를 초과할 경우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원고의 제출) 투고 원고는 투고신청서(학회 홈페이지 - www.dkhistory.re.kr - 또는 학회지에 소정 양식 게재)와 함께 학회 이메일로 제출한다.

제10조(게재료) 원고는 1편 당 (일반논문 10만원 / 교내연구비논문 20만원 / 교외 연구비논문 30만원)의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원고 작성 방식) 원고 작성은 『사학지』의 편집 기준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원어는 첫 번에 한하여 팔호 안에 적는다(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한국어 번역문 첨부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2) 한글 2005 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MS 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
- (3)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영문초록)(영문으로 된 제목, 저자표시), 5개 내외의 주제어(Keywords)의 순서로 작성한다.
-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득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 (5)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기관 및 직위 / E-mail) 등으로 한다.
-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팔호로 표시하며[예 : ○○○(제1저자)], 주저자로 간주한다.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팔호로 표시한다 [제1저자와 연결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 ○○○(제1저자)·○]

- (연결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 ○○○·○○○(연결저자)].
- (7)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게 되 그 분량이 A4 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 (8) Abstract(영문초록)(영문으로 된 제목, 저자표시)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한다. 저자표시의 경우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기관 및 직위 / E-mail) 등으로 한다.
- (9) 모든 낱말은 띠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유명사는 붙여 쓴다.
예) (띠어쓰기)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고유명사) 朝鮮時代軍制史研究, ○○출판부, 한국○○○학회
- (10) [각주]는 아래의 형식을 따른다.
- ①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 ② 논문(정기간행물)과 저서는 아래의 형식을 따른다.
 - 한, 중, 일의 동아시아어로 된 논문은 제목을 「 」 안에, 학술지 명을 『 』 안에 넣고 아래의 방식으로 기입한다.
예) 이성규,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 『한국사시민강좌』 32 (2003), 12쪽.
 - 한, 중 일의 동아시아어로 된 단행본은 『 』 안에 제목을 넣고, 아래와 같이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간연도 순으로 기입한다.
예) 이상신, 『서양사학사』 (서울: 신서원, 2001), 55-57쪽.
 - 서양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넣고, 학술지 명은 이탤릭체로 하여 아래의 방식으로 기입한다.
예) Richard D. McBride II, "Silla Buddhism and the Hwarang," *Korean Studies* 34 (2010), pp.54-89.
 - 서양어로 된 단행본은 저자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 출판사명, 연도)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3), p.38.

- ③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또는 '같은 글(또는 Ibid.)' 등으로 표기한다.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또는 '앞의 글(또는 op. cit.)' 등으로 표시한다. 재인용시 구분히 필요한 사항은 표기해 주고,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은 서지사항은 생략가능하다.
- ④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이름, 역자 이름, 역서 제목, 출판사항 순으로 작성한다.

예) 에릭 H. 클라인 지음, 류광현 옮김, 『성서고고학』 (서울: CLC, 2013), 55쪽.

- ⑤ 편서에 실린 논문의 경우 아래의 예처럼 논문 저자의 이름과 논문 제목을 먼저 표기한 후 편자의 이름 뒤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하고, 책 제목, 출판사항 순으로 작성한다.

예1) 서봉수, 「계양산성 발굴과 문자자료」, 윤재석 편, 『동아시아 논어의 전파와 계양산성』 (서울: 주류성, 2021), 239–276쪽.

예2) John Van Seters, "Historiography in Ancient Israel," Andrew Feldherr and Grant Hardy ed., *The Oxford History of Historical Writing Volume 1, Beginning to AD 6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76–96.

- ⑥ 한문 원전 인용의 경우 판본이나 번역본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의 동아시아어 단행본의 범례를 따른다.
- ⑦ 인터넷자료는 제작자, 제작연도, "주제명", 인터넷주소 (검색일자)를 기재한다.
- ⑧ 그 밖의 사항은 학술지 원고작성의 일반관례를 따른다.
- (11) 참고문헌은 각주의 범례를 따르지만 서양어 저자의 경우, 각주와 반대로 성, 이름 순으로 기입한다.
- (1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사학지』 연구 윤리 규정

제정 : 2010. 01.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사학회가 발행하는 『사학지』에 대한 논문개재와 관련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의무)

-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 (4) 논문 공동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지 않는다.
- (5)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구성과 활동)

-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2) 윤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 2인 외에 회장과 총무이사,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 (3) 윤리위원회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15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명은 서면의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이사회는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소집 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수 정할 수 있다.

제4조(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제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학회의 총회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史學志

表紙題字解題

韓濩(號 石峰)『千字文』에서 集字

(宣祖 16年 · 西紀 1583年 刊)

--- 金晟兩氏 所藏 ---

SAHAKCHI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Vol. 65

December 2024

CONTENTS

Articles

- Diverging Trajectories in the Origins of Ancient Civilizations and Their Historiography:
A Preliminary Comparative Review Shim, Jae-hoon
- Research Trajectory of Sage-rulers Yao and Shun:
From the Boundaries of History to Cultural Memory Lee, Jeongwoo
- Quotations from Chinese historical accounts in the Goguryeo Bongi and
Genealogy of early kings Lim, Ki Hwan
- Reevaluating the "Civil Governance Ideology" (文治主義)
of the Song Dynasty Kim, Hanshin
- Wang An-shi's New Policy and the Peasant Life
during Northern Song Dynasty Lee, Geun-myung
- Infectious Disease Control, Smallpox Inoculation, and Politics in Early
18th Century Colonial Boston Lee, Hyon Ju
- Permission for Foreign Travel in Korea's Interior and the Adoption of
the "Passport" System in Opening of Ports Period Park, Sung Soon

Edited by
Dankook Historical Society
<http://www.dkhstory.re.kr>